

연구보고서

공공행정 분야 등 사업장의 안전보건실태

나민오·송안미·최서연·권혁·박수경·서진두·정정임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요약문

- 연구기간 2024년 2월 ~ 2024년 11월
- 핵심단어 공공행정, 공공 근로자, 학교 근로자, 안전보건, 현업업무
- 연구과제명 공공행정 분야 등 사업장의 안전보건실태

1. 연구배경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제3조는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중 각급 학교,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이하 공공행정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산안법」의 안전보건관리체제(제2장 제1절·제2절), 안전보건교육(제3장)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제외한다. 다만 공공행정 등에서 종사하더라도 행정규제·집행에 관한 사무 또는 수업과 행정에 관한 업무와는 업무 형태가 현저히 다르거나 유해·위험의 정도가 다른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산안법」을 전부 적용하고 있다.

국가의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공공분야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으며 유해·위험이 높은 업무도 증가하고 있다. 공공영역 종사자의 보호를 위해 비현업종사자에 대해서도 「산안법」을 전부 적용하거나, 유해·위험도가 높은 업무를 고용노동부 고시의 현업업무에 추가하여 보호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으며, 반면 공무원의 신분과 직무, 공공행정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공공행정 등의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별도로 규정하거나, 일부 현업업무에 대해서는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현업업무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는 등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① 공공행정 등의 사업장에 대한 「산안법」 일부 적용 제외 규정의 취지와 법 적용 기준의 쟁점과 해석 방향을 검토하고, ② 공공행정 등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현황, 「산안법」 적용 실태 및 안전보건관리 실태를 파악한 후, ③ 현업종사자의 보호 취지와 직무 위험도 등을 고려한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에 관한 고시의 현업업무 범위의 조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④ 공공행정 등의 조직 및 직무 특성 등을 고려한 「산안법」의 적용 단위 해석 방향과 기관 유형별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및 운영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2. 주요 연구내용

공공행정 등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사업의 목적, 조직 형태, 업무의 내용과 유해·위험이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공공행정 등의 사업장에 대한 「산안법」 적용은 제3조의 규정 취지에 따라 업종과 규모에 따른 유해·위험의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 동시에 획일적인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강제하는 것보다 각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조직 구성, 인력 선임, 교육 및 활동 등을 촉진하여 효과적으로 안전보건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체제 구축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1) 공공행정 등 사업장에 대한 「산안법」 적용 기준과 해석 방향

실태조사 결과, 특정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된 업무에 해당하는 업종에 따라 「산안법」을 적용해야 함에도 기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공공행정 등으로 해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에서는 공공행정 등의 사업장 단위의 분리와 업종의 적용을 아래와 같이 엄정히 할 것을 제안하였다.

첫째, 본청(공공행정 등)과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특정 사업을 수행하는 독립적 사업장(수도사업본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공원관리소, 문화예술회관 등)은

본청과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 해당 사업장에서 수행하는 주된 업무에 따라 「산안법」을 적용한다.

둘째, 본청(공공행정 등)과 장소적으로 분리되지 않으나 공공행정 등의 업무와 현저하게 근로 양태와 유해·위험이 달라 별도로 「산안법」을 전부 적용할 필요성이 높은 업무에 대해서 현업업무로 지정하되, 사업주가 행정해석에 따라 현업업무 이외의 유해·위험업무를 포함하여 별도의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인정한다.

셋째, 본청(공공행정 등)과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독립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장은 직근 상위조직(본청 또는 사업군)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한다.

넷째, 본청(공공행정 등)과 장소적으로 분리된 사업장의 규모가 작거나, 상시 현업종사자 수가 적어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어려운 경우, 본청 또는 유사 사업군별로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여 실질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유도한다.

2)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에 관한 고시의 현업 업무의 적정성 검토 및 보완

산업재해 통계와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① 현행 고용노동부 고시상의 현업업무는 다른 업무들에 비해 유해·위험이 높아 현업업무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② 공공행정 사업장의 경우 사고성 재해의 발생 위험이 높은 농작업 대행, 농기계 임대 및 수리 업무, 수도 검침, 하천 단속(현장 단속원) 업무에 대해서 현업업무 반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교육서비스업의 각급 학교의 경우, 사고 및 재해율이 전체 산업의 평균 재해율보다 현저히 낮았으나 특수교육실무사는 상시적인 사고성 재해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업무 중 발생하는 유해·위험에 관한 추가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교사에 대한 조사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 ③

그 외의 검토 대상 업무들은 이미 별도의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여 교육 등의 안전보건활동을 추진하고 있거나, 별도의 안전보건관리체제를 둘 정도로 유해·위험이 높거나 상시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행 「산안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은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기관에 고용노동부의 현업종사자 고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러한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시행령을 개정하여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기관도 현업종사자 고시의 적용 대상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3) 기관 특성을 고려한 자율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유도

공공행정의 영역에서는 기관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사업이 수행되고 있으며, 소방, 경찰 등의 고위험 업무부터 사무직에 준하는 일반 행정업무까지 그 유해·위험의 정도가 다르다. 또한 기관의 사업에 따라 조직 구성에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기관 유형별로 고유한 조직과 사업 특성을 반영한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도록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첫째, 각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자율적 안전보건관리체제의 구축 및 활동 우수사례를 소개하여 사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둘째, 기관 유형별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가이드 제공하여 사업장 단위의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가이드는 ① 적정 사업장 단위의 분리와 적용 업종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② 현업업무 외에도 안전보건관리가 필요한 유해·위험 작업자를 포함하여 사업장 단위의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고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하도록 유도해야 하며 ③ 본청의 안전보건관리 총괄 및 지원 기능을 촉진하여 현장 단위에서 실질적인 안전보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기관 특성을 고려한 자율적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유도해야 한다. 정부는 위의 우수사례와 가이드를 활용하여 「산안법」 기준을 상회하는 수준에서 각

기관이 스스로 훈령, 예규 등을 통해 각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교육 등을 스스로 정하도록 촉구하고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자율적 안전보건관리체제의 구축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3. 연구 활용방안

-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 또는 법령 및 지침의 해석 시 기초자료로 활용
- 정책 자료 및 가이드 작성 시 기초자료로 활용
- 학술논문 작성 및 후속 연구에 활용

4. 연락처

- 연구책임자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보건정책연구실 연구위원 나민오
 - ☎ 052) 703. 0822
 - E-mail mino05@kosha.or.kr

목 차

I. 서 론	1
II. 공공행정 분야 등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에 관한 쟁점 검토 ...	9
1. 공공행정 분야 등에 대한 「산안법」 적용 확대와 한계	11
2. 공공행정 분야 등의 법 적용 범위에 대한 해석 기준과 쟁점 ...	33
III. 공공행정 분야 등 종사자의 안전보건 실태	49
1. 공공행정 분야 등 종사자의 산업재해 현황 분석	51
2. 공공행정 분야 등 종사자 안전보건실태 설문조사	74
3. 학교 과학실험실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현황 실태조사	98
4. 공공행정 분야 등 기관별 안전보건담당자 인터뷰	106
5. 공공행정 등 유해·위험대상업무 종사자 인터뷰	124

목 차

IV. 주요 국가 공공행정분야 등 종사자의 안전보건관리 제도와 시사점	143
1. 일본	145
2. 독일	172
3. 영국	197
4. 시사점	230
V. 공공행정 분야 등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방향	233
1. 공공행정분야 등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의 문제점	235
2. 공공행정 등 사업장에 대한 「산안법」 적용 기준과 해석 방향 ...	239
3.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에 관한 고시의 현업업무의 적정성 검토 및 보완	249
4. 기관 특성을 고려한 자율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유도	257

VI. 결론	265
참고문헌	271
Abstract	275
부 록	279
1. 설문조사지	281
2. [학교] 과학실험실 유해화학물질 취급 현황 점검표	288
3. 인터뷰(기관유형별 안전보건담당자)	295
4. 인터뷰(유해·위험 대상 업무 종사자 인터뷰 현황)	330

표 목차

〈표 II-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규정	11
〈표 II-2〉 「산안법」의 일부적용대상사업 및 일부적용 규정 구분표(1986.7.1. 시행)	13
〈표 II-3〉 법의 일부적용 대상사업 및 일부적용 규정 구분표(1990.7.14. 시행)	14
〈표 II-4〉 법의 일부 적용 대상사업 및 일부 적용 규정의 구분표(1993.11.20. 시행)	15
〈표 II-5〉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및 규정(2014.1.1. 시행)	16
〈표 II-6〉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2020.1.16. 시행)	18
〈표 II-7〉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재해예방 시책 추진에 관한 규정	28
〈표 II-8〉 공무원에 대한 안전보건법령 입법 및 추진 현황	29
〈표 II-9〉 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표(제4차 개정)	35
〈표 II-10〉 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표(제11차 개정)	37
〈표 II-1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2020.1.16. 시행)	43
〈표 II-12〉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제2020-62호)	44
〈표 III-1〉 분석 대상 업무	53
〈표 III-2〉 공공행정 분야 등 종사자 산업재해현황(전체 재해자)	54
〈표 III-3〉 공공행정 분야 등 종사자 산업재해현황(사고재해자 세부)	55
〈표 III-4〉 공공행정 분야 등 종사자 산업재해현황(질병재해자 세부)	55
〈표 III-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표준산업별 재해자 현황	56
〈표 III-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표준직종별 관련 업무	57

〈표 Ⅲ-7〉 연구 및 국방 등 산업의 재해자의 직종 분석	58
〈표 Ⅲ-8〉 보건 및 사회복지 산업의 재해자의 직종 분석	58
〈표 Ⅲ-9〉 여가관련 산업의 재해자의 직종 분석	59
〈표 Ⅲ-10〉 체육관련 산업의 재해자의 직종 분석	59
〈표 Ⅲ-11〉 공공행정 산업의 재해자의 직종 분석	60
〈표 Ⅲ-12〉 교육서비스 사업의 표준직종별 관련 업무	65
〈표 Ⅲ-13〉 유사업종의 산업재해현황(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71
〈표 Ⅲ-14〉 유사업종의 산업재해현황(교육서비스업)	72
〈표 Ⅲ-15〉 조사 대상 기관	75
〈표 Ⅲ-16〉 응답자 특성 - 경력	76
〈표 Ⅲ-17〉 응답자 특성 - 소속 부서와 업무 등	77
〈표 Ⅲ-18〉 현업업무의 종류	78
〈표 Ⅲ-19〉 안전보건관리 현황	79
〈표 Ⅲ-20〉 안전보건관리 현황(계속)	80
〈표 Ⅲ-21〉 기관유형별 현업종사자의 근무현황	81
〈표 Ⅲ-22〉 기관유형별 현업종사자 근무현황(세부)	82
〈표 Ⅲ-23〉 안전관리 규정 제정	82
〈표 Ⅲ-24〉 기관별 안전관리 규정 제정(세부)	83
〈표 Ⅲ-25〉 안전보건 업무 담당 인력 선임	84
〈표 Ⅲ-26〉 안전보건 업무 담당 인력 선임 기준	85
〈표 Ⅲ-27〉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85

표 목차

〈표 III-28〉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86
〈표 III-29〉 주요 교육 내용	87
〈표 III-30〉 「산안법」 일부 적용 제외의 필요성과 범위 인식	88
〈표 III-31〉 취급 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게시 여부	88
〈표 III-32〉 공공행정분야의 현업업무 적용이 필요한 업무	89
〈표 III-33〉 공공행정분야의 현업업무 적용이 필요한 이유	91
〈표 III-34〉 공공행정분야의 현업업무 제외가 필요한 업무	92
〈표 III-35〉 공공행정분야의 현업업무 관리가 필요한 이유	93
〈표 III-36〉 교육서비스업 분야의 현업업무 적용이 필요한 업무	94
〈표 III-37〉 교육서비스업 분야의 현업업무 적용이 필요한 이유	94
〈표 III-38〉 교육서비스업 분야의 현업업무 제외가 필요한 업무	95
〈표 III-39〉 교육서비스업 분야의 현업업무 관리가 필요한 이유	95
〈표 III-40〉 학교 과학실험실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조사 대상	98
〈표 III-41〉 취급 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게시 여부	99
〈표 III-42〉 화학물질 성상에 따른 분리/차폐 보관 여부	100
〈표 III-43〉 기준함량 이상 유해화학물질 사용 여부	100
〈표 III-44〉 학교 과학실험실의 취급 유해화학물질 종류(기준함량 이상)	101
〈표 III-45〉 기준함량 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 대상자(다중응답)	102
〈표 III-46〉 화학물질 취급 시 안전보건 교육 여부	102
〈표 III-47〉 과학실무사 교육 실시의 주체	103
〈표 III-48〉 종사자에 대한 특수건강검진 실시 여부	103

〈표 Ⅲ-49〉 화학물질 폐기 절차 및 혼합폐기 발생 여부	104
〈표 Ⅲ-50〉 화학물질 보관 및 현황 관리(비공식적 구매)	104
〈표 Ⅲ-51〉 기관유형별 안전보건담당자 인터뷰 대상	106
〈표 Ⅲ-52〉 교육청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조례 제정 현황	119
〈표 Ⅲ-53〉 유해·위험 대상 업무 종사자 인터뷰 현황	125
〈표 Ⅳ-1〉 안위법의 지방공무원 적용관계	154
〈표 Ⅳ-2〉 「이세하라시 직원안전위생관리규정(伊勢原市職員安全衛生管理規程)」 ..	156
〈표 Ⅳ-3〉 「교토부립학교 직원 안전 위생 관리 규정」	160
〈표 Ⅳ-4〉 2017년 일본 공립학교 노동안전위생관리체제 정비 조사	170
〈표 Ⅳ-5〉 독일 공무원과 공무원직 근로자 비교	176
〈표 Ⅴ-6〉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규정(2020.1.16. 시행)	257

그림목차

[그림 Ⅲ-1] 의료복지 직종 종사자의 산업재해 유형	59
[그림 Ⅲ-2] 의료복지 종사자의 산업재해 유형	61
[그림 Ⅲ-3] 고객상담 종사자의 산업재해 유형	61
[그림 Ⅲ-4] 수도검침 종사자의 산업재해 유형	62
[그림 Ⅲ-5] 농작업 종사자의 산업재해 유형	63
[그림 Ⅲ-6] 농기계 수리 종사자의 산업재해 유형	63
[그림 Ⅲ-7] 교사 및 실무사의 산업재해 유형	66
[그림 Ⅲ-8] 수도검침 작업장 현황	126
[그림 Ⅲ-9] 농업기술센터 내 작업장 현황	131
[그림 Ⅲ-10] 도서관 내 작업장 현황	135
[그림 V-1] 광역지자체의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사례(예시)	258

I. 서론



I. 서론

1. 연구의 배경

사회가 고도화되고 국가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공공분야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종류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과 주민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유형의 공적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공공일자리를 창출해 왔다. 학교에서는 급식을 제공하여 학생들에 대한 돌봄기능을 강화하고, 체육교실, 과학교실 등을 운영하여 다양한 분야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 결과 전통적으로 수행해 온 사무행정과 교육업무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근로가 수행되고 있으며, 이중에서는 산업현장에서 수행되는 업무와 비견될 만한 유해·위험도가 높은 업무도 나타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제3조는 “이 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산안법 시행령」 제2조와 [별표 1]에 따르면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중 각급 학교¹⁾,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이하 공공행정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산안법」의 안전보건관리체제(제2장 제1절·제2절), 안전보건교육(제3장)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행정 등에 속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안전보건인력의 선임·지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실행 등 안전보건관리체제에 관한 규정과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 각급 학교란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외국인·대안학교를 말한다.

다만 공공행정 등에서 종사하더라도 행정규제·집행에 관한 사무 또는 수업과 행정에 관한 업무와는 업무 형태가 현저히 다르거나 유해·위험의 정도가 다른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산안법」의 안전보건관리체제와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현업종사자 고시)를 시행하여 2020년 1월부터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산안법」을 전부 적용하고 있다.²⁾

「산안법」의 적용방식에 대하여 일각에서는 공공영역 종사자 보호를 위해서 공공행정 등에 대한 「산안법」 일부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산안법」을 전부 적용한다거나, 비현업종사자 중에서 유해·위험도가 높은 업무를 고용노동부 고시의 현업업무에 추가하여 보호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³⁾ 반면 공무원의 신분과 직무, 공공행정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인사혁신처 훈령 또는 공무원재해보상법을 통해 공공행정 등의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를 별도로 규정하거나,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안전보건에 관한 단행법률을 제정하자는 견해⁴⁾와 특정 직무에 대한 별도의 안전보건법령을 제정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 전체에 대하여 통일적인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현업업무를 고시에서 제외해 달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⁵⁾

공공행정 등의 사업장에 대한 「산안법」 적용은 제3조에 따른 업종과 규모에 따른 유해·위험의 정도를 고려하는 동시에 공적서비스 영역의 확대와 업무의 다양화, 사회질서 유지라는 업무의 특성과 공무원과 근로자가 함께 근무한다는 조직의 특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2)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2호, 2020.1.16. 시행

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업안전보건법 전면적용 및 현업업무 고시 개정 관련 민주노총 요구안, 2023.5.

4) 김현주 등 8명, 공무원 안전보건관리 실태조사 및 재해예방 발전방안,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인사혁신처 연구보고서, 2022.12, 196쪽.

5) 산림청은 국가 산림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통일적인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여 예방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산림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산림안전보건법률(안)의 제정을 검토 중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행정 등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산안법」 적용 실태와 안전보건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현업종사자의 보호 취지와 직무 위험도 등을 고려한 현업업무 범위의 조정 필요성을 검토하겠다. 그리고 공공행정 등의 조직 및 직무 특성 등을 고려한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및 운영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표

본 연구에서는 ① 공공행정 등의 사업장에 대한 「산안법」 일부 적용 제외 규정의 취지와 법 적용 기준의 쟁점과 해석 방향을 검토하고, ② 공공행정 등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현황, 「산안법」 적용 실태 및 안전보건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③ 현업종사자의 보호 취지와 직무 위험도 등을 고려한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에 관한 고시의 현업업무 범위의 조정 필요성을 검토한 후, ④ 공공행정 등의 조직 및 직무 특성 등을 고려한 「산안법」의 적용 단위 해석 방향과 기관 유형별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및 운영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공공행정 등 사업장에 대한 「산안법」 적용 기준과 쟁점 검토

공공행정 등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산안법」 일부 적용 제외의 취지와 필요성을 확인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 분류 기준을 통해 「산안법」 일부 적용 제외 대상으로서 공공행정 등의 업무 범위를 구체화한다. 「산안법」 적용 단위에 관한 행정해석을 정리하여 「산안법」 일부 적용 대상인 공공행정 등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해석 방향을 제시한다.

2) 공공행정 등 사업장의 안전보건실태 및 관리현황 분석

공공행정 등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현황, 안전보건 담당자 설문 등에서 나타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과 안전보건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종사자 보호를 위한 쟁점을 제시한다.

3)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에 관한 고시의 현업업무의 적정성 검토 및 개선(안) 제시

현업종사자 고시의 제정 취지와 보호 필요성을 살피고, 산업재해 현황, 선행연구, 설문 및 인터뷰 조사 등을 통해 현행 고시의 현업업무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4) 기관별 유형과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안전보건체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시사점 제시

국내 중앙행정부처,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및 각급 학교 등 공공행정 등에 속한 기관의 종사자 유형별 「산안법」 적용 현황과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보건교육 등 안전보건관리실태를 분석하고, 국외 주요 국가(영국, 독일, 일본)의 공공영역의 안전보건관리체제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국내 「산안법」의 적용단위에 관한 행정해석 등을 검토하여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 기관의 유형별 규모와 업무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3. 연구의 방법

1) 문헌연구 및 법령 분석

공공행정 등 산안법제 적용상의 쟁점 및 현업종사자 보호범위 확대에 관한 선행연구에 나타난 쟁점을 파악한다.

공공행정 등에 대한 「산안법」 적용의 변천 과정 및 적용 제외 규정의 취지와 합리성을 살피고, 「산안법」의 적용 단위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구분에 관한 행정해석 등을 분석하여 「산안법」의 일부 적용이 제외되는 공공행정 등의 범위를 명확히 한다.

공공행정 등에서 종사하는 현업종사자에 대한 보호취지를 확인하고 공공행정 등에서의 현업의 범위와 직무 위험도를 고려한 현업업무의 조정 근거를 명확히 한다.

2) 비교법 연구

주요 국가(영국, 독일, 일본)에서 공공행정 등의 종사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안전보건 확보의 주체와 권한 및 의무, 안전보건관리체제와 교육 등의 운영 등의 자료를 수집·분석한다.

국가별 공공영역 종사자에 대한 법 적용에 있어 각 기관의 특수성을 어떠한 방식으로 고려하고 있는지 살피고 효과적인 산재예방 체제 구축 및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설계 및 권한 배분 등 시사점을 확인한다.

국내 공공행정 등 기관의 특성에 부합하는 안전보건관리체제와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법·제도 개선의 시사점을 제시한다.

3) 설문 및 인터뷰 조사

중앙행정기관, 광역 및 기초지자체, 교육청 및 각급 학교의 안전보건업무 담당자 15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각 기관의 안전보건운영실태, 안전보건관리체제와 안전보건교육 운영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기관의 종사자 구성별, 유형별, 규모별 안전보건관리체제와 교육운영의 특성을 파악한다.

중앙행정기관, 광역 및 기초지자체, 교육청, 각급 학교의 안전보건담당자 및 업무종사자 50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한다. 기관별 안전보건담당자의 인터뷰를 통해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제의 구성과 안전보건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기관의 유형과 규모별 효과적인 안전보건관리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현업 대상업무 종사자 인터뷰를 통해 수행 업무의 유해·위험성과 보호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기관의 유형과 규모별로 어떠한 방식의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산재예방 활동의 추진에 효과적인지 확인하고, 기관 유형별 자율적인 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한다.

4) 전문가 FGI

업무수행 형태 및 보안 등에 의해 설문과 인터뷰가 어려운 국방, 소방, 경찰 직종에 대하여 안전보건업무담당자 FGI를 실시하여 「산안법」 전부 적용의 필요성 또는 현업업무 지정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연구에서 제시한 공공행정 등에 대한 「산안법」 적용 방안에 대하여 인사혁신처, 공공행정 등 사업장의 안전보건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직과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Ⅱ. 공공행정 분야 등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에 관한 쟁점 검토



II. 공공행정 분야 등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에 관한 쟁점 검토

1. 공공행정 분야 등에 대한 「산안법」 적용 확대와 한계

1) 공공행정 등에 대한 「산안법」 적용 현황

「산안법」 제3조는 “이 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산안법 시행령」 제2조와 [별표 1]에 따르면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중 각급 학교¹⁾,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이하 공공행정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산안법」의 안전보건관리체제(제2장 제1절·제2절), 안전보건교육(제3장)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표 II-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규정

대상 사업	적용 제외 규정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u>공공행정(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u> 나. <u>교육서비스업 중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한다),</u>	법 제2장제1절(안전보건관리체제), 제2절(안전보건관리규정), 제3장(안전보건교육)

1) 각급 학교란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외국인·대안학교를 말한다.

따라서 공공행정 등에 속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안전보건인력의 선임·지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산안법」 제2장 제1절의 안전보건관리체제와 제2절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제3장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공공행정 등에서 종사하더라도 행정규제·집행에 관한 사무 또는 수업과 행정에 관한 업무와는 업무 형태가 현저히 다르거나 유해·위험의 정도가 다른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산안법」의 안전보건관리체제와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현업종사자 고시)를 시행하여 2020년 1월부터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산안법」을 전부 적용하고 있다.²⁾

2) 공공행정 등에 대한 「산안법」 적용 확대 과정

(1) 공공행정 등에 대한 「산안법」 적용 제외

공공행정 등에 대한 「산안법」의 적용범위는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살펴보면, 제정 「산안법」³⁾ 제3조 단서 규정은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는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3조는 위 단서 규정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해서 「산안법」의 적용을 제외하였다. 따라서 법 제정 당시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에 속해 있던 공공행정 및 국방, 교육서비스업은 「산안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1986년 4월 8일 시행된 「산안법 시행령」 [별표 1]에 「산안법」의 일부 적용 대상 사업 및 일부 적용 규정 구분표가 신설되었다. 당시의 [별표 1]은 현재와 같이 적용 제외 규정을 나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해당 업종에 적용되는 규정을

2)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2호, 2020.1.16. 시행

3) 법률 제3532호, 1981. 12. 31. 제정되어 1982. 7. 1. 시행된 것.

나열하는 형태로 작성되었다.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이 [별표 1]에 반영되면서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사업장에 「산안법」 제25조(양도등의 제한), 제26조(보호구의 검정), 제28조(유해물질의 사용제한), 제29조(유해물질 표시)에 관한 4개 조항이 적용되었다. 이 당시의 적용 규정은 모든 사업장에서 준수해야 하는 방호조치, 보호구 검정, 유해물질의 사용 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에 그쳤다.

〈표 II-2〉 「산안법」의 일부적용대상사업 및 일부적용 규정 구분표(1986.7.1. 시행)

대상 사업	적용 규정
2.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영화의 제작·배급 및 상영업,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업, 골프장 운영업, 경마장 운영업, 유원지 운영업, 수선업, 세탁 및 염색업, 사진처리업, 의료·보건 및 수의 서비스업을 제외한다)	제25조(양도등의 제한), 제26조(보호구 검정) 제28조(유해물질의 사용제한) 제29조(유해물질표시)

(2) 제1차 전부개정 이후 「산안법」 적용 규정의 확대

「산안법」 제1차 전부개정에 따라 1990년 7월 14일 시행된 「산안법 시행령」 [별표 1]에는 제4호의 각 목에서 정하는 일정 규모 미만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의 일부를 적용하고, 그 외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안법」을 모두 적용하였다. 당시의 규정은 사업장의 생산 규모를 가늠하기 위한 기준으로 에너지의 사용량을 제시하였는데, 각 호의 요건 중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적용 대상 사업에 해당하였다.

제1차 전부개정 이후로 공공행정 등의 사업장에서도 「산안법」의 대부분의 조항을 적용받게 되었다. 당시 적용이 제외되는 규정은 법 제2장의 안전보건관리체제와 제3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장의 유해·위험예방조치 중 제26조(작업중지등), 제27조(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 제28조(유해작업 도급금지),

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제30조(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 제31조(안전보건교육), 제32조(관리책임자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규정이 적용 제외 되었다. 현재와 비교하면 작업중지, 기술지침과 작업환경의 표준, 도급관련 조항이 추가로 제외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3〉 법의 일부적용 대상사업 및 일부적용 규정 구분표(1990.7.14. 시행)

대상 사업	적용 규정
4. 도매업·소매업·음식 및 숙박업·부동산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세탁 및 염색업·기타 개인서비스업중 사진처리업을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상시근로자 5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은 제외) 가. 사용압력이 매제곱센티미터당 7킬로그램 미만의 증기보일러를 사용하는 사업 나. 연간 1백만킬로와트시 미만의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 다. 전기사용설비의 정격용량의 합계가 300킬로와트 미만인 사업 라. 연간 석유 250톤 미만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 마. 월평균 4천 세제곱미터 미만의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바. 저장능력 250킬로그램 미만의 고압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제1장(총칙), 제23조(안전상의 조치), 제24조(보건상의 조치), 제25조(근로자 준수사항), 제33조(유해·위험기계·기구등의 방호조치등), 제34조(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등의 검사), 제35조(보호구의 검정), 제36조(자체검사), 제37조(제조등의 금지), 제38조(제조등의 허가), 제39조(유해물질의 표시), 제40조(화학물질의 유해성조사), 제41조(사업주의 자체조사 및 조치), 제5장(근로자의 보건관리), 제6장(감독과 명령), 제7장(산업재해예방기금), 제8장(보칙), 제9장(벌칙)

1991년 9월 9일 한국표준산업분류표⁴⁾의 개정으로 산업의 종류와 명칭이 달라짐에 따라, 1993년 11월 20일 시행된 「산안법 시행령」 [별표 1]에는 적용대상 사업의 종류 및 명칭이 조정되었다. 이 시점부터 지금과 같은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의 업종 명칭이 처음으로 사용되었으며 에너지의

4) 통계청 고시 제91-1호, 1991. 9. 9.

사용량과 관계없이 「산안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받게 되었다.

〈표 II-4〉 법의 일부 적용 대상사업 및 일부 적용 규정의 구분표(1993.11.20. 시행)

대상 사업	적용 규정
4.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자동차 종합수리업 및 자동차 전문수리업 제외),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연구 및 개발업, 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특정폐기물 수집·처리업, 세탁업 제외)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상시근로자 5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은 제외) 가. 사용압력이 매제공센티미터당 7킬로그램 미만의 증기보일러를 사용하는 사업 나. 연간 1백만킬로와트시 미만의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 다. 전기사용설비의 정격용량의 합계가 300킬로와트 미만인 사업 라. 연간 석유 250톤 미만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 마. 월평균 4천 세제곱미터 미만의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바. 저장능력 250킬로그램 미만의 고압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제1장(총칙), 제23조(안전상의 조치), 제24조(보건상의 조치), 제25조(근로자 준수사항), 제33조(유해·위험기계·기구등의 방호조치등), 제34조(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등의 검사), 제35조(보호구의 검정), 제36조(자체검사), 제37조(제조등의 금지), 제38조(제조등의 허가), 제39조(유해물질의 표시), 제40조(화학물질의 유해성조사), 제41조(사업주의 자체조사 및 조치), 제5장(근로자의 보건관리), 제6장(감독과 명령), 제7장(산업재해예방기금), 제8장(보칙), 제9장(벌칙)
5. 금융 및 보험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병원 제외),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기타 외국 기관(상시근로자 5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은 제외)	

2014년 1월 1일 시행된 「산안법 시행령」 [별표 1]부터 현재와 같이 적용 제외 규정을 열거하는 형태로 변경하였다.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에 안전보건관리체제(제2장), 안전보건관리규정(제3장),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단, 법 제29조제8항은 적용),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등의 규정이 적용 제외 되었다.

〈표 II-5〉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및 규정(2014.1.1. 시행)

대상 사업	적용 제외 규정
4.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나. 교육서비스업 다. 국제 및 외국기관	제2장(안전보건관리체제), 제3장(안전보건관리규정), 제29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제29조제9항 (도급사업시의 안전보건조치중 제8항 위생 시설만 적용), 제31조(안전보건교육), 제31조의2(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제32조(관리책임자 등 에 대한 교육), 제32조의2(등록기관의 평 가), 제32조의3(준용)

(3)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 판단」
지침(2017.2.) 시달

2013년부터 노동계에서는 「산안법」 적용 제외를 규정하고 있는 「산안법 시행령」 [별표 1]⁵⁾에 대한 개선을 요구해 왔으며, 2015년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대정부 요구안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와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산안법」의 전면 적용을 요구하였다.

2017년 고용노동부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 판단」 지침을 통해 다음과 같이 「산안법」의 적용 범위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도록 지침을 시달하였다.⁵⁾

첫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일반행정에 관한 규제와 집행사무를 제외한 통신, 보건, 교육 및 금융 등의 특정사업을 운영하는

5) 고용노동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 판단」 지침, 2017.2.

경우에는 그 산업에 따라 분류하도록 하여, 해당 산업에 준하여 「산안법」을 적용하도록 해석하였다.

둘째,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공공행정에 보조되는 업무라 하더라도 근로조건 또는 근로형태가 행정업무와 현저히 다르고, 그러한 부문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있으며, 주된 부문과 비교하여 노무관리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종래의 행정해석에 따라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공공행정과 분리하여 「산안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일반행정에 관한 규제와 집행 사무가 아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목적사업의 일환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따라 적용범위를 판단”하도록 하였다. 예컨대 본청에 소속되어 있더라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정 외 폐기물수집운반업에 준하여 「산안법」을 적용하고, 학교급식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관구내식당업에 준하여 「산안법」을 적용토록 하였다.

그러나 위 지침은 단일 법인으로 구성되는 지자체의 특성상 본청과 소속기관 사이에 노무관리 등 사업운영의 독립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고⁶⁾ 특히 공공행정 등의 사업장에서 특정사업 또는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에 대해 수행하는 업무에 따라 산안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행정처분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현업업무 종사자에 대하여 「산안법」을 전부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4) 제2차 전부개정 이후 현업업무 등 법 적용 대상의 확대

「산안법」 제2차 전부개정에 따라 2020년 1월 16일 시행된 「산안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교육서비스업의 각급 학교에 대해서 도급시 위생시설 규정을

6) 00구청의 공공근로사업의 참여 근로자는 00구청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00구청의 업무 지시와 노무관리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00구청 관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 사례가 있다(산재예방정책과-1411, 2018.3.30.).

적용하는 등 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현재와 같이 제2장과 제3장만을 제외한 나머지 규정을 모두 적용하게 되었다.

또한 「산안법 시행령」 [별표 1]을 개정하여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의 각급 학교의 현업종사자에 대해서 「산안법」을 전부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고용노동부 고시인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을 제시하여 「산안법」이 전부 적용되는 현업업무의 범위를 현재와 같이 구체화하였다.⁷⁾

〈표 II-6〉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2020.1.16. 시행)

대상 사업	적용 제외 규정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u>공공행정(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u> 나. <u>교육서비스업 중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한다),</u>	법 제2장제1절(안전보건관리체제), 제2절(안전보건관리규정), 제3장(안전보건교육)

(5) 소결

「산안법」은 공공영역에서 「산안법」의 적용 대상과 적용 규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제정 당시의 「산안법」은 서비스업에 속한 공공행정 등의 사업장에 대해 법 적용을 전부 제외하였으며, 제1차 전부개정 전까지 양도금지나 보호구 검정 등의 모든 사업장에서 지켜야 하는 공통적인 사항에 관한 규정만 적용하였다.

그러나 1990년 「산안법」 제1차 전부개정 이후로는 공공행정 등에서도 종사자 보호를 위해 타 업종과 유사하게 안전·보건조치의무, 근로자의 보건관리 등의

7)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에 대해서도 행정해석을 통해 현업종사자 고시를 적용하고 있다.

주요 규정을 적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교육, 도급사업에 관한 규정, 기술지침과 작업환경표준, 작업증지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았다.

2019년 「산안법」 제2차 전부개정 이후로 공공행정 등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산안법」 상 의무를 한층 더 강화하였다. 도급인의 의무를 모두 적용하였고, 현업종사자에 「산안법」을 전부 적용하도록 고시를 신설하는 등 현재와 같은 형태의 규정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럼에도 법 제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공공행정 등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안전보건관리체제(제2장)와 안전보건교육(제3장)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제외해 왔는데, 그 이유는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종의 유해·위험의 정도와 조직의 특성을 함께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에서 공공행정 등의 조직 특성과 「산안법」의 적용상 한계와 기능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겠다.

3) 공공조직의 특수성에 기한 「산안법」 적용의 한계와 시사점

「산안법」은 행정기관의 인적 구성과 공적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 제정 당시부터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적용을 제외해 왔다. 이하에서는 공공행정 등의 사업장은 어떠한 특수성이 있으며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겠다.

(1) 공무원에 대한 「산안법」의 적용과 한계

공공영역에서는 공무원과 근로자가 혼재되어 근무하는 특성이 있으며, 하나의 조직 내에서 통일적인 안전보건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산안법」에 준하는 안전보건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공공행정 등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산안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산안법」의 적용대상인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산안법」 제2조제3호). 공무원은 헌법에 의해 신분이 보장되고 국가의 임명행위로 성립되는 공법상의 근무관계라는 점에서 사법상의 근로관계를 맺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차이가 있다. 다만 대법원은 공무원도 본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근로기준법」이 보호하려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⁸⁾

대법원은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이므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⁹⁾ 따라서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예컨대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명시적인 배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관계법령을 공무원에게 준용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법령이 있으며 해당 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공무원도 근로자에 준하여 노동관계법령을 준용한다는 판례>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라 할 것이어서, **공무원연금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규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에 대하여도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국가의 부당한 면직처분으로 인하여 공무원이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공무원의 최저생활을 보장할 필요성은 사기업의 근로자와 동일하므로.. (중략)..공무원이 지급받을 수 있었던 보수 중 「근로기준법」 제38조 소정의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이를 이익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4다446 판결)

<공무원에 대한 별도의 법령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이 우선 적용된다는 판례>

i)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8) 김현주 등 8명, 공무원 안전보건관리 실태조사 및 재해예방 발전방안,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인사혁신처 연구보고서, 2022.12, 146쪽.

9) 대법원 1987.3.24. 선고 86다카1314 판결, 대법원 1996.4.23. 선고 94다446 판결 등

근로자라 할 것이므로 그들에 대하여도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에 관한 규정인 위 법 제28조가 적용된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퇴직금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이 제정되어 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공무원인 원고의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의 규정에 따라야 하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은 배제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314판결)

- ii) 국가공무원 중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임면 등의 인사와 복무 등에 관하여는 **구 국가공무원법과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 및 별정직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개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 할 것이어서 별정직 국가공무원의 직권면직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국가와 별정직 국가공무원간의 공법상의 근무관계에 대하여 대등한 사인간의 근로관계에서의 해고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1조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별정직 국가공무원의 근무관계의 성질에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3051 판결)

공무원의 「산안법」 적용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의 구 행정해석은 “「산안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근로자에 대해 적용되는 것으로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관계법령이 우선 적용된다”고 보았으나, 2001년부터 공무원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해 “공무원관계법령에 안전보건기준이 마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무원에게도 「산안법」을 적용”하도록 행정해석을 변경하였다.¹⁰⁾ 위 행정해석에 따라 현재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법령으로 정한 별도의 기준이 없는 경우 공무원과 근로자의 구분 없이 「산안법」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별도의 법령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 「산안법」의 적용이 제외된다. 경찰과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별도의 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을 두고 있는데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0) 고용노동부는 제정 시부터 「산안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관계법령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나, 현재 공무원관계법령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안전보건기준이 거의 마련되지 않아 공무원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해 「산안법」을 적용하도록 행정해석을 변경하였다(고용노동부 안정 68307-954, 2001.10.19.).

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법률 제11334호, 이하 「경찰복지법」)은 2012년 2월 22일에 제정되어 동년 8월 23일에 시행되었다. 법 제정 취지를 살펴보면 “각종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업무의 특성상 경찰공무원들은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항상 위험한 근무환경에 노출되어 있고 그 근무강도도 높은 편이어서 경찰의 위험하고 열악한 근무환경과 과도한 업무 및 스트레스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바,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기본계획 수립, 경찰 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현황 조사, 경찰공무원에 대한 의료지원, 주거안정 지원,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퇴직경찰공무원에 대한 취업 지원 등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에 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안정적으로 경찰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찰복지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4조).

주요 내용으로는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각각 5년마다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해야 한다(법 제5조 제1항). 수립된 기본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다(법 제5조 제2항), 기본계획에는 경찰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업무특성을 감안한 심신건강연구,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검사 등의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연구에 관한 사항과 그 밖의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법 제5조 제3항).

구체적인 조치로 경찰복지법은 경찰공무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업무적 특성을 감안한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검사와 진료(심리치료를 포함)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하고(법 제8조),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밀건강진단 실시 등 필요한 명령과 보직변경, 병가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법 제8조의2).

경찰복지법의 보건안전 조치를 살펴보면 주로 건강검진 및 치료 등의 보건분야의 의료지원에 중심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산안법」의 안전보건조치와 구분된다.

업무와 관련된 위험의 예측과 예방조치가 어려운 경찰업무의 특성상 「산안법」상의 기준과 의무를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경찰복지법과 같이 별도의 법령을 통해 규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법률 제11341호, 이하 소방복지법)은 2012년 2월 22일에 제정되어 동년 8월 23일에 시행되었다. 법 제정 취지를 살펴보면 “소방공무원은 유독가스 노출, 충격적인 현장상황 수습 등의 위험에 장기·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업무 특성으로 인하여 자살과 현장활동 중 공·사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소방공무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계획 수립, 소방전문치료센터 지정·운영, 보건안전관리책임자 및 소방보건의 배치, 복지·체력단련시설의 설치·운영, 퇴직소방공무원에 대한 취업지원, 소방공무원 건강진단 및 직업성질환 역학조사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방복지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6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하여 소방공무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법 제3조). 또한 소방청장은 5년마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해야 하고(법 제7조 제1항). 수립된 기본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한다(법 제7조 제2항). 국가는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진단 및 진료, 심신건강연구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소방전문 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의료기관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법 제10조 제2항).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에 있어서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소방활동 중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관서에 보건안전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법 제10조 제5항).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건강 관리·상담 및 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소방본부에 소방보건의를 두거나 소방전문치료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법 제11조).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을 작성하여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정기 또는 수시 교육 등의 방법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법 제14조). 해당 규정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의 내용〉

1. 보건안전관리 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보건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3. 소방활동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소방활동 현장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5. 소방활동 현장 유해인자 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소방활동 안전사고 조사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에 관한 사항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활동재해 예방을 위하여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등 각종 안전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고 따라야 하며, 해당 소방활동 현장의 보건안전에 관한 정보를 소방활동 현장에 출동한 소방공무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법 제4조). 소방공무원도 소방활동재해 예방을 위하여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소방관서의 장이 실시하는 소방활동재해 예방 등을 위한 조치에 따를 의무가 있다(법 제5조).

소방공무원의 건강보호를 위한 조치로서, 재난현장의 유해인자로부터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업무환경측정을 실시하고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등의 소방공무원의 건강보호 조치를 해야 하며(법 제15조),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밀건강진단 실시 등 필요한 명령을 내리거나 보직변경, 병가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법 제16조). 소방공무원의 직업성질환의 진단 및 발생원인 규명 또는 그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업성질환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법 제17조), 전염병, 정신질환 또는 계속적으로 소방업무를 수행할 경우 질병이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소방업무 수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법 제18조).

소방복지법은 경찰복지법과 비교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보건안전인력의 선임, 보건안전관리규정 작성 및 이행 등)와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내용을 더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산안법」의 작업환경측정에 준하는 소방업무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및 정밀건강진단과 보호조치, 직업성질환 역학조사 등의 구체적인 보건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소방관의 직무에 따라 유해인자별 검사항목과 검사주기를 달리 반영하고, 유소견자에 대한 정밀건강진단 등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방업무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

한편 소방복지법과 「산안법」의 경합 시 법 적용에 관하여 법제처는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에 대해서는 소방복지법의 규정만 적용된다는 해석을 내린 바 있다. 소방복지법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방복지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소방복지법상 특수건강진단은 정밀건강진단과 연계하여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특화된 제도로 「산안법」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았다.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에 대한 법적용 해석〉

소방공무원복지법 제6조에서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산업안전

보건법」 제43조제1항에서는 사업주의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1항이 소방공무원복지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의2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은 일반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의무를 부과하는 법령인 반면, 소방공무원복지법 제16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규정이 있음에도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진료 및 관리체계 구축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모든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 정밀건강진단을 받도록 하려는 취지(2012. 2. 22. 법률 제11341호로 제정되어 같은 해 8. 23. 시행된 소방공무원복지법 국회 검토보고서 참조)에서 새로이 제정된 법률의 규정이고,...(중략)... 특별히 입법이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볼 때,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에 관하여는 소방공무원복지법의 규정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17-0315, 2017. 11. 8.)

다) 국방안전훈령

법률이나 법규명령에 해당하지 않으나 그 위임을 받아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훈령, 예규 등의 행정규칙도 있다. 이러한 행정규칙은 해당 행정기관의 하급기관이나 소속 공무원 등 내부에 대한 구속력을 갖는다.

국방부는 지난 2020년 체계적인 국방안전관리를 위해 「국방안전훈령」을 제정하였다.¹¹⁾ 훈령은 군에 종사하는 군인, 군무원,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관리를 규정하기 위한 특별법적인 성격을 갖는다.

훈령에는 국방 안전관리체계와 안전사고 예방 및 대비 등에 대해서 현행 「산안법」과 유사한 조항을 군의 특성을 반영하여 정하고 있다. 특히 「산안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안전보건관리체제와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부분도 정하고 있는데, 제8조는 안전관리 기능별 임무와 역할을 분장하고, 제9조는 안전관리책임관, 안전관리관, 안전관리담당관 등의 안전보건인력의 선임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11) 국방안전훈령(국방부훈령 제2507호, 2020.12.30. 시행)은 기존의 부대관리훈령 등 12개 부서 26개 행정규칙에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국방 안전관리제도를 하나의 훈령으로 통합하여 제정하였다.

제27조는 안전사고를 야기할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인지 또는 발견하거나 아차사고를 경험한 사람에 대한 신고의무를 두고 처리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49조는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0조는 각급기관 소속 인력에 대한 안전교육 및 훈령을 실시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2) 공무원 안전보건법령의 입법근거와 동향

「국가공무원법」 제52조 제1항은 “중앙인사관장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각 기관의 장은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에 대한 안전보건기준을 별도로 정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들은 「산안법」 대신 해당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지방공무원법」에서도 「국가공무원법」과 유사한 규정을 찾을 수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에 협의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자체가 「지방공무원법」에 기초하여 소속 공무원의 안전보건에 관한 조례나 훈령을 제정하는 경우 「산안법」 대신 해당 조례와 훈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하여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6조는 다음과 같이 공무원의 재해예방에 관한 시책을 추진할 근거 조항을 두고 있다. 아직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는 공무원에 대한 구체적인 재해예방을 위한 관리 기준 등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나, 인사혁신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향후 언제든지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별도의 안전보건법령 또는 기준을 제정·시행할 수 있는 상태이다.

〈표 II-7〉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재해예방 시책 추진에 관한 규정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p>제46조(재해예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함으로써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상 재해의 예방(이하 이 조에서 “재해예방”이라 한다)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재해예방을 위한 관리 기준의 마련 3. 재해예방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 4. 그 밖에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p>② 인사혁신처장은 재해예방 관련 시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해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2. 공무상 재해에 관한 실태조사 및 재해예방에 관한 연구 3. 재해예방을 위한 시설·장비의 안전 점검 및 컨설팅 4. 재해예방을 위한 건강진단 및 상담 5. 재해예방 관련 홍보 및 국내외 교류·협력 6. 그 밖에 재해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제57조(재해예방 지원 사업) 법 제46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해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등 종합적인 재해예방 계획의 마련 2. 공무원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재해예방 교육·조사·연구 등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4. 그 밖에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으로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항

한편, 경찰과 소방에 적용되는 법령 외에도 교원에 관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입법되어 있으며, 교정직 공무원과 집배관에 관한 법률도 국회에서 발의되는 등 특별법의 입법 추진이 이뤄지고 있다.

〈표 II-8〉 공무원에 대한 안전보건법령 입법 및 추진 현황

적용대상	법령명	상태
경찰공무원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2012.8.23. 시행
소방공무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2012.8.23. 시행
교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활동 침해예방 및 피해지원)	1982.7.1. 시행
교정공무원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2020.7.10. 발의 2024.5.29. 폐기
집배관	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지원법	2024.1.8. 발의 2024.5.29. 폐기

최근에는 공무원의 과로사¹²⁾와 악성민원에 의한 교사의 자살¹³⁾ 등의 사회적 이슈가 반복되었고, 공직의 업무특성을 반영한 재해예방활동 강화의 요구가 높다.¹⁴⁾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재해예방 시책의 추진을 위해 2022년 공직특성을 고려한 재해예방정책 수립 및 사업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였다.¹⁵⁾

해당 연구에서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산안법」의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조항이 배제되기 때문에 공공행정기관의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단기적으로 국가공무원법 제52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인사혁신처 훈령으로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도록 하되, 중기적으로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개정하여 산업재해의 예방에 관한 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에 관한 사항과 행정조치 등 실제적 규정을 추가하여 공무원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규정하고, 장기적으로는 공무원에게 「산안법」을

12) 연운정, 최근 5년간 공무원 순직자 3명중 1명 과로사, 매일노동뉴스, 2022.3.25. 보도기사.

13) 진 맥켄지, 잇따른 교사 자살로 드러난 학부모 갑질, BBC NEWS, 2023.9.4. 보도기사; 최예나, 최근 6년간 교사 사망 11%가 극단선택, 동아일보, 2023.7.22. 보도기사 등.

14) 국민권익위원회, 악성민원 실태조사 보고, 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24.7.2.; 관계부처합동,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를 위한 범정부 종합 대책,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4.5.2. 등

15) 김현주 등 8명, 공무원 안전보건관리 실태조사 및 재해예방 발전방안,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인사혁신처 연구보고서, 2022.12.

전부 적용하거나 또는 벌칙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단행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¹⁶⁾

올해 인사혁신처에서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을 통해 재해예방 사업을 확대하고, 정부와 공무원의 재해예방 역할을 의무화하여 책임성을 강화하며, 공직의 특성을 반영한 재해예방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등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¹⁷⁾ 재해예방 종합계획은 기존의 공공조직에 적용되는 「산안법」의 규정을 보완하여 공직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따라서 「산안법」의 적용에 제외되는 공공행정 등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제와 교육 등의 내용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3) 공무원 안전보건법령 제정 시 「산안법」 적용의 쟁점

소방, 경찰 등의 일부 직역을 제외하면 현재까지는 공무원 전체에 일괄 적용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해서도 근로자에 준하여 「산안법」을 적용해 왔다. 그러나 법제처의 해석과 같이 소방복지법의 특수건강진단 등 소방공무원에게 적용하는 별도의 법령이 있는 경우 「산안법」의 적용이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향후 공무원에 대한 별도의 안전보건법령과 기준이 마련되면 다음과 같은 쟁점이 나타날 수 있다.

첫째, 하나의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 근로자에 대해서 각각 별도의 법령과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동일한 작업을 함께 수행함에도 신분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다르면 안전관리의 혼선이

16) 해당 연구에서는 공무원에 대한 별도 법령을 제정하는 방안과 별개로 공무원에게 「산안법」을 전부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으나 공공영역의 특성을 고려하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김현주 등 8명, 공무원 안전보건관리 실태조사 및 재해 예방 발전방안,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인사혁신처 연구보고서, 2022.12. 196쪽).

17) 인사혁신처,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부처 브리핑), 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24.8.26.일자 보도자료.

발생하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

둘째,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산안법」 대신 공무원 안전보건기준이 배타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산안법」의 적용을 받는 현업종사자수 감소로 안전보건인력의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안전보건활동의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

셋째, 공무원 안전보건기준이 악성민원, 과로 등의 건강상 보호에 집중되는 경우 사고발생 고위험 작업에 대한 관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 공직의 업무가 다양하기 때문에 사고성 재해의 위험이 높은 현장직 공무원들에 대한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함께 고민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안전보건법령 또는 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그 적용 대상을 제한하거나, 수행하는 업무의 위험도에 따라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되어야 한다. 특히 공무원과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각기 다른 안전보건 기준이 적용되거나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산안법」과 공무원 안전보건법령이 상호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행정부처와 지자체의 기능과 권한이 분권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주도적인 주체가 없이 다양한 부처와 지자체 간의 협력을 통해 통일적인 안전보건기준을 만들고 유지해 나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4) 공공행정 등의 특수성을 반영한 자율성 부여 필요성과 시사점

공공행정 등에 대한 「산안법」의 안전보건관리체제와 안전보건교육을 제외한 이유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제정 당시 「산안법」은 「근로기준법」의 분법으로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법률이었고,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따라서 공공행정 등 공무원이 다수를 이루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별도의 안전보건관리체제(조직, 인력, 규정)와 활동(교육, 협의체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산안법」을 모든 행정기관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각 기관의 특성과 공무수행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려워지고, 개별 법률의 제정을 촉진하여 공공영역과 산업현장의 안전보건기준의 괴리가 커질 수 있다.

국가는 공법상의 근무관계와 업무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공무원에 대한 별도의 법률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법령이 「산안법」에 우선 적용된다. 공무원의 신분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하는 것은 헌법에 근거한 것으로 이미 다수의 판례로 확립된 법리이다.¹⁸⁾ 따라서 공무원에게 공적업무의 특수성과 공무원의 신분 보장을 위하여 별도의 법령을 입법하는 것은 보장될 것이다. 그러나 각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적용하는 것은 산업현장의 안전보건기준과 차이를 발생시키고, 공무원과 근로자 간의 보호수준의 차이로 인한 차별 논란을 발생시킬 수 있다.

기존의 법리와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그간 「산안법」은 공공행정 등에 속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각 조직의 기능과 업무 특성을 고려해 별도의 안전보건관리체제(조직, 인력, 규정)를 구축하고 안전보건활동(협의체,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제공하는 대신,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지 않고 「산안법」을 따르게 하여 산업현장의 안전보건기준이 동일하고 일관성 있게 작동하도록 기능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행정기관의 특성과 업무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와 일부 활동에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은 앞으로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공공행정 등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안전보건관리체제와

1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업무, 교육서비스업 중 각급 학교 사무는 헌법에서 정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사회의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성이 있다. 또한 공무원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공법상 근무관계를 맺고 업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질 의무가 있으며(헌법 제7조 제1항), 이러한 공무원의 신분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되어야 한다(헌법 제7조 제2항).

안전보건교육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는 규제가 아닌 자율의 영역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현업종사자의 경우 「산안법」을 전부 적용받기 때문에 각 기관에서 현업종사자의 현황을 고려하여 법의 기준을 상회하는 수준에서 자율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안전보건교육 제도를 설계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공행정 등의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중심으로 안전보건체계 구축 및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체적 가이드를 제시하여 각 기관의 사정에 맞게 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한다.¹⁹⁾

그동안 공무원도 근로자에 준하여 「산안법」의 주요 규정을 적용해 왔으나, 판례가 공무원에게 별도의 법령에 정함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을 따르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산안법」의 체제와 교육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조직의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재량을 주는 것이 유사 법령 제정에 의한 법령 간의 충돌을 피하고 하나의 체제에서 통일적인 활동을 운영하는데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2. 공공행정 분야 등의 법 적용 범위에 대한 해석 기준과 쟁점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공공행정 등의 업무는 일반행정에 관한 규제와 집행에 관한 사무,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보장 계획을 위한 기금 조성 및 행정사무, 수업 등의 교육활동에 대한 것이다. 이 외의 특정 사업은 원칙적으로 그 산업활동에 따라 해당 특정 산업으로 분류해야 한다.

그러나 사업의 규모에 따라 하나의 기관에서 다양한 사무가 수행될 수 있으며, 「산안법」은 해당 사업장의 주된 업무가 무엇이나에 따라 업종을 결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된 업무가 아닌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항시 발생할 수 있으며 이들은 해당 사업장의 주된 업무(업종)와 규모(상시 근로자수 또는 공사금액)에 따라

19) 공공행정 등의 조직특성을 고려한 가이드의 제공 방식에 대해서는 본 보고서 IV장에서 주요 국가의 사례를 살펴보겠다.

「산안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받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에 관한 고시는 공공행정 등이 본연의 업무가 아님에도 공공행정 등의 사업장으로 분류되어 「산안법」의 일부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는 청소, 시설관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 「산안법」을 전부 적용하여 안전·보건을 강화하고 있다.

문제는 공공행정 등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현업업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또 다양한 현업업무를 고시에 전부 담아내기는 어렵기 때문에 비현업종사자에 대한 보호에 공백이 생긴다는 점이다. 따라서 특정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해당 산업의 업종에 따라 「산안법」의 적용을 받도록 해석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산안법」의 사업장 단위의 해석 기준과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 기준 등을 통해 공공행정 등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해석기준을 살피고, 공공행정 등에 속한 현업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시사점을 살펴보겠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공공행정 등의 분류 기준

「산안법」의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산안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산안법」 제정 당시 적용한 한국표준산업분류(제4차 개정)는 총 10개의 대분류로 업종을 구분했으며 이 중 대분류 9. 사회 및 개인 서서비스업 안에 중분류로 공공행정 및 국방(91), 중분류 사회서서비스업(93) 안에 소분류로 교육서서비스업(931)이 반영되어 있었다.²⁰⁾

공공행정 및 국방(91)은 일반행정 및 규제 또는 교육에 관한 업무만을 의미한다. 업종분류표의 설명에 따르면 “운수, 통신, 교육, 보건, 생산, 시장과 금융기관의 운영과 같은 분야에 관한 일반행정 및 규제 이외의 정부활동은 포함되지 않고,

20) 경제기획원, 한국표준산업분류(제4차 개정), 경제기획원고시 제5호, 1975. 12. 3.

특정활동의 종류에 따라 적합한 항목에 분류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일반행정 및 규제에 해당하지 않는 직접적인 정부활동은 특정활동의 종류에 적합한 업종으로 분류해야 한다. 예컨대 산림청의 국유림 조성 및 관리 사업은 영림업으로, 지방자치단체 상수도사업본부의 수도공급 사업은 수도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표 II-9〉 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표(제4차 개정)

(중분류 91) 공공행정 및 국방	(소분류 931) 교육서비스업
<p>“군, 경찰, 입법, 사법 및 행정부서를 포함한 중앙 및 지방 정부기관으로 외교, 조사 및 재정, 공공질서 및 안전, 사회보장, 기업규정 및 등록, 통계수집 및 분석, 일반경제 및 사회정책 등과 같은 활동의 행정을 수반하는 부, 처, 청, 국, 사무소가 포함된다. 운수, 통신, 교육, 보건, 생산, 시장과 금융기관의 운영과 같은 분야에 관한 일반행정 및 규제 이외의 정부활동은 포함되지 않고, 특정활동의 종류에 따라 적합한 항목에 분류한다”고 되어 있다.</p>	<p>“유아교육기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등 국·공·사립 및 주·야간 교육기관의 서비스 활동을 말한다. 교육 이외의 산업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체에서 자체 직원의 훈련을 위한 훈련기관으로서 독립적이고 계속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여기에는 공민학교 및 직업훈련을 위한 학원, 특수교육 기관 등이 포함된다.</p>

현재 기준으로 살펴보면, 2024년 1월 1일에 시행된 한국표준산업분류(제11차 개정)는 대분류에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84), 교육서비스업(85)이 분류되어 있다.

제정 당시와 마찬가지로 일반행정에 관한 규제와 집행사무에 관해서만 공공행정 등의 업무로 구분하고 있으며, 특정사업은 그 산업활동에 따라 해당 특정 산업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산안법」의 안전보건관리체제와 안전보건교육이 제외되는 업종은 특정 사업의 수행이 아닌 일반행정에 관한 규제와 집행사무,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보장 계획을 위한 기금 조성 및 행정사무, 수업 등의 교육활동에 대한 것에 한정되며, 그 외의 정부 활동까지 공공행정

등으로 보는 것이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본청 등의 공공행정에 속해 있는 사업소라 하더라도 도로의 유지·보수, 공원·녹지 등의 유지관리, 산림조사 및 산림보호 업무 등과 같이 수행하는 사업이 일반행정에 관한 사무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따라 「산안법」의 적용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는 교육서비스업에서 정의하는 교육활동의 정의가 제시되었다. 교육활동이란, 조직화되고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배움을 가져오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 목표를 특정한 방식이나 프로그램으로 계획하는 것을 의미하고, 의사소통은 두 사람 이상이 각종 정보(메시지, 생각, 지식, 전략 등)의 전달을 담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정보전달은 구두, 비언어 직간접, 원격 등 다양한 경로나 매체로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활동의 정의는 교육업무와 현업업무를 구분하기 위해 판단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올해 7월 1일부터 국제표준산업분류(ISIC) 기준에 따라 사회보장보험업과 연금업이 대분류 금융 및 보험업에서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으로 변경되었다.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보장 계획을 위한 기금 조성 및 행정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여기 해당하며 건강보험업, 산업재해 및 기타 사회보장보험업, 국민연금 및 직역연금(공무원, 군인 등) 등의 의무가입 성격의 연금업이 사회보장행정에 반영되었다.²¹⁾ 해당 업종은 과거 금융보험업으로 분류되어 안전보건교육만 적용 제외 되었으나, 올해 7월 1일부터 안전보건관리체제와 안전보건관리규정도 적용이 제외된다.

21) 통계청, 통계청 산업 환경 변화와 개정 수요를 반영한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제11차 개정·고시, 통계청 보도자료, 2023.12.28. 배포.

〈표 II-10〉 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표(제11차 개정)

(대분류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서비스	(대분류 85) 교육 서비스업
<p>1. 개요 국가 및 지방 행정기관이 일반 대중에게 제공하는 공공행정, 국방·산업 및 사회보장 행정 업무를 포함한다. 이러한 활동은 비정부 기관에 의해 수행되는 경우도 있다.</p> <p>가. 공공행정 및 국방 입법 사무, 통치 행정,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의 일반 공공행정, 정부기관 일반 보조행정, 교육, 환경, 노동, 보건, 문화 및 기타 사회서비스 관리 행정, 산업 진흥 행정, 외교 및 국방행정, 사법 및 공공질서 행정을 수행하는 정부기관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활동은 비정부 단위들에 의해 수행되기도 한다.</p> <p>나. 사회보장 행정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보장 계획을 위한 기금 조성 및 행정사무를 말하며, 질병, 사고, 실직, 퇴직 및 기타 수입 결손을 유발할 수 있는 명백한 위험에 대하여 정부가 이전지출 방식으로 수행하는 사회보장 행정을 포함한다.</p> <p>2. 타 산업과 관계 일반행정에 관한 규제와 집행사무를 제외한 운수, 통신, 교육, 보건, 제조, 유통 및 금융 등의 특정 사업을 운영하는 정부기관은 그 산업활동에 따라 해당 특정 산업에 각각 분류</p>	<p>교육수준에 따른 초등(유아교육기관 포함), 중등 및 고등 교육수준의 정규 교육기관,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일반 교습학원,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등 기타 교육기관, 직원 훈련기관, 직업 및 기술 훈련학원, 성인 교육기관 및 기타 교육기관과 교육지원서비스업을 포함한다.</p> <p>교육서비스업에서 정의하는 교육활동은 ISCED(국제표준교육분류)에서 규정한 조직화되고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배움을 가져오게 하는 것을 나타낸다. 교육활동을 특징짓는 조직화는 교육 목표를 특정한 방식이나 프로그램으로 계획하는 것(일정한 학습목표, 기간 및 학습비 등으로 구성하여 수강생을 모집하는 교육과정 등)을 말하며, 의사소통은 두사람 이상의 관계에서 각종 정보(메시지, 생각, 지식, 전략 등) 전달을 담고 있는 행위를 나타내며, 정보전달은 구두, 비언어, 직접·면접, 간접·원격 등 다양한 경로나 매체를 통해서 수행할 수 있다(강의내용에 대한 강사와 학생간의 질의 답변, 평가, 성적관리 등)</p> <p>2. 타 산업과 관계 가. 실업자와 장애자에 대한 직업 재활서비스는 직업재활원운영업에 분류 나. 개인교사를 고용한 가구의 활동은 가구내 고용활동에 분류 다.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자사 직원 훈련기관이 독립성과 지속성이 없으면 별도의 사업체로 분류하지 않음</p>

2) 사업 또는 사업장의 해석기준

(1) 「산안법」의 법 적용단위로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판단기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한다. ①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본다. ② 다만 동일한 장소에 있더라도 현저하게 근로의 양태가 다른 부분이 있고, 주된 부문과 비교하여 노무관리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주된 부문과 분리하여 취급함으로써 「산안법」이보다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부문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 ③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출장소, 사업소, 지점 등이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상위조직(기구)와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²²⁾

(2) 적용 사례

가) 본청의 일부 사업으로 독립성이 없다고 본 사례

지자체 본청에서 관할 구역 내에서 수행하는 다수의 목적 사업에 대해서 각 사업의 내용이나 업무처리에 독립성이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근상위조직(본청)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면 구청 소속 과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인 공공근로사업(가로 정비 및 환경 미화 업무)에 대해서도 본청의 업종인 공공행정을 적용하였다.

(행정해석) 00구청은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법인 사업주로 그 관할구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하며, 지자체에서 여러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별개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움
00구청의 공공근로사업의 참여 근로자는 00구청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00구청의 업무지시와 노무관리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00구청 관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봄(산재예방정책과-1411, 2018.3.30.)

22) 산재예방정책과-7065, 2012.7.30.

나) 본청과 분리된 독립된 사업장으로 본 사례

시 본청과 독립된 별도의 장소에서 독립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소가 소속 근로자를 시 본청과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채용하는 등 본청 소속 근로자와 노무관리 등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면 해당 사업소 등은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았다.²³⁾ 또한 본청에서 총괄적인 인사관리를 하더라도 분리된 장소에서 본청과 구분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해서도 독립된 사업장으로 해석한 바 있다.

또한 본청과 장소와 업무가 구분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유사한 해석을 내린 바 있는데, 해당 사업장의 주된 사업에 따라 도립병원을 보건업으로,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과학관은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행정해석) 사업소, 직속기관 등이 본청과 독립된 별도의 장소에서 별도의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하여 본청과 독립하여 경영하여 다른 업종으로 분류되는 경우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음(산재예방정책과-3067, 2021.6.25.)

(행정해석)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대구시(공공행정) 소속기관이나, 분리된 장소에서 별도의 업무(수도공급)를 하므로 분리된 사업장으로 보며, 정수사업소와 지역사업소를 하나의 사업으로 하는 '수도업'에 해당한다고 봄(산재예방정책과-2867, 2021.6.14.)

다) 본청과 별개의 사업으로 본 사례

행정부처에 소속된 사업본부, 소속기관이라도 관계법령 등에 따라 독립적으로 소관 사무를 총괄·관리하는 경우 본청과는 독립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부처의 주무부처로 국무회의 서무, 정부 조직과 정원 관리, 정부 혁신 및 지자체 사무 지원, 안전 및 재난 정책 수립 및 총괄, 국가기록물 및 정보관리, 정부청사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본청의 사무와 구분되는 다양한 유형의 소속기관을 두고 있다.²⁴⁾ 소속기관 중에 업무수행

23) 산재예방정책과-1063, 2019.3.6.

24)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대통령령 제34792호, 2024.8.6. 시행)에 따르면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가기록원, 정부청사관리본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대통령기

장소가 분리되어 있고, 법령 또는 내규에 따라 직제와 사무가 규정되어 독자적인 사업수행이 이뤄지고 인사노무관리 권한이 분리된 경우는 독립된 사업장으로 구분하여 해당 사업장의 주된 업종에 따라 「산안법」을 적용한다.

행정안전부 소속 청사관리본부는 정부청사관리 업무를 주로 하는 정부기관 일반보조 행정(공공행정)에 해당하며 개별 법령에 따라 본부장은 소관 사무를 총괄 조정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조정하므로 행정안전부와 독립된 사업장으로 판단하였다.²⁵⁾ 또한 각 사업의 사업장 단위의 해석에 있어서는 정부청사관리소는 서울, 대전, 과천 등 전국에 분산되어 있으나 소속 현업종사자의 노무관리, 근로조건의 결정을 청사관리본부에서 이뤄지고 있어 직근 상위조직인 청사관리본부와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정부청사관리본부와 그 소속 관리소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공공행정업종을 적용하되, 소속 현업종사자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현업종사자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안전보건인력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할 수 있다.²⁶⁾

(행정해석) 청사관리본부에는 서울, 과천 등 청사관리소가 별개의 장소에 분산되어 있으나, 현업종사자의 노무관리, 근로조건 결정이 청사관리본부 차원에서 이뤄지므로 직근 상위조직인 청사관리본부와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청사본부와 산하 관리소의 현업종사자 수에 따라 인력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등이 이뤄져야 함(산재예방정책과-570- 2021.2.2.)

사례를 더 살펴보면 행정안전부 소속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행정기관 정보시스템을 통합·구축하고 운영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본청과 독립된 책임운영기관으로 예규에 따라 고유의 사무를 수행하고 있으며²⁷⁾ 수행하는 사무에 따라 정보통신업 중

록관 등을 소속기관으로 두고 있으며,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39호, 2017.7.26. 시행)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등을 두고 있다.

25) 청사관리본부는 1970년에 행안부 총무국의 시설과에서 분리되어 정부청사관리사무소(대통령령 제5407호, 1970.12.18. 시행)로 직제가 신설되었다. 1980년 정부청사관리규정(대통령령 제10015호, 1980.8.26. 시행)을 제정하여 고유의 사무를 규정하였으며 총무처 장관의 권한을 정부청사관리사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26)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570호, 2021.2.2.

27)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2005년 11월 정부통합전산센터로 출범하여 2016년 3월에 책임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에 해당하여 「산안법」상 안전보건관리 체제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대상이 된다(산재예방정책과-2958, 2021.6.21.)

지자체에도 별도의 법령에 따라 독립적으로 사무를 관리하는 사업장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시 조례(제3686호, 2003.10.13. 시행)에 따라 인천광역시 내의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및 투자유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처럼 별도의 법령에 의해 직제나 소관 사무가 정해진 경우 본청과 별개의 사업으로 보고 있다.

(3) 소결

행정관청 등에 대한 「산안법」의 적용에 있어서 ①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독립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한지, ② 공공행정 등의 업무와 현저하게 근로의 양태가 다르고 소속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가 명확히 구분되는지, ③ 관계법령 등에 따라 직제와 사무의 독립성이 부여되어 있는지에 따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장소적 분리, 독립적 사업권한 및 업무수행, 노무관리 구분을 중요한 판단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공공근로와 같이 근로의 양태는 다소 차이가 나더라도 사무 및 노무관리 등의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본청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일부로 보아 공공행정 등의 업종을 적용하고 있다.

행정기관 등의 사업장 단위를 해석함에 있어서, 본청과 사업수행 장소와 업무가 구분되고, 채용과 인사이동 등의 노무관리가 구분되며, 법령 또는 직제에 따라 사무의 독립성이 부여된 경우에는 본청과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 수행하는 주된 업무에 해당하는 업종을 적용해야 한다.

그 외의 독립성을 인정할 수 없는 사업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직근상위조직과

운영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정부통합전산센터 기본운영규정(정부통합전산센터 예규 제1호, 2016.3.1.시행)에 따라 고유사무를 수행하고 있다.

통합하여 공공행정 등의 주된 업종을 적용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장소에 있더라도 현저하게 근로의 양태가 다른 부분이 있고, 노무관리를 분리할 수 있으며, 주된 부문과 분리하여 취급함으로써 「산안법」이 보다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부문을 독립된 사업으로 해석하여 주된 사업의 업종에 따라 안전보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석할 필요가 있다.²⁸⁾

그럼에도 공공행정 등으로 분류되어 산업재해를 당할 유해·위험이 높은 일부 업무에 대해서는 산안법상의 현업업무로 지정하여 산안법의 전부 적용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현업업무는 행정기관의 자율성을 배제할 정도의 유해·위험을 지닌 업무로 보아야 할 것이다. 아래에서 현업종사자의 보호 필요성과 현업업무의 개념에 관해서 살펴보겠다.

3) 현업종사자의 개념과 판단기준

(1) 현업종사자의 개념과 보호 필요성

행정기관의 공적서비스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그 종류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수도 증가해 왔는데 공공행정 등에서 종사하더라도 일반행정에 관한 사무 등 공적 업무와 업무 형태가 현저히 다르거나 유해·위험의 정도가 다른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갖추고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높았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2020년 1월부터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현업종사자 고시)²⁹⁾를 제정하여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산안법」을 전부 적용하고 있다.

28) 예컨대 유사 사업을 통합하여 본청 내에 사업군을 조직하고 해당 업종에 부합하는 체계를 갖추고 활동을 촉진하는 것은 사업장 단위에서 해당 업종에 적합한 안전보건활동을 유도하려는 「산안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동시에 공공행정 업무가 아님에도 법의 일부를 적용받지 못하는 비현업의 범위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9)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2호, 2020.1.16. 시행

「산안법 시행령」 [별표 1]의 4호는 공공행정과 교육서비스업 중 각급 학교³⁰⁾에서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에 대해 「산안법」을 모두 적용한다.

나아가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에 종사하는 현업종사자에 대해서도 행정해석을 통해 「산안법」을 적용하고 있는데³¹⁾ 그 이유는 「산안법」의 적용 대상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대분류에 따르며 현업종사자 고시는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84)’에 속하는 소분류 업종에서 종사하는 현업종사자에게 모두 적용되기 때문이다. 향후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에 대한 현업종사자 고시의 적용을 수급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표 II-1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2020.1.16. 시행)

대상 사업	적용 제외 규정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u>공공행정(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u> 나. <u>교육서비스업 중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한다),</u>	법 제2장제1절(안전보건관리체제), 제2절(안전보건관리규정), 제3장(안전보건교육)

고용노동부 고시 제2조에 따르면,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에 종사하는 현업업무 종사자는 “일반행정에 관한 규제·집행사무 및 이를 보조하는 업무와는 업무형태가 현저히 다르거나 유해·위험의 정도가 다른 업무로서 [별표 1]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교육서비스업에 종사하는 현업업무 종사자는 “수업과 행정에 관한 업무 및 이를 보조하는 업무와는 업무형태가 현저히

30)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를 말한다.

3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질의회시(국방행정 현업종사자에 대한 법 적용에 관한 질의회시), 산재예방지도과-4826호, 2022.6.22.

다르거나 유해·위험의 정도가 다른 업무로서 별표 2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표 II-12〉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제2020-62호)

제2조 공공행정에서의 현업업무 종사자는 일반행정에 관한 규제·집행사무 및 이를 보조하는 업무와는 업무형태가 현저히 다르거나 유해·위험의 정도가 다른 업무로서 [별표 1]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한다.

[별표 1] 공공행정에서 현업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내용

1. 청사 등 시설물의 경비, 유지관리 업무 및 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
2. 도로의 유지·보수 등의 업무
3. 도로·가로 등의 청소, 쓰레기·폐기물의 수거·처리 등 환경미화 업무
4. 공원·녹지 등의 유지관리업무
5. 산림조사 및 산림보호 업무
6. 조리실무 및 급식실운영 등 조리시설 관련 업무

제3조 교육서비스업 중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에서의 현업업무 종사자는 수업과 행정에 관한 업무 및 이를 보조하는 업무와는 업무형태가 현저히 다르거나 유해·위험의 정도가 다른 업무로서 별표 2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한다.

[별표 2]

1. 학교 시설물 및 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
2. 학교 경비 및 학생 통학 보조 업무
3. 조리 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 조리시설 관련 업무

-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7.1.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시의 정의에 따르면 현업종사자는 일반행정에 관한 규제·집행사무 및 이를 보조하는 업무 또는 수업과 행정에 관한 업무 및 이를 보조하는 업무와는 ① 업무형태가 현저히 다르거나 ② 유해·위험의 정도가 달라야 한다. 따라서 업무형태가 유사하여 보조적 성격을 띠는 경우에는 현업종사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다만 업무형태가 유사하더라도 유해·위험의 정도가 확연히 차이가 나는 업무에 대해서는 현업종사자로 해석할 여지를 두고 있다.

(2) 특별한 보호의 대상으로 현업업무의 기준

현업에서 제외되는 공공행정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일반 공공행정, 재정 및 경제정책 행정, 정부기관 일반보조 행정 등 행정에 관한 규제와 집행사무를 담당하는 행정업무만을 의미한다. 또한 교육업무는 통상적인 수업과 행정에 관한 업무 및 이를 보조하는 업무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통상적인 수업 행정 또는 이를 보조하는 시설물 및 설비·장비 등을 준비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교원인지 아닌지에 관계없이 주된 업무가 수업과 이를 보조하는 것이라면 교육업무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공공행정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일반 공공행정, 재정 및 경제정책 행정, 정부기관 일반보조 행정 등 행정에 관한 규제와 집행 사무를 담당하는 행정업무만을 의미하고, 행정업무와 비교하여 근로형태가 현저히 다르고 유해·위험요인이 높은 현업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산안법」이 전부 적용된다(산재예방정책과-4648, 2019.9.25.).

행정해석) 학교의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란 통상적인 수업과 행정에 관한 업무 및 이를 보조하는 업무와 업무 형태가 현저히 다르거나 유해·위험의 정도가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학교시설물 및 설비, 장비는 학교 건축물 및 그에 부착된 시설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통상적인 수업행정 또는 이를 보조하는 시설물 및 설비장비 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산재예방정책과-1030, 2020.3.2.).

행정해석) 교원인지 여부(신분,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주된 업무가 수업과 이를 보조하는 것이라면 그 사람은 현업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산재예방정책과-3071, 2021.6.25.).

그러나 일반행정에 관한 규제·집행사무 등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모두 현업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현행 고시는 현업종사자의 정의를 내리면서 그 범위를 [별표 1]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고시에서 열거하는 업무가 아니라면 현업업무로 해석하지 않는다. 업무와 형태가 현저히 다르거나 유해·위험의 정도가 다른 업무를 열거하는 이유는 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함과 동시에 현업종사자의 보호와 행정기관의 자율성 보장 사이의 균형과 조화를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어느 사업장이든 주된 사업이 아닌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존재한다. 그럼에도 다수의 근로자가 수행하는 주된 사업에 따라 「산안법」을 적용하는 이유는 하나의

조직 내에서 통일적인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갖추고 활동을 촉진하게 하기 위함이다. 특히 공공행정 등에 있어서는 행정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 적용을 제외한 것인데 현업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확대하는 경우 행정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체제의 구축이 어려워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안법」이 별도로 정하여 보호하려는 현업업무는 단순히 공공행정 등의 업무와 형태가 다르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즉 행정기관의 특수성을 배제해야 할 정도의 보호필요성, 즉 유해·위험의 정도가 확연히 높아서 별도의 체제를 두어 관리해야 하는 업무에 대해서 현업업무로 지정해야 하며, 현업업무의 지정에 따른 법 적용이 공공행정 등 주된 업무의 특성을 해치지 않을 정도의 수준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따라서 현업업무는 공공행정 등의 사업장에서 특별히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갖춰서 보호할 실익이 명확한 업무에 대해서 현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4) 시사점

공공행정 등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현업업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고시에 반영하여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현업업무를 확대하는 것은 하나의 사업조직 내 통일적인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다. 따라서 규제·집행사무 등 공공행정 본연의 업무를 보기 어려운 특정 사업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실제 수행하는 업무를 기준으로 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연구에서는 표준산업분류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통해 공공행정 등으로 분류되는 사업장의 적용 단위를 검토하였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공공행정 등에 분류되는 업무는 일반행정에 관한 규제와 집행사무,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복지 계획을 위한 기금 조성 및 행정사무, 수업 등의 교육활동에 대한 것에 한정되며, 그 외의 정부 활동까지 공공행정 등에 속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특정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특정 산업으로 분류하여 해당 업종에 따라 「산안법」의

적용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현행 행정해석은 ①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독립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한지, ② 공공행정 등의 업무와 현저하게 근로의 양태가 다르고 소속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가 명확히 구분되는지, ③ 관계법령 등에 따라 직제와 사무의 독립성이 부여되어 있는지에 따라 별도의 사업장으로 해석하고 있다. 주로 법령 등에 의한 직제와 사무가 분리되어 있거나, 본청의 사무와 명확히 구분되는 사업을 수행하여 소속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의 독립성을 가진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장으로 해석하고 있었다. 다만 행정기관의 사업의 독립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부처와 지자체는 다수의 사업을 수행하더라도 하나의 법인으로 묶여있고, 본청에서 주로 인사권을 행사한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인사노무의 독립성보다는 각 기관의 사업수행의 독립성을 중심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한편 장소적으로나 인사노무 등에서 본청과 분리되지 못하는 독립성을 인정할 수 없는 사업에 대해서도 공공행정 등의 업무와 현저하게 근로의 양태가 달라 주된 부문과 분리하여 취급함으로써 「산안법」이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업군을 분리하여 독립적인 체제 구축 및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재량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현업종사자의 보호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산안법」은 사업장 단위의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갖추고 활동을 촉진하도록 설계된 법령이고 사업장에 적용하는 업종은 다수가 수행하는 주된 사업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공공행정 등은 행정관청의 특성과 직무의 특수성에 의해 기관의 특성에 맞게 체제를 구축하고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산안법」의 일부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는 업종에 속한다. 그럼에도 현업종사자에 대해서 별도의 안전보건관리체제를 두어 관리하기 위해서는 유해·위험의 정도가 확연히 높아서 특별히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갖춰서 보호할 실익이 명확한 업무여야 할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공공행정 등의 산업재해현황과 안전보건실태를 조사하여, 기관의 유형과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체제 구축 및 운영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겠다.

Ⅲ. 공공행정 분야 등 종사자의 안전보건 실태



Ⅲ. 공공행정 분야 등 종사자의 안전보건실태

1. 공공행정 분야 등 종사자의 산업재해 현황 분석

1) 목적

최근 3년간(2021년도~2023년도) 산업재해현황을 분석하여 현업종사자 고시상의 현업업무의 산업재해 현황을 확인하여 현업업무 선정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새롭게 현업업무에 반영이 필요한 유해·위험업무를 파악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김현주(2022) 등이 수행한 공공행정기관 종사자의 재해 현황에 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의 공무원 재해율은 0.52~0.53%로 일반근로자의 산업재해율인 0.54~0.57%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소방, 경찰, 우정직의 재해율은 일반 근로자의 재해율보다 높고, 일반직 공무원의 재해율은 일반 근로자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6~2020년 공공행정기관의 공무수행 근로자의 재해율은 기초지자체의 경우 0.55~0.62%로 일반근로자보다 약간 높았으나 광역지자체(0.27~0.33%)와 중앙행정부처 공무수행 근로자(0.07~0.16%)는 일반 근로자의 재해율보다 현저히 낮았다. 사망 만인율은 공무원과 공무수행 근로자 모두 일반근로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¹⁾

선행연구는 기관 유형별 공무원, 공무수행 근로자의 재해율을 비교한 것으로 현업 등 특정 업무에 대한 재해 현황을 분석한 내용은 아니다. 하지만 선행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사점은 사무행정을 처리하는 내근직 공무원보다 소방, 경찰

1) 김현주 등 8명, 공무원 안전보건관리 실태조사 및 재해예방 발전방안 연구용역보고서, 인사혁신처, 2022.12. 28~34쪽.

등 현장직 공무원의 재해율이 높고, 기초지자체 소속 근로자의 재해율이 광역지자체나 중앙행정부처보다 높다는 점이다. 이는 본청보다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에서 사고발생 위험도가 높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부처와 광역지자체보다 기초지자체에서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비중이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후 실태조사에서 현장업무의 수행 주체와 기관 유형별 현장업무의 업종 적용 실태 및 현장업무 비중 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승우(2023)이 수행한 연구에서는 유해·위험도가 높아 현업으로 보호가 필요한 업무로 다음의 업무를 제시하였다. 교육서비스업에서는 특수교육지도사 및 실무사, 과학실무사, 도서관 사서, 수상안전요원이며, 공공행정업종은 수도검침원, 방문 간호사, 보건소 직원, 농작업 대행 및 농기계 임대·수리, 주차 및 하천 단속 업무를 제시하였다.²⁾ 연계하여 일부 노동단체에서는 학교 및 공공행정에서 위험도가 높다고 주장하는 다음의 업무들에 대하여 현업종사자 고시에 반영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³⁾

- 1) 교육서비스업 : 특수교육실무사, 과학실무사, 사서, 수상안전요원
- 2) 공공행정 : 수도검침, 방문 간호사, 농작업 대행, 농기계 임대 및 수리, 단속업무(주차단속, 하천 단속), 보건소 업무, 도서관 사서, 콜센터 상담사, 체육시설 강사, 방문 상담

3) 분석 대상 및 방법

(1) 분석 대상 업무

본 연구에서는 현업종사자 고시에서 현업업무로 분류되어 있는 11가지 업무의 재해현황을 분석하여 현업업무의 적정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15가지 유해·위험 업무에 대해서 재해자 현황 및 사고 발생 유형을 통해 위험성을 파악하였다.

2) 이승우,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안전 기본권을 침해한 정부 - 공공, 국방·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 사례를 중심으로, 민주노동연구원, 2023.8. 4쪽.

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업안전보건법」 전면적용 및 현업업무 고시 개정 관련 민주노동 요구안, 2023.5. 1쪽.

〈표 Ⅲ-1〉 분석 대상 업무

구분	현업업무(11)	검토대상 업무(15)
공공행정 / 국방 및 사회보장행 정	시설물, 설비, 장비의 유지관리	농작업대행, 농기계 임대 및 수리
	시설물의 경비	수도검침
	도로의 유지·보수	하천 단속, 주차 단속
	청소, 쓰레기 수거 등의 환경미화	보건소
	공원·녹지 등의 유지관리	방문간호사, 방문상담사
	조리시설 관련 업무	도서관 사서
	산림조사 및 산림보호*	체육시설 강사
	-	콜센터상담
교육기관	시설물, 설비, 장비의 유지관리	특수교육 실무사
	학교 경비	과학실무사
	조리시설 관련 업무	도서관 사서
	학생 통학 보조	수상안전요원

* 별도의 법령을 통해 종사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업무

(2) 분석 방법과 한계

공공행정 등에서 일하는 종사자는 공무원, 근로자가 혼재되어 있다. 업무상 재해 발생 시 공무원은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재해 보상을 신청하고, 공무원 등의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하는 구조이다. 공무상재해 통계 자료는 민간에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산업재해 통계(이하 산재통계)에 대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에서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산재통계의 소업종 중 공공행정 등이 속해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과 교육서비스업의 산업재해 현황을 전체 산업 현황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이어서 분석대상별로 업무의 유해·위험 수준을 확인하고자 소업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자가 속한 산업, 직종의 정보를 활용하여 분석 대상 업무로 분류하고 각 업무별 재해빈도, 재해유형을 확인하였다.⁴⁾

한편 산재통계는 연구에서 수행하려는 분석대상 업무별로 산재보험 가입자와 재해자에 대한 데이터를 분류하거나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업무별로 구체적인 재해율, 사망만인율을 산출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해당 업무의 유해·위험 수준을 유추하기 위해서 업무 특성이 유사한 업종의 사고재해율과 사망만인율을 보조적으로 활용하였다.

4) 공공행정 분야 등 종사자의 산업재해 현황

(1) 공공행정 분야 등 종사자의 산업재해 현황

2021년부터 2023년도까지 최근 3년간 전체 산업재해자 수는 389,857명이다. 산재통계 소업종 중 공공행정 분야 종사자가 속해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서 발생한 재해자는 16,006명이며,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재해자는 2,452명으로 나타났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사고재해자수와 사고재해율은 지난 3년간 증가추세에 있었으며 전체 산업의 사고재해율보다 높았다. 그러나 질병재해율은 전체 산업과 유사한 수준이며, 사고 및 질병에 의한 사망만인율은 전체 산업에 비해 모두 낮게 나타났다. 한편 교육서비스업의 사고 및 질병 재해율과 사망률 모두 전체 산업보다 낮게 나타났다.

〈표 Ⅲ-2〉 공공행정 분야 등 종사자 산업재해현황(전체 재해자)

구분	2021		2022		2023		누계	
	사고 재해자수	질병 재해자수	사고 재해자수	질병 재해자수	사고 재해자수	질병 재해자수	사고 재해자수	질병 재해자수
전체산업	102,278	20,435	107,214	23,134	113,465	23,331	322,957	66,900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사업	4,230	751	4,424	767	4,998	836	13,652	2,354
교육서비스업	616	79	660	94	914	89	2,190	262

4) 사업장 담당자 또는 재해자가 산재보상 신청 시 작성·제출한 산업 및 직종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재해자의 실제 업무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표 III-3〉 공공행정 분야 등 종사자 산업재해현황(사고재해자 세부)

구분	2021		2022		2023		평균	
	사고 재해율	사고사망 만인율	사고 재해율	사고사망 만인율	사고 재해율	사고사망 만인율	사고 재해율	사고사망 만인율
전체산업	0.53	0.43	0.53	0.43	0.55	0.39	0.54	0.42
국가및지방자치 단체의사업	0.63	0.05	0.65	0.21	0.71	0.13	0.67	0.13
교육서비스업	0.17	0.06	0.17	0.05	0.19	0.00	0.18	0.03

〈표 III-4〉 공공행정 분야 등 종사자 산업재해현황(질병재해자 세부)

구분	2021		2022		2023		평균	
	질병 재해율	질병사망 만인율	질병 재해율	질병사망 만인율	질병 재해율	질병사망 만인율	질병 재해율	질병사망 만인율
전체산업	0.11	0.65	0.11	0.67	0.11	0.58	0.11	0.63
국가및지방자치 단체의사업	0.11	0.20	0.11	0.25	0.12	0.21	0.11	0.22
교육서비스업	0.02	0.17	0.02	0.05	0.02	0.06	0.02	0.09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 종사자 산업재해 현황 분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에서 발생한 재해자 16,006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코드를 통해 현업업무가 수행되는 산업 또는 기관의 재해자 빈도를 산출하였다.

표준산업분류의 업종코드에 따라 농·축산업 지도(01) 및 농기계 수리업(34), 임업(02), 수도검침 및 하수처리업(360, 370), 폐기물 수집 및 환경정화(381, 390, 742), 도로의 유지보수(420), 조리(561), 건물관리(682, 741, 743), 미화(742), 사무행정(70~75), 행정기관(84), 학교(85), 병원 및 보건소(86), 복지서비스(87), 도서관 및 문화시설(90), 공원 및 체육시설(91)로 1차 분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산업별 재해자수를 확인할 수 있었다.

〈표 Ⅲ-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표준산업별 재해자 현황

구분	표준산업분류	연관업무	산업분류코드	재해자수	
대상	농업	농작업대행	011, 013	48	
	임업	산림조사 및 산림보호	02	68	
	건설업(도로포장)	도로의 유지·보수	529	7	
	제조업(기계장비수리업)	농기계 임대 및 수리	34	6	
	수도업, 하수폐수 및 분뇨 처리업	수도검침, 하천 단속	36, 37	12	
	폐기물 수집, 환경정화, 청소	청소, 쓰레기 수거 등의 환경미화	38, 39, 742	403	
	시설유지보수	시설물, 설비, 장비의 유지관리	559, 681, 682, 741	75	
	조리	조리시설 관련 업무	561, 562	140	
	2 차분 석 대상	연구 등 전문서비스		70-73	89
		공공행정		841,842	8,051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43, 844	233
		교육 서비스업 ⁵⁾		85	4,856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방문간호사,보건소	863	94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 스업(도서관 및 문화시설)	도서관 사서	90	10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공원 및 체육시설)	체육시설 강사	91	152
	합계			14,348	
비대상				1,278	
분류불가	표준산업 미분류 재해자			393	
총계				16,006	

표준산업분류코드 중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공공행정(841, 842),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843, 84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87),

5) 전체 교육기관 중 현업업무 적용 대상인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등학교, 공업 특성화고, 상업 및 정보산업 특성화고, 기타 특성화고, 외국인학교, 특수학교를 선택하였다.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과 같이 기관의 유형으로 분류되는 산업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종사자의 직종을 기준으로 재해자 직무에 대한 추가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Ⅲ-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표준직종별 관련 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구분	연관업무	표준산업분류 직종(대)	직종(중, 소)
현업 업무	청소, 쓰레기 수거 등의 환경미화 및 경비	관리자 단순노무 종사자	환경·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 청소 및 환경미화원, 경비원 및 검표원
	공원·녹지 등의 유지관리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원예 및 조경 종사자
	시설물, 설비, 장비의 유지관리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설비 및 기계 조작용 각종 기능 관련 종사자
	조리시설 관련 업무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서비스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영양사, 주방장 및 조리사, 음식서비스종사자, 음식관련 단순종사원
	산림조사 및 산림보호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임업관련 종사자 농림어업관련 단순 종사원
	도로의 유지·보수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건설관련 기능 종사자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검토 대상 업무	농작업대행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작물재배 종사자
	농기계 임대 및 수리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운송 및 기계 관련 기능직
	수도검침	단순노무 종사자	계기검침·수금 및 주차 관련 종사원
	방문간호사, 방문상담, 보건소 (의료복지)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보건 및 사회복지 관련 관리자, 간호사, 보건의료관련 종사자,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의료·복지 관련 서비스종사자, 의료진료 전문가, 치료사 및 의료기사
	도서관 사서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큐레이터, 사서직
	체육시설 강사 (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서비스종사자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전문가 여가 및 스포츠 관련 종사자
	전화상담원 (고객상담)	사무 종사자	고객상담 및 기타사무원

가) 공공행정 및 교육기관 이외 기관의 재해자 직종 분석

연구 등의 전문서비스업은 전체 재해자의 73%,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업은 전체 재해자의 68.2%가 시설 및 조경, 청소 및 경비, 조리 업무와 같은 현업업무에서 발생하였다.

특히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업의 기타 재해 74건 중 27건은 경찰·소방 및 교도 관련 종사자 재해로 파악되어서 이를 포함하면 전체의 80%가 현업업무 또는 특수업무 수행 중 발생한 재해로 나타난다.

〈표 III-7〉 연구 및 국방 등 산업의 재해자의 직종 분석

직무분류	시설조경	청소경비	조리	기타	합계
연구 등 전문서비스업	22	35	8	24	89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업	14	74	71	74	233

* 국방 기타 27건은 경찰·소방 및 교도 관련 종사자 재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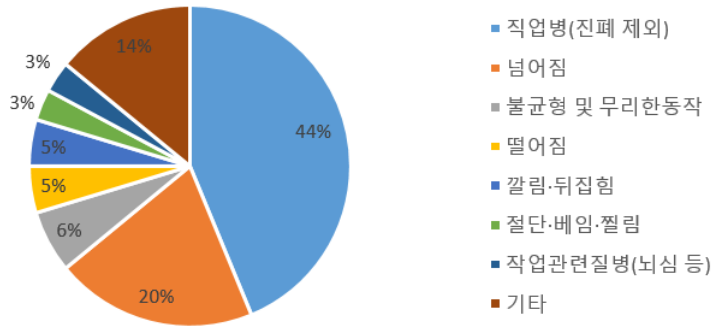
한편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경우 대부분의 재해자가 의료 등 보건복지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서 발생하였다.⁶⁾ 의료복지업무 종사자에게 발생한 재해 중 47%가 직업병(44%)과 직업관련성 질병(3%)에서 발생하여, 넘어짐(20%), 무리한동작(6%) 등의 사고성 재해보다 업무상 질병에 이환될 위험이 높았으며 직업병의 대부분이 코로나 감염에 따른 세균과 바이러스 감염으로 나타났다.

〈표 III-8〉 보건 및 사회복지 산업의 재해자의 직종 분석

직무분류	의료복지	시설조경	청소경비	조리	기타	합계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66	6	2	3	17	94

6) 한국산업표준분류의 보건 및 사회복지 관련 관리자, 간호사, 보건의료관련 종사자,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의료·복지 관련 서비스종사자, 의료진료 전문가, 치료사 및 의료기사의 직종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의료복지 종사자 재해유형



[그림 III-1] 의료복지 직종 종사자의 산업재해 유형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도서관 및 문화시설)의 검토대상 업무인 도서관 사서의 재해는 2건에 불과하였으며, 대부분이 시설 및 조경 등의 현업업무에서 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II-9> 여가관련 산업의 재해자의 직종 분석

직무분류	사서	시설조경	청소경비	조리	기타	합계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	21	48	2	28	10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공원 및 체육시설)의 경우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관련 전문가와 여가 및 스포츠관련 종사자 등의 재해를 살펴본 결과 50건이 골프장캐디(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재해로 나타났으며, 8건 중 2건(유소년 풋살 수업, 학생 수련회 활동)만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중 발생한 사고로 나타났다.

<표 III-10> 체육관련 산업의 재해자의 직종 분석

직무분류	스포츠	시설조경	청소경비	조리	기타	합계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	58(50)	37	43	9	5	152

* 스포츠 전문가등 58건의 재해 중 50건이 골프장 특고종사자(캐디) 사고임

나) 공공행정기관의 재해자 직종 분석

공공행정기관의 재해자 8,051명을 종사자의 직종으로 분류한 결과, 청소경비 > 시설조경 > 입업 > 조리 > 의료복지 > 스포츠 > 도로보수 > 고객상담 > 수도검침 > 농기계수리 > 농작업, 사서 순으로 재해자가 발생하였다.

〈표 III-11〉 공공행정 산업의 재해자의 직종 분석

시설조경	청소경비	조리	입업	도로보수	농작업	농기계수리
824	3,349	562	662	139	16	32
의료복지	수도검침	사서	스포츠	고객상담	기타	합계
204	62	16	158	67	1,960	8,051

주로 현업업무로 지정된 직종의 종사자에게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으며, 조리업무 재해자 562명 중 359명이 교육행정(교육지원청 소속의 학교급식 조리종사자)에서 발생하였다. 실제 정부기관 등 공공행정에서 조리종사자의 재해는 200여명 수준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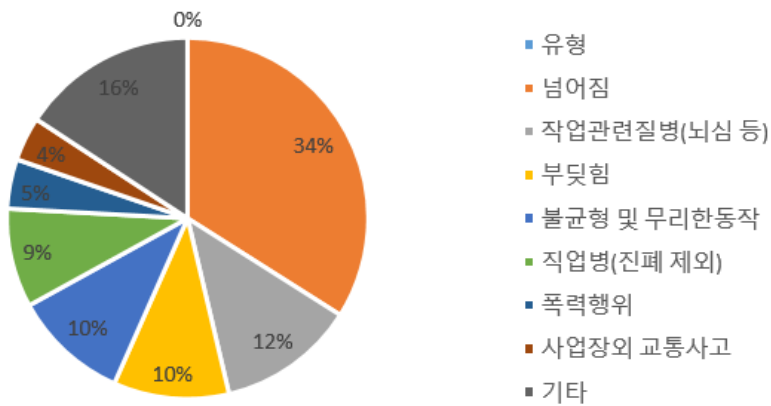
비현업의 직종에서는 의료복지업과 스포츠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산업재해가 다수 발견되었다. 그러나 스포츠업에 종사하는 재해 158건 중 137건이 지자체 등에 소속된 운동선수가 훈련 등 체육활동 중에 재해를 입거나, 체육행사 중 발생한 재해로 파악되며 조사대상인 체육시설 강사의 산업재해 사례는 파악하기 어려웠다.

의료복지업 종사자에게 발생하는 재해의 유형을 살펴보면 넘어짐(34%), 부딪힘(10%), 무리한 동작(10%)로 54%가 사고성 재해이고, 작업관련질병(12%)과 직업병(진폐 제외, 9%)이 21%를 차지하였다. 직업관련질병은 사고성 요통이 다수를 차지했으며 직업병은 코로나 감염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고객상담 작업에서 발생하는 재해의 유형을 살펴보면 넘어짐(35%), 작업관련질병(20%), 부딪힘(8%) 순으로 나타났으나, 개인의 부주의 등에 의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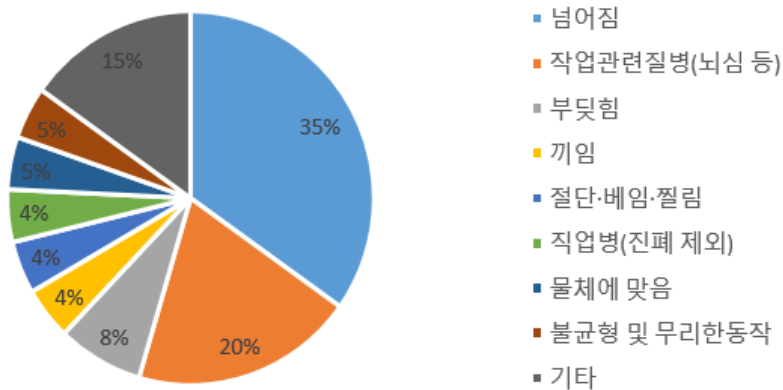
넘어짐 등 업무수행이나 작업환경에 의해 발생한 재해로 보기 어려운 사례가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반면 직업관련성 질병과 직업병(진폐 제외)을 합한 업무상 질병에 의한 재해가 24%를 차지하였고 전체 업무상 질병 16건 중 10건이 정신질환에 의한 질병으로 나타났다.

의료복지 종사자 재해유형



[그림 Ⅲ-2] 의료복지 종사자의 산업재해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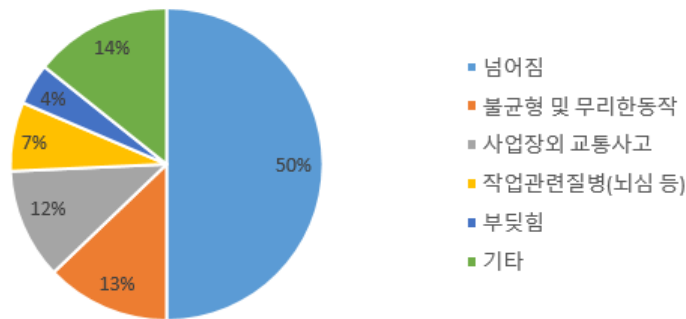
고객상담 종사자 재해유형



[그림 Ⅲ-3] 고객상담 종사자의 산업재해 유형

한편 수도업과 공공행정 산업의 수도검침 작업 종사자에게 발생한 70건의 재해 유형을 살펴보면 넘어짐(50%), 무리한동작(13%), 사업장의 교통사고(12%), 부딪힘(4%) 순으로 79%가 사고성재해로 나타났으며 작업관련성 질병은 7%에 그쳤다. 바닥 등의 돌출물에 걸려 넘어짐(12건)이 제일 많았고, 미끄러져 넘어짐(9건), 계단에서 넘어짐(6건), 기타 넘어짐(6건)으로 넘어짐에서 33건의 재해가 나타났고, 사업장 외 교통사고(8건) 등 차량관련 사고가 10건, 과도한 동작과 신체불균형 동작 등의 신체에 부담이 되는 작업이 11건으로 나타났다.

수도검침 종사자 재해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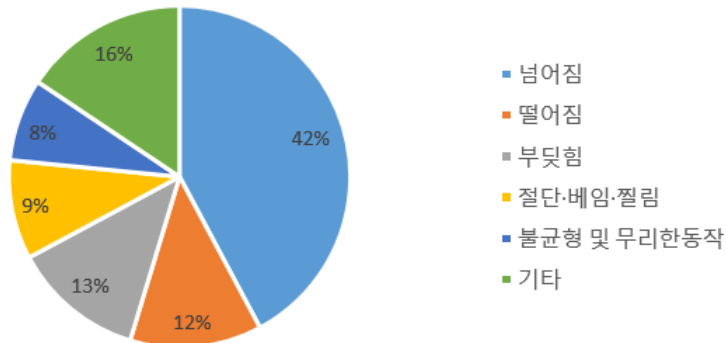
[그림 Ⅲ-4] 수도검침 종사자의 산업재해 유형

농작업 대행업무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농업(011, 013)에 속하는 재해자 48명과 공공행정업(841, 842)에서 발생한 재해자 중 작물재배종사자에 속하는 16명을 합산하여 총 64명의 재해유형을 분석해 보았다. 전체 재해중 넘어짐(42%), 떨어짐(12%), 부딪힘(13%), 베임 및 찢림(9%), 무리한동작(8%) 순으로 대부분이 사고성 재해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넘어짐의 경우 바닥 등의 돌출물에 걸려 넘어짐(13건)이 제일 많았고, 미끄러져 넘어짐(7건), 기타 넘어짐(3건)으로 나타났고, 떨어짐은 운송수단 등 기계에서 떨어짐(4건), 계단 또는 사다리에서 떨어짐(4건) 순으로 나타났다.

농기계 임대수리업무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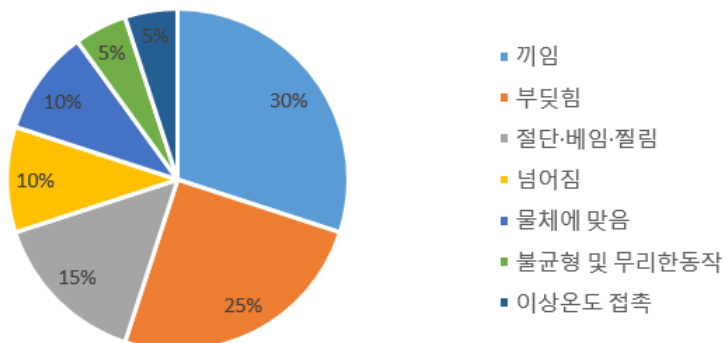
제조업(340, 기계장비수리업)에서 발생한 재해 6건을 분석한 결과 농업기술센터에서 발생한 재해는 2건이 있었고 둘다 농작업(가지정리, 경계석 정리 등) 중 발생한 재해로 농기계의 수리와 관련된 재해에 해당하지 않았다. 공공행정업(841, 842)에서 발생한 재해자 중 운송 및 기계 관련 기능직(중분류)에 속하는 32건의 재해를 분석한 결과 20건이 농기계 관련 작업에서 발생한 재해에 해당하였다. 재해유형을 살펴보면 끼임(30%), 부딪힘(25%), 베임 및 찢림(15%), 넘어짐(10%), 맞음(10%) 등 대부분 사고성 재해로 나타났다.

농작업 종사자 재해유형



[그림 Ⅲ-5] 농작업 종사자의 산업재해 유형

농기계 수리 종사자 재해유형



[그림 Ⅲ-6] 농기계 수리 종사자의 산업재해 유형

한편 도서관 사서 등의 재해를 살펴보기 위해 공공행정업(841, 842)에서 발생한 재해자 16명과 도서관 및 문화시설업(90)에서 발생한 재해자 2명을 포함하여 총 18명의 재해를 분석하였다. 넘어짐(4건), 무리한 동작(3건), 작업관련 질병(3건), 베임(3건), 물체에 맞음(2건) 순으로 고르게 나타났으며, 책을 들다가 허리를 다치거나 이동 중 넘어지거나 발목을 삐는 사례가 있었으며, 책 정리를 위해 커터칼을 사용 중에 손을 베이는 사고도 확인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공행정업에서 발생한 대다수의 산업재해는 현업으로 지정된 업무에서 발생하고 있었으며, 현업 지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업무 중에서 도서관 사서와 체육시설 강사의 경우 특징적인 재해사례를 찾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한편 의료복지업무 종사자의 경우 이동 중 넘어짐, 사고성 요통과 코로나 노출의 위험요인을 파악할 수 있었다. 고객상담의 경우에는 정신건강 질환의 위험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작업과 관련하여 발생가능한 사고성 재해의 위험은 수도검침 업무의 경우 사고성 재해 발생 비율이 전체 재해의 79%에 달하고, 농작업 대행과 농기계 임대 및 수리 업무에서도 사고성 재해 발생 비율이 높아서 실태조사시 작업의 위험성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었다.

(3) 교육서비스업 중 각급학교의 종사자 산업재해 현황 분석

교육서비스업 중 각급학교의 종사자 산업재해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산재통계 교육서비스업(소)의 재해자와 앞서 살펴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 내에 교육서비스업(85)의 각급학교의 종사자 재해를 합산하여 분석하고자 한다.⁷⁾

산재통계상 교육서비스업의 전체 재해자 2,452명 중 「산안법」 상 현업업무의 적용대상인 각급학교에 소속된 재해자는 911명이다. 여기에 산재통계상 국가

7) 전체 교육기관 중 현업업무 적용 대상인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등학교, 공업 특성화고, 상업 및 정보산업 특성화고, 기타 특성화고, 외국인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를 선택하였다.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교육서비스업(85)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7,997건이며 이중 각급학교에 소속된 재해자수는 4,856명이다. 연구에서는 이 두가지 데이터를 합산하여 총 5,767명의 재해 현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종사자 직종을 기준으로 재해자 직무를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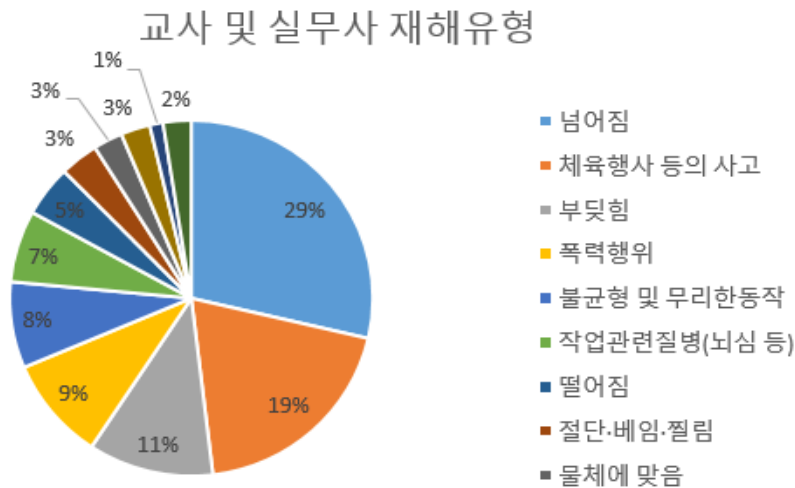
〈표 Ⅲ-12〉 교육서비스 사업의 표준직종별 관련 업무

교육서비스업				
구분	관련업무	표준산업분류 직종(대)	직종(중, 소)	재해자수
현업 업무	학교 경비 및 청소	관리자, 단순노무 종사자, 경호 및 보안 관련 종사자	환경·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 청소 및 환경미화원, 경비원 및 검표원 경호 및 보안 관련 종사자	562
	시설물, 설비, 장비의 유지관리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설비 및 기계 조작원 각종 기능관련 종사자 기타 서비스관련 단순 종사원	235
	조리시설 관련 업무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서비스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영양사, 주방장 및 조리사, 음식서비스종사자, 음식관련 단순종사원	3,745
	학생 통학보조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안전관리 및 검사원 운송 서비스 종사자 자동차운전원	34(8*)
검토 대상 업무	특수교육 실무사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서비스종사자	학교교사, 기타 교육 전문가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의료·복지 관련 서비스종사자	842
	과학실무사	특정 불가		-
	도서관 사서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큐레이터·사서 및 기록물관리사	9
	수상 안전요원	관리자	연구·교육 및 법률 관련 관리자	1
비대상				339
합계				5,767

* 통학보조와 관련한 재해는 8건으로 나타났음

교육서비스업의 재해자는 조리시설관련 업무의 재해자가 3,74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교 교사 및 기타 교육관련 전문가와 종사자의 재해가 842건으로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였다. 이중 학교 교사를 제외한 나머지 재해가 264건을 차지하였다. 이들의 재해유형 안에 특수교육실무사와 과학실무사의 재해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별도로 분류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이 없다.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과학실과 관련된 재해사례는 많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재해가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로 나타났다.

842건의 재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넘어짐(29%) > 체육행사(19%) > 부딪힘(11%), 폭력행위(9%) 순으로 나타나 학생들의 돌발적인 행동에 의한 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학수업에서 발생한 재해는 화학물질(에탄올 등)에 의한 사고 2건만 파악되었다.



[그림 Ⅲ-기] 교사 및 실무사의 산업재해 유형

각급학교에서 발생한 도서관 사서 등의 재해는 총 9건이며 이중 6건은 이동중에 넘어져서 발생한 재해로 나타났다. 또한 수상안전요원의 재해는 1건만 검색이 됐는데 생존수영수업에 아이를 돌보다가(안전지도) 수영장에서 넘어져 팔꿈치를 부딪힌 것으로 나타났다.

(4) 현업업무 및 검토대상업무와 유사직종의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의 산업재해자현황을 활용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산업별, 종사자의 직종별로 분석하였으나 빈도와 재해유형만 확인할 수 있을 뿐 종사자의 전체 모수를 알 수 없어서 재해율과 사망만인율 등 유해·위험도를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에 현업 또는 검토대상 업무와 유사한 작업 특성을 갖는 업종의 재해율과 사망만인율을 통해 유해·위험도를 추정해보고자 한다.

가) 현업업무와 유사직종의 산업재해 현황 비교

우선 고용노동부 고시에 현업업무로 지정되어 있는 공통 업무의 유해·위험도를 살펴보겠다.

① 청소 등의 환경미화, 공원녹지 등의 유지·관리 업무는 주로 쓰레기 수거, 청소등 환경미화 작업과 공원 시설과 조경 등의 시설관리가 주된 업무이다. 유사한 업종으로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을 선정하여 재해율과 사망만인율을 비교해보았다. 위생및유사서비스업의 재해율(0.97)은 전산업의 재해율(0.65)보다 높았으며, 사망만인율(2.34)도 전산업의 사망만인율(1.05)보다 두배 이상 높았다. 또한 사고와 질병 재해가 전산업보다 모두 높게 나타나 산업재해 유해·위험도가 높은 업무로 볼 수 있다.

② 시설물, 설비, 장비의 유지관리 및 경비관련 업무와 유사한 업종은 건물등의종합관리사업을 들 수 있다. 건물등의종합관리사업의 재해율(0.45)은 전산업의 재해율(0.65)에 비해 다소 낮으나 뇌심혈관 질환 등 질병사망만인율(0.66)이 전산업(0.63) 대비 약간 높게 나타났다.

③ 조리시설 관련 업무와 유사한 업종은 음식숙박업을 들 수 있다. 음식숙박업의 재해율(0.92)은 전산업의 재해율(0.65)보다 높으나 사망만인율(0.32)은 전산업의 사망만인율(1.05)보다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주 사고가 발생하지만 사망에 이르는 치명적인 사고는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에만 해당하는 현업업무의 유해·위험도를 살펴보겠다.

④ 도로의 유지·보수 업무와 유사한 업종은 기타건설공사업을 들 수 있다. 기타건설공사업의 재해율(1.53)은 전산업의 재해율(0.65)보다 현저히 높다. 또한 사고재해율과 사고사망만인율이 전산업 대비 3배정도 높아 사고빈도와 위험성이 동시에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산림조사 및 산림보호와 유사한 업종은 숲을 조성하는 영림업을 들 수 있다.⁸⁾ 영림업의 재해율(0.45)은 전산업의 재해율(0.65)보다 낮으나, 사고사망만인율(0.43)은 전산업의 사고사망만인율(0.42)보다 약간 높다. 사고발생 빈도는 낮지만 사망에 이르는 치명적인 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⑥ 학생 통학보조업무와 유사한 업종은 택시및경차량운수업(통학차량 운전기사),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통학 보조원)을 들 수 있다. 이중 위험도가 높은 택시및경차량운수업의 유해·위험도를 살펴보겠다. 택시및경차량운수업의 재해율(0.38)은 전체산업의 재해율(0.65)보다 낮게 나타났다. 다만 사고사망만인율(0.78)은 전산업의 사고사망만인율(0.42)보다 높게 나타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있으며, 질병사망만인율(2.16)도 전산업의 질병사망만인율(0.63)에 비해 높게 나타나서 장시간 운전 등에 의한 대사 질환 및 심혈관 질환 등의 질병사망 위험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나) 검토대상업무와 유사직종의 산업재해 현황 비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의 검토대상 업무와 유사한 직종의 산업재해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농작업대행 업무와 유사한 업종인 농업서비스업의 재해율(0.69)은 전산업의 재해율(0.65)보다 높았고 특히 사고재해율(0.65)과 사고사망만인율(0.78)이 전산업의 평균치보다 높게 나타나 사고도 자주 발생하고 사망에 이르는 사고 발생의

8) 영림업은 산림의 수종 및 묘목 생산, 조림 및 육림, 산림보호활동, 야생수액 및 임산물 채취 등의 산지에 나무를 심거나 가꾸는 활동을 말한다.

위험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② 농기계 임대 및 수리업의 경우 유사한 업종으로 자동차및모터사이클수리업을 선정하였다. 트랙터 등의 농기계는 대부분 동력으로 움직이며, 모터와 구동부의 수리점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선정한 업종과 작업의 특성이 유사하다. 자동차및모터사이클수리업은 전체 산업에 비해 사고와 질병 모두 사망만인율이 낮았으나, 질병 재해율이 전산업 보다 약간 높게 나타나 중량물 또는 반복작업에 의한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성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③ 수도검침 업무와 유사한 업종으로 전기 및 도시가스 계량기 검침업무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서비스업을 선정하였다. 사업서비스업의 유해·위험도가 전산업보다 높다고 할 수 없으나, 수도계량기는 전기 및 도시가스 계량기와 달리 맨홀의 하부, 주차장 등 차량 이동 공간에 위치하는 사례가 있어 실태조사를 통해 위험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④ 하천단속 업무와 같은 단속적 업무는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해당하나 하천변 및 맨홀 하부의 접근시 위험도가 반영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하수도업을 유사업종으로 보아 유해·위험도를 확인해 보았다. 하수도업의 경우 전업종에 비해 사고와 질병 모두 재해율과 사망만인율이 낮게 나타났다. 다만 하천단속의 경우도 수도검침과 같이 작업장소의 유해·위험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⑤ 주차단속 업무는 2인 1조로 차량을 타고 골목을 이동하며 불법 주정차 중인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민원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차량으로 이동하며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택시및경차량운수업과 유사하다. 택시및경차량운수업의 재해율은 전체 산업보다 낮으나 사고와 질병의 사망만인율이 높다. 따라서 주차단속 업무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성, 질병사망 유해요인이 있는지 등을 실태조사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⑥ 그 외의 업무인 방문간호사 및 방문상담사, 보건소 종사자의 업무와 유사한 업종으로 보건및사회복지사업을 선정하였다. 도서관 사서 및 체육시설 강사의

업무와 유사한 업종으로 오락문화및운동관련사업을 선정하였다. 전화상담원의 업무와 유사한 업종으로 콜센터등 고객상담업무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서비스업을 선정하였다. 위 세 가지의 업종은 전체 산업과 비교하였을 때 사고 및 질병 재해율과 사망만인율이 현저히 낮았으며 앞서 분석한 산재통계 재해 유형에서도 업무와 관련된 재해빈도나 사망에 이르는 치명적 위험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ii) 교육서비스업의 검토대상 업무와 유사한 직종의 산업재해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⑦ 특수교육실무사는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지원과 학교생활의 적응을 돕는 업무를 수행하여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의 돌봄종사자와 유사한 업무 특성을 갖는다. 앞서 교육서비스업의 재해빈도 분석에서 교사와 사회복지 종사자의 재해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전체 모수를 알 수 없어서 재해율과 사망만인율을 산출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유사업종인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의 재해율과 사망만인율을 확인해 본 결과 전산업에 비해 높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⑧ 과학실무사의 경우에는 산업재해자 표본이 적어 재해유형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과학실무사는 과학수업에서 사용되는 실험도구를 준비하고 실험을 시연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사고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업종인 연구및개발사업의 재해율과 사망만인율을 확인한 결과 전산업 평균보다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⑨ 도서관 사서와 수상 안전요원은 산업재해자 표본이 적어 재해빈도나 재해유형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유사업종으로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사업의 재해율과 사망만인율을 확인한 결과 사고와 질병 모두 낮게 나타났다.

〈표 III-13〉 유사업종의 산업재해현황(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구분	업종	업무	최근 3년간 평균					
			재해율	사망 만인율	사고 재해율	사고사망 만인율	질병 재해율	질병사망 만인율
공통	전체산업	-	0.65	1.05	0.54	0.42	0.11	0.63
	국가및지방자치 단체의사업	-	0.78	0.35	0.67	0.13	0.11	0.22
현업	위생및유사 서비스업	청소 등의 환경미화, 공원·녹지 등의 유지관리	0.97	2.34	0.82	1.41	0.15	0.93
	건물등의종합관 리사업	시설물, 설비, 장비의 유지관리 및 경비	0.45	0.93	0.41	0.27	0.05	0.66
	기타건설공사	도로의 유지·보수	1.53	2.96	1.36	2.40	0.16	0.55
	음식및숙박업	조리시설 관련 업무	0.92	0.32	0.86	0.12	0.06	0.21
	영림업	산림조사 및 산림보호	0.45	0.54	0.42	0.43	0.03	0.11
검토 대상 업무	농업서비스업	농작업대행	0.69	0.78	0.65	0.78	0.04	0.00
	자동차및모터사 이륜수리업	농기계 임대 및 수리	0.69	0.69	0.52	0.11	0.17	0.58
	사업서비스업	수도검침	0.40	0.54	0.36	0.15	0.04	0.39
	하수도업	하천단속	0.37	0.83	0.33	0.28	0.03	0.55
	택시및경차량운 수업	주차단속	0.38	2.83	0.30	0.67	0.07	2.16
	보건및사회복지 사업	방문간호사, 방문상담, 보건소	0.31	0.12	0.25	0.02	0.06	0.10
	오락·문화및운동 관련사업	도서관 사서, 체육시설 강사	0.42	0.34	0.37	0.06	0.04	0.28
	사업서비스업	전화상담원	0.40	0.54	0.36	0.15	0.04	0.39

〈표 III-14〉 유사업종의 산업재해현황(교육서비스업)

구분	업종	업무	최근 3년간 평균					
			재해율	사망 만인율	사고 재해율	사고사망 만인율	질병 재해율	질병사망 만인율
공통	전체산업	-	0.65	1.05	0.54	0.42	0.11	0.63
	교육서비스업	-	0.20	0.12	0.18	0.03	0.02	0.09
현업	위생및유사 서비스업	청소 등의 환경미화	0.97	2.34	0.82	1.41	0.15	0.93
	건물등의종합 관리사업	학교 경비 및 시설물, 설비, 장비의 유지관리	0.45	0.93	0.41	0.27	0.05	0.66
	음식및숙박업	조리시설 관련 업무	0.92	0.32	0.86	0.12	0.06	0.21
	택시및경차량 운수업	학생 통학보조	0.38	2.83	0.30	0.67	0.07	2.16
검토 대상 업무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특수교육 실무사	0.31	0.12	0.25	0.02	0.06	0.10
	연구및개발 사업	과학실무사	0.10	0.28	0.09	0.05	0.01	0.23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사업	도서관 사서, 수상 안전요원	0.42	0.34	0.37	0.06	0.04	0.28

다) 소결

현업종사자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현업업무의 유사업종 산업재해율을 확인한 결과 모든 업종에서 사고 또는 질병에 관한 재해율 또는 사망만인율이 전산업 평균보다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업종의 업무와 유사한 현업업무에서도 자주 재해가 발생하거나 사망에 이르는 심각한 재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현업 검토대상 업무 중 농작업대행 업무는 유사업종인 농업서비스업의 사고발생의 빈도와 심각도가 동시에 높게 나타났으며, 농기계 임대 및 수리업무는 유사업종인 자동차및모터사이클수리업의 질병 재해율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수도검침과 하천단속의 경우 유사 업종의 재해율과 사망만인율이 전산업에 비해 높지 않았으나 맨홀 지하 등 작업환경에 의한 심각한 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지 실태파악이 필요하다. 주차단속의 경우는 사망만인율이 전산업보다 높게 나타나서 교통사고 등의 사망위험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

그 외의 방문간호사, 방문상담사, 보건소 종사자와 도서관 사서, 체육시설 강사, 전화상담원의 경우에는 유사업종의 재해율과 사망만인율이 전산업 대비 낮아서 업무의 재해발생 빈도나 위험도가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서비스업의 현업 검토대상 업무인 특수교육실무사, 과학실무사, 도서관사서, 수상 안전요원의 경우에는 유사업종의 재해율이나 사망만인율이 전산업 대비 낮아 재해발생 빈도나 위험도가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2. 공공행정 분야 등 종사자 안전보건실태 설문조사⁹⁾

1) 목적

공공·교육행정기관의 안전보건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소속 기관의 안전보건 관리현황 및 종사자의 안전보건 실태를 파악하고, 업무 특성이 현저히 구분되거나 유해·위험도가 높은 현업업무를 확인하여 「산안법」상 현업종사자 범위의 적정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2) 분석 대상 및 방법

조사 대상은 중앙행정부처,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교육청과 학교법인등 본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교육청)의 안전보건업무 담당자가 참여하였다.

설문조사 방법은 정부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대상기관의 안전보건담당자에게 설문 참여를 요청하고 구글 설문을 이용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기간은 2024년 6월부터 9월까지 실시하였으며, 최종 150개소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는 SPSS 24.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 다중응답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본 설문조사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다 (OSHRI-202405-HR-014).

9) 공공행정 분야의 실태조사와 인터뷰는 위탁 연구기관(연구책임자 : 한서대학교 최서연 교수)에 의해 수행되었다.

3) 조사 결과

(1) 기초 사항

- 본 조사에 참여한 기관은 중앙부처 1.3%, 광역지자체 본청 4.0%, 기초지자체 본청 60.0%, 기초지자체·광역지자체 소속기관 10.0%, 교육청·학교법인의 본청 14.7%, 교육청 소속기관(각급 학교 등) 10.0%로 나타났다.
- 기관 유형별로 중앙부처 1.3%, 지자체(광역+기초+소속기관)는 74.0%, 교육청(교육청·학교법인+소속기관(각급 학교))은 24.7%로 지자체 관련 기관의 참여가 많았다.

〈표 Ⅲ-15〉 조사 대상 기관

구분		n	%
기관 유형	중앙행정부처	2	1.3
	본청(기초지자체)	90	60.0
	본청(광역지자체)	6	4.0
	지자체·광역지자체 소속기관	15	10.0
	본청(교육청·학교법인)	22	14.7
	교육청 소속기관	15	10.0
기관 유형 분류	중앙행정부처	2	1.3
	지자체(광역+기초+소속기관)	111	74.0
	교육청(교육청·학교법인+소속기관(각급 학교))	37	24.7
합계		45	100.0

- 전체 안전관리 업무 경력은 3년 미만이 69.3%로 가장 많았으며, 3년 이상 5년 미만 6.0%, 5년 이상 10년 미만 10.0%, 10년 이상 15년 미만 4.7%, 15년 이상 10.0%로 나타났다.
- 현 소속기관에서의 안전관리 업무 경력은 3년 미만의 경우가 중앙행정 부처 100.0%, 지자체 98.2%, 교육청 89.2%로 높게 나타났다.

〈표 Ⅲ-16〉 응답자 특성 - 경력

구분		중앙행정부처	지자체	교육청	전체
전체 경력	3년 미만	2 100.0%	77 69.4%	25 67.6%	104 69.3%
	3년 이상 5년 미만	0 .0%	8 7.2%	1 2.7%	9 6.0%
	5년 이상 10년 미만	0 .0%	11 9.9%	4 10.8%	15 10.0%
	10년 이상 15년 미만	0 .0%	5 4.5%	2 5.4%	7 4.7%
	15년 이상	0 .0%	10 9.0%	5 13.5%	15 10.0%
현 기관 경력	3년 미만	2 100.0%	109 98.2%	33 89.2%	144 96.0%
	3년 이상 5년 미만	0 .0%	2 1.8%	1 2.7%	3 2.0%
	5년 이상 10년 미만	0 .0%	0 .0%	3 8.1%	3 2.0%
합계		2 100.0%	111 100.0%	37 100.0%	150 100.0%

- 중앙행정부처와 지자체는 안전보건 전담부서 소속이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청은 안전보건 전담부서 56.8%, 총무팀, 인사팀, 행정실 등 행정부서 35.1%로 나타나 타 기관 유형에 비하여 행정부서 소속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담당업무는 중앙행정부처의 경우 안전관리자와 안전보건 업무담당자로 나타났으며, 지자체는 안전관리자 40.5%, 보건관리자 38.7%, 안전보건 업무담당자 16.2%, 교육청은 안전관리자 32.4%, 보건관리자 10.8%, 안전보건 업무담당자 48.6%로 나타나 교육청의 안전보건 업무담당자의 지정이 높게 나타났다.
- 대상자는 공무원은 92.7%, 비공무원은 7.3%로 공무원이 다수를 점유하였으며, 지자체에서 비공무원이 9.0%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 소속기관의 종사자 수는 중앙행정부처의 경우 100인 이상 300인 이상이 각각 50.0%, 지자체는 300인 이상이 94.6%, 교육청은 5인 이상 50인 미만 10.8%, 50인 이상 100인 미만 16.2%, 100인 이상 300인 미만 13.5%, 300인 이상 59.5%로 나타났다.
- 소속기관의 종사자 수는 중앙행정부처의 경우 100인 이상 300인 이상이 각각 50.0%, 지자체는 300인 이상이 94.6%, 교육청은 5인 이상 50인 미만 10.8%, 50인 이상 100인 미만 16.2%, 100인 이상 300인 미만 13.5%, 300인 이상 59.5%로 나타났다.

〈표 Ⅲ-17〉 응답자 특성 - 소속 부서와 업무 등

구분		중앙행정부처	지자체	교육청	전체
작성 대상 부서	안전보건 전담부서	2 100.0%	95 85.6%	21 56.8%	118 78.7%
	총무팀, 인사팀, 행정실 등 행정부서	0 .0%	8 7.2%	13 35.1%	21 14.0%
	재난(안전) 관련 부서	0 .0%	2 1.8%	0 .0%	2 1.3%
	시설 등의 관리부서	0 .0%	6 5.4%	3 8.1%	9 6.0%
안전보건관리 담당업무	안전관리자	1 50.0%	45 40.5%	12 32.4%	58 38.7%
	보건관리자	0 .0%	43 38.7%	4 10.8%	47 31.3%
	안전보건 업무담당자	1 50.0%	18 16.2%	18 48.6%	37 24.7%
	기타	0 .0%	5 4.5%	3 8.1%	8 5.3%
종사 구분	공무원	2 100.0%	101 91.0%	36 97.3%	139 92.7%
	비공무원	0 .0%	10 9.0%	1 2.7%	11 7.3%
사업장 종사자 수	5인 이상~50인 미만	0 .0%	0 .0%	4 10.8%	4 2.7%
	50인 이상~100인 미만	0 .0%	2 1.8%	6 16.2%	8 5.3%
	100인 이상~300인 미만	1 50.0%	4 3.6%	5 13.5%	10 6.7%
	300인 이상	1 50.0%	105 94.6%	22 59.5%	128 85.3%
합계		2 100.0%	111 100.0%	37 100.0%	150 100.0%

(2) 기관별 안전보건관리 현황

-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산안법」의 안전보건관리 체제(안전보건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등),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교육 등 일부 규정이 적용 적용되지 않지만, 안전·보건조치 의무는 모든 종사자에 대해서 실시해야 한다.
- 다만, 공공행정, 수업 등 본연의 업무와 형태 또는 유해·위험 정도가 다른 현업업무 종사자(공무원·비공무원 구분 없음)에 대해서는 「산안법」이 전부 적용되어, 현업종사자 수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체제,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교육 규정이 적용된다.

〈표 III-18〉 현업업무의 종류

공공행정에서의 현업업무	학교에서의 현업업무
1. 청사 등 시설물의 경비, 유지관리 업무 및 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 2. 도로의 유지·보수, 도로·가로 등의 청소, 쓰레기·폐기물의 수거·처리 등 환경미화 업무 3. 공원·녹지 등의 유지관리 업무 4. 산림조사 및 산림보호 업무 5. 조리 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 조리시설 관련 업무	1. 학교 시설물 및 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 2. 학교 경비 및 학생 통학 보조 업무 3. 조리 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 조리시설 관련 업무

-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의 안전보건관리 현황을 살펴보면 위험성평가의 실시 주체는 중앙행정부처 100.0%, 지자체(광역시+기초) 73.0%가 본청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육청(교육청·학교법인+소속기관(각급 학교)) 73%가 소속기관별(각급 학교)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있었다.
- 안전보건조치의 실시의 주체는 지자체의 경우 본청 34.2%, 소속기관별 65.8%, 교육청은 본청 8.1%, 소속기관별 91.9%로 소속기관별 실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안전보호구 제공은 지자체 73.0%, 교육청 94.6%가 소속기관별로 주체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위험작업,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의 안전보건 정보의 제공 주체는 지자체의 경우 본청 68.5%, 소속기관별 31.5%, 교육청은 본청 37.8%, 소속기관별 62.2%로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9〉 안전보건관리 현황

구분		중앙행정부처	지자체	교육청	전체
위험성평가 실시 주체	본청 (교육청·학교법인 포함)	2 100.0%	81 73.0%	10 27.0%	93 62.0%
	소속기관별(각급 학교)	0 .0%	30 27.0%	27 73.0%	57 38.0%
안전보건조치 실시 주체	본청 (교육청·학교법인 포함)	2 100.0%	38 34.2%	3 8.1%	43 28.7%
	소속기관별(각급 학교)	0 .0%	73 65.8%	34 91.9%	107 71.3%
안전보호구 제공 주체	본청 (교육청·학교법인 포함)	1 50.0%	30 27.0%	2 5.4%	33 22.0%
	소속기관별(각급 학교)	1 50.0%	81 73.0%	35 94.6%	117 78.0%
안전보건 정보 제공 주체	본청 (교육청·학교법인 포함)	1 50.0%	76 68.5%	14 37.8%	91 60.7%
	소속기관별(각급 학교)	1 50.0%	35 31.5%	23 62.2%	59 39.3%
안전보건교육 실시 주체	본청 (교육청·학교법인 포함)	1 50.0%	55 49.5%	22 59.5%	78 52.0%
	소속기관별(각급 학교)	1 50.0%	56 50.5%	14 37.8%	71 47.3%
	미실시	0 .0%	0 .0%	1 2.7%	1 .7%
합계		2 100.0%	111 100.0%	37 100.0%	150 100.0%

- 안전보건교육은 중앙행정부처 50.0%, 지자체 49.5%, 교육청 59.5%가 본청에서 실시하며,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의 의견 수렴은 중앙행정부처 50%, 지자체 62.2%, 교육청 32.4%가 본청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위험 대비 매뉴얼은 중앙행정부처 100%, 지자체 72.1%, 교육청 91.9%가 본청에서 작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수건강검진의 실시는 중앙행정부처 50%, 지자체 73.0%, 교육청 48.6%가 본청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자체의 2.7%, 교육청의 5.4%는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작업환경측정 관리는 중앙행정부처 100.0%, 지자체 74.8%, 교육청 70.3%가 본청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자체 3.6%, 교육청 5.4%는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0〉 안전보건관리 현황(계속)

구분		중앙행정부처	지자체	교육청	전체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 의견 수렴 주체	본청 (교육청·학교법인 포함)	1 50.0%	69 62.2%	12 32.4%	82 54.7%
	소속기관별(각급 학교)	1 50.0%	42 37.8%	24 64.9%	67 44.7%
	미실시	0 .0%	0 .0%	1 2.7%	1 .7%
위험 대비 매뉴얼 작성 주체	본청 (교육청·학교법인 포함)	2 100.0%	80 72.1%	34 91.9%	116 77.3%
	소속기관별(각급 학교)	0 .0%	31 27.9%	3 8.1%	34 22.7%
특수건강검진 실시 주체	본청 (교육청·학교법인 포함)	1 50.0%	81 73.0%	18 48.6%	100 66.7%
	소속기관별(각급 학교)	1 50.0%	27 24.3%	17 45.9%	45 30.0%
	미실시	0 .0%	3 2.7%	2 5.4%	5 3.3%
작업환경측정 관리 주체	본청 (교육청·학교법인 포함)	2 100.0%	83 74.8%	26 70.3%	111 74.0%
	소속기관별(각급 학교)	0 .0%	24 21.6%	9 24.3%	33 22.0%
	미실시	0 .0%	4 3.6%	2 5.4%	6 4.0%
합계		2 100.0%	111 100.0%	37 100.0%	150 100.0%

(3) 현업종사자 안전보건관리 현황

- 본 조사에 참여한 공공·교육행정분야 대상 기관은 모두 현업종사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현업종사자의 수는 중앙정부처는 300인 이상으로 모두 나타났으며, 지자체는 5인 이상 50인 미만 3.6%, 50인 이상 100인 미만 2.7%, 100인 이상 300인 미만 9.9%, 300인 이상 83.8%, 교육청은 5인 미만 2.7%, 5인 이상 50인 미만 40.5%, 300인 이상 56.8%로 나타났다.
- 기관 중 지자체 소속기관과 교육청 소속기관에서 50인 미만의 현업종사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교육청 소속기관은 93.4%가 50인 미만으로 나타났다.
 - 광역지자체의 33.4%, 지자체 소속기관 26.7%, 교육청 소속기관 93.4%가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표 Ⅲ-21〉 기관유형별 현업종사자의 근무현황

구분	중앙정부처	지자체	교육청	전체
5인 미만	0 .0%	0 .0%	1 2.7%	1 .7%
5인 이상~50인 미만	0 .0%	4 3.6%	15 40.5%	19 12.7%
50인 이상~100인 미만	0 .0%	3 2.7%	0 .0%	3 2.0%
100인 이상~300인 미만	0 .0%	11 9.9%	0 .0%	11 7.3%
300인 이상	2 100.0%	93 83.8%	21 56.8%	116 77.3%
합계	2 100.0%	111 100.0%	37 100.0%	150 100.0%

〈표 III-22〉 기관유형별 현업종사자 근무현황(세부)

구분	중앙 행정부처	본청 (광역 지자체)	본청 (기초 지자체)	기초· 광역지자체 소속기관	본청 (교육청· 학교법인)	교육청 소속기관	전체
5인 미만	0 .0%	0 .0%	0 .0%	0 .0%	0 .0%	1 6.7%	1 .7%
5인 이상~50인 미만	0 .0%	1 16.7%	0 .0%	3 20.0%	2 9.1%	13 86.7%	19 12.7%
50인 이상~100인 미만	0 .0%	1 16.7%	1 1.1%	1 6.7%	0 .0%	0 .0%	3 2.0%
100인 이상~300인 미만	0 .0%	0 .0%	9 10.0%	2 13.3%	0 .0%	0 .0%	11 7.3%
300인 이상	2 100.0%	4 66.7%	80 88.9%	9 60.0%	20 90.9%	1 6.7%	116 77.3%
합계	2 100.0%	6 100.0%	90 100.0%	15 100.0%	22 100.0%	15 100.0%	150 100.0%

- 기관별 안전관리 규정의 제정은 지자체 82.0%와 교육청 73.0%는 본청(전체)에서 규정을 제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청(교육청·학교법인)의 경우 현업업무에 해당하는 규정을 제정하는 기관이 21.6%로 다른 기관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표 III-23〉 안전관리 규정 제정

구분	중앙행정부처	지자체	교육청	전체
본청(전체)	1 50.0%	91 82.0%	27 73.0%	119 79.3%
소속기관별 제정	1 50.0%	10 9.0%	2 5.4%	13 8.7%
현업업무만 제정	0 .0%	10 9.0%	8 21.6%	18 12.0%
합계	2 100.0%	111 100.0%	37 100.0%	150 100.0%

〈표 Ⅲ-24〉 기관별 안전관리 규정 제정(세부)

구분	중앙행정 부처	본청 (광역 지자체)	본청 (지자체)	지자체· 광역지자체 소속기관	본청 (교육청· 학교법인)	교육청 소속기관	전체
본청(전체)	1 50.0%	3 50.0%	78 86.7%	10 66.7%	15 68.2%	12 80.0%	119 79.3%
소속기관별 제정	1 50.0%	2 33.3%	4 4.4%	4 26.7%	0 .0%	2 13.3%	13 8.7%
현업업무만 제정	0 .0%	1 16.7%	8 8.9%	1 6.7%	7 31.8%	1 6.7%	18 12.0%
합계	2 100.0%	6 100.0%	90 100.0%	15 100.0%	22 100.0%	15 100.0%	150 100.0%

- 안전보건 업무 담당 인력의 선임은 안전관리자의 경우 전체 92.7%, 보건관리자는 92.0%로 모두 선임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중앙행정부처, 지자체에 비하여 교육청이 각각 75.7%로 선임 비율이 낮았다. 반대로 안전보건 업무담당자의 선임은 지자체 36.9%, 교육청 64.9%로 교육청의 선임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교육청의 안전관리자 선임은 본청(교육청·학교법인) 100%, 교육청 소속 기관(각급학교) 46.7%로 나타났으며, 이는 교육청의 산하기관 및 각급 학교는 대부분이 50인 미만으로 안전보건 업무담당자 선임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됨.
 - 겸직에 의한 선임은 중앙행정부처 100.0%인 반면 지자체 27.0%, 교육청 29.7%로 낮게 나타남.
-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선임은 교육청이 78.4%로 타 기관에 비하여 낮게 나타났으나, 소속기관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본청(교육청·학교법인)은 90.9%, 교육청 소속기관(각급학교) 60.0%로 교육청이 본청(전체)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으로 예상된다.
- 안전보건 인력 선임의 근거는 「산안법」 적용이 94.7%로 높게 나타났으며, 지자체의 2.7%, 교육청의 5.4%는 자체 규정을 적용하고, 교육청의 5.4%

는 선임 근거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안전보건 인력의 선임은 현업종사자 수 기준이 전체 82.7%로 높게 나타났고, 지자체의 16.2%는 전체 종사자 수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무의 유해성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는 지자체 1.8%, 교육청 5.4%로 나타났다.

〈표 Ⅲ-25〉 안전보건 업무 담당 인력 선임

구분		중앙행정부처	지자체	교육청	전체
안전관리자 선임	선임	2 100.0%	109 98.2%	28 75.7%	139 92.7%
	미선임	0 .0%	2 1.8%	9 24.3%	11 7.3%
보건관리자 선임	선임	2 100.0%	108 97.3%	28 75.7%	138 92.0%
	미선임	0 .0%	3 2.7%	9 24.3%	12 8.0%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 선임	선임	2 100.0%	41 36.9%	24 64.9%	67 44.7%
	미선임	0 .0%	70 63.1%	13 35.1%	83 55.3%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선임	선임	2 100.0%	110 99.1%	29 78.4%	141 94.0%
	미선임	0 .0%	1 .9%	8 21.6%	9 6.0%
관리감독자 선임	선임	2 100.0%	110 99.1%	36 97.3%	148 98.7%
	미선임	0 .0%	1 .9%	1 2.7%	2 1.3%
겸직 선임	선임	2 100.0%	30 27.0%	11 29.7%	43 28.7%
	미선임	0 .0%	81 73.0%	26 70.3%	107 71.3%
선임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2 100.0%	107 96.4%	33 89.2%	142 94.7%
	자체 규정	0 .0%	3 2.7%	2 5.4%	5 3.3%
	모르겠음	0 .0%	1 .9%	2 5.4%	3 2.0%
합계		2 100.0%	111 100.0%	37 100.0%	150 100.0%

〈표 Ⅲ-26〉 안전보건 업무 담당 인력 선임 기준

구분		중앙행정부처	지자체	교육청	전체
선임 기준	현업종사자 수 기준	2 100.0%	90 81.1%	32 86.5%	124 82.7%
	전체 종사자 수 기준	0 .0%	18 16.2%	0 .0%	18 12.0%
	업무의 유해·위험성 기준	0 .0%	2 1.8%	2 5.4%	4 2.7%
	모르겠음	0 .0%	1 .9%	3 8.1%	4 2.7%
합계		2 100.0%	111 100.0%	37 100.0%	150 100.0%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은 지자체의 81.1%, 교육청의 78.4%는 본청(전체)에서 구성하고, 지자체는 소속기관별 구성 8.1%, 현업업무만 구성 10.8%, 교육청은 현업업무만 구성 16.2%, 미구성 5.4%로 나타났다.

〈표 Ⅲ-27〉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구분	중앙행정부처	지자체	교육청	전체
본청(전체) 구성	2 100.0%	90 81.1%	29 78.4%	121 80.7%
소속 기관별 구성	0 .0%	9 8.1%	0 .0%	9 6.0%
현업업무만 구성	0 .0%	12 10.8%	6 16.2%	18 12.0%
미구성	0 .0%	0 .0%	2 5.4%	2 1.3%
합계	2 100.0%	111 100.0%	37 100.0%	150 100.0%

- 현업종사자에 대해 실시하는 안전보건 교육 중 정기안전보건교육은 조사 대상 모두 실시하고 있었으며, 채용 시 교육은 지자체 99.1%, 교육청 97.3%,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지자체 95.5%, 교육청 89.2%, 특별교육은 지자체 98.2%, 교육청 62.2%로 나타났으며, 기관 교육의 종류에 따라 실시 여부에 차이를 보였다.

〈표 Ⅲ-28〉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구분	중앙행정부처		지자체		교육청		전체	
	n	%	n	%	n	%	n	%
정기안전보건교육	2	100.0	111	100.0	37	100.0	150	100.0
채용 시 교육	2	100.0	110	99.1	36	97.3	148	98.7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2	100.0	106	95.5	33	89.2	141	94.0
특별교육	2	100.0	109	98.2	23	62.2	134	89.3

- 현업종사자에게 실시하는 교육 내용은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Ⅲ-29〉 주요 교육 내용

구분	중앙행정부처		지자체		교육청		전체	
	n	%	n	%	n	%	n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1	10.0	109	8.1	37	8.6	147	8.3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1	10.0	100	7.4	34	7.9	135	7.6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1	10.0	97	7.2	31	7.2	129	7.2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2	20.0	104	7.7	36	8.4	142	8.0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1	10.0	92	6.9	33	7.7	126	7.1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	10.0	92	6.9	27	6.3	120	6.7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	10.0	82	6.1	24	5.6	107	6.0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0	0.0	81	6.0	23	5.4	104	5.8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0	0.0	56	4.2	18	4.2	74	4.2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0	0.0	54	4.0	14	3.3	68	3.8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0	0.0	40	3.0	14	3.3	54	3.0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0	0.0	78	5.8	24	5.6	102	5.7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1	10.0	79	5.9	26	6.1	106	6.0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0	0.0	87	6.5	29	6.8	116	6.5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0	0.0	94	7.0	29	6.8	123	6.9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1	10.0	98	7.3	29	6.8	128	7.2
합계	10	100.0	1343	100.0	428	100.0	1781	100.0

(4) 현업종사자 제도 인식

- 공공행정·교육 서비스 사업장에 대해 「산안법」 상 안전보건관리체제와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업무 특성과 위험도를 고려하여 일부 현업업무에만 적용 필요’하다는 인식은 중앙정부 50.0%, 지자체 76.6%, 교육청 73.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적용 확대보다 업무특성을 고려한 적용 제외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Ⅲ-30〉 「산안법」 일부 적용 제외의 필요성과 범위 인식

구분	중앙행정부처	지자체	교육청	전체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모든 종사자에 적용 제외 필요	0 .0%	21 18.9%	6 16.2%	27 18.0%
업무 특성과 위험도를 고려하여 일부 현업업무에만 적용 필요	1 50.0%	85 76.6%	27 73.0%	113 75.3%
소방 등 특수분야를 제외한 적용 확대 필요	1 50.0%	5 4.5%	4 10.8%	10 6.7%
합계	2 100.0%	111 100.0%	37 100.0%	150 100.0%

- 이와 같은 응답으로 ‘조직 특성과 업무에 적합한 안전관리 및 교육제도 운영’과 ‘위험업무에 대한 관리 및 교육 강화’가 주요 이유로 나타났다.

〈표 Ⅲ-31〉 취급 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게시 여부

구분	중앙행정부처		지자체		교육청		전체	
	n	%	n	%	n	%	n	%
위험업무에 대한 관리 및 교육 강화	1	33.3	51	25.1	13	22.8	65	24.7
산업재해 감소에 기여	0	0.0	31	15.3	8	14.0	39	14.8
법령의 중복규제 해소	1	33.3	27	13.3	4	7.0	32	12.2
조직 특성과 업무에 적합한 안전관리 및 교육제도 운영	1	33.3	71	35.0	27	47.4	99	37.6
종사자의 의견 개진 및 소통 활성화	0	0.0	23	11.3	5	8.8	28	10.6
합계	3	100.0	203	100.0	57	100.0	263	100.0

(5) 공공행정분야의 현업종사자 확대 적용 필요 여부

- 공공행정분야의 현업종사자 확대 적용의 필요성이 높은 업무는 농기계 임대 및 수리 68.8%, 하천단속 66.1%, 주차단속 66.1%, 농작업 대행 61.5%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도서관 사서 28.4%, 체육시설 강사 36.7%, 보건소 42.2%, 방문상담 44.0% 순으로 필요성이 다른 업무에 비하여 낮게 나타났다.

〈표 Ⅲ-32〉 공공행정분야의 현업업무 적용이 필요한 업무

구분		중앙행정부처	지자체	전체
수도검침	필요	0 .0%	56 51.4%	56 50.5%
	불필요	2 100.0%	53 48.6%	55 49.5%
방문 간호사	필요	1 50.0%	51 46.8%	52 46.8%
	불필요	1 50.0%	58 53.2%	59 53.2%
농작업 대행	필요	1 50.0%	67 61.5%	68 61.3%
	불필요	1 50.0%	42 38.5%	43 38.7%
농기계 임대 및 수리	필요	1 50.0%	75 68.8%	76 68.5%
	불필요	1 50.0%	34 31.2%	35 31.5%
주차단속	필요	0 .0%	72 66.1%	72 64.9%
	불필요	2 100.0%	37 33.9%	39 35.1%
하천단속	필요	1 50.0%	72 66.1%	73 65.8%
	불필요	1 50.0%	37 33.9%	38 34.2%
합계		2 100.0%	109 100.0%	113 100.0%

〈표 III-32〉 공공행정분야의 현업업무 적용이 필요한 업무(계속)

구분		중앙행정부처	지자체	전체
보건소	필요	1 50.0%	46 42.2%	47 42.3%
	불필요	1 50.0%	63 57.8%	64 57.7%
도서관 사서	필요	1 50.0%	31 28.4%	32 28.8%
	불필요	1 50.0%	78 71.6%	79 71.2%
콜센터 상담사	필요	2 100.0%	53 48.6%	55 49.5%
	불필요	0 .0%	56 51.4%	56 50.5%
체육시설 강사	필요	1 50.0%	40 36.7%	41 36.9%
	불필요	1 50.0%	69 63.3%	70 63.1%
방문상담	필요	0 .0%	48 44.0%	48 43.2%
	불필요	2 100.0%	61 56.0%	63 56.8%
기타 업무	필요	1 50.0%	17 15.6%	18 16.2%
	불필요	1 50.0%	92 84.4%	93 83.8%
합계		2 100.0%	109 100.0%	111 100.0%

- 공공행정분야 업무별 현업종사자 전부 적용의 필요 이유는 ① 수도검침 업무는 근골격계질환 19.2%, 폭염, 한파, 미세먼지와 감정노동/폭언이 각각 14.6%, 넘어짐 13.0% 순으로 나타났으며, ② 방문 간호사는 감정노동/폭언 39.6%, 근골격계질환 15.5%, 넘어짐과 폭행이 각각 15.0%, ③ 농작업 대행은 근골격계질환 28.4%, 화학용제 노출 16.7%, 넘어짐 16.0%, 농기계 임대 및 수리는 끼임 21.4%, 근골격계질환 19.3%, 베임 17.7%, ④ 주차단속은 교통사고 26.4%, 감정노동/폭언 20.7%, 넘어짐 13.2%, 하천단속은 넘어짐 24.6%, 미끄러짐 23.0%, 근골격계질환과

떨어짐이 각각 15.9%로 나타났다. ⑤ 보건소는 감정노동/폭언 26.7%, 감염성 질환 노출 24.4%, 근골격계질환 14.5% 순으로 나타났으며, ⑥ 도서관 사서는 근골격계질환 27.6%, 감정노동/폭언 20.5%, 넘어짐 16.8%, ⑦ 콜센타 상담사는 감정노동/폭언 62.6%, 근골격계질환 13.0%, ⑧ 체육시설 강사는 근골격계질환 23.1%, 넘어짐 17.4%, 감정노동/폭언 16.1%, ⑨ 방문상담은 감정노동/폭언 47.5%, 폭행 17.5%, 감염성 질환 노출 15.8%로 나타났다.

〈표 Ⅲ-33〉 공공행정분야의 현업업무 적용이 필요한 이유

구분	수도검침		방문 간호사		농작업 대행		농기계 임대 및 수리		주차단속		하천단속	
	n	%	n	%	n	%	n	%	n	%	n	%
근골격계질환	46	19.2	29	15.5	78	28.4	62	19.3	30	10.2	40	15.9
떨어짐	15	6.3	7	3.7	24	8.7	34	10.6	0	0.0	40	15.9
넘어짐	31	13.0	28	15.0	44	16.0	38	11.8	39	13.2	62	24.6
끼임	19	7.9	3	1.6	38	13.8	69	21.4	0	0.0	13	5.2
감정노동/폭언	35	14.6	74	39.6	0	0.0	0	0.0	61	20.7	0	0.0
폭행	15	6.3	28	15.0	0	0.0	0	0.0	31	10.5	0	0.0
밀폐공간/가스노출	25	10.5	0	0.0	0	0.0	0	0.0	0	0.0	0	0.0
폭염, 한파, 미세먼지	35	14.6	0	0.0	0	0.0	0	0.0	0	0.0	0	0.0
미끄러짐					30	10.9	0	0.0	0	0.0	58	23.0
화학용제 노출					46	16.7	48	14.9	0	0.0	0	0.0
베임							57	17.7	0	0.0	0	0.0
교통사고							0	0.0	78	26.4	1	0.4
부딪힘							0	0.0	33	11.2	0	0.0
화재위험							0	0.0	0	0.0	4	1.6
감염성 질환 노출							0	0.0	0	0.0	0	0.0
기타	18	7.5	18	9.6	15	5.5	14	4.3	23	7.8	34	13.5
합계	239	100.0	187	100.0	275	100.0	322	100.0	295	100.0	252	100.0

〈표 III-33〉 공공행정분야의 현업업무 적용이 필요한 이유(계속)

구분	보건소		도서관 사서		콜센터 상담사		체육시설 강사		방문상담		기타	
	n	%	n	%	n	%	n	%	n	%		
근골격계질환	32	14.5	51	27.6	17	13.0	56	23.1	14	7.9		
떨어짐	6	2.7	21	11.4	0	0.0	14	5.8	0	0.0		
넘어짐	12	5.4	31	16.8	0	0.0	42	17.4	0	0.0		
끼임	8	3.6	0	0.0	0	0.0	9	3.7	0	0.0		
감정노동/폭언	59	26.7	38	20.5	82	62.6	39	16.1	84	47.5		
폭행	23	10.4	0	0.0	9	6.9	15	6.2	31	17.5		
밀폐공간/가스노출	0	0.0	0	0.0	0	0.0	0	0.0	0	0.0		
폭염, 한파, 미세먼지	0	0.0	0	0.0	0	0.0	0	0.0	1	0.6		
미끄러짐	0	0.0	0	0.0	0	0.0	31	12.8	0	0.0		
화학용제 노출	0	0.0	0	0.0	0	0.0	0	0.0	0	0.0		
베임	0	0.0	0	0.0	0	0.0	0	0.0	0	0.0		
교통사고	0	0.0	0	0.0	0	0.0	0	0.0	1	0.6		
부딪힘	0	0.0	19	10.3	0	0.0	0	0.0	0	0.0		
화재위험	0	0.0	0	0.0	0	0.0	0	0.0	0	0.0		
감염성 질환 노출	54	24.4	0	0.0	8	6.1	13	5.4	28	15.8		
기타	27	12.2	25	13.5	15	11.5	23	9.5	18	10.2	24	100.0
합계	221	100.0	185	100.0	131	100.0	242	100.0	177	100.0	24	100.0

- 현행 고시상의 현업업무에서 제외가 필요한 업무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75% 이상이 제외가 불필요하다고 답변하였으며, 지금과 같이 현업업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III-34〉 공공행정분야의 현업업무 제외가 필요한 업무

구분	시설물 유지관리		도로·가로 등 환경미화		도로의 유지보수		공원녹지 등의 유지관리		산림조사 및 산림보호		조리시설 관련 업무	
	n	%	n	%	n	%	n	%	n	%	n	%
필요	24	21.2	21	18.6	23	20.4	24	21.2	27	23.9	26	23.0
불필요	89	78.8	92	81.4	90	79.6	89	78.8	86	76.1	87	77.0

- 공공행정분야의 현업업무 관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업무별로 살펴 보면 ① 시설물 유지관리는 근골격계질환 노출, 사다리 사용 등에 의한 넘어짐, 야간업무 수행, ② 도로·가로 등 환경미화는 교통사고, 예초기 사용에 의한 베임, 넘어짐, 충돌, 찢림, ③ 도로의 유지·보수는 차량 충돌에 의한 부딪힘, 풀베기 및 예초작업에 의한 위험 노출, 폭염으로 나타났으며, ④ 공원·녹지 등의 유지관리는 풀베기, 유지, 보수 작업 등으로 인한 넘어짐, 벌 쏘임, 폭염, 근골격계질환, ⑤ 산림조사 및 산림보호는 벌목 작업 시 끼임, 벌목사고, 폭염, 넘어짐, 벌레 쏘임, ⑥ 조리시설 관련 업무는 근골격계질환, 소음, 고온, 협소 공간, 환기 부적절, 유해화학물질 사용, 화상으로 나타났다.

〈표 Ⅲ-35〉 공공행정분야의 현업업무 관리가 필요한 이유

구분	이유
시설물 유지관리	근골격계질환 노출, 사다리 사용 등에 의한 넘어짐, 야간업무
도로·가로 등 환경미화	교통사고, 예초기 사용에 의한 베임, 넘어짐, 충돌, 찢림
도로의 유지·보수	차량 충돌에 의한 부딪힘, 풀베기 및 예초작업에 의한 위험 노출, 폭염
공원·녹지 등의 유지관리	풀베기, 유지, 보수 작업 등으로 인한 넘어짐, 벌 쏘임, 폭염, 근골격계질환
산림조사 및 산림보호	벌목작업 시 끼임, 벌목사고, 폭염, 넘어짐, 벌레 쏘임
조리시설 관련 업무	근골격계질환, 소음, 고온, 협소 공간, 환기 부적절, 유해화학물질 사용, 화상,

(6) 교육서비스업 분야의 현업종사자 전부 적용 필요 여부

- 교육서비스업 분야의 현업종사자 전부 적용이 필요한 업무를 조사한 결과(37명 대상) 전체 대상업무의 과반수는 현업업무 확대가 불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필요하다는 응답은 과학실무사 43.2%, 수상 안전요원 32.4%, 특수교육실무사 29.7%, 도서관 사서 21.6%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36〉 교육서비스업 분야의 현업업무 적용이 필요한 업무

구분	특수교육실무사		과학실무사		도서관 사서		수상안전요원		기타	
	n	%	n	%	n	%	n	%	n	%
필요	11	29.7	16	43.2	8	21.6	12	32.4	0	0.0
불필요	26	70.3	21	56.8	29	78.4	25	67.6	36	100.0

- 교육서비스업 분야의 협업종사자 전부 적용이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 ① 특수교육실무사는 폭행 30.4%, 감정노동/폭언 23.9%, 근골격계질환 221.7% 순으로 나타났고,
 - ② 과학실무사는 화학용제 노출이 87.1%로 가장 많았다.
 - ③ 도서관 사서는 근골격계질환 60.0%,
 - ④ 수상안전요원은 미끄러짐 34.9%, 근골격계질환 27.9%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37〉 교육서비스업 분야의 현업업무 적용이 필요한 이유

구분	특수교육실무사		과학실무사		도서관 사서		수상안전요원	
	n	%	n	%	n	%	n	%
근골격계질환	10	21.7	0	0.0	12	60.0	12	27.9
떨어짐	8	17.4	0	0.0	0	0.0	5	11.6
넘어짐	2	4.3	0	0.0	2	10.0	7	16.3
끼임	1	2.2	1	3.2	0	0.0	1	2.3
감정노동/폭언	11	23.9	0	0.0	3	15.0	0	0.0
폭행	14	30.4	0	0.0	3	15.0	0	0.0
밀폐공간/가스노출	0	0.0	0	0.0	0	0.0	0	0.0
폭염, 한파, 미세먼지	0	0.0	0	0.0	0	0.0	0	0.0
미끄러짐	0	0.0	1	3.2	0	0.0	15	34.9
화학용제 노출	0	0.0	27	87.1	0	0.0	2	4.7
베임	0	0.0	2	6.5	0	0.0	1	2.3
교통사고	0	0.0	0	0.0	0	0.0	0	0.0
부딪힘	0	0.0	0	0.0	0	0.0	0	0.0
화재위험	0	0.0	0	0.0	0	0.0	0	0.0
감염성 질환 노출	0	0.0	0	0.0	0	0.0	0	0.0
기타	0	0.0	0	0.0	0	0.0	0	0.0
합계	46	100.0	31	100.0	20	100.0	43	100.0

- 교육서비스업 분야에서 현행 고시상의 현업업무에서 제외가 필요한 업무는 전체 응답자의 62% 이상이 제외가 불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제외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학교 경비 및 통학 보조’ 37.8%, ‘학교 시설물 유지관리’ 24.3%, ‘조리시설 관련 업무’ 21.6% 순으로 학교 경비 및 통학 보조 업무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 교육서비스업 분야의 현업업무 관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① 학교 시설물 유지관리는 사다리 작업, 무거운 물건 이동, 제초 작업, 학교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 ② 학교 경비 및 통학 보조는 통행 제한 등과 학생 통학 안전상 필요, 고령 근로자, ③ 조리시설 관련 업무는 근골격계질환, 고온으로 나타났다.

〈표 Ⅲ-38〉 교육서비스업 분야의 현업업무 제외가 필요한 업무

구분	학교 시설물 유지관리		학교 경비 및 통학 보조		조리시설 관련 업무	
	n	%	n	%	n	%
필요	9	24.3	14	37.8	8	21.6
불필요	29	78.4	23	62.2	29	78.4

〈표 Ⅲ-39〉 교육서비스업 분야의 현업업무 관리가 필요한 이유

구분	이유
학교 시설물 유지관리	사다리 작업, 무거운 물건 이동, 제초 작업, 학교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
학교 경비 및 통학 보조	통행 제한 등과 학생 통학 안전상 필요, 고령 근로자,
조리시설 관련 업무	근골격계질환, 고온

4) 시사점

위험성평가의 실시, 위험작업,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의 안전보건 정보 제공, 위험 대비 매뉴얼, 작업환경측정 관리는 중앙행정부처와 지자체의 경우 본청에서 실시하는 반면 교육청은 각급학교가 주체가 되어 실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안전보건조치, 안전보호구 제공, 특수건강검진의 실시 등은 지자체와 교육청 모두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정부처와 지자체는 본청과 안전보건관리업무를 분담하는 반면 교육청은 소속기관에서의 주로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중앙행정부처와 지자체, 교육청 모두 현업종사자가 존재하는데 교육청 소속기관은 93.4%가 50인 미만으로 나타났다. 안전관리 규정의 제정은 지자체 82.0%와 교육청 73.0%는 본청(전체)에서 규정을 제정하고 있으며, 교육청의 경우 현업업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별도 규정을 제정하는 기관이 21.6%로 나타나 현업종사자에 대한 관리에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보건 업무의 담당 인력인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선임은 중앙행정부처, 지자체가 90% 이상, 교육청은 75% 이상으로 나타났고, 안전보건 업무담당자의 선임 비율은 교육청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모든 기관에서 「산안법」을 기준으로 선임과 지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본청에서 전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10.8%, 교육청의 16.2%가 현업업무에 대해서만 구성하고 있었다. 정기안전보건교육은 기관에 차이 없이 모두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었다.

광역지자체는 본청과 소속기관이 안전보건관리업무를 분담하여 체제와 활동 추진하는 반면, 기초지자체는 본청을 중심으로 현업 전체를 대상으로 체제와 활동 추진하고 있었다. 교육청은 소속기관을 중심으로 실무적인 관리가 이뤄지고 있지만, 안전보건관리체제에 있어서는 본청을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규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의 체제가 운영되고 있으며 타 기관에 비해 현업종사자

중심의 관리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응답자는 공공행정·교육 서비스 사업장에 대해 「산안법」 상 안전보건관리체제와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업무 특성과 위험도를 고려하여 지금과 같이 일부 현업업무에만 적용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았으며, 이는 조직 특성과 업무에 적합한 안전관리 및 교육제도 운영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공공행정 등에 대한 「산안법」 전부 적용 필요성에 대하여 업무 특성과 위험도를 고려하여 일부 현업업무에만 「산안법」 전부 적용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보다 업무특성을 고려한 적용 제외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났다.

공공행정분야의 업무 중 농기계 임대 및 수리, 하천단속, 주차단속, 농작업 대행 등의 업무에 대해서는 확대 적용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업종별 근골격계질환, 밀폐공간과/가스노출, 폭염/한파, 미끄러짐, 화학용제 노출 등의 업무로 인한 위험성의 존재와 특수성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서비스업 분야의 업무 중 적용이 필요한 업무는 과학실무사, 수상 안전요원, 특수교육실무사가 높게 나타났고, 특수교육실무사의 폭행, 감정노동/폭언, 과학실무사는 화학용제 노출 등이 주요 이유로 확인되었다.

3. 학교 과학실험실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현황 실태조사

1) 조사 목적

학교 과학실험실 등에서 사용하는 유해·위험물질의 누출로 인한 중독, 화재 및 폭발 사고를 예방하고, 화학약품 등의 저장, 사용, 폐기 작업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과 이에 따른 규정 마련, 실험실의 작업 및 관련 설비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기초자료 확보의 목적으로 실태조사를 수행하였다.

2) 조사 대상 및 문항 구성

2024년 6월부터 8월까지 초등학교 16개소, 중학교 16개소, 고등학교 13개소의 과학실험실을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을 조사하였다.

〈표 III-40〉 학교 과학실험실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조사 대상

구분	n	%
초등학교	16	35.6
중학교	16	35.6
고등학교	13	28.9
합계	45	100.0

조사는 취급 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게시 여부, 화학물질 성상에 따른 분리/차폐 보관 여부, 기준함량 이상 화학물질 사용 여부¹⁰⁾, 화학물질 취급 대상, 화학물질 취급 시 안전보건 교육실시 여부, 과학실무사 교육실시

10) 각급 학교별 교육과정의 탐구활동에서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의 기준함량 이상의 화학물질 사용을 확인하였다(김현정 등 6인, 안전한 과학실험실을 위한 화학물질 관리 방안 이슈 페이퍼, 한국과학창의재단, 2023, 9-15쪽).

주체, 특수건강검진 실시 여부, 화학물질 폐기 절차 마련, 실험 후 혼합폐기 여부, 화학물질의 구매 절차, 비공식적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의 1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3) 분석

본 현황 실태조사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및 교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4) 학교 과학실험실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현황 실태 결과

- 학교 실험실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 모두 비치/게시는 초등학교의 경우 93.8%, 중학교 87.5%, 고등학교 61.5%로 일부만 비치/게시는 고등학교가 23.1%로 나타났다.

〈표 Ⅲ-41〉 취급 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게시 여부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n	%	n	%	n	%	n	%
모두 비치/게시	15	93.8	14	87.5	8	61.5	37	82.2
일부만 비치/게시	0	.0	1	6.3	3	23.1	4	8.9
미비치/미게시	1	6.3	1	6.3	2	15.4	4	8.9
합계	16	100.0	16	100.0	13	100.0	45	100.0

- 화학물질 성상에 따른 분리/차폐 보관에 대하여 모두 적정은 초등학교 93.8%, 중학교 100.0%, 고등학교 84.6%로 나타났다.

〈표 III-42〉 화학물질 성상에 따른 분리/차폐 보관 여부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n	%	n	%	n	%	n	%
모두 적정	15	93.8	16	100.0	11	84.6	42	93.3
일부 부적정	1	6.3	0	.0	2	15.4	3	6.7
합계	16	100.0	16	100.0	13	100.0	45	100.0

- 기준합량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은 초등학교 50.0%, 중학교 43.8%, 고등학교 46.2%가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3〉 기준합량 이상 유해화학물질 사용 여부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n	%	n	%	n	%	n	%
사용	8	50.0	7	43.8	6	46.2	21	46.7
미사용	8	50.0	9	56.3	7	53.8	24	53.3
합계	16	100.0	16	100.0	13	100.0	45	100.0

- 기준합량 이상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은 초등학교는 과산화수소, 수산화나트륨, 염산 순으로 나타났으며, 중학교는 질산은, 질산칼륨, 과산화수소, 수산화나트륨, 염산, 황산구리(II), 베네딕트 용액, 고등학교는 수산화나트륨, 과산화수소, 염산 순으로 사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4〉 학교 과학실험실의 취급 유해화학물질 종류(기준함량 이상)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n	%	n	%	n	%	n	%
과산화수소	6	30.0	4	8.9	4	10.0	14	13.3
붕사	2	10.0	1	2.2	0	0.0	3	2.9
붕산	2	10.0	3	6.7	0	0.0	5	4.8
수산화나트륨	4	20.0	4	8.9	5	12.5	13	12.4
아세트산	0	0.0	2	4.4	3	7.5	5	4.8
염산	3	15.0	4	8.9	4	10.0	11	10.5
과망가니즈산칼륨	0	0.0	0	0.0	1	2.5	1	1.0
질산나트륨	0	0.0	2	4.4	1	2.5	3	2.9
질산암모늄	0	0.0	0	0.0	2	5.0	2	1.9
질산은	0	0.0	6	13.3	1	2.5	7	6.7
질산칼륨	0	0.0	5	11.1	1	2.5	6	5.7
황산구리(II)	0	0.0	4	8.9	2	5.0	6	5.7
베네딕트 용액	0	0.0	4	8.9	3	7.5	7	6.7
뷰렛 용액	0	0.0	2	4.4	2	5.0	4	3.8
나트륨	0	0.0	0	0.0	2	5.0	2	1.9
칼륨	1	5.0	1	2.2	1	2.5	3	2.9
다이크로뮴산 칼륨	0	0.0	0	0.0	1	2.5	1	1.0
수산화칼륨	0	0.0	1	2.2	2	5.0	3	2.9
염화코발트(II)	0	0.0	1	2.2	2	5.0	3	2.9
황산	0	0.0	0	0.0	3	7.5	3	2.9
기타 유해화학물질	2	10.0	1	2.2	0	0.0	3	2.9
합계	20	100.0	45	100.0	40	100.0	105	100.0

- 기준함량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대한 다중응답 조사 결과 과학 교사(교육공무원)의 45.0%, 과학 실무사(근로자) 28.3%, 실습 참여 학생 11.7%로 나타났다.
- 교육기관별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학실무사는 초등학교 55%, 중학교 22.7%, 고등학교 5.6%로 나타나 초등학교 과학실무사의 취급이 높게 나타남.

〈표 III-45〉 기준함량 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 대상자(다중응답)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n	%	n	%	n	%	n	%
과학 교사(교육공무원)	5	25.0	10	45.5	12	66.7	27	45.0
과학 실무사(근로자)	11	55.0	5	22.7	1	5.6	17	28.3
실습 참여 학생	1	5.0	2	9.1	4	22.2	7	11.7
무응답	3	15.0	5	22.7	1	5.6	9	15.0
합계	20	100.0	22	100.0	18	100.0	60	100.0

- 화학물질 취급 시 안전보건 교육의 취급자 전원 실시는 33.3%였고, 과학 교사만 실시하는 경우는 26.7%, 과학실무사 17.8%, 실습 참여 학생 17.8%로 나타났다.
- 과학실무사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은 초등학교 37.5%, 중학교 12.5%로 나타났고, 고등학교는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I-46〉 화학물질 취급 시 안전보건 교육 여부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n	%	n	%	n	%	n	%
취급자 전원	3	20.8	5	31.3	7	50.0	15	33.3
과학 교사	4	25.0	5	31.3	3	25.0	12	26.7
과학실무사	6	37.5	2	12.5	0	0.0	8	17.8
실습 참여 학생	3	16.7	3	18.8	2	18.8	8	17.8
기타		0.0	1	6.3	0	0.0	1	2.2
무응답		0.0		0.0	1	6.3	1	2.2
합계	16	100.0	16	100.0	13	100.0	45	100.0

- 과학실무사에 대한 교육실시 주체는 시도교육청 63.6%, 소속 학교 27.3%로 나타났다.

〈표 III-47〉 과학실무사 교육 실시의 주체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n	%	n	%	n	%	n	%
시도교육청	9	60.0	8	66.7	4	66.7	21	63.6
소속 학교	4	26.7	3	25.0	2	33.3	9	27.3
기타	2	13.3	1	8.3	0	0.0	3	9.1
합계	15	100.0	12	100.0	6	100.0	33	100.0

- 종사자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에 대하여 모두 실시는 초등학교 31.3%, 중학교 31.3%, 고등학교 7.7%로 전체 24.4%로 나타났으며, 미실시는 초등학교 25.0%, 중학교 37.5%, 고등학교 30.8%로 고등학교의 미실시가 가장 높았다.

〈표 III-48〉 종사자에 대한 특수건강검진 실시 여부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n	%	n	%	n	%	n	%
모두 실시	5	31.3	5	31.3	1	7.7	11	24.4
미실시	4	25.0	6	37.5	4	30.8	14	31.1
해당없음	6	37.5	3	18.8	5	38.5	14	31.1
무응답	1	6.3	2	12.5	3	23.1	6	13.3
합계	16	100.0	16	100.0	13	100.0	45	100.0

- 화학물질 폐기에 대한 절차(규정, 절차도 등)는 전체 95.6%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실험 후 물질의 혼합폐기의 발생은 초등학교 25.0%, 중학교 6.3%, 고등학교 7.7%로 전체 13.3%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9〉 화학물질 폐기 절차 및 혼합폐기 발생 여부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n	%	n	%	n	%	n	%
화학물질 폐기 절차	있음	15	93.8	15	93.8	13	100.0	43	95.6
	없음	1	6.3	1	6.3	0	0.0	2	4.4
실험 후 혼합폐기 발생	있음	4	25.0	1	6.3	1	7.7	6	13.3
	없음	12	75.0	15	93.8	12	92.3	39	86.7
합계		16	100.0	16	100.0	13	100.0	45	100.0

- 교외 경진대회, 동아리 활동 등의 비공식적인 구매에 의한 화학물질 보관 여부는 6.7%로 나타났으며, 비공식적 구매 화학물질 보유현황에 대한 관리는 4.4%가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0〉 화학물질 보관 및 현황 관리(비공식적 구매)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n	%	n	%	n	%	n	%
비공식적 화학물질 보관	있음	0	0.0	1	6.3	2	15.4	3	6.7
	없음	16	100.0	15	93.8	11	84.6	42	93.3
비공식적 구매 화학물질 현황 관리	있음	0	0.0	1	6.3	1	7.7	2	4.4
	없음	16	100.0	15	93.8	12	92.3	43	95.6
합계		16	100.0	16	100.0	13	100.0	45	100.0

5) 시사점

학교 과학실험실의 기준함량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대해서는 과학교사 45%, 과학실무사 28.3%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초등학교의 경우 과학실무사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이 55.0%로 높게 나타났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에 대한 교육은 초등학교 20.8% 중학교 31.3%, 고등학교

50.0%가 전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상급학교로 갈수록 교육 실시율이 높았다. 과학 실무사의 경우 60% 이상이 시도교육청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학교 차원에서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실무사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게시, 화학물질 성상에 따른 분리/차폐 보관 등과 화학물질 폐기 절차 및 혼합폐기, 화학물질 보관 및 현황관리(비공식 구매)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특수건강검진의 경우 미실시가 30%로 나타나 검진대상인지를 인식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안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실태조사 결과 전체 학교의 절반 가까이가 과학실험실에서 관리가 필요한 기준함량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었으며, 이중 과학실무사는 주로 초등학교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초등학교의 경우 혼합폐기 등의 위험이 있는 반면 취급자 전체에 대한 교육 비율은 낮아서 종사자 인터뷰 등을 통해 추가적인 위험점이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4. 공공행정 분야 등 기관별 안전보건담당자 인터뷰

1) 조사 개요

중앙행정기관, 광역 및 기초지자체, 광역교육청 등 14개 기관 25명의 안전보건담당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현황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에서는 각 기관의 안전보건관리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산안법」 적용 단위인 사업장의 구분 및 업종의 적용, 안전보건인력 선임현황 및 기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안전보건교육 대상 및 운영, 기타 안전보건관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표 III-51〉 기관유형별 안전보건담당자 인터뷰 대상

소속	기관명	개소	인원
중앙행정기관	산림청, 소방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육군본부	5	6
광역지자체	도청(A), 광역시청(B)	2	3
기초지자체(시군)	시청(C), 시청(D)	2	6
기초지자체(구)	구청(E), 구청(F)	2	3
광역교육청	광역교육청(G), 광역교육청(H), 광역교육청(I)	3	7
합 계		14	25

기관별 안전보건담당자와 유해·위험업무 종사자에 대한 인터뷰는 기관별 조직구조와 고용형태 및 「산안법」의 적용 등에 이해도가 높은 공인노무사로 인터뷰팀을 구성하였다.¹¹⁾

11) 인터뷰팀은 나민오 연구위원(연구책임자), 한서대학교 최서연 교수(위탁연구책임자)와 공인노무사인 홍익노무법인 서진두 박사, 충북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정정임 교수, 김포노동권익센터 이새빛 노무사, 노무법인 광화문 차연수 노무사, 같이인사노무컨설팅 김건두 노무사, 총 7명이 참여하였다.

2) 중앙행정기관의 안전보건관리현황

중앙행정기관은 정책 수립 및 집행 등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본청과 그 사무를 함께 집행하는 소속기관,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소속기관을 두고 있다. 인터뷰에서는 현장의 국유림 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산림청,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군대, 경찰, 소방 등 5개 행정기관의 안전보건업무 담당자 6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기관별로 본청과 소속기관의 「산안법」 적용 단위 및 적용 대상, 안전보건관리 현황을 살펴보았다.

(1) 산림청

산림청의 경우 업무수행 장소를 기준으로 본청과 5개 지방청, 소속기관인 산림교육원, 산림과학원, 산림항공본부, 산림품종관리센터, 수목원, 자연휴양림관리소 총 12개 사업장으로 분리된다. 각 사업장별 업종과 규모에 따라 「산안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소속기관 중 항공본부, 과학원, 교육원은 개별 업종을 적용하고 그 외의 기관은 공공행정업을 적용하고 있다.

본청은 사업을 총괄 관리하며 지방청은 국유림 관리 사업을 수행한다. 전체 종사자수는 약 1.3만명이며 이 중 90% 이상이 공무원이고 56%가 현업종사자로 분류된다. 내근직원을 제외한 공무원과 공무원직은 산림조사 및 산림보호 업무 등 현업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 현장업무 수행자 전체에 대해 「산안법」을 전부 적용하고 있다. 각 사업장의 상시 현업종사자수를 기준으로 안전보건인력 선임 등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업종사자의 과반 노조인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산보위의 근로자위원을 추천하고 있다. 현업종사자와 일자리 사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근직의 경우는 교육에서 제외하고 있었다.

안전보건담당자는 산림청의 특성상 현장직과 내근직의 구분이 명확하여 국유림 등 현장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직을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기술공무원이나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에 대한 위험보다 산림사업에 참여하는 영림단의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아 이들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영림단의 규모가 6~10명 내외로 영세하고, 위험을 통제하기 어려운 야외, 경사로 등에서 작업이 이뤄지며, 이동하며 작업을 수행하는 특성으로 인해 관리감독이 어려운 반면 「산안법」의 도급사업주 의무가 포괄적이라 체계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의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산림작업의 특성을 반영한 산림안전보건법을 제정하여 민간의 영림단을 포함한 산림사업 참여자 전체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과 예방 활동에 관한 의무를 반영하고, 임업 작업의 특성상 준수가 어려운 「산안법」 상의 의무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산림청의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체의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높이고 정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 군, 경찰, 소방 행정기관

가) 군 행정

국방에 종사하는 인력은 약 50만명이며 이중 군무원은 5만명, 공무원직은 1.3만명 수준이다. 군 특성상 유해·위험요인은 일반 사업장과 유사하나 종사자의 신분상의 특수성으로 「산안법」의 현업업무로 구분하여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에 지난 2020년 국방부에서 제정한 「국방안전훈령」에 따라 군인, 군무원, 공무원, 공무원직 근로자(이하 국방인력)에 대한 별도의 안전사고예방 규정을 두고 있다. 「국방안전훈령」은 「산안법」과 유사하게 안전보건인력의 선임(제9조),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준하는 국방안전보건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제10조), 국방안전관리집행계획의 수립(제11조),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제49조), 각급기관의 안전교육(제50조), 산보위의 의견수렴에 준하는 국방인력의 안전신고(제27조)의 규정을 두고 있다.

각급 부대장은 부여된 권한과 의무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임무를 부여하고, 관리감독자 등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각급부대의 장은 안전·보건 관리체제를 적용할 수 있는 조직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보건관리자를 모두 편성·임명하고, 「산안법」 제13조부터 제16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또한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교육 및 위험성평가 등을 실시하는 등 부대별(소속별) 특성을 반영한 안전보건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인터뷰시 군 담당자는 국방안전훈령에 따라 전체 국방인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를 하고 있으며, 「산안법」 상 현업종사자에 대한 별도의 관리를 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산안법」의 현업종사자 고시를 적용받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¹²⁾ 추후 이에 대한 관리체계와 현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관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 경찰 행정

경찰에 종사하는 인력은 약 13만~14만명이며 이중 공무원직은 2,700여명 수준이다. 본청과 23개 시도경찰청, 기동단 등을 포함해 약 300여개의 조직이 있다. 책임조직인 경찰병원은 별도의 사업장으로 구분하고 있다. 시도경찰청이 지자체에 소속되어 있으나, 본청의 전담조직에서 시도경찰청의 안전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경찰 등 공무원은 경찰복지법의 적용을 받고, 공무원직은 「산안법」의 적용을 받는다.

「산안법」의 안전보건관리체제와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규정은 현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현업종사자가 있는 부서의 장은 관리감독자, 시도경찰청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시도경찰청 단위로 안전보건인력을 선임(위탁)하고 있었다. 안전보건규정을 대신하여 경찰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12) 인터뷰 대상자는 「산안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에 대해 현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고시의 적용이 제외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해당 부분은 향후 시행령 별표 개정을 통해 현업종사자 고시의 적용 여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또한 상시 현업종사자수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산보위를 개최하고 있으며 주로 현업종사자가 참여한다고 답했다. 안전보건교육은 현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온라인과 집체교육을 혼합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해양경찰 행정

해양경찰에 종사하는 인력은 약 700여명으로 공무원 400여명, 공무직 300여명 수준이다. 정비창(제조업)과 교육원은 책임기관으로 별도의 사업장으로 구분하고 있다. 대부분의 공무직은 정비창(250명)과 교육원에 소속되어 있으며 본청의 공무직은 30명 수준이다. 본청의 전담조직과 일선 경찰서의 겸직 안전담당자 1명이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한다. 경찰 등 공무원은 경찰복지법의 적용을 받고 공무직은 「산안법」을 적용한다. 「산안법」의 안전보건관리체제와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규정은 현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안전보건규정을 대신하여 경찰복지법에 따라 중장기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 시행하고 매년 재해예방 매뉴얼을 작성하고 있다. 소속기관은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으로 산보위를 구성하는 곳은 없고 대신 노사간담회나 매뉴얼 작성 등을 통해 종사자의 안전보건 의견을 수렴하고 있었다. 안전보건교육은 현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온라인(외부)과 집체교육을 혼합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소방 행정

소방행정에 종사하는 인력은 약 6.7만명이며 이중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4.8만여명이고 전체 공무직은 파악할 수 없었다.¹³⁾ 본청에서 관리하는 기관은 본청, 중앙 119본부, 중앙소방학교, 소방연구원이며 지방청은 지자체에 소속되어 본청의 안전보건관리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방연구원은 공공행정이 아닌

13) 지자체에 소속된 지방청의 공무직 현황을 본청에서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

해당 업종으로 「산안법」을 적용하며 그 외 기관은 공공행정으로 분류하고 소속 공무원은 90여명 수준이다. 외근 소방공무원은 소방복지법의 적용을 받고 행정공무원과 공무원 등은 「산안법」의 적용을 받는다. 「산안법」의 안전보건관리체제와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규정은 현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안전보건규정을 대신하여 소방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현업종사자가 있는 부서의 장은 관리감독자로 선임하고 본청의 운영과(중대재해예방팀)에서 안전보건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소방연구원은 해당 업종을 적용하여 별도로 안전관리자(위탁)를 선임하고 있다. 상시 현업종사자가 100인 이하로 산보위를 개최하지는 않으나 별도의 보건안전관리위원회를 반기 1회 개최하여 공무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안전보건교육은 현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본청에서 연 1회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3)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안전보건관리현황

광역지자체의 경우 도청과 광역시청 2개소의 안전보건업무 담당자 3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1) 도청(A)

도청의 경우 관할지역 내 지자체(시, 군)에서 별도로 공공행정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도청 본청과 직속 소속기관에 한하여 안전보건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도청 내 전체 현업종사자는 약 800여명이고, 본청에 소속된 현업종사자 100여명, 소속기관의 현업종사자 700여명으로 구성된다. 본청과 소속기관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사업이 구분되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장으로 「산안법」을 적용하고 있다.

각 사업소는 공공행정으로 분류하여 상시 현업종사자수를 기준으로 안전보건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본청을 비롯한 100인 이상의 일부 사업장과 연구원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있으며¹⁴⁾ 현업종사자 근무부서에 부서장을 관리 감독자를 선임하고 있었다. 각 사업장의 상시 현업종사자수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자는 위탁하여 선임하고 있다. 또한 상시 현업종사자수 10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산보위를 개최하고 있으며 본청의 경우 현업종사자를 대상으로 하고, 사업소의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가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사업장별로 현업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연간 교육시간 중 일부를 본청에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었다.

도청의 담당자는 대민 기능을 담당하는 기초지자체의 안전보건역량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도청 차원에서 도내 건설발주공사 참여 사업자 교육 등 기초지자체의 안전보건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공동 안전보건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권한이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2) 광역시청(B)

광역시청의 경우 관할지역 내 기초지자체(군, 구)에서 별도로 공공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시청 본청과 직속 소속기관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시청과 별도 법인으로 분리되어 있는 상수도본부와 경제자유구역청을 제외하고 본청과 20여개의 소속기관을 사업장소, 업무 및 조직의 독립성을 고려하여 9개의 사업장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광역시청의 경우 다른 공공행정 기관과 다르게 현업종사자가 아닌 내근직과 현장직을 기준으로 「산안법」을 적용하고 있었다. 전체 종사자 약 8천여명 중 본청에 46.6%, 소속기관에 53.4%가 근무하고 있다. 본청의 내근직에 대해서는 공공행정업으로 해석하여 「산안법」의 안전보건관리체제와 안전보건교육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으나, 본청의 현장직 1,000여명과 소속기관의 종사자 전체에

14) 10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도 법적의무는 없으나 사업장 단위별 안전보건관리체제 운영을 위해 문서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지정해 두고 있었다.

대해서는 현업업무와 관계 없이 사업장의 업종에 따라 「산안법」을 적용하고 있다.

행정부시장(본청)과 소속기관의 장을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고 현장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장을 관리감독자로 선임하고 있다. 각 사업소별로 내근직을 제외한 현장직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300인 이상의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자 등 전담인력을 선임하고 그 외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있다. 산보위의 경우 상시 현장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 6개소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상시근로자 100인 미만 사업장은 본청의 산보위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산보위의 근로자 대표는 소속 사업장의 과반 노조에서 추천하고 있는데, 주로 공무원 노조에서 참여하고 있었다. 안전보건교육은 소속 사업장 단위로 내근직을 제외한 현장직에 대해서는 현업업무와 관계없이 모두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집합 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었다.

광역시청 담당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각 사업장 단위의 안전보건관리역량이 중요해졌으며, 「산안법」 상 의무를 준수하면서도 조직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갖추도록 본청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소속기관의 안전보건활동을 촉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자체의 역할이 커지면서 다양한 직무의 종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내근직에 대해서는 공공행정업을 기준으로 체제를 구축하되, 현장직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유해·위험도를 고려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와 교육이 이뤄지도록 실행 가이드를 내리고 있었다.

4)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안전보건관리현황

기초지자체의 경우 시청의 안전보건업무 담당자(2개소, 6명)와 구청의 안전보건업무 담당자(2개소, 3명)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1) 기초지자체 - 시청(C)

기초지자체(시군)은 여러 산하기관이 존재하지만 본청에서 공공행정을 일괄

관리하고 있었으며, 조직의 구성원은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청원경찰로 분류하고, 구성원 중 고용노동부 현업종사자 고시 기준에 따라 현업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모두 현업종사자로 분류하였다.

안전보건은 경영책임자는 시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부시장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고, 관리감독자는 현업사업 담당 팀장을 지정하고 있었다. 부서에서 현업업무를 하는 공무직이나 공무원이 있는 경우 현업종사자로 보고, 해당 부서를 현업부서로 관리하며, 팀장(관리감독자)이 현업종사자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안전보건인력은 현업종사자 수 기준으로 선임하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현업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전체 조직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실제 안전이나 회의 내용은 대부분 현업종사자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관련 규정은 내부적으로 수립, 협업부서에서 안전작업 관련 매뉴얼을 제·개정하고 있으며, 「산안법」 적용으로 안전보건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위험성평가,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검진, 안전보건 지도 점검 등의 안전보건 활동을 하며, 현업종사자의 경우 입사 시점 교육,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등 자체교육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업 관련 업무 중 자원순환과 환경미화 업무, 하수관리과, 녹지과 등 야외 업무가 신체적 부담이 크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단속 업무(주차, 하천 등)은 위험도가 높아 별도 관리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특히, 현업종사자, 기간제 근로자들의 상당수가 ‘고령’으로 위험 업무가 아니더라도 넘어짐, 개인 질병 발현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안전·보건관리자를 내부 직원으로 두고 있는데 경력 부족, 인사이동 등의 애로사항이 있어서 외부 경력자로 선임(계약직 공무원 등)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2) 기초지자체 - 시청(D)

산업안전팀으로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팀장1명과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청 전체가 하나의 사업장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현업 기준으로 인력을 구성하고 있었다. 구성원 중 고용노동부 현업종사자 고시 기준에 따라 현업업무를 하는 자들을 모두 현업종사자로 보고 있으며, 공무원도 현업종사자에 포함될 수 있으며, 주로 운전직 공무원들이 해당되었다. 산업안전팀에서 현업종사자를 관리하고 있으나, 기간제가 많아 수시로 변동 사항에 대한 파악 필요성이 높으며, 각 부서에서 현업종사자를 구분하여 본청으로 보고하나 각 부서의 현업업무의 해석에 따라 현업종사자를 분류하기 때문에 해석기준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안전보건경영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모두 시장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관리감독자는 현업 사업 담당 부서장(팀장)을 지정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현업종사자 대상으로 조직되어 있고, 현업부서 안전작업 매뉴얼 제·개정되어 운영되고 있었다.

현업종사자의 경우 입사 시점 교육(관리감독자가 자체적 또는 외부 온라인 교육),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산림공원과 녹지 유지관리 업무, 농기계임대사업소의 현업업무의 위험성을 제시하였다.

일부 공무원의 업무 또한 협업의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확대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매뉴얼 또는 업무의 범위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3) 기초지자체 - 구청(E)

안전보건관리체제를 살펴보면, 시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고, 안전관리자 1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현업종사자는 본청의 공원녹지과, 치수과, 도로관리과 등, 주민센터의 일자리사업 대상, 보건소의 청사관리,

방역소독, 조리수업 등으로 분류하며, 65개 부서의 현업업무(일자리사업 포함)를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보건관리체계는 본청에서 구축하고 관리관리감독자는 현장(현업) 부서장, 업무별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고, 현업종사자 중심으로 산보위를 운영하고 있었다. 위험성평가,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의 안전보건활동과 관리 책임자 중심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관리감독자들이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과 역량이 부족한 실정으로 교육 실효성이 떨어지고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고, 공공행정분야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설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초안전보건교육 제도와 같이 공공행정 분야에도 도입하여 교육 이수로 공공행정분야에서 종사할 수 있는 자격 부여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4) 기초지자체 - 구청(F)

본청의 안전보건관리부서에 팀장과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었고, 보건소의 경우 본청과 분리하여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 안전보건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소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또한 독립적으로 수행하여 타 기관과 차이가 있었으며, 본청과 협업하여 안전보건활동을 계획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청에서는 현업종사자 뿐만 아니라 유해·위험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별 팀장을 관리감독자로 선임하여 관리하고 있다.

안전보건교육은 현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집체교육 또는 집체 및 온라인 혼합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기관별로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안전보건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인력을 배치하고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였다.

(5) 소결

기초지자체는 광역지자체와 달리 대부분의 소속기관을 독립사업장으로 보지

않고 본청과 하나의 사업장으로 해석하여 관리하고 있었다.¹⁵⁾ 이러한 사업장 해석 방식은 안전보건관리 기능이 본청에 집중되는 형태를 갖는다. 안전보건관리체제를 살펴보면, 시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고, 현업종사자가 근무하는 부서의 장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한다. 본청과 소속기관의 현업종사자 수를 합산하여 본청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며,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등은 위험도가 높은 소속기관에 대해서 연 1~2회의 직접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고, 전체 소속기관에 대해서는 민간의 안전보건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고 있었다.

산보위는 전체 사업장의 현업종사자를 기준으로 본청에서 개최하고 있으며 현업종사자의 과반으로 구성된 공무원 노조에서 추천한 현업종사자가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안전보건교육은 현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집체교육 또는 집체 및 온라인 혼합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지자체의 안전보건 담당자는 본청에서 관리해야 하는 소속기관의 범위가 넓고 업무가 다양해서 외부 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해서 관리하는 실정이며, 향후 소속기관별로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안전보건을 관리할 수 있도록 담당 인력을 배치하고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예방이나 「산안법」 상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함에도 관련업무의 경험이 없는 직원이 배치되거나 자주 교체되어 담당인력의 전문성이 부족한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 이에 안전보건업무의 경험이 많은 임기제 공무원 등의 채용을 통해 안전보건관리 노하우를 공유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에서 공공행정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15) 일부 도서관, 수영장 등의 소속기관은 지자체 조례를 통해 문화재단, 도시관리공단과 같은 별도 법인을 통해 위탁관리 하고 있었다.

5) 광역교육청의 안전보건관리현황

광역교육청의 경우 광역교육청의 안전보건업무 담당자(2개소, 6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1) 사업장 단위의 구분

장소적 개념으로 ‘사업장’ 단위를 해석하는 것과 달리 교육청은 시·도교육청의 관할지역 전체를 통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해석하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에 따르고 있다.¹⁶⁾ 따라서 광역교육청 본청, 교육지원청, 소속 각급 학교를 포함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해석하여 교육서비스업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¹⁷⁾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산안법」 상의 안전보건전문인력의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전보건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 행정을 원활히 실행하기 위하여 일부 교육청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산안법」의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있다.¹⁸⁾ 조례에서는 “사업장”을 각 교육감 소속 기관 및 학교를 포괄하는 교육청으로 명시하고, “근로자”는 「산안법」 상 근로자 중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는 지역도 있고, 그러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지역도 있다.

16)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1823, 2021. 10. 18;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1754, 2021. 10. 13;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18, 2021. 7. 2.

17)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0601호, 2020.4.7. 시행)에 따르면 교육감에게 행정기구 조직 및 운영, 조직과 정원 조정, 인력 배치 등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지자체별 조례(「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등)를 통해 행정기구와 직속기관(교육과학정보원, 교육연수원 등)의 설치, 조직, 분장사무를 규정하고 있다.

18) 예를 들어 「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증진에 관한 조례」는 “사업장”은 ‘경기도교육감 소속 본청·교육지원청·직속기관 및 공립유치원, 공립학교(초·중·고·특수학교·각종학교)를 포괄하는 경기도교육청을 말한다.’고 하고(제2조 제1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는 사람을 말한다.’고 하면서(제2조 제2호) ‘이 조례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에게 적용한다(제3조)’고 하고 있다.

〈표 Ⅲ-52〉 교육청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조례 제정 현황

구분	조례명	근로자	사업장	비고 ¹⁹⁾
경기	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 제3조	제2조 제1호	현업
광주	광주광역시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호	제2조 제4호	현업
대구	대구광역시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호	제2조 제4호	
세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호	제2조 제4호 “교육기관”	
인천	인천광역시교육청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보건관리조례	제2조 제3호	제2조 제4호	현업
전남	전라남도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 조례	제2조 제3호	제2조 제4호 “교육기관”	
제주	제주특별자치시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호	제2조 제4호	
충북	충청북도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4호	제2조 제1호 “교육기관”	

(2)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교육청은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함에 있어 주로 부교육감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²⁰⁾ 본청과 소속기관,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의 현업업무 종사자 수를 합산하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을 선임하고 있다.²¹⁾ 본청에 안전보건관리담당 부서를 설치하고, 안전보건관리를 총괄하는 공무원을 배치하고 있으며, 각

19) 조례의 적용대상을 근로자 중 현업업무종사자로 제한하고 있는지 여부

20) 일부 교육청에서는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지도에 따라 교육감을 안전보건책임자로 지정하고 있다.

2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하는 현업업무종사자로 한정하고 있음에도 산정기준에는 교육행정기관(본청, 지원청, 기타 직속기관)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대다수의 현업업무 종사자들이 각급 학교에 소속되어 있고, 기관 근무자 수가 많지 않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소속기관장과 학교장을 관리감독자로 선임하고 행정실장과 영양교사(또는 영양사)가 관리감독자의 지휘 아래 시설과 급식업무의 수행을 관리하고 있다.

본청에 소속된 기관과 교육지원청 및 각급 학교의 수가 많아²²⁾ 본청에서 모든 각급 학교의 직접적인 점검은 어렵기 때문에, 안전보건부서에서는 각 학교의 안전보건관리계획과 활동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각급 학교 등의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관리를 주로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하여 점검 및 관리하고 있다. 각 교육지원청에도 안전보건관리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데 주로 겸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본청에서 요청하는 사항을 지원하고 있었다.

본청의 안전보건담당부서의 인원은 각 교육청 단위로 차이가 있으나 주무관 중 선임은 주로 6급 주무관인데, 순환근무를 하여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년 정도로, 근속이 길지 않다.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민간 경력이 있는 관련 전문자격사를 주로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고 있고, 이들은 2019년 이후에 임용되기 시작하여 가장 장기간 근무한 사람은 약 5년 정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안전보건부서 외에 급식관리부서에서 보건관리자를 별도로 임용하기도 하였다.

본청의 안전보건업무 담당부서에서 관내 기관 및 각급 학교를 모두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²³⁾ 모든 기관 및 학교에 대한 직접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는 어렵고, 연간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재해예방 활동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각 기관과 학교의 위험성 평가, 작업환경측정 등의 활동은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교육지원청의 노무관리부서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가 지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들은 주로 다른 업무를 하면서 안전보건관리 “지원”업무를 분장받아 수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안전보건 관련 공문 시행 시 행정사항을 각급 학교와

22) 교육청 중 제일 규모가 큰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본청에서 관내 25개의 교육지원청과 2,500여개의 각급학교 소속 약 23,000여명의 현업종사자를 관리하고 있다.

23) 통상 산업안전보건팀의 인원은 3~6명 정도이며, 시·도교육청 중 제일 규모가 큰 경기도 교육청의 경우 본청에서 관내 2,500 여 개의 각급 학교 소속 약 23,000 여 명의 현업업무 종사자를 관리하고 있다.

기관에 전달하고 현황을 취합하는 역할을 하는 등 본청에서 요청하는 사항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각 소속기관과 각급학교는 기관장 또는 학교(원)장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하여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급식실의 경우 영양(교)사 등, 시설 및 기타직종의 경우 시설관리담당자(주로 행정실 소속)를 지정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안전보건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교육청에서는 사업장 내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본청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 있다. 교육청 단위에는 현업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복수의 노동조합²⁴⁾이 결성되어 있고,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전체 현업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여 근로자대표를 선출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 위원의 구성을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교육공무직(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한 지역도 있었고, 일부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영양교사, 시설관리직, 운전직 등)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지역도 있었다. 인터뷰 대상 교육청의 근로자위원 중 노동조합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업종사자의 과반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에서는 소속 조합원 수,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직종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임하고 있으며, 교육청에서는 분기별로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산보위 운영상의 애로사항으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근로시간, 휴식, 배치정원 등 안전보건조직에서

24) 교육공무직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등이 있다.

결정하기 어려운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안전으로 올라오는 경우 제도 운영의 어려움과 한계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안전보건교육 대상 및 운영

교육청은 현업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여 본청에서 총괄하여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일부 시·도교육청은 자체적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기도 하고, 본청 또는 교육청 소속 연수원에서 집체교육, 온라인교육 등을 실시하기도 하며, 안전보건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기도 하였다.

안전보건교육에 관하여는 분기별로 연간 4회에 걸쳐 실시하도록 하고, 학기중에는 온라인교육, 방학중에는 집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안전보건교육의 내용은 본청에서 관내 현업종사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므로 각 직종별 직무수행상 드러나는 유해·위험요인을 고려하여 구성되기보다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과 종사자 수가 많은 직종을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구성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어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5) 기타 안전보건활동

교육청은 각 소속기관 및 각급 학교에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었다. 본청 안전관리총괄부서에서 위험성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외부 안전보건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정기적으로 평가 및 점검을 하고 있었다. 본청 소속 인력의 한계가 있어 관내 전 현장에 방문하여 위험성평가에 참여하기는 어렵고, 위탁기관이 실시한 후 각 기관 및 학교의 관리자와 종사자의 의견을 듣고 관리감독자에 보고한 후, 본청에 실시 여부를 정기적으로 보고하여 관리하고 있다.

다만 일부 교육청은 산업재해가 발생한 기관 및 학교에 방문하여 점검 및 컨설팅을 하기도 하고, 3개년 계획으로 본청 안전관리자등이 직접 현장을 방문 또는 정기순환점검을 실시하여 외부 위탁을 통한 위험성평가를 보완하고 있다.

6) 시사점

중앙행정부처와 광역지자체는 본청의 사무와 구분하여 소속기관이 별도의 장소에서 독립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 업종과 규모에 따라 「산안법」을 적용하고 있었으며, 공공행정업에 속하는 대부분 사업장은 상시 현업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산안법」 상의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반면 기초지자체는 본청과 소속기관을 통합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공공행정업으로 「산안법」을 적용하고 있다. 본청과 소속기관 전체의 상시 현업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본청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고 현업종사자에 대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두 유형의 특징을 살펴보면, 전자는 장소적으로 분리된 사업장 단위로 규모와 업종에 따라 「산안법」을 적용하여 소속 사업장 단위로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 운영하게 하려는 「산안법」의 안전보건관리체제 규정 취지와 사업장 단위의 해석 기준에 부합한다. 다만 장소적으로 분리된 사업장 단위로 상시 현업종사자 수를 산정하는 경우 규모에 따라 안전보건전문인력의 선임, 산보위 운영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후자는 본청과 소속기관을 통합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상시 현업종사자수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산보위를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사업장의 주된 업무에 따라 「산안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보호대상이 현업종사자로 제한된다는 점, 본청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제와 활동이 수행되어 사업장 단위의 안전보건활동이 촉진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으며,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사업의 독립성이 있는 경우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는 법 해석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 사업장의 주된 업무에 따라 업종을 정하고 규모와 유해·위험도에 따라 법의 일부를 적용 제외하는 「산안법」의 취지를 몰각시킬 수 있으므로 전자에 따라 법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전자의 해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의 공백을 보완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통해 체제구축 및 운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 대해서는 제5장에서 살펴보겠다.

한편 광역교육청에 소속된 각급학교와 같이 모든 사업장이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하고, 본청의 방침에 따라 동일한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각급학교의 규모가 작아 독자적인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어렵다면 본청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다만 본청에 소속된 각급 학교의 수가 많은 경우 본청 중심으로 안전보건활동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발생한다.²⁵⁾ 따라서 현장의 안전보건활동을 지원하는 업무부문(시설, 조리 등) 또는 지역단위(교육지원청) 스태프조직의 기능을 강화하고, 각급 학교의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여 현장에서 실질적인 안전보건활동이 추진될 수 있도록 스태프 조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5. 공공행정 등 유해·위험대상업무 종사자 인터뷰

1) 조사 개요

중앙행정기관, 광역 및 기초지자체, 광역교육청 등 22개소 29명의 유해·위험대상 업무 종사자 및 현업업무 관리자에게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본 인터뷰 조사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다(OSHRI-202405-HR-014).

25) 광역교육청 중 제일 규모가 큰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본청에서 관내 25개의 교육지원청과 2,500여개의 각급학교 소속 약 23,000여명의 현업종사자를 관리하고 있다.

〈표 Ⅲ-53〉 유해·위험 대상 업무 종사자 인터뷰 현황

소속	구분	대상	개소	인원
공공행정	1	수도검침	1	2
	2	방문간호사, 방문상담	2	2
	3	보건소	3	5
	4	농작업 대행 및 농기계 대여, 임대 및 수리	3	5
	5	콜센터 상담	1	1
	6	주차, 하천 단속	3	5
	7	도서관 사서	2	2
	8	체육시설 강사*	1	1
	9	산림보호 등 현업**	1	2
학교	10	특수교육 실무사	2	2
	11	과학실무사	2	2
	12	도서관 사서	2	2
	13	수상안전요원	-	-
국방행정	14	시설, 환경미화, 조리 등 현업**	4	4

* 현업에 해당하는 체육강사는 교대근무로 운영팀 관리자 면담으로 대체

** 현업에 해당하는 국방행정과 산림보호는 안전보건담당자 FGI로 운영실태 확인(제외)

인터뷰대상 광역교육청의 경우 각각 특수교육지도사, 교육행정사, 도서관 사서로 직종명을 정하고 있는데,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각 직종명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따라 다르게 명명될 수 있다.²⁶⁾ 이하에서는 인터뷰대상 광역교육청에서 사용하는 직종명을 표기하여 내용을 작성하였다.

26) 지역에 따라 특수교육지도사의 경우 특수교육실무사, 특수교육실무원 등으로, 사서의 경우 사서, 도서관 사서, 학교도서관운영실무원 등으로, 과학실무사의 경우 과학실험실무원, 교육실무원(과학), 교육행정사, 행정실무사 등으로 칭해진다. 물론 직종명은 다르나 실질적으로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2) 공공행정기관 소속 종사자 인터뷰

(1) 수도검침

가) 주요 업무 설명

수도검침업무를 매월 21일부터 익월 4일까지 14일간 진행한다. 검침 작업 시 계량기 설치상태 등도 확인한다. 고지서를 송달하고 홍보물 송달, 체납독려, 필요시 수도를 잠그거나 열어주는 정수/개전 작업도 행한다.

나) 유해·위험요인

먼저 55세 이상 종사자가 60%에 이르러 사고위험이 증가한다. 장소적으로도 수도계량기함의 위치에 따라 떨어짐(사다리), 넘어짐, 끼임, 밀폐공간 질식, 야생동물 및 수풀로 인한 사고와 질병 위험이 존재한다. 밀폐공간의 경우 공기농도측정기가 구비되어 있으나 업무시간에 쫓겨 사용하기 어렵다. 근골격계 질환 우려도 있다(중량물 취급, A사업소 기준 검침원 인당 월 2,500개(14일간) 검침). 폭염, 한랭 등 계절적 요인에 따른 온열질환 등 건강상 위험과 빙판 등 넘어짐 위험도 높다. 또한 체납독려 등 감정노동에 따른 위험도 상존한다.



[그림 III-8] 수도검침 작업장 현황

다)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활동

사업장별 현장 근무자수 100명 이상은 자체 산보위를 운영하고, 100명 미만은 본청 산보위에 통합 운영한다. 피복비와 안전용품 구매, 수도전 설치 위치 조정, 개보수 요청, 원격점검 설치 대상 협의, 건강보호 방안 등이 협의된다. 안전보건 교육은 사업소 차원에서 진행하는 관리감독자 주도 하에 월 1회(1시간) 집체교육과 본청 실시 온라인 영상교육 12시간이 진행된다.

라) 종사자의 의견

자체 안전보건교육은 업무와 관련된 내용으로 실시되어 효과성이 높으나 온라인 교육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실시된다. 계절적 요인이 의한 위험이 높아 피복비, 안전용품 등의 추가적 지원이 필요하다. 인터뷰 대상자의 소속 지자체에서는 수도점검원을 현업종사자에 준해서 관리하고 있었으나, 타 지자체에서는 현업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곳도 있다. 업무수행 중 산재 위험이 높아 현업종사자로 지정하여 「산안법」의 전부 적용할 필요가 있다.

(2) 방문 간호사, 방문 상담

가) 주요 업무 설명

보건소 방문간호사의 경우 가가호호 자택방문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을 2~3개월 주기로 방문하여 건강서비스(혈압, 당노체크 등)를 제공하고 있다. 경로당 등에 대한 집단관리 사업도 시행한다. 간호사 1명 당 집단관리 제외 시 200가구 수준을 관리하며 한 달에 80~100건 정도의 관리업무를 수행한다(1일 5~6건). 담당 가구 수가 많아 2인 1조 작업은 어렵다. 신규 고객 중 위험요인이 파악되는 경우 한시적 2인 1조 작업을 수행한다.

지자체 방문상담의 경우 주로 간호사 자격이 있는 의료급여관리사들이 행한다. 주되게 의료급여 수급 대상 의료급여 이용 안내 및 과다 이용자 상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과다 사용자 지도는 월 10~13일 정도 4시간 내외에서 외근이 이루어진다.

나) 유해·위험요인

방문간호사의 경우 민원인으로부터의 돌발행동(위협, 성추행, 위생문제 등), 감정노동 문제와 이동 중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 2인 1조 작업 권장하나 업무 물량 등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신규 가정 등 파악되지 않은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2인 1조로 방문한다.

방문상담의 경우에도 민원인의 돌발행동 우려가 있다. 의료급여 제한 등 민원인 불만 등에 의한 감정노동 위험과 열악한 주거환경 방문 시 위생 등에서 유해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소에는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사전에 기록을 파악하여 위험성이 있는 경우 주민센터 등의 직원과 2인 1조로 움직이고 있다.

다)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활동

방문간호사의 경우 산보위 참여대상이 아닌 곳이 다수이다.²⁷⁾ 위험성평가는 주로 보건소 주무과와 현업(시설관리 등) 근로자가 참여하여 방문간호사는 위험성평가를 인식하지 못했다. 업무수행에 필요한 보호구는 지급받고 있으며 비상대응 훈련(소방서 합동) 외에 별도 교육이나 훈련을 받는 것은 없다. 다만 통합 건강 증진사업 지침서(건강증진개발원)에서 인력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제시되어 있고 지침서 보수교육을 받는다(민원인 자택 방문 시 2인 1조 작업실시 등).

방문상담의 경우 산보위 참여나 안전보건교육 모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자체 본청 내 부서라 공공행정 업무라는 인식이 상당해 보인다. 다만 상시적인 팀 내 안전보건소통이 가능하여 불편은 없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교육(의료급여관리사

27) 개별 보건소(분소 포함)의 전체 근로자 수는 100명이 넘었으나 공공행정업으로 분류하여 주로 본청에서 현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산보위를 개최하고 있었다.

정기교육) 시 안전보건에 관한 내용도 일부 포함되고 있다(년 1회, 2시간 이내).

라) 종사자의 의견

방문간호사의 경우 내근직에 비해 사고발생 위험도가 높으나 보수교육 등을 통해 안전교육을 받고 있었다. 따라서 신규인력에 대한 악성 민원 대응, 직무스트레스 관리 등의 교육이 필요해 보인다.

방문상담의 경우 민원상담의 성격이 강한 업무특성상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업무지식 등의 노하우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사고위험을 교육으로 해결하기는 어렵고 별도 안전보건교육까지는 불필요하다는 인식이다. 보호구로 마스크 등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했다(복지부-서울시 공동사업으로 보호구 예산 확보, 사업 프로세스 등에 대한 개선은 정부-시 차원 개선 필요).

(3) 보건소

가) 주요 업무 설명

보건소는 예방접종 및 방역 등 감염병 관리, 의료기관 점검 및 관리, 방문 건강관리, 재활 등 다양한 업무가 있다. 진료팀은 독감 예방접종 등 진료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보건행정팀은 관내 의료기관(병원, 약국 등)의 점검, 방역소독(외부 용역)을 관리하고 있었다. 재활팀은 장애인 등 방문 민원인을 대상으로 하여 장애인 프로그램(운동, 심리치료, 비대면 수업 등) 등을 운영 중이다. 기타 행정업무(기획, 세부예산 관리 등)도 병행하고 있다.

나) 유해·위험요인

보건소 진료팀은 코로나 유행 등에 의한 감염 위험이 있으며, 그 외에 유해·위험은 크지 않다고 답변했다. 재활팀은 악성 민원 및 폭언 등 감정노동에

따른 위험이 있으나 재할 운동기계(중량물) 이동 작업 등은 공익 및 시설계 직원이 지원하여 직접적인 위험은 낮다고 한다. 민원인이 방문하면 운동기구를 이용하도록 행정업무 중심의 일을 하고 있고 직접적 신체접촉은 없다.

다)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활동

보건소 진료 및 재할 업무 담당자들은 산보위 참여대상이 아니며 보건소 내부 회의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위험성평가는 주로 시설관리 등 현업종사자만 참여하고 있으며 위험성평가에 참여해야 한다는 인식은 없었다. 비상대응 훈련(소방서 합동) 외에 별도 훈련은 없다.

라) 종사자의 의견

보건소의 업무는 방문사업을 제외하면 주로 프로그램 운영 등의 행정이 중심이다. 일반 병원과 달리 공공행정의 성격이 강하다. 악성 민원에 대한 대처와 개선을 위한 교육이나 의견수렴은 필요할 수 있다.

(4) 농기계 대여, 임대 및 수리(농작업 대행)

가) 주요 업무

농민들에게 농기계 대여, 농기계 점검수리, 순회수리 및 교육, 농작업 서비스(고령자 등 대상 밭 갈아드리기 등) 등을 행하고 있다. 순회수리 등 현장 방문 업무는 주로 공무원 1인과 기간제 1인이 조를 이뤄 수행하고 있다.

나) 유해·위험요인

농기계 입출고 시 중량물 인양 작업, 동력 회전축 끼임 위험, 그라인더, 연삭기, 절단기, 예초기 등 날 접촉, 용접 업무에 따른 화상, 감전 위험, 부품 교체 등 시 중량물 취급 위험이 있다.



[그림 III-9] 농업기술센터 내 작업장 현황

다)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활동

농업기술센터의 경우 조직, 장소가 독립되어 있으나 인력규모가 작아(40~60명) 본청의 안전보건관리체제에 통합 운영되고 있다. 지자체별로 본청 산보위에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곳도 있고 아예 산보위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도 있다. 본청에서 선임한 안전 대행기관에 의해 현장 지도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다. 안전보건교육은 관리감독자 교육,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근로자 교육은 온라인 교육과정으로 모두 구성된 경우도 있고, 매월 1시간씩 집체교육을 하고 나머지를 온라인 교육과정으로 구성하기도 한다. 보호구, 안전용품 등의 구매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다. 주로 본청의 안전담당 부서에서 매월 안전에 관한 안내들이 시달되고 있다.

라) 종사자의 의견

농기계 수리 정비의 특수성으로 전문과정이 부족하여 내부에서 전문성을 갖출 수 있게 내부 강사 육성이 필요하다. 내부 안전교육과 외부 안전교육이 모두

활용될 필요가 있다. 소통은 모두 원만한 편이다.

(5) 콜센터

가) 주요 업무 설명

행정안전부에서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²⁸⁾를 통해서 기본적인 민원응대를 하고 있지만, 별도로 안전개선과에 있는 안전신고관리단에서 약 5명의 공무원이 안전신문고 민원상담과 대응, 안전신고 분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업무 수행자 전원 공무원으로 전화상담과 이에 대한 응대 업무가 많아 일부 직원의 경우 헤드셋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유해·위험요인

민원대응 시 폭언, 욕설, 반복 전화 등으로 인한 어려움이 존재한다. 감정노동 등 직무스트레스, 목소리 이상, 근골격계 질환(손목, 어깨 등)의 위험이 있으나 예방에 대한 인식은 낮다. 법, 제도 등 업무수행의 전문성이 요구되며 일반적인 민원업무와는 차이가 있는 역할이 부여된다는 인식이 높았다.

다)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활동

행정안전부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선임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민원응대 업무와 관련된 안전보건활동은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 및 보건관리자 등은 공무원(환경, 미화 등), 시설 업무자 등이 주요 관리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28)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모든 행정기관의 업무에 대한 DB(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실시간으로 전화 민원을 상담 안내하고 있다. 국민콜 110은 여러 단계의 자동응답(ARS)을 거치지 않고 전문교육을 이수한 상담사가 직접 상담하고 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마음건강프로그램의 운영을 인식하고 있으며, 갑질 등의 피해가 있는 경우 휴게 등의 직장내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라) 종사자의 의견

공무원 대상의 안전보건관리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고,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필요하다. 특히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상담,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6) 주차 및 하천단속

가) 주요 업무 설명

주차단속의 경우 주차단속 업무 및 순찰, 어린이보호구역 상시순회(2인 1조) 등이 이루어진다. 정부가 제공하는 주차단속 앱을 이용하고 있다. 현장조치 시 서손(취소 및 계도), 미서손(과태료 부과)이 이루어진다.

하천단속은 ‘하수도 시설관리(패트롤) 및 하수관련 민원 대응’(우수관에 오수 버리는 경우 등 단속), ‘하수시설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3인 1조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장마철 및 겨울철에 업무량이 많다. 지자체에 따라 하천단속 업무 수행자들은 현업으로 지정(시설관리로 분류)하고 있기도 하다.

나) 유해·위험요인

주차단속의 경우 조당 일 30~40건 정도가 처리(주말 80건 정도)되어 업무강도가 높은 편이다. 민원인과의 다툼과 지속적 민원제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다. 골목 내 단속 및 야간 단속 시에는 접촉사고(차, 키보드 등) 위험이 있다.

하천단속의 경우 야외작업에 따른 온열 및 한파에 의한 질환, 수풀과 벌 등에 의한 위험이 있다. 작업관련 중량물 취급(맨홀 파손 시 교체 등) 위험, 밀폐작업 위험, 하천 오물 취급에 따른 위험 등이 있고, 고령화에 따른 위험(근로자 60%가

50대 후반)도 존재한다.

다)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활동

주차단속의 경우 산보위 참여대상은 아니나 사업소 내 안전보건소통은 충분한 편이다(바디캠, 2인 1조 반영 등). 야간근무자의 경우 특수건강검진도 시행되고 있다. 관리감독자 지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으나, 본청의 과(주차관리과) 팀장이 월 정기적 교육을 시행하며, 년 1~2회 외부강사 초빙 교육도 있다.

하천단속의 경우 시설업무도 수행하여 산보위에 참여 중이다. 안전보호구 지급은 잘 이뤄지는 편이고 본청에서 안내 및 설명도 잘되는 편이다. 안전보건교육은 2주에 1회 1시간 정도 시행되고 있다. 교육은 외부위탁 교육으로 이루어진다.

라) 종사자의 의견

주차단속의 경우 안전보건교육은 받고 있으며 산보위 참여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았다. 다만 보호구 지급에서 형광조끼의 기능을 높이길 희망했다. 기타 복지는 탈의실 제공, 락커 제공 등 잘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다.

하천단속의 경우 지자체의 안전보건활동 및 조치에 대해 긍정적이고, 지원 역시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다만, 교육 내용을 다양화하고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7) 도서관 사서

가) 주요 업무

민원 처리, 자료실 서가 정리, 연체도서 관리, 상호대차, 책마중, 간행물관리, 자료구입 및 자료관리시스템에 도서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마지막 업무는 정기적으로 대량의 도서에 대한 반복 작업이 수행되고 등록 업무의 경우

하루 종일 모니터 작업이 진행되고 도서 이동이 빈번하여 신체적 노동이 필요하다.

나) 유해·위험요인

사고성 재해 위험보다 주로 근골격계 질환 유발 작업이다. 자료 입력 및 도서 운반 작업으로 인한 손목 등에 질환이 우려된다. 기타 악성민원과 간혹 발생할 수 있는 낙하, 추락, 베임, 밀폐 실내 근무에 따른 공기질 문제 등이 있다.



[그림 Ⅲ-10] 도서관 내 작업장 현황

다)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활동

산보위가 지자체와 별도로 도서관에서 구성되어 운영된다.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업무수행에 필요한 보호구(장갑, 사다리, 북트럭, 마스크, 손목보호대 등)를 지급받고 있다. 직원 중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대상은 없다. 안전보건교육은 분기별로 집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전년도 무재해 달성).

라) 종사자의 의견

특히 위험하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도서 정리의 경우 근로장학생들이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도움이 되고 있어 업무량이 과하지는 않다. 학생 도움이 없는 경우 업무강도가 상승한다. 근골격계 질환은 다수 종사자에게 나타나고 누적된 피로로 인해 발생된다고 생각한다. 예방은 개인에게 맡겨진다. 안전보건교육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의 제도는 현재 시행되는 수준으로 유지가 필요하다고 본다.

(8) 체육시설 강사(운영팀 관리자 면담)

가) 주요 업무

수영지도 등의 체육 업무를 교대근무(강습 시간)로 수행하며, 회원 대상의 안전 관리(강습 중)를 한다.

나) 유해·위험요인

수영장, 체육시설 이용 중 미끄러짐, 회원 관리의 민원에 따른 감정노동 등은 존재한다.

다)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활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은 하지 않으며, 안전보건 관련 팀에서 관리한다. 위험성평가, 작업환경측정, 안전 보호구 지급 등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안전보건 관련 매뉴얼은 팀별로 관리하고 본청에 보고하는 체계로 운영된다. 안전보건교육은 대상에 따라 분기별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되고 있다.

라) 종사자의 의견

특히 위험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안전보건관리는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하며, 현업업무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 교육청 소속 종사자 인터뷰

(1) 학교 특수교육지도사

가) 주요 업무 설명

특수교육지도사의 주요 업무는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활동을 지도하는 업무인데, 구체적으로는 등학교 지원, 수업 지원, 급식지도, 기타 신변처리 지원 등이 있다.

나) 유해·위험요인

특수교육지도사는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휠체어 밀기, 화장실 보조, 버스 상하차지원 등 특수교육대상 학생과 밀착하여 들어올리고 부축하는 등의 무겁고 반복되는 동작을 하고 있다.

중증학생을 돌보는 과정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완력을 사용하여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이 발생하기도 하며, 학생이 돌발행동을 하는 경우 예측을 할 수 없는 부상이 발생할 수 있다.

돌봄의 대상이 특수교육대상 학생이라는 점에서 학생이나 휠체어를 올리고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게 되고, 돌발행동으로 인한 깨물림, 뇌진탕 등 신체 부상의 위험이 크다는 점이 다른 돌봄직종보다 보호 필요성이 있다. 또한 학생들은 8:30 경 등교하여 15:00~16:30 경 하교하므로 학생들의 식사시간을 포함하여 일과시간 내내 활동을 지원하므로 통학지도사와 비교하였을 때 업무시간도 길고 업무강도도 크다고 할 수 있다.²⁹⁾

그 외에도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학부모와 교사 사이에서 악성민원에 노출되기도 하고, 일부 교사의 수직적 업무 지시로 갈등이 발생하여 스트레스를 받는 특수교육지도사가 적지 않다고 답변하였다.

29) 통학운전기사, 통학지도사는 현업업무로 지정되어 있다.

다) 안전보건조치

학교에 위험성 평가는 매번 실시되고 있으나 그 주요 대상이 특수교육지도사의 근무환경이나 위험요인과 동떨어져 있어 거리감이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특수학교의 종사자들로부터 형식적으로 조사하고 조사방법에 대한 안내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견을 들은 적 있다고 하였다.

특수교육지도사들의 재해 예방을 위한 물품은 별도로 지급되고 있지 않으며, 휠체어에서 좌석 이동시 사용하는 보조도구(슬라이딩 패드 등)의 사용은 지역마다 사용하는 곳도 있고 사용하지 않는 곳도 있었다. 사용하지 않는 학교에서는 학생의 장애 특성상 위험할 수 있어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특수교육지도사를 대상으로 「산안법」 상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는다. 특수교육 관련 직무연수는 방학 때마다 실시하고 있으나 그 주된 내용이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나 인권 보호 등으로 안전사고 예방 관련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안전보건에 관한 문제가 생기면 해당 사업부서(특수교육 담당부서 또는 안전보건관리부서)에 의견을 전달하거나 직무연수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공식적인 절차는 없으며 청취하는 데에 그친다.

라) 종사자의 의견

특수교육지도사는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개진을 위한 공식적인 절차의 필요성이 높다고 인식한다. 산보위 참여 기회나 안전보건교육 제도가 없어 종사자 스스로가 「산안법」 상 보호를 받는 근로자라는 인식이 부족하며, 사회적 인식도 조성되길 희망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면 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면 효율적인 특수교육대상 학생 지도 방법이나 신체적인 부담을 더는 지도 방법과 같이 직종에 맞는 교육내용을 학습하길 희망했다.

(2) 학교 행정실무사(과학업무담당)

가) 주요 업무 설명

인터뷰 대상자가 소속된 교육청에서는 교무, 행정, 과학, 전산(정보)업무를 하는 학교지원인력을 행정실무사로 통합하여 칭하고 있다. 행정실무사 중 과학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과학 업무는 통상 과학 실험실 및 기자재 관리, 과학교구 확충 및 폐기, 과학실험용 재료 준비 등의 업무를 말한다.

나) 유해·위험요인

과학실험 준비과정 중 시약을 소분하여 나누어주거나, 실험 후 발생한 폐수, 폐시약을 담아 폐수 수거업체에 인계하는 과정에서 유해·위험물질에 노출될 수 있다. 학교별로 MSDS를 매년 작성하여 비치하고, 폐시약장과 폐수통은 모두 이중잠금되어 있으며, 비상사고시에 대비한 눈세척기 또는 비상샤워기를 구비하고 있다.

과학 업무를 하는 행정실무사는 주로 초등학교에 배치되고 있으며, 상급학교에는 과학교사가 배치된다. 초등학교는 시약의 농도나 유해성이 중등학교에 비하여 약하고, 행정실무사는 과학수업 외에도 전산, 교무 등의 행정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다. 과거 언론 등에 노출되었던 포르말린 누출 사고 등의 위험에 대해 최근 수년간 어류 표본병 등을 수거하여 현재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유해·위험 시약의 사용 시 실무사만 실험하고 학생들은 지켜보는 형태로 수업방식을 개선하였다.

과학실험에 관하여는 각급 학교별 「과학실험안전매뉴얼」(교육부, 교육청, 한국과학창의재단)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과학실험안전매뉴얼은 ①응급상황 대응, ②과학실험실 안전설비와 안전장구, ③안전지도(과학실험실 안전수칙-학생 및 교사), ④화학약품의 보관, 관리, 폐기, ⑤사고 상황별 대처방안

등을 그림과 표를 이용하여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다) 안전보건조치

17개 시도교육청 중 12개의 광역교육청은 ‘과학실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³⁰⁾ 시행하고 있다.³¹⁾

산보위에 참여하고 있지 않아서 실무사의 재해예방이나 안전보건 관련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창구가 한정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과학실에는 과학실 안전기준에 따라 학생용 장갑, 마스크, 방독면 등을 구비하고 있으나, 교직원에 대해서는 안전보호구를 일부 사이즈별 1개씩 구매하여 공용으로 사용한다고 답변하였다.

인터뷰대상 교육청에는 ‘과학실 안전 관리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조례에 따라 교육감이 과학실 안전관리담당자 및 과학수업 담당 교직원을 대상으로 과학실 안전 연수를 시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교사, 행정실무사 구분 없이 연간 15시간 이상 과학실 안전관리 연수를 수강하고 있다.

라) 종사자의 의견

교육청과 학교 조직은 현업업무 종사자 직종을 위주로 안전보건관리체제와 안전보건교육이 적용되고 있어, 비현업종사자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30) 경기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등 총 12개 시·도교육청이 유사한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31)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학교장은 과학실에 안전수칙, 안전사고 대처요령, 대피도, MSDS등을 게시 또는 비치, 관리하도록 하고(제4조) 각급 학교 과학실 현장점검 등 조사를 학기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제5조). 또한 교육감은 과학실 안전관리담당자 및 수업 담당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실 안전 연수를 시행해야 하고(제6조 제1항), 학교장은 과학실을 사용하는 학생 및 교직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제6조 제2항). 또한 교육감에게 폐수 및 폐시약 관리 계획 수립 및 회수 처리할 의무 등을 부여하고(제10조), 사고 유형별 대책, 대피요령 등 보고체계를 구축하고 사고발생시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제11조).

참여와 정례적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반면 과학 담당 행정실무사는 주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여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고 화학물질의 농도가 묽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경미한 수준이고, 방수포, 소화기등이 잘 갖추어져 있어 조기 진압이 가능하여 위험도가 높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과학실 안전 관련 의무교육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내용으로 구성하는 「산안법」 상 안전보건교육이 별도로 실시될 필요성이 낮다는 의견도 있었다.

(3) 학교 도서관 사서

가) 주요 업무 설명

학교 도서관 사서는 크게 도서관 프로그램의 운영과 장서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구체적으로는 도서관 시설 관리, 연간 도서관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도서관 행사 프로그램 운영, 장서 구매 및 점검, 폐기 등이 포함되어 있다. 종래 사서는 장서 관리를 주로 수행하여왔고 인식도 그러하였으나, 최근에는 문해력 독해의 강조와 독서에 관한 동기부여 등 도서관 행사 기획 및 운영의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

나) 유해·위험요인

도서관 사서는 주로 무거운 서적을 반복적으로 드는 동작을 취하여 손목, 팔 등의 근골격계질환이 자주 발생하며, 서가의 먼지나 알러지로 인한 호흡기질환의 발생 위험이 높다고 답변하였다.

그 중에서도 1년에 1회 약 3-5일 정도 전체 장서의 인식표와 서류상의 도서목록을 대조하여 확인하고, 노후도서를 폐기하는 작업을 하는데, 이 때 집중적인 작업으로 인하여 근골격계질환의 발생이 잦다고 답변하였다.³²⁾

32) 지자체의 도서관과 달리 국가장학생 등의 봉사인력이 없이 담당 직원이 서고 정리를 하

또한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서가가 낮게 설계된 경우가 많아 일상적인 장서 정리 시 관절에 부담이 가는 자세를 취하게 된다고 한다.

다) 안전보건조치

학교 교장 또는 교육청에서 학교도서관 컨설팅 사업의 정기점검시 업무상 고충을 전달하고 있으나 의견이 잘 반영되는 것 같지 않다고 인식했다. 도서관 시설 내 소독기와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책 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장비를 추가로 구매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기타 손목 부상 방지를 위한 아대나 먼지를 막아주는 마스크 등은 개인이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다.

사서 직무연수는 교육지원청 등에서 외부강사를 섭외하거나 원격으로 실시하는데, 필수연수로 연간 20시간 정도 실시하고 있으나, 장서 점검의 실시 그 자체를 강조할 뿐 장서 점검의 노하우 공유나 근골격계질환 예방 등의 사안에는 주안점을 두고 있지 않다.

라) 종사자의 의견

사서 업무가 현업종사자 범위에 포함되면 도서관 업무에 위험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인식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변하였다. 연간 1회 진행되는 전체 장서 관리는 단순업무이고 신체적 부담이 커서 장서점검비용이라는 항목으로 예산을 배정하여 위탁으로 실시하였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면 근골격계 예방을 위한 정보와 도서관 활동의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사서 직종의 특성을 반영하여 감정노동 관리, 관리자나 동료와의 관계에서의 갈등해소와 같은 내용을 교육받고 싶다는 의견이 있었다.

고 있다.

IV. 주요 국가 공공행정분야 등 종사자의 안전보건관리 제도와 시사점



IV. 주요 국가 공공행정분야 등 종사자의 안전보건관리 제도와 시사점

1. 일본¹⁾

1) 공무원의 안전보건 체제

일본 헌법은 “공무원을 선정하고 파면하는 것은 국민고유의 권리(제15조 제1항)” 라고 하여, “모든 공무원은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일부에 대한 봉사자가 아니다(동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의 “공무원”은 국회의원, 장관(大臣), 재판관을 포함한 입법, 행정, 사법 각 부에 속하는 모든 직원과 지방공공단체²⁾의 장, 의장 그 외 모든 직원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넓게 국가 및 지방공무에 종사하는 모든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공무원에 대하여 크게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구분하고 노동관계법령 및 직원의 안전보건에 관한 규정을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공무원의 종류와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도록 한다.

1) 일본 제도의 연구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송안미 연구위원이 작성하였다.

2) ‘보통지방공공단체(普通地方公共団体)’는 그 조직, 사무, 권한 등이 일반적 성격을 가지며 그 존재가 보편적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지방자치단체라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이름으로 불린다. 헌법상 지방자치의 보장 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며, 도/도/부/현과 시/정/촌이 여기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지방공공단체에 대해서는 chrome-extension://efaidnbnmnnibpcajpcglclefindmkaj/https://www.clair.or.kr/download_file/322_01.pdf(2024.6.30.최종방문)

(1) 공무원의 종류

공무원은 크게 국가공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에 종사하는 지방공무원 2종류로 나눌 수 있다. 국가공무원은 일반직과 특별직으로 구분되며, 특별직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 열거되는 직으로 대략적으로 분류하면, 정무(政務)를 담당하는 자(내각총리대신, 국무대신 등), 헌법의 권력 분립원칙에 근거하여, 그 인사 제도의 설계를 입법부, 사법부에 맡기는 것에 합리성이 있는 자(재판관 및 재판소 직원, 국회 직원 등), 직무 성질상, 별개의 신분 취급의 기준에 의하는 것이 적당한 자(방위성 직원) 기타 직무의 특수성에 의해 채용시험이나 신분보장 등의 일반의 공무원에게 관련되는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자(궁내청 직원, 각종 심의회 위원 등)로 나눌 수 있다.

일반직국가공무원은 공무의 공정, 중립실현을 확보하는 의미에서 성적주의 원칙, 신분보장, 엄정한 복무에 관한 규정 등 여러 규정이 국가공무원법상으로 정해져 있다. 또한 그 근무조건이 결정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노동 협약 체결권을 가지는 행정 집행 법인의 직원과 노동 협약 체결권을 가지지 않는 「일반직 직원의 급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직원 및 검찰관(재판관과의 처우 균형을 중시해 결정)으로 분류된다.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과 대부분 동일하지만, 국가에서는 일반직으로 여겨지는 비상근의 고문, 참여 등에 대해서도 특별직으로 분류되어 있는 등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일반직 국가공무원은 최근 우정민영화(우체국민영화), 국립대학법인화, 비특정 독립행정법인화 등에 의해 공무로부터의 민영화가 진행되어 1965년대 이후 80만 명이 넘던 수는 현재(2017년도 말 정원), 상근직원으로 약 28.5만 명까지 감소했다.³⁾ 여기에 별정직 약 29.9만 명을 더한 국가공무원 전체로는 약 58.3만 명이다. 또 지방공무원을 포함한 상근 공무원 수는 약 332.3만 명이다.⁴⁾

3) “国家公務員及び地方公務員の種類と数(chrome-extension://efaidnbmnnnibpcajpcglclefindmkaj/https://www.clair.or.kr/down_file/322_01.pdf(2024.6.30.최종방문))” 참조.

(2)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제약

- 공무원은 공공성이 높은 직업으로 헌법상의 노동3권 제약
- 공무원의 단결권에 대해서는 직원 단체 제도가 인정됨
 - 경찰 직원, 소방 직원은 단결 금지
- 단체교섭권에 대해서는 당국과 교섭할 권리가 있으나, 원칙적으로 단체협약 체결 권리는 없으며, 단체 행동권(파업 등)은 인정되지 않음
- 공무원의 노동 쟁의는 인정되지 않지만, 노동조합을 시작할 권리는 있음
 - ex) 자치노(自治勞)
 - 전국의 현청, 시청, 정촌 동사무소, 일부 사무 조합등의 지방 자치체에서 일하는 직원외, 복지·의료에 관련되는 민간 노동자, 임시·비상근등 직원, 공공 교통 노동자 등의 노동자 등 공공 서비스에 관련하는 조합이 결집하는 노동조합임. 전국 각지 2595개 단조, 약 74만명의 조합원 가입(2022년 8월 시점)
 - 자치노는 노동조합 내셔널 센터(전국 중앙 조직)인 「일본 노동조합 총연합회(연합)」에 가맹하고 있음

2) 공무원과 노동관계법제 적용 관계

(1) 기본적 내용

노동과 관련한 기본법으로서 「노동기준법」(労働基準法, 이하 ‘노기법’이라 함)과 「노동계약법」(労働契約法, 이하 ‘계약법’이라 함), 「노동안전위생법」(労働安全衛生法이하 ‘안위법’이라 함)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의 경우 국민에 대하여, 그 공무를 민주적, 능률적으로 운영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国家公務員法, 이하 ‘국공법’이라 함), 「지방공무원법」(地方公務員法, 이하 ‘지공법’이라 함)이 외에 안전보전과 관련하여 「인사원규칙」(人事院規則), 「국가공무원재해보상법」(家公務員災害補償法), 「지방공무원재해보상법」(地方公務員災害補償法)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무원

4) “参考) 一般職国家公務員数の推移(chrome-extension://efaidnbnmnnibpcajpcglclef1ndmkaj/https://www.clair.or.kr/down_file/322_01.pdf(2024.6.30.최종방문)” 참조.”

중 현업직원은 안위법의 적용을 받는바, 이는 추후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한다.

우선 국공법 부칙 제16조는 「노동조합법, 노동관계조정법, 노동기준법, 선원법, 최저임금법, 진폐법, 노동안전위생법 및 선원재해방지활동의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에 의한 명령은 제2조의 일반직에 속하는 직원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을 명시하고 있다.

지공법 또한 안위법 제2장(노동재해방지계획), 면접지도 실시(제66조의8), 노동기준감독관의 사법경찰원 직무 수행(제92조) 등의 법률적용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8조, 타 법률 적용제외 규정).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공통적으로 「근로계약법」(勤勞契約法)은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제22조 제1항)’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안전보건 관련 체제와 관련하여 우선 노기법과 안위법 적용 대상을 살펴보면, 노기법은 "노동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무소(이하 "사업"이라 함)에 사용되는 자로서, 임금을 지급받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제9조). 안위법의 대상 노동자 또한 원칙적으로 노동기준법의 노동자와 같으며, 정직원뿐만 아니라 파트타임이나 아르바이트 등의 비정규직 노동자도 포함된다.

단, 이하의 자·직종에 대해서는, 안위법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법 제2조의2, 제115조 제2항), 비현업공무원은 제외됨을 확인할 수 있다.

- 동거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무소에 사용되는 자
- 가사 하인
-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 광산(일부 대상 있음)
- 국회 직원·법원 직원·방위청 직원(일부 대상 있음)
- 비현업의 일반직인 국가공무원(일부 대상 있음)
- 비현업 지방공무원(일부 대상 있음)

이처럼 국가공무원에게는 노기법이나 안위법의 적용은 없고 이에 따라 광역자치단체 노동국장이나 노동기준감독서장의 감독권한도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인사원이

감독기관 역할을 하고 있어 안위법령이 개정되면 인사원이 안위법령과 거의 같은 내용으로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인사원 규칙도 개정하게 된다.

이에 반해 지방공무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안위법 자체가 직접 적용된다. 그러나 비현업 공무원에 대해서는 후생노동성의 감독 권한이 미치지 않도록 되어 있다.

(2) 지방공무원의 노동관계법 적용 관계

지방공무원의 경우도 국가공무원과 같이 일반직과 특별직으로 나누어 지고, 5) 지공법은 일반직에 속하는 모든 지방공무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에게 적용되며(동법 제4조 제1항),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직에 속하는 지방공무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동법 4조).

특별직의 신분 취급에 대해서는 통일된 규율은 없기 때문에 각각의 각 특별직과 관련된 법령에 의하게 된다. 6)

5) 지공법상 일반직, 별정직의 구분

(일반직에 속하는 지방공무원 및 별정직에 속하는 지방공무원)

제3조 지방공무원(지방공공단체 및 특정지방독립행정법인(「지방독립행정법」(2003년 법률 제118호)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특정지방독립행정법인을 말한다. 이하 동일)의 모든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동일)의 직은 일반직과 별정직으로 나눈다.

2. 일반직은 별정직에 속하는 직 이외의 일체의 직으로 한다.

별정직은 다음에 열거된 직으로 한다.

- (1) 취업에 대하여 공직선거 또는 지방공공단체 의회 선거, 의결이나 동의에 의한 것을 필요로 하는 직1의2 지방공기업 관리자 및 기업단 기업장의 직
 - (2) 법령이나 조례, 지방공공단체의 규칙이나 지방공공단체의 기관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 및 위원회(심의회,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의 구성원 직으로 임시 또는 비상근인 것2의2 도도부현 노동위원회의 위원 직으로 상근인 것
 - (3) 임시 또는 비상근 고문, 참여, 조사원, 촉탁원 및 이들에 준하는 자의 직(전문적인 지식경험이나 식견을 가진 자가 취임하는 직으로 해당 지식경험이나 식견을 바탕으로 조언, 조사, 진단, 기타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수행하는 자에 한함)
- 3의2(3의2) 투표관리자, 개표관리자, 선거장, 선거분회장, 심사분회장, 국민투표분회장, 투표입회인, 개표입회인, 선거입회인, 심사분회인, 국민투표분회인 기타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자의 직

6) 특별직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 상근위원, 인사원회 공평위원회 비상근위원, 공안위원회

한편, 일반직은 다시 현업직원과 비현업직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지공법 제2항),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가) 현업직원의 노동관계법 적용 관계

① 현업직원의 구분

현업직원은 기업직원, 단순노무직원, 특정지방독립행정법인의 직원을 말한다.

먼저 기업 직원이란, 지방공기업의 직원 중, 관리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집행을 보조하는 직원을 말한다. 지방공기업이란 간이지도사업을 제외한 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궤도사업, 자동차운송사업, 지방철도사업, 전기사업 및 가스사업을 가리킨다.

단순 노무 직원이란, 단순 노무에 고용되는 직원으로서 기업 직원 또는 특정 독립 행정법인의 직원에 해당하지 않는 직원을 말한다.⁷⁾

② 노동관계법 적용 관계

현업직원에게는 근로자와의 유사성에 비추어 노기법 대부분이 적용되며, 현업직원에게 적용되지 않는 노기법의 규정으로는 ① 계약기간 등(제14조 제2항,

위원에는 지공법의 일부가 준용되고 있다. 또한 노동관계법 적용을 제한하는 지공법 제58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별정직 중 '근로자'에 해당하는 직원에게는 원칙대로 노동조합법, 노동관계조정법,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된다. 단, 단시간노동자 및 유기고용노동자의 고용관리 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29조), 노동계약법(제22조), 육아휴업, 개호휴업 등 육아 또는 가족개호를 실시하는 노동자의 복지에 관한 법률의 일부(제61조)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 7) '단순노무직원'은 지금은 폐지 되었으나 1926년의 「단순 노무에 고용되는 일반직에 속하는 지방공무원의 범위를 정하는 정령(單純な勞務に雇用される一般職に屬する地方公務員の範圍を定める政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① 수위, 급사, 소사, 운반부, 잡역부, ② 토목공리, 임업부, 농부, 목부, 원정 및 동물사육인 ③ 청소부와 살부 및 장의부 ④ 소독부 및 방역부를 ⑤ 선부 및 수부를 ⑥ 취사부가세 및 이발부를 ⑦ 목수, 미장원, 석공, 전공, 영선공, 배관공 및 날치기 작업원, ⑧전화교환수, 승강기수, 기계조작수 및 화부, ⑨ 청사진공, 인쇄공, 제본공, 모형공, 방직공, 제재 공, 목경 및 철 공, ⑩용접공, 도장공, 선반공, 마감조립공 및 수리공 등이 포함되었다. 1967년에는 「단순 노무에 고용되는 직원의 범위를 규정하는 규칙(單純な勞務に雇用される職員の範圍を定める規則)」에서 이들을 규정하였다.

제3항), ② 재해보상(제75조~제88조)이 있다.⁸⁾

나) 비현업직원 노동관계법 적용 관계

① 비현업직원의 구분

비현업직원이란, 현업직원 이외의 일반 지방공무원을 말한다. 현업직원과 비현업직원의 구별은 현업직원과 비현업직원이라는 용어를 어떤 문제로 논하느냐에 따라 그 내용이 다르다.

먼저, ① 근로감독관이 감독 권한을 행사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제에서는 노기법 별표 제1의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업에 종사하는 직원을 현업직원으로 하고, 그 이외의 사업에 종사하는 직원을 비현업직원으로 한다.

다음으로 ② 지방 공무원법의 일부가 적용 제외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업직원, 단순노무 직원 및 특정지방독립행정법인의 직원의 3자를 합하여 현업직원으로 보고, 그 이외의 직원을 비현업직원으로 본다.

② 노동관계법 적용 관계

한편 위 비현업직원의 구분 여부를 떠나, 통상적으로 비현업직원에게는 노기법 상당수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현업직원에게 적용되지 않는 노기법의 규정은 대체로 이하와 같다.

8) 단, 노기법 제102조, 「노동안전위생법(勞働安全衛生法)」 제92조, 「선원법(船員法)」 제37조 및 제108조 중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의 규정, 그리고 「선원재해방지활동의 촉진에 관한 법률(船員災害防止活動の促進に関する法)」 제62조 및 이러한 규정에 따른 명령의 규정은 지방공공단체가 수행하는 노기법 별표 제1의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에 명시된 사업에 종사하는 직원에게 적용된다. 또한, 같은 법 제75조부터 제88조 까지 및 선원법 제89조부터 제96조까지의 규정은, 「지방공무원재해보상법(地方公務員災害補償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자 이외의 직원에 대해서는 적용된다.

- ① 근로조건 결정(근로기준법 2조)
- ② 계약기간 등(근로기준법 14조 2항, 3항)
- ③ 임금의 지불(근로기준법 24조 1항)
- ④ 플렉스 타임(노동기준법 32조의 3~32조의 3의 2)
- ⑤ 1년 단위의 변형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32조의 4~32조의 4의 2)
- ⑥ 1주 단위의 비정형적 변형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32조의 5)
- ⑦ 사업장외근로, 재량근로제(근로기준법 38조의2 제2항~38조의4)
- ⑧ 연차 지정(노동기준법 39조 6~8항)
- ⑨ 고도 프로페션 제도(노동기준법 41조의2)
- ⑩ 재해보상(노동기준법 75조~88조)
- ⑪ 취업규칙 (노동기준법 89조~93조)
- ⑫ 사법경찰권 (노동기준법 102조)

※ 단, 재해 보상에 대해서는, 지방 공무원 재해 보상법 2조 1항에 규정하는 자 이외의 직원(상시 근무에 옷을 입을 것을 요하지 않는 직원)에게는, 적용됩니다(지방 공무원법 58조 3항 단서).

※ 단, 사법경찰권에 대해서는, 지방 공공단체가 실시하는 노기법 별표 제1 제1호부터 제10호 까지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업에 종사하는 직원에게는, 적용됩니다(지방 공무원법 58조 3항 단서 전단).

3) 공무원의 안전보건 관련 법제

(1) 국가공무원과 인사원 「인사규칙 10-4」

국가공무원의 안전보건에 대해서는 안위법의 적용 대신 인사원의 「인사규칙 10-4」(이하, ‘인사규칙’ 이라 함)이 적용된다.

인사규칙은 국공법의 “능률증진계획” 수립 규정(제73조)에 의거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내각총리대신 및 관계청의 장은 직원의 근무 능력 발휘 및 증진을 위해 ① 직원 보건, ② 직원의 레크리에이션, ③ 직원 안전, ④ 직원 후생의 4가지 사항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시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인사규칙은 직원의 보건 및 안전유지에 대한 기준과 그 기준의

실시에 관하여(별도로 정하는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규칙은 5개의 장으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이하와 같다.

〈인사원 「인사규칙 10-4」 주요 장의 내용〉

[제1장] 취지, 인사원의 권한, 각 성·청 장의 책무, 직원의 책무

[제2장] 건강안전관리체제 : 건강관리자, 안전관리자, 건강·안전관리담당자, 야외실험 등의 경우 체제, 건강관리역사, 위험방지주임자, 회원책임자,⁹⁾ 건강안전관리규정, 건강안전교육, 직원 의견 청취를 위한 조치, 유해성 및 위험성 조사 등

[제3장] 건강관리기준 : 근무환경 등 강구 조치, 유해업무 조치, 유해물질 사용 등 제한, 특정조사 대상물 조사, 계속작업의 제한, 중고연령직원 등에 대한 배려, 채용시 건강진단, 정기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직원 건강유지증진을 위한 종합건강진단, 면접지도, 심리적 부담 파악 검사, 지도구분 결정, 사후조치, 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 예방 보건 지도, 특정보건지도, 심신상태 정보 취급

[제4장] 안전관리 기준 : 위험방지조치, 긴급사태 조치 등

[제5장] 잡칙 : 조치경과

(2) 지방공무원의 안전보건 관련 법제

가) 안위법 적용 관계

지공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안위법 적용 관계 조문은 아래와 같다.

9) 인사규칙은 각 부처의 장에게 방화상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의 구분별로 '회원책임자(火元責任者)'를 두고, 화재방지에 관한 사무를 실시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인사규칙 제11조).

〈표 IV-1〉 안위법의 지방공무원 적용관계

직원 구분	안위법의 지방 공무원에의 적용(관계 조문)			
	노동재해 방지 계획(제2장)	고도프로페셔널 제도에 관련된 장시간 노동자에 대한 의사에 의한 면접 지도 (제66조의 8의 4)	노동기준감독 기관의 직권 (제92조)	기타 규정
현업 직원 (기업 직원 및 단순 노무 직원을 제외한다.)	적용 ○	적용 ○	적용 ○	적용 ○
비현업직원 (기업직원 및 단순노무직원 제외)	적용 X	적용 X	적용 X	적용 ○
단순노무직원	적용 ○	적용 (대상 제외)	적용 ○	적용 ○
기업직원·독법직원	적용 ○	적용 ○	적용 ○	적용 ○

여기서 현업직원이라 함은 노기법 별표 제1의 1호~10호, 13호~15호의 사업에 종사하는 직원을 말하며, 비현업직원은 현업직원 외의 직원(경찰, 소방을 포함)을 말한다.

기업직원은 수도권이나 교통국 직원 등, 단순노무직원은 청소직원, 학교급식직원 등이 포함된다.

이와 같이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안위법의 적용이 있지만, 비현업의 공무원(기업 직원 및 단순노무직원을 제외)에 대해서는 후생노동성(후생노동대신, 도도부현 노동국장 및 노동기준감독서장)의 감독권한이 미치지 않는다.

후생노동성을 대신하여 감독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인사위원회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인사위원회의 위원(인사위원회를 두지 않는 지방공공단체에서는 지방공공단체의 장)이 된다.

또한 지방공무원의 경우, 사업자에 해당하는 자는 도도부현에 대해서는 도도부현 지사, 시구청촌에 대해서는 시구청촌장이다. 따라서 인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사업자와 사업자에 대하여 감독권한을 가진 자가 일치하게 된다.¹⁰⁾

나) 지방공공단체의 근무조건 등에 관한 조사

매년 총무성은 「지방공공단체의 근무조건 등에 관한 조사를 전국 지방공공단체의 근무조건 등의 상황」(地方公務員における働き方改革に係る状況)을 정리해 국가 공무원의 근무조건 등과 비교한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 휴가 등의 근무조건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국가나 다른 지방공공단체의 직원과의 형평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

이 조사는 유연근무제도의 도입상황, 시간 외 근무상황, 스트레스체크 실시상황, 정신건강 대책 대처상황, 장시간노동자에 대한 의사 면접지도 상황, 정신건강 부조에 따른 휴무자 상황 등에 대한 표를 제시하고 있다.¹¹⁾

다) 지자체의 직원안전위생 조례

「이세하라시 직원안전위생관리규정」(伊勢原市職員安全衛生管理規程)은 안위법(1972년 법률 제57호)에 따라 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고 쾌적한 직장환경 형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안전위생관리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이 규정은 인사주관 및 소속장의 책무, 직원의 직무와 더불어 위생관리자, 안전위생추진원, 산업의, 안전위생위원회, 건강진단, 심리적 부담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검사 실시, 취업금지, 예방접종, 안전위생교육, 건강교육, 작업환경측정 및 평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10) 이와 관련해서는 법령 제정 담당자와 감독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감독 권한을 가진 사람이 법령의 취지 내용 등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점, 게다가 감독하는 것이 감독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도 표면화되지 않을 것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다.

11) 令和4年度地方公共団体の勤務条件等に関する調査結果, 2023.12.25.(https://www.soumu.go.jp/menu_news/s-news/01gyosei11_02000219.html)2024.6.20. 최종방문

조례의 구조와 내용은 이하와 같다.

〈표 IV-2〉 「이세하라시 직원안전위생관리규정(伊勢原市職員安全衛生管理規程)」

본칙

제1조(취지)

제2조 (정의)

제3조 (인사주관 부장의 책무)

제4조 (인사주관 과장의 책무)

제5조 (소속장의 책무)

제6조 (직원의 직무)

제7조 (위생관리자)

제8조 (안전위생추진원)

제9조 (산업의)

제10조 (안전위생위원회) :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에 제시하는 사업소별로 이세하라시 직원안전위생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1) 소방본부 및 소방서

(2) 교육 위원회

(3) 환경미화센터

(4) 기타 사업소

제11조 (소관 사무)

제12조 (조직)

제13조 (위원의 임기)

제14조 (위원장)

제15조 (위원회의 소집)

제16조(정족수)

제17조 (관계직원의 출석 등)

제18조 (서무)

제19조 (건강진단)

제20조

제21조 (건강진단 결과의 기록)

제22조 (건강진단의 결과에 대한 조치)

제23조 (심리적인 부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검사 실시 등)

제24조 (취업 금지)

제25조 (예방접종)

제26조 (안전위생교육)

제27조(건강교육 등)

제28조(작업환경측정 및 평가)

제29조 (위임)

부칙

라) 법 해석과 정부기관의 통달 문제

① 지방공무원에 관한 안위법 해석상 주체

통달은 도도부현 노동 기준 국장(현·도도부현 노동 국장) 앞으로 보내는 문서이다. 일본에서 논의되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안위법 해석과 관련하여 하나의 예시를 제시하고자 한다. ‘일본 근로기준국장 통달로 소방차는 고소작업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되고 있는 경우이다.

앞의 “나) 비현업직원 노동관계법 적용 관계”¹²⁾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현업직원이란, 현업직원 이외의 일반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소방공무원은 비현업 직원인 지방공무원이다.

후생노동성에는 소방직원에 대한 안위법 관련 감독 권한이 없기 때문에 감독 권한이 없는 광역자치단체 노동기준국장에 대해 이런 해석을 제시하더라도 의미는 없을 것이다.

본래 이러한 해석은 소방청 소방·구급과장이 도도부현 소방방재주관부장(및 도쿄 소방청·각 지정도시 소방장)에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때문에 애초에 소방직원에 대한 감독권한이 없는 후생노동성의 노동기준국장이 위 고소작업차에 관한 해석을 제시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다. 실제 소화 시에는 안위법을 준수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② 지방공무원에 대한 후생노동성 노동기준국장 지도통달의 유효성

후생노동성의 노동기준국장이 법정되지 않은 노동재해 방지를 위한 조치나 법정 외의 안전위생교육·건강진단 등에 대한 지도통달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은 지방공무원에게 유효한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¹³⁾

12) 본 연구 157-159쪽 참조.

13) 건강진단과 관련해서는 카나가와 노동국의 「노동 안전 위생법등에 근거하는 각종 건강진단 일람표」 중의 「행정 지도에 의한 건강진단」, 지도통달에 의한 안전위생교육에 대해서는 1991년 1월 21일 발생 제39호(최종개정: 2016년 10월 12일 발생 1012 제1호) '안전위생교육 및 연수 추진에 대해'를 참고할 수 있다.

이들은 후생노동성이 감독기관을 통해 사업자에 대해 지도해 나가는 것이므로, 지방공무원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어차피 지도통달이기 때문에 법적 강제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법적 효력에는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¹⁴⁾

4) 학교의 안전보건 체제

(1) 관련 근거 법률

가) 「노동안전위생법」(労働安全衛生法)

「노동안전위생법」(労働安全衛生法 이하, '노위법'이라 함)에서는 교육공무원을 포함한 지방공무원은 적용제외 대상이 아니다.¹⁵⁾ 따라서 학교현장에도 그 규정이 적용된다. 이 때 일반적으로 노위법상의 '사업장'은 각 학교를 가리키며, '사업자'는 '학교의 설치자'를 가리킨다.

나) 「학교교육법」

여기서 말하는 '학교의 설치자'라 함은 「학교교육법(学校教育法)」(이하 '학교법'이라 함)에 따라 국가, 지방공공단체 및 사립학교법에서 규정하는 학교법인 뿐이므로, 이들이 '학교 설치자'에 해당한다.

'학교의 설치자'는 학교법에 따라 설치자 관리주의 및 설치자 부담주의를 원칙으로, 학교의 설치자가 학교가 실시하는 교육활동의 사업주체가 되며, 설치하는 학교의 운영을 책임지고 학교를 관리하게 된다(학교교육법 제5조).

공립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가 학교의 관리운영에 대해 최종적인 책임을

14) 실제로 행정지도에서는 볼 수 없는 '직장 복귀 지원 길잡이' 등도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활용되고 있기도 하다. 후생노동성의 통달도 지방공무원의 노사자치 속에서 활용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15) 노위법 상 적용제외 대상은 「광산보안법」 제2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광산의 보안과 「선원법」적용을 받는 선원이다(노위법 제115조).

지지만, 교육과정의 편성이나 건강진단의 실시 등 법령에 의해 직접 교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것 외에 교육위원회 규칙(학교관리규칙)에 의해 학교에 일상적으로 위임하는 사항을 규정(「지방교육행정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地方教育行政の組織及び運営に関する法律)」 제33조 제1항 등)하고 있다.¹⁶⁾ 또한 이 법은 교육기관의 소관에 대하여 학교, 기타 교육기관 중 대학 및 유보연계형 인정어린이집은 지방공공단체의 장이, 그 밖의 것은 교육위원회가 소관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초·중·고의 경우 교육위원회가 관리운영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게 된다.

다) 「학교보건안전법」

「학교보건안전법」(学校保健安全法)은 학교의 아동·학생 등 및 직원의 건강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교의 보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동시에, 학교의 교육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실시되고 아동·학생 등의 안전 확보가 도모되도록 학교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원활한 실시와 그 성과의 확보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 법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칙(제1조~제3조)과 제2장 학교보건(학교의 관리 운영 등(제1절), 건강 상담 등(제2절), 건강 진단(제3절), 감염증의 예방(제4절), 학교보건기사 및 학교치과의 및 학교약사(제5절), 지방공공 단체의 원조 및 국가 보조(제6절)), 제3장 학교 안전(제26조~제30조), 제4장 잡칙 (제31조, 제32조),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16) 「지방교육행정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地方教育行政の組織及び運営に関する法律)은 교육기관의 소관에 대하여 학교, 기타 교육기관 중 대학 및 유보연계형 인정어린이집은 지방공공단체의 장이, 그 밖의 것은 교육위원회가 소관한다. 다만, 특정사회교육기관 및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열거하는 사무 중 같은 항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공단체의 장이 관리 및 집행하도록 된 것만 관련된 교육기관은 지방공공단체의 장이 소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2조).

라) 「교토부립학교 직원 안전 위생 관리 규정」¹⁷⁾

지자체의 학교 직원 안전위생관리 규정의 예로 교토부립학교 규정을 살펴보면, 이 규정은 제1장 총칙, 제2장 안전 위생 관리 체제, 제3장 건강 관리 및 환경 관리, 제4장 잡칙, 그리고 부칙 총 26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규정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소개하고자 한다.

〈표 IV-3〉 「교토부립학교 직원 안전 위생 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취지)

제1조 본 규정은 노동안전위생법(1972년 법률 제57호. 이하 '법'이라 한다.), 「노동안전위생법 시행령」(1972년 정령 제318호) 및 이에 기초한 관계성령에서 정한 것 외에 교토부립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별지원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근무하는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학교 안전과 건강 확보 및 쾌적한 직장환경 형성 촉진에 관한 책임체제의 명확화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2장 안전위생관리체제

(부립학교 총괄 안전위생관리자)

제1조의2 교토부 교육청에 부립학교 총괄 안전위생관리자(이하 '총괄 안전위생관리자'라 한다.)를 둔다.

2. 총괄 안전위생관리자는 교육차장이 맡는다.
3. 총괄안전위생관리자는 교장을 지휘하고 부립학교의 안전위생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 관리한다.
4. 총괄안전위생관리자가 여행, 질병, 사고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자를 둔다.
5. 전항에서 정하는 대리자는 교직원 기획과장이 맡는다.

17) 「京都府立学校職員安全衛生管理規程」

(교장의 책무)

제2조 교장은 위생관리자 및 작업주임자를 지휘하는 동시에 다음에 열거한 사무를 실시한다.

- (1) 직원의 위험 또는 건강장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것.
- (2) 직원의 건강진단 실시 및 그 결과에 근거한 사후조치에 관한 것.
- (3) 직원의 안전 또는 위생을 위한 교육 실시에 관한 것.
- (4) 직원의 공무상 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에 관한 것.
- (5) 장시간에 걸친 근무로 인한 직원의 건강장애 방지대책에 관한 것.
- (6) 직원의 정신적 건강 유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대책에 관한 것.
- (7) 전 각 호에 정하는 사항 외에, 직원의 건강관리 및 재해방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무에 관한 것.

(위생관리자)

제3조 학교에 법 제1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위생관리자를 둔다.

2. 위생관리자는 법에 따른 위생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해당 학교의 사무장이 맡는다. 단, 해당 사무장이 해당 자격을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에 소속된 직원으로서 해당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교장이 지명한다.
3. 위생관리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무를 관리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동시에 교장에게 보고한다.
 - (1) 작업환경의 위생상 조사 및 작업조건, 시설 등의 위생상 개선에 관한 것.
 - (2) 정기적인 직장 순시 및 구급용구의 점검에 관한 것.
 - (3) 위생교육, 건강상담, 기타 직원의 건강유지에 관한 것.
 - (4) 전3호에서 열거한 것 외에 위생과 관련된 기술적 사항에 관한 것.

(작업 주임자)

제4조 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작업주임자는 노동안전위생법 시행령 제6조 각 호에 열거된 작업을 하는 곳에 둔다.

2. 작업주임자는 전항에서 규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노동안전위생규칙(1972년 노동성령 제32호) 별표 제1에서 규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교장이 지명한다.
3. 작업주임자는 제1항에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고, 해당 작업에서 발생하는 재해방지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산업의)

제5조 학교에 법 제13조제1항에 규정된 산업의를 둔다.

(위생위원회의 설치)

제6조 직원의 안전과 위생에 관해 다음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해 학교에 법 제18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위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직원의 건강장애를 방지하기 위한 기본이 되어야 하는 대책에 관한 것.
- (2) 직원의 건강 유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기본이 되어야 하는 대책에 관한 것.
- (3) 공무상 재해의 원인 및 재발방지 대책에 관한 것.
- (4) 장시간 근무로 인한 직원의 건강장애 방지를 도모하기 위한 대책 수립에 관한 것.
- (5) 직원의 정신적 건강 유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대책 수립에 관한 것.
- (6) 전 각호에 열거된 사항 외에 직원의 건강관리, 안전 및 직장환경에 관한 중요사항

(위원회의 조직)

제7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위원으로 구성한다.

- (1) 교장
 - (2) 부교장
 - (3) 교감
 - (4) 사무장(위생관리자인 자 제외)
 - (5) 위생 관리자
 - (6) 산업의
 - (7) 위생 관련 경험이 있는 직원
2. 전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은 교장이 지명한다.
3. 교장은 제1항제1호의 위원 이외의 위원의 반수에 대해서는 당해 학교에 직원의 과반수로 조직하는 「지방공무원법」(1950년 법률 제261호)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직원단체(이하 "직원단체"라 한다)가 있을 때에는 그 직원단체의, 직원의 과반수로 조직하는 직원단체가 없을 때에는 직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추천에 따라 지명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

제8조 위원회에 의장을 두고, 전조 제1항 제1호의 위원으로 총원한다.

2. 위원회는 교장이 소집한다.
3. 위원회는 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회의를 열 수 없다.

4. 위원회의 의사내용은 기록하고 보존한다.

(위원회 등의 보고)

제9조 교장은 다음에 열거된 사항에 대해 교토부 교육위원회 교육장(이하 '교육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1)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작업 주임자 및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위원에 관한 것.
- (2) 제6조에서 정한 위원회의 조사 심의 내용, 기타 개최 상황에 관한 것.
- (3) 법 제18조제1항에 규정된 의견에 관한 것.

(위원회 운영)

제10조제6조부터 전조까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할 수 있다.

(총괄안전위생위원회 설치)

제11조 총괄 안전위생관리자의 직무 집행에 이바지하기 위해 교토부 교육청에 교토부립학교 총괄 안전위생위원회(이하 '총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총괄위원회는 다음에 열거된 사항에 대하여 조사·심의한다.

- (1) 학교의 안전위생관리체제에 관한 총괄적인 사항
- (2) 직원의 위험 또는 건강장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총괄적인 사항
- (3) 건강진단의 실시 및 그 밖에 건강유지증진을 위한 조치에 관한 총괄적인 사항
- (4) 직원의 안전 또는 위생을 위한 교육 실시에 관한 총괄적인 사항
- (5) 공무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에 관한 총괄적인 사항
- (6) 장시간 근무로 인한 직원 건강장애 방지를 위한 대책에 관한 총괄적인 사항
- (7) 직원의 정신적 건강 유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대책에 관한 총괄적인 사항
- (8) 안전위생에 관한 방침에 관한 총괄적인 사항
- (9) 안전위생에 관한 계획의 작성, 실시,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총괄적인 사항
- (10) 전 각호에 열거하는 사항 외에 공무재해의 방지에 필요한 사무에 관한 총괄적인 사항

(총괄위원회 조직)

제12조 총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위원으로 구성한다.

- (1) 총괄안전위생관리자
- (2) 교직원 기획 과장

- (3) 교장
 - (4) 학교 위생 관리자로 지명된 사람
 - (5) 의사
 - (6) 위생 관련 경험이 있는 직원
2. 전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위원은 교육장이 지명한다. 단, 동항 제5호의 위원은 산업의
에 관한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동항 제6호의 위원은 직원단체의 추천에 따라 지명한다.
 3.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은 각 1명으로 하고, 동항제6호의 위원은 4명으로
한다.

(총괄위원회 회의)

제13조 총괄위원회는 교육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2. 총괄위원회에 의장을 두고, 전조 제1항 제1호의 위원으로 총원한다.
3. 전2조 및 전2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 총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총괄위원회의 사무)

제14조 총괄위원회의 사무는 관리부 교직원 기획과에서 실시한다.

제3장 건강관리 및 환경관리

(건강검진 실시)

제15조 건강진단의 종류 및 그 대상 직원은 별도로 정한다.

(건강검진 진료)

제16조 교장은 직원에게 건강진단을 받게 하여야 한다.

2. 직원은 전항의 건강진단을 받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때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충족하는 다른 의사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건강검진표 작성 및 보관)

제17조 교장은 직원의 건강진단(전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건강진단을 포함한다) 결과를 기록하
는 건강진단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교장은 직원이 이동한 때에는 해당 직원의 건강진단표를 지체 없이 이동처의 소속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지도 구분 판정)

제18조 교장은 건강진단 결과를 산업의에게 제시하고 별표 제1에 따른 지도구분의 판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2. 산업의는 전항에서 규정하는 건강진단의 결과의 제출이 있는 때에는 별표 제1의 생활규정의 면 및 의료규정의 면의 구분을 조합하여 지도구분을 판정하고, 이를 서면으로 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교장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판정된 지도구분을 직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해당 지도구분에 필요한 의견을 붙여 교육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조치 구분의 결정)

제19조 교육장은 전조 제3항의 지도구분 판정 결과에 따라 별표 제2의 조치구분을 결정하여 교장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2. 교육장은 전항의 조치구분 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교토부 공립학교 교직원 질병전문가회의의 위원 또는 교토부립학교 교직원 결핵전문가회의의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조치구분을 직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당해 직원에 대하여 미리 그 의견을 청취한 후 해당 조치구분의 내용에 따라 필요한 사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보건지도)

제20조 교장은 특히 건강유지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직원에게 보건지도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교장, 위생관리자 및 산업의는 직원으로부터 건강에 관하여 상담을 받은 때에는 적절한 지도와 조언을 하여야 한다.

(건강교육 등)

제21조 교장은 직원에 대한 건강교육, 건강상담 등 건강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계속적이고 계획적으로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직장환경)

제22조 교장은 근무장소 및 작업방법에 따라 환기, 조명, 온도, 습도, 소음, 청결, 유해물질의 취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쾌적한 직장환경의 형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안전위생교육)

제23조 교장은 직원이 채용, 배치변경 또는 직무변경 등으로 새로운 직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직원의 건강유지 및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에서 정하는 안전위생에 관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장 잡칙

(노동기준감독기관에 대한 보고 등)

제24조 교장은 노동기준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보고 등을 실시한다.

(비밀유지 등)

제25조 직원의 건강관리 사무에 종사한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직원의 건강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직원의 협조)

제26조 직원은 이 훈령에서 정하는 안전과 건강의 확보 및 쾌적한 직장환경의 형성을 촉진하는 조치에 협력한다.

(2) 학교에 요구되는 노동안전위생관리 체제¹⁸⁾

가) 교직원 50명 이상인 학교에서의 선임 및 설치

① 위생관리자 : 위생과 관련된 기술적 사항을 관리하는 자

위생관리자는 위생관리자 면허를 취득한 자로 '보건체육'의 중·고교 교사,

18) 「学校における労働安全衛生管理体制の整備のために(第3版) ~ 教職員が教育活動に専念できる適切な職場に向けて ~」, https://www.mext.go.jp/component/a_menu/education/detail/_icsFiles/afieldfile/2019/03/29/1414486_1.pdf(2024.10.16.최종방문)

양호교사 등 원칙적으로 해당 학교에 전속자를 선임한다. 적어도 주 1회 학교를 순시하고, 설비, 작업방법, 위생상태에 유해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즉시 교직원의 건강장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건강에 이상이 있는 사람의 발견 및 처치, 작업 환경의 위생상 조사, 작업 조건·시설 등의 위생상 개선, 위생교육, 건강상담, 그 밖에 노동자의 건강유지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산업의 : 산업의학 전문가로서 교직원의 건강관리 등을 수행하는 자

학교는 학교의와 산업의를 선임할 의무가 있다. 둘을 겸임할 수 있으나 산업의는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연수를 수료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산업의가 수행하는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 건강진단·면접지도의 실시, 작업환경의 유지관리등 교직원의 건강관리 등을 실시¹⁹⁾
- 교직원의 건강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학교의 설치자에 대하여 교직원의 건강관리 등에 관해 필요한 권고²⁰⁾
- 적어도 월 1회 학교를 순시하고, 작업방법, 위생상태에 유해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즉시 교직원의 건강장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강구²¹⁾

③ 위생위원회: 위생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조사·심의하는 기관

교장, 위생관리자, 산업의 등으로 구성되는 위생위원회의 조사심의사항의 구체적인 예로는 교직원의 건강장애 방지, 건강유지 증진을 위한 대책,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교직원의 건강 장애 예방 대책, 교직원의 정신적 건강 유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대책 등이 있다.

19) 2018년 안위법 등의 개정에 의해 산업의를 선임한 사업자(학교의 설치자)는 산업의에 대해 노동자의 노동시간이나 노동환경 등 노동자의 건강관리를 적절히 실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0) 2018년 안위법 등의 개정으로 학교 설치자가 권고를 받았을 때 권고 내용 및 권고를 바탕으로 강구한 조치 내용을 기록·보존함과 동시에 그 내용을 위생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21) 학교의 설치자가 매월 1회 이상 위생관리자의 순회 결과 등 정해진 정보를 제공받고, 학교 설치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최소 2개월에 1회 순회를 실시할 수 있다.

나) 교직원 10~ 49명인 학교에서의 선임 및 설치

① 위생추진자 : 위생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

위생관리자의 선임을 요하는 학교 이외의 학교 중 교직원 10명 이상의 학교에서는 위생추진자를 선임하여 위생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위생관리자는 일정기간 위생실무에 종사한 경험을 가진 자 등으로 선임한다. 수행하는 직무는 시설, 설비 등의 점검 및 사용상황 확인, 작업환경, 작업방법 점검, 건강진단 및 건강유지 증진을 위한 조치, 위생교육에 관한 것 등이 있다.

② 산업의 선임의무가 없는 학교 교직원의 건강관리

교육위원회 등의 학교 설치자는 산업의 선임의무가 없는 교직원 49명 이하의 학교에서도 교직원의 건강관리 등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의학에 관한 지식을 가진 의사나 보건사에게 교직원의 건강관리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게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학교마다 의사를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위원회에서 산업의 요건을 갖춘 의사 등을 채용하여 복수의 공립학교 직원의 건강관리를 담당하게 하는 등의 대응도 효과적이다.

다) 학교의 면접 지도 체제의 정비

2007년도까지는 교직원 50명 이상의 학교만 대상이었으나, 2008년 이후부터는 모든 학교가 대상이 되었다. 또한 2018년 노동안전위생법 등의 개정에 의해 장시간 노동자에 대한 의사에 의한 면접지도 요건이 변경되었다. 교직원의 노동시간 상황을 타임카드 등 객관적인 방법 등으로 파악하는 동시에 주 40시간을 넘는 노동시간이 월 80시간을 넘는 노동자에게 해당 초과한 시간에 관한 정보를 통지하는 것이 의무화되었다.

따라서 다음의 두 가지 경우에는 교직원의 신청을 받아 지체 없이 의사에 의한 면접 지도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첫째,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시간이 월 80시간을 초과하고 피로의 축적이 인정되는 경우, 둘째, 심리적 부담의 정도가

높아 면접지도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스트레스 체크를 실시한 의사 등이 인정한 경우에도 면접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위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교직원이라도 건강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자에 대해서는 면접지도 등을 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라) 스트레스체크 실시

의사 등에 의한 노동자의 심리적인 부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검사(스트레스 체크)를 1년에 한 번 실시하는 것이 학교 설치자에게 의무화되어 있다. 교직원 수 50명 미만의 학교에서는 당분간 노력 의무로 되어 있지만, 학교의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학교에서 적절하게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트레스 체크 결과, 높은 스트레스로 의사에 의한 면접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노동자로부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의 설치자는 의사에 의한 면접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학교의 설치자는 위에 따라 의사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경우에는 작업의 전환, 노동시간의 단축 등 적절한 취업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학교 설치자는 검사를 실시한 의사 등에게 스트레스 체크 결과를 일정 규모의 집단별로 집계·분석하게 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스트레스 체크의 집단별 집계·분석 및 그 결과를 토대로 한 필요한 조치는 노력 의무이지만, 직장 환경에서의 스트레스 유무 및 그 원인을 파악해, 필요에 따라 직장 환경의 개선을 실시하는 것의 중요성에 유의해, 가능한 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공립학교의 노동안전위생관리체제 정비상황

문부과학성의 공립학교 노동안전위생관리체제정비 조사²²⁾의 따르면 2017년

22) “公立学校における労働安全衛生管理体制等の整備状況”, https://www.mext.go.jp/component/a_menu/education/detail/__icsFiles/afieldfile/2019/03/29/1414486_1.

5월 기준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각 안전관리자, 산업의, 위생위원회, 위생추진자, 면접지도체제 정비²³⁾ 상황을 보면 이하와 같다.

〈표 IV-4〉 2017년 일본 공립학교 노동안전위생관리체제 정비 조사

구분(%)	안전관리자	산업의	위생위원회	위생추진자	면접지도체제 정비 상황	
					50인 이상	50인 미만
초등학교	90.1	80.8	89.5	92.8	92.1	73.1
중학교	88.9	84.6	87.5	90.6	91.9	72.2
고등학교	99.9	97.6	99.7	97.4	99.8	97.9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초등학교·중학교의 정비율이 낮은 수준이며, 문부성은 시정촌 교육위원회를 시작으로 시급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학교에서의 노동안전위생관리체제 정비의 어려움의 주된 원인을 3가지로 보고 있다. 첫 번째는 관계 법령 등의 인식 부족, 두 번째, 유자격자의 부재, 그리고 재정적 사정이다. 개선방책으로 현장 인식개선, 교육위원회 및 관리직의 리더십, 기존의 인재·조직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먼저 위생관리자의 경우 보건체육교사, 양호교사 등과 같이 이미 자격을 보유한 자를 활용함으로써 신속한 체제 정비가 가능하다. 위생추진자의 경우 보건체육교사, 양호교사 등 이미 자격을 보유한 자를 활용함으로써 신속한 체제 정비가 가능하다. 산업의의 경우 학교의와 산업의는 직무내용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으므로 학교의 중에서 선임함으로써 비교적 쉽게 체제 정비가 가능하다.²⁴⁾ 그리고 위생위원회의 경우 필요한 위원을 확보한 후에 학교보건위원회 등 기존 위원회와 병용을

pdf(2024.9.16. 최종방문)

23) 면접 지도의 실시는 10주 40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이 월 80시간을 초과하고, 피로의 축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교직원의 신청을 받아 실시하며, 학교의 규모에 관계 없이 의무화되어 있다.

24) 이들 위생관리자, 위생추진자, 산업의는 특정 직종의 직원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함으로써 비교적 간단하게 체제 정비가 가능하다.

이처럼 문부과학성은 노동 안전 위생 관리의 추진을 위해서는 체제 정비 후의 실천도 중요하며, 직장 전체가 협력하여 적절한 노동 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5) 소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의 경우 안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안전보건관리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국가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원에서 안전보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고, 비현업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도 통달 등을 통해 기준을 제시하는 등의 관리를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중 비현업 공무원에 대해서 직접적인 감독을 하지 않으며, 자체적인 규정을 두도록 하고, 유해위험이 있는 경우 통달 등을 시행하여 스스로 관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지방공무원에게는 원칙적으로 안위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비현업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후생노동성이 감독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즉, 국가공무원의 경우 인사원이 법령(규칙)의 제정과 그 운영·감독을 통일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비현업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법령의 제정은 후생노동성의 안전위생부가 담당하며, 감독·운영은 각 지방공공단체의 인사위원회(설치되지 않은 경우 지방공공단체의 장)가 담당하는 구조이다.

한편 총무성은 전국의 지자체 근무조건 등의 상황을 정리하여 국가공무원의 근무조건 등과 비교한 결과를 공표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는 직원의 안전위생조례를 규정하고 있다.

공공부문은 학교의 경우에도 교육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노위법 적용 대상이다. 학교의 경우 노위법상 사업장은 학교이며, 사업자는 학교의 설치자를 가리킨다. 학교의 설치자에 대한 개념은 학교교육법, 학교보건안전법 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 조사결과 교토와 같은 지자체에서는 학교직원의 안전위생과 관련하여 교토부립학교직원 안전위생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자율적인 안전보건 체제의 구축과 활동을 촉진하고 있었고, 문부과학성의 공립학교의 노동안전위생관리체제 정비상황 조사결과에 따르면 학교의 안전관리자, 산업의, 위생추진자의 선임율과 위생위원회 설치 및 면접지도체제 정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을 시사점으로 볼 수 있다.

2. 독일²⁵⁾

1) 공공부문 근로자의 지위

(1) ILO 제94호 협약

ILO 제94호 협약은 공계약 이행시 최소한의 노동기준을 보장하기 위하여 건설, 해체, 소재, 비품장비의 제조, 관련 서비스의 이행 및 공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 기타 기관에 제공하는 공공자금과 관련한 모든 계약을 다루고 있으며, 하도급 계약의 경우에도 적용된다.²⁶⁾

협약은 적용 근로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건강, 안전, 복리 조건을 보장하는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항(공계약) 협약(1949년), 효력발생: 1952년 9월 20일

제1조 1. 이 협약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계약에 적용된다.

- (가) 적어도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공적기관일 것.
- (나) 계약의 이행은 다음 사항을 수반할 것.
 - (1) 공공기관에 의한 자금의 지출 및
 - (2) 계약의 상대방에 의한 근로자의 고용

25) 독일 제도의 연구는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권혁 교수가 작성하였다.

26) 고용노동부, 「ILO 주요협약」, 2010, 13쪽(이하, - 포함).

<p>(다) 계약은 다음 사항에 대한 계약일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공사의 건설, 변경, 수리 또는 해체 (2) 재료, 보급품 또는 장치의 제작, 조립, 취급이나 발송 (3) 용역의 수행 또는 제공 <p>(라) 계약은 협약이 실시될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의 중앙기관에 의하여 심사될 것.</p> <p>3. 본협약은 재도급업자 또는 계약의 수탁자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에 적용한다. 이와같은 적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권한있는 기관은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제2조 1. 본협약의 적용을 받는 계약은 당해 근로가 행하여지는 지역에서 관련 직업 또는 산업에 있어서의 <u>동일성질의 근로에 대하여 다음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임금(수당을 포함한다),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관계 근로자에 보장해주는 조항을 포함하여야 한다.</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관련 직업 또는 산업에 있어서의 사용자 및 근로자의 대부분을 각각 대표할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의 대표자간의 단체협약 기타의 승인된 교섭절차 (나) 중재결정 (다) 국내법령에 의하여 <p>제3조 <u>계약의 이행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 안전 및 복리에 관한 적당한 규정이 국내법령, 단체협약이나 중재재정에 의하여 아직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권한 있는 기관은 관계근로자에 대하여 공평하고 합리적인 건강, 안전 및 복리의 조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u></p> <p>제5조 1. 공계약에 있어서 근로조건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의 보류 기타 적당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p> <p>2. 관련근로자가 그 적당한 임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계약하의 지불 보류 기타의 방법으로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2) 공공부문 사무직 근로자

공공서비스의 사무직 근로자(office workers in the public service)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환경 관련 협약으로서 ILO 제120호 “위생(상업과 사무) 협약(1964년)”이 있다.²⁷⁾

고용주는 모든 시설과 장비를 적절히 유지 및 청결하게 유지하고, 충분한 양의 건전한 식수 또는 기타 음료와 충분하고, 충분한 시설과 장비를 유지해야 한다.

참고 - 위생(상업과 사무) 협약(1964년) 효력발생: 1966년 3월 29일²⁷⁾

제1조 본 협약은 다음 사항에 적용된다.

(가) 상업사무소

(나) 근로자가 주로 사무직에 종사하는 사업체, 기관 및 행정시설

(다) 당해자가 공업, 광업, 운송업 또는 농업에 있어서의 위생에 관한 국내의 법률, 규칙 또는 기타 협약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가 주로 상업 또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기타 사업체, 기관 및 행정시설의 부문

제7조 근로자가 사용하는 모든 구역 및 그 설비는 정돈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제8조 근로자가 사용하는 모든 구역에는 신선하고 정화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자연, 인공 또는 이 두 가지의 충분하고 적절한 통풍장치가 있어야 한다.

제9조 근로자가 사용하는 모든 구역에는 충분하고 적절한 조명이 있어야 하며, 작업장에는 가능한 한 자연조명이 있어야 한다.

제10조 사정이 허락하는 한, 쾌적하고 일정한 온도가 근로자가 사용하는 모든 구역에서 유지되어야 한다.

제11조 모든 작업장 및 작업위치는 근로자의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배치 배열되어야 한다.

제12조 충분한 양의 위생적인 생수 또는 기타 위생적인 음료를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제13조 충분하고 적절한 세탁시설 및 화장실을 제공하고 적절히 유지하여야 한다.

27) Hygiene (Commerce and Offices) Convention, 1964. 우리나라는 비준하지 않았으나, 관련 내용을 참고할 수 있음.

제14조 충분하고 적절한 좌석을 근로자에게 공급하여야 하며, 이를 사용할 적당한 기회를 근로자에게 주어야 한다.

제15조 작업중 착용하지 아니하는 의복을 갈아입고, 보관하고, 말릴 수 있는 적절한 시설을 제공하고 적절히 유지하여야 한다.

제16조 작업이 실시되는 지하 또는 창이 없는 구역은 적절한 위생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 근로자는 불쾌하고, 건강에 해롭거나, 유독하거나 또는 어떤 이유로나 유해로운 물질, 공정 및 기술로부터 적절하고 실시가능한 조치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작업의 성질상 필요할 경우에는 권한있는 기관이 개인보호설비를 규정하여야 한다.

제18조 근로자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음 및 진동을 가능한 한 적절하고 실시가능한 조치로 감소시켜야 한다.

2) 독일의 공공부문

(1) 독일 공공부문의 이원주의

독일 공공부문은 공무원으로 대표되는 공법상 공무원관계(법정주의모델, Gesetzmodel)와 노동자 지위를 갖는 사법상의 고용관계(단체교섭모델, Tarifmodel)가 이중적으로 존재하는 이원적 관계를 특징으로 갖고 있다.²⁹⁾

공무원은 임용 관계를 통해서, 노동자는 고용계약을 통해 직무를 할당받는다라는 차이를 갖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무원은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의 기본권 제한을 받는 반면, 공공부문의 노동자들은 단체교섭을 통해 임금과 근로조건을 보장받는다.

독일의 공공행정은 공무원(Beamte)에 의해서뿐 아니라 민간인 신분인

28) 고용노동부, 「ILO 주요협약」, 2012, 351-357쪽.

29) 정동관·김철·박우성·이승협, 「공공부문 인력관리체계 및 임금결정에 관한 국제 비교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19, 182-184쪽.

‘협약노동자’ [Tarifbeschäftigte; 또는 노동자(Arbeitnehmer)]에 의해서도 수행된다. 판사와 군인은 또 다른 특수한 복무 관계하에 있음. 이들을 총칭하여 독일 공공부문 종사자를 공직자(öffentlicher Dienst)라고 한다.³⁰⁾

공무원과 판사·군인은 법률에 의해 고용관계가 형성되고, 주로 고권적 권한을 행사하는 행정 분야, 즉 행정의 핵심 분야에 종사한다.

그 외 공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근로를 제공하는 이른바 공무원직은, 협약근로자라고 한다. 이들은 민간부문과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을 통해 고용관계가 형성된다. 독일의 경우 이러한 공무원 근로자는 건강 등 사회보장 분야나 기술적 업무에 종사한다.

독일의 공공부문에 공무원이 아닌 협약노동자를 채용하는 제도는 19세기에 도입³¹⁾되었는데, 이는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하여 국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함이었다.³²⁾

〈표 IV-5〉 독일 공무원과 공무원직 근로자 비교³³⁾

구분	공무원	공무원직 근로자
신분	종신고용 보장	종신고용 불인정
임용/노동조건	법률로써 규정	근로계약을 통해 규정
보수/임금	국가와 국민에 대한 봉사의 대가	근로에 대한 대가
노동기본권	파업 불인정	노동3권 전면 보장

30) 정원호·채준호, 「해외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정책 연구」, 고용노동부, 2017, 75쪽 (이하, - 포함).

31) 정원호·채준호, 「해외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정책 연구」, 고용노동부, 2017, 76-77쪽(이하, - 포함).

32) 공무원의 신분은 「연방공무원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보수와 후생은 각각 「연방보수법」과 「공무원후생법」에 근거를 두고 있음. 공무원의 신분과 노동조건이 법률에 의해 규정되기 때문에 노동기본권에서는 파업이 허용되지 않는 등 다소 제약을 받음.

33) 양현모, 「독일정부론」, 대영문화사, 2006, 192쪽(정원호·채준호, 「해외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정책 연구」, 고용노동부, 2017, 77쪽에서 재인용)

(2) 현황

가) 공공부문 고용현황

독일통계청은 공적 사용자(Öffentliche Arbeitgeber)를 기준으로 공공부문의 고용현황을 살펴보면 공무원에 비해 공무원의 비중이 크다(2016년 기준 공직자(공공부문 종사자) 중에서 공무원 및 판사가 36.1%, 군인이 3.6%인 데 반해, 협약 노동자는 60.3%).³⁴⁾ 특히 1990년 중반 ‘민영화’ 정책에 따른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³⁵⁾

나) 공무원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환경

협약노동자의 고용은 노동계약에 의해 정해지는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정년, 즉 연금개시 연령까지 보장된다.

협약노동자들은 질병보험, 요양보험, 산재보험, 연금보험 및 실업보험 등 법정 사회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데, 이때 보험료는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는 산재보험을 제외하고는 노사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³⁶⁾

(3) 산업안전제도 체계상 의무 주체로서 국가

가) 독일 「산안법」 상 공공부문의 범위

종래 국가가 공익 차원에서 공무원을 통해 독점적으로 운영하던 사업부문이 독일에서는 상당부분 민영화 되었다. 독일의 경우 체신관계법과 철도관련법을 개정하여 체신사업(DP)³⁷⁾과 독일 철도사업(DB)³⁸⁾을 각각 - 비록 국가가 다수의 지분을 갖기는 하지만 - 민영화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항공 산업³⁹⁾ 역시 민영화되었다.

34) 정원호·채준호, 「해외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정책 연구」, 고용노동부, 2017, 79쪽.

35) 정원호·채준호, 「해외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정책 연구」, 고용노동부, 2017, 80쪽.

36) 정원호·채준호, 「해외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정책 연구」, 고용노동부, 2017, 92쪽.

37) Poststrukturgesetz v. 8. 6. 1989, BGBl. I, 1026.

38) Der Spiegel Nr.28 v. 6. 7. 1992, S.82ff.

국가가 공무원을 투입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아래의 규정에 따라 쟁의행위 등 공공업무수행의 지속을 어렵게 만드는 불안정성 요소는 배제할 수 있어서 업무의 안정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 그럼에도 민영화가 추진된 배경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을 통한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볼 수 있다.

제20조 공공업무에 대한 규정

- (1) 연방주의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공법상의 단체, 기관 및 재단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연방주법이 제18조에 의해 제정된 법규명령의 적용여부 및 적용범위를 정한다.
- (2) 공공업무 중 일정 업무, 특히 군, 경찰, 민방 및 재해대책업무, 관세 또는 보도업무에 대하여는, 공공의 이익, 특히 공공안전의 유지 또는 회복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연방수상, 연방내무부, 연방교통건설·도시개발부, 연방국방부 또는 연방재정부는, 이에 대해 각각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한도 내에서, 연방 상원의 동의 없이 법규명령으로 이 법의 규정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제1문에 따른 법규명령은, 연방노동·사회부의 동의, 연방내무부 스스로가 법규명령을 제정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연방내무부의 동의를 얻어 제정된다. 또한 법규명령으로, 이를 고려한 다른 방식에 의한 근로제공에 있어서 안전과 건강보호확보방안을 정할 수 있다. 연방주의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공법상의 단체, 기관 및 재단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연방주법으로 제1문과 제3문에 상응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

나) 의무 주체로서 국가

공무직 근로자의 경우 국가는 사업주이자 사용자로서 노동법상 지위를 향유하게 될 뿐이므로, 「산안법」상 제반 규율에 정한 의무의 주체로서 지위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공무원 관계에서의 국가의 지위와는 구분된다.

독일 산업안전에 관한 근로감독관은 모두 주정부의 소속이며, 규정위반에 대한 개선통지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은 행정질서벌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39) Gesetz zur Änderung des Luftverkehrsgesetzes v. 23. 7. 1992 (BGBl. I S.1370).

(독일) 「산업안전보건법」

제1절 총칙

제1조 목적과 적용범위

제2조 정의규정

- (1) 이 법에서 말하는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보호조치라 함은, 근로제공에 있어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및, 인간다운 형태의 근로를 위한 조치를 포함한 근로에 의해 유발되는 건강상 위해요소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 (2) 이 법에서 말하는 취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근로자,
 - 2. 직업교육을 받고 있는 자,
 - 3. 가내근로에 종사하는 자 및 그와 동등한 자를 제외한, 「노동법원법」제5조 제2항의 근로자와 유사한 자,
 - 4. 공무원,
 - 5. 법관,
 - 6. 군인,
 - 7. 장애인을 위한 공장에 취업중인 자.
- (3) 이 법에서 말하는 사용자라 함은, 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취업시키고 있는 자연인과 법인 및 법인격 있는 인적회사를 말한다.
- (4) 이 법에서 말하는 기타의 법률규정이라 함은, 다른 법률, 법규명령 및 재해예방규칙에 정해진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조치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 (5) 공공업무분야에서 관청은 이 법률상의 사업으로 본다. 개별 행정관청, 연방과 연방주의 행정관청 내 사업, 지방자치단체, 공법상의 단체, 기관 및 재단, 연방과 연방주의 법원 및 병력시설이 관청에 해당한다.

다) 공공부문 현업종사자 업무의 공익관련성

① 공익의 개념

업무의 내용이나 성격에 비추어 그 정상적 수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불특정 다수의 제3자나 일반 공중의 이익이 침해될 수도 있다. 여기에서 이른바

‘공익’(Gemeinwohl)이라는 특별한 개념이 도출된다.⁴⁰⁾

공익의 개념은 제한적이며 구체화 된 개념표지가 아니고 오히려 공익의 개념은 매우 다양하며, 그 의미가 포괄적이다.

결과적으로 공공부문의 업무는 그 속성상 특정 또는 다수의 제3자가 기본권 차원에서 향유하여야 하는 권리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② 예: 긴급유지업무(Notstandsarbeiten)

공공부문 종사 근로자는, 공무원이든 공무원직 근로자이든 상관없이 공익적 성격을 가지는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렇다면 제3자에 미칠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해 비록 해당 업무의 지속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가 있는바 이른바 긴급유지업무가 바로 그 예이다.

긴급유지업무란, 파업의 효과와 비교하여 그에 우선하는 제3자의 법익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요구되는 업무이다. 제3자에게 인정되는 우선적인 법익이란, 생명권이나 기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들 수 있다.

그 외에도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알권리나 정보의 자유 등도 독일에서 고려된 바가 있는데 이를 “생존중요사업(lebenswichtige Betriebe)”이라고 칭한다. 대체로 독일 노동법상 이러한 생존중요사업의 경우에는 제3자 및 일반 공중의 최소한 생존 급부를 위해 파업 중에도 계속해서 근로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본다.⁴¹⁾

한편 생존중요사업이란 공공대중의 생존에 필수적인 자원을 공급하거나, 공공의 안녕에 필요한 내용의 업무를 말한다. 예컨대 보건업무나 식량이란 식품공급, 전기와 같은 에너지관련 사업, 식수공급이나 치안관련업무 그 외에도

40) Gamillscheg, KollArbR I § 21 II 4b (7) (a), S. 999f.; Berger-Delhey, ZTR 1993, 3, 5. 쟁의행위의 제한을 위하여 공익의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근로3권 질서를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자의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하는 견해도 있다 (Hammer AiB 1995, 221 (222)).

41) Jansen, Die betriebliche Mitbestimmung im Arbeitskampf, 1998 (Diss.), S.230.

통신이나 체신업무 등이 이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평가된다.⁴²⁾ 이러한 업무는 절대적이고 즉시적인 피해로서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제3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한 기본권적 권리 등 공익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 공공부문 필수업무의 개념표지

① 생존배려성(Daseinvorsorge)

우선 독일에서는 공공부문 업무의 속성을 인간으로서 생존하기 위해 필요불가결한 자원과 관련된 것이어야 하는데 이러한 예로는 대체로 전기·가스·수도·의료 등이 예시되고 있다.⁴³⁾

② 대체 급부의 난해성

업무의 내용이 대체급부의 가능성이 낮은 특징이 있다. 전면적인 중단상황에서는 공익보호가 우선되어야 하므로, 그러한 한도에서 쟁의행위권은 제한되어야 하며, 이때 국가의 개입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대체로 인적, 사회적, 국가적으로 기본적인 요구에 대하여는 최소한의 생존급부가 가능하도록 그 업무의 유지에 기여하여야 하는 사업분야로서 1) 식료품과 공중위생 및 의료 사업과 2) 에너지 및 수도사업 3) 대중운수사업 4) 우편, 통신, 방송사업 5) 소방, 장의, 오물수거사업 6) 국방과 치안관련 업무를 열거되기도 한다.⁴⁴⁾

이러한 사업 분야 범위는 국민의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필요업무로서의 본질을 가지거나, 국가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본질적인 업무로서 평가된 것이다.

42) BAG 30. 3. 1982, AP Nr.74 zu Art. 9 GG Arbeitskampf; Gamillscheg, Kollektives Arbeitsrecht I, §24 V 4; Hromadka/Maschmann, Arbeitsrecht 2, 3. Aufl., 2004, S.179.

43) Gamillscheg Kollektives Arbeitsrecht I, 1996, S.1178.

44) Birk/Konzen/Löwisch/Raiser/Seiter, 집단적 노사분쟁의 규율에 관한 법률(김형배 역), 1990, 71-72쪽.

제21조 관할 행정관청; 법정 재해보험기관과의 협력

- (1) 이 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의 감독은 국가의 임무이다. 관할 행정관청은, 이 법률 및 이 법률에 의해 제정된 법규명령의 준수를 감독하고, 사용자와 그 의무이행에 있어서 협의하여야 한다.
- (2) 법정 재해보험기관의 임무와 권한은,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사회법전의 규정에 따른다. 사회법전에 따른 법정 재해보험기관이 재해예방업무를 이행함에 있어 취업자의 안전 및 건강보호의 보장에 관한 업무도 수행하는 한, 법정 재해보험기관은 오로지 자율적 권한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 (3) 관할 행정관청과 재해보험기관은 제20조의a 제2항 제4호에 따른 공동 협의·감독정책에 근거하여 긴밀히 협력하고, 지득한 사실의 교환에 노력한다. 이 정책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있어서의 방법론적 대처방식에 관한 일반적 원칙의 조율을 포괄한다.
 1. 사업의 감독과 협의,
 2. 협의 또는 감독에 있어 내용적 중점사항의 확정, 또는 상호간에 조율되었거나 또는 공동의 중점적 활동사항 및 업무프로그램의 확정,
 3. 데이터 및 기타 정보교환, 특히 사업시찰 및 그 중요 결과에 대한 정보교환의 촉진. 관할 행정관청은 「사회법전 제7편」제20조 제2항 제3문에 따른 재해보험기관과 제20조의a 제2항 제2호에 따른 공동 업무프로그램 및 공동 협의·감독정책을 실제 적용함에 있어 필요한 조치를 합의한다; 관할 행정관청은, 국가산업안전보건회의가 제20조의a 제2항 제3호에 의해 정한 지표에 의해 목표치의 달성에 대해 평가한다.
- (4) 산업안전보건을 관할하는 연방주의 최상급 행정관청은, 법정 재해보험기관이 상세히 규정된 활동범위 내에서 이 법률, 이 법률의 특정 규정 또는 이 법률에 의해 제정된 법규명령의 준수를 감독하는 것으로 법정 재해보험기관과 합의할 수 있다. 합의에서는, 감독의 형태 및 범위, 그리고 국가의 산업안전보건행정관청과의 협력을 정할 수 있다.
- (5) 다음에서 다르게 정하지 않는 한, 연방의 사업 및 행정관청에서의 이 법률 및 이 법률에 의해 제정된 법규명령의 실행에 대한 관할 행정관청은, 연방내무부의 중앙산업안전보건사무소이다.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연방내무부의 감독을 받는 연방재해보험기관이 중앙산업안전보건사무소의 위임을 받아 임무를 수행한다; 비용지출은 변상되지 아니한다. 연방교통·건설·도시개발부의 업무범위 내에 있는 공공업무의 경우에는, 철도재해보험기관이 재해보험기관인 한, 철도재해보험기관이 이 법률의 실행을 맡는다. 연방국방부의 업무범위 내에 속하는 사업 또는 행정관청 및 재외공관과 관련하여서는, 연방국방부와 연방외무부 또는, 그 권한에 속하는 한, 이에 의해 정해진 기관이 이 법률의 실행을 맡는다. 이전의 연방체신·통신부의 업무범위와 관련되어 있는 한, 연방재정부의 업무범위 내에서는 체신·통신재해보험기관이 이 법률의 실행을 맡는다. 제1문 내지 제4문은, 연방행정기관에

속하기는 하지만 직종별재해보험기관이 재해보험기관인 사업 및 행정관청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관할 연방부는 직종별재해보험기관과 이들 사업 및 행정관청에 대하여 직종별 재해보험기관이 이 법률의 실행을 담당할 것을 합의할 수 있다; 비용지출은 변상되지 아니한다.

마) 위험에의 대응체계의 특수성

① '근로계약상의 내재적 의무'로서 긴급유지업무 수행 의무

긴급유지업무의 경우는 제3자의 이익 또는 공익의 우선적 고려 필요성에 따라 일정한 범위에서 중단됨이 없이 수행되어야 하는 데 대표적인 경우가 공무원의 공무수행이다.

같은 맥락에서 국가 기관의 역할을 대행하는 공무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공공부문 현업종사자는 중단 없는 근로제공의무를 부담하는 셈이다. 이는 그 생산의 대상이나 업무의 내용이 - 종전에는 대개 국가가 독점적으로 행하던 - 공익적 성격의 것이기 때문이다.

② 사회적 급부제공자로서의 지위

공공부문 현업종사자는 사회적 급부제공자(Sozialer Leistungsträger)로서의 지위에 놓인다.⁴⁵⁾ 사회적 급부제공자로서의 실질을 갖는 기업은 단순히 이윤을 추구하는 사적 단체로서의 특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 공익적 단체성을 내포하게 된다. 요컨대 긴급유지업무의 유지와 수행의무는 애당초 근로계약관계 내에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⁴⁶⁾

45) Meydam, NZA 1984, 384 (386).

46) 이는 독일학계의 지배적 입장에 해당된다. Wiese, NZA 1981, 378 (381); Däubler, AuR 1981, 263; Fenn, Betr 1982, 433; Löwisch/Mikosch, ZfA 1978, 164f.

제9조 특수한 위험요소

- (1) 사용자는, 사전에 적합한 지시를 받은 취업자만이 특별히 위험한 작업범위에 출입이 허용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2) 사용자는, 직접적이고 중대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거나 노출될 수 있는 모든 취업자가 가능한 한 빨리 그 위험 및 이와 관련해 취해졌거나 취해져야 할 보호조치에 관해 통지받는데 필요한 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자기 또는 다른 자의 안전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위험이 있고 이를 해당 상관에게 보고할 수 없는 경우에, 취업자는 본인 스스로가 위험을 막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적합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 경우 취업자의 지식 및 현장의 기술적 수단이 참작되어야 한다. 이러한 행위를 이유로 취업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만 취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적절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사용자는, 직접적이고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취업자가 작업장을 즉시 이탈함으로써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로 인해 취업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접적이고 중대한 위험이 지속되는 경우에,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근로자에게 업무의 재개를 요구할 수 있다.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위험을 방어할 취업자의 법률상 의무 및 「군인법」 제7조, 제11조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바) 의견 청취

공공업무 종사자에 대한 의견청취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제14조 공공업무에 종사하는 취업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의견청취

- (1) 공공업무에 종사하는 취업자는, 근로제공의 개시 전 그리고 업무범위의 변경의 경우에, 근로제공시에 노출될 수 있는 안전과 건강상의 위험,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 및 시설 및 제10조 제2항에 의해 취해진 조치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받는다.
- (2) 공공업무의 사업 내에 취업자의 대표가 없는 경우, 사용자는 취업자의 안전 및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조치에 대하여 취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공공부문 산업안전보건체계의 주요 내용

(1) 공공부문 현업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주요 체계와 목표

공공 서비스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고용주가 국가인 고용 관계이며, 공공 부문의 근로자는 국가 서비스를 이행하고 지방 자치 단체, 도시 또는 주에서 고용된다.

공공부문 업무 예시로서 학교/유치원/소방/묘지/요양원/시립수영장/상수도/병원 등 다양하다.

(2) 건조물과 설비 등에 관한 산업재해 예방

공공부문의 산업안전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에서 산업안전을 위해서는 그 안전조치 이행에 따른 개인의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조직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산업안전에 관한 의사소통/정보, 훈련, 산업안전교육, 위험 평가, 작업 재료, 기획, 투자, 조달, 유지, 업무도급 등에서의 산업안전보건 조치의 의무 주체가 명확화 되어 있다.

공공행정 건물의 경우 공공부문에서 필요한 산업 안전 조치 외에도 공공행정 건물에도 다양한 안전 요구 사항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공공행정 건물의 바닥재는 미끄럼 방지 재료로 만들어야 하며, 난간과 난간은 난간, 무릎 난간, 발가락 막대를 사용하여 추락 방지용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유리 표면은 비산 방지 재질로 제작되어야 하며, 탈출문은 탈출 방향으로 열리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철망 바구니를 사용하여 조명이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자체 조명 스위치를 설치해야 한다. 건물이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4) 구체적인 지침례 : 바이에른 주 공공부문 근로자 산업안전보건 지침 (12.10.2000)

바이에른 주 공공부문 근로자 산업안전보건 지침 (12. 10. 2000)

1. 개론

1996년 8월 7일 직장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 보호를 개선하기 위한 산업 안전 조치 시행에 관한 법률(산업 안전 및 보건법 - ArbSchG)(BGBI I p. 1246)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부 지침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1.1

이 지침은 모든 바이에른주 행정부 소속 부처, 법원 그리고 공공기관에 적용된다.

1.2

「산업안전보건법」(ArbSchG)과 이를 기반으로 한 법적 규정은 공무원, 판사, 직원, 바이에른 공무원법의 의미에 따른 신입 직원 및 다음과 같은 자유 국가의 기타 연수생(인턴 포함)에게 적용된다. 이때 직원이란, 국가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채용되어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1.3

공공의 이익은 절대적 가치를 가진다. 특히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거나 회복하기 위해 경찰, 헌법 수호청, 교도소 시스템 및 소방대의 작전 활동을 수행하며 법령에 따른 사항을 집행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때 그 활동에 수반하여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 그 관리자는 독일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1항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기반으로 산업 안전 규정의 목표에 충실하도록 그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보호하도록 해야 한다.

1.4

바이에른 주 산하 부처와 공공기관 등에서의 고용주와 부서장은 「산안법」 조항 및 이를 기반으로 하는 제반 법 규정상의 산업안전보건 의무를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다.

우선 '대학부문'에서는 국가과학기술부 외에 그 대학의 운영주체인 총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조항 및 이에 근거한 개별 규정의 준수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다만 총장의 책임사항으로 명시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처리할 책임이 있다.

‘학교부문’에서는 학교 내부의 건물, 시설 및 설비에 대한 책임은 그 시설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부담하도록 하고, 학교 내부의 인적 조직과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교장이 부담한다.

교장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그 구체적인 대응조치에 필요한 이론 및 실무역량을 갖춘 근로자를 안전보건관리자로서 채용하여 소정의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에게 책임을 부여하고 안전보건관리자의 책임하에 본 지침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에 필요한 업무의 위탁을 증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서면이 작성되어야 한다. 다만 안전보건관리자에 대한 업무위탁은 사무실 등 건조물의 구조와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을 고려하여 재위임을 할 수도 있다.

특히 대학 부문에서 정확한 책임 구조와 그 업무수행 지휘체계를 명확히 해두어야 한다. 나아가 해당 산업안전보건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과 기술을 해당 관리자가 갖추고 있는지를 적시에 확인하는 것도 학교장의 의무이다. 가사 산업안전보건에 필요한 업무의 수행을 위탁한 경우라도, 당초 교장이나 최초 위임자의 책임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2. 위험성 평가 및 관련 사항에 대한 서면 관리

2.1

「산업안전보건법」상 부여되는 제반 산업안전조치 의무는 법 규정 및 관련 사고 예방 지침에 정해진 바에 따라 모든 부서의 근로자들이 소속 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수행해야 한다.

2.2

특히,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조치의 이행 차원에서 우선 「산업안전보건법」 제5장에 따른 위험성 평가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각 사무실 등 건조물에서의 근무장소 위험평가를 해야 하며, 그 결과는 반드시 「산업안전보건법」 제6장에 따라 서면으로 문서화되어야 한다.

위험성 평가는 작업 중 직원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과 상황은 무엇인지, 이에 대비하여 어떤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를 사전에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위험성 평가는 작업 유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데, 근로조건이 동일하다면 하나의 표준적인 작업에 대한 평가로 족하고, 업무수행을 위한 장소 등 근로조건이 구체적 상황마다 다르다고 판단되면, 다양한 작업 조건을 전제로 하여 별도의 위험성평가가 단행되어야 한다.

2.2.1

위험 평가

위험 평가를 수행할 때 일반적으로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작업 건조물이나 설비의 작업 내용 등에 따른 체계적인 분류
- 평가대상 영역에서의 결함에 대한 위험성 평가
- 파악된 위험에 대해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산업안전조치의 이행 방식과 이행 체계 구축 등 대응조치 내용에 대한 결정
- 대응조치에 대한 이행 주체, 이행 시점, 이행 수단 등 대응조치이행의 실효성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 결정

평가 대상인 부문에서의 위험 식별 및 위험성 평가에 대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첫 번째 단계에서는 작업장의 특성(예: 부적절한 조명, 열악한 실내 온습도)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식별할 것
- 두 번째 단계에서는 기존 작업 장비에 내재된 결함 등에 기인한 위험 요인을 점검할 것. 특히 제공된 기계 또는 개인 보호 장비가 안전 요구 사항 및 해당 기능이 적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할 것
- 세 번째 단계에서는 특정 작업장에서 수행할 특정 작업 내용과 행동에 따른 위험 요인을 확인할 것
- 네 번째 단계는 해당 사업장 내에서 작업을 하는 개개 근로자의 특성을 반영할 것. 특히 신체적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예: 장애인, 청소년, 임산부, 모유 수유 중인 여성)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개사안별로 독립적으로는 위험요인이 아니지만, 작업 프로세스와 근무 시간 간의 상호 작용에 따라서는 위험요인이 될 수 있는 요소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

위험성 평가에 따른 위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는 구체적인 이행 기한이 정해져야 한다. 또한 조치의 내용결정에 있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에 명시된 일반 원칙에 기초해야 하는 바, 특정 위험 평가에 대한 새로운 지식, 신기술로 인한 더 나은 보호 옵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2.2

위험성 평가 결과와 이에 따른 산업안전조치 및 검토 결과는 반드시 서면으로 보관되어야 한다. 다만 데이터 매체에 기록하는 것은 서면 형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2.3

일반사무행정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나 컴퓨터 작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의 경우 바이에른주 보건안전청(LGL)이 발간한 일반사무실 위험성 평가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위험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체크리스트는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보조적 도구이다.

2.4

위험성 평가 결과에 따라 도출된 산업 안전 조치 및 검사 결과는 근로자대표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2.5

부서장은 소속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어 3일 이상 일할 수 없게 된 사고에 대해서는 반드시 서면기록을 남겨야 한다.

(이하 생략)

5) 학교의 산업안전보건체계

(1) 교육 기관의 유형

독일의 경우 유아 교육은 탁아소,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이루어진다. 6세가 되면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고 학교에 다녀야 한다. 학교는 일반적으로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직업학교, 중등학교로 구분된다.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 (1) 「산업안전보건법」(ArbSchG)
- (2) 산업안전법(ASiG)
- (3) DGUV
 - DGUV 규정 1 - 예방 원칙
 - DGUV 규정 2 - 회사 의사 및 산업 안전 전문가
 - DGUV 규정 81 - 학교
 - DGUV 규정 82 - 보육 시설
 - DGUV 규칙 102-002 - 유치원 등 안전 및 산업 안전에 대한 책임

(2) 교육기관에서의 산업안전 체계

피교육생을 위한 안전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교육자와 교사는 자신이 돌보는 아동을 교육할 책임이 있고 동시에 안전에 관한 책임도 진다. 이러한 안전 보호 의무는 아동이 등교하고 난 후 부모와 함께 각 시설을 떠날 때만 종료된다.

어린이집의 경우는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응급처치 훈련을 받은 교육자가 있어야 한다.

교육자를 위한 산업안전보건 보호와 관련하여 교육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어린이는 제반 질병에 대한 예방 접종을 받아야 한다.

교육자들이 허리 건강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중요한데 이는 어린이집에서 종종 일상생활의 일부인 어린아이를 지속적으로 구부리고, 들어올리고, 안는 행위로 인해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에서의 안전 및 산업 보건과 관련해서는 학교 영역에서 학교의 학생, 교직원 및 비교직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책임은 학교장에게 귀속된다.

학교장은, 사고 예방, 응급 처치 조직 및 안전 교육을 책임지며, 이러한 맥락에서 학교장은 학교 내부 구역 안전담당자를 임명하고 학교 건물 및 학교 시설의

결함을 자재비 부담자에게 신고하고, 원인 규명 및 학생 사고 예방 등을 할 의무가 있다.

(3)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의 산업안전보건체제(Organisation)⁴⁷⁾

가) 학교장

학교장은 교사의 직업적 건강과 안전에 대한 책임자로서 지위를 가진다. 학교장의 구체적 의무는 다음과 같다.

a. 학교내 위험성 평가실시 의무

- 학교장은, 안전과 건강에 대한 위험과 관련하여 교사의 근무 조건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필요한 산업 안전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TOP〉플랜).

〈TOP〉플랜

T = 위험을 줄이기 위한 기술적/구조적 조치

(예: 방화문, 후드, 연기 감지기, 난간, 건물경보음향시설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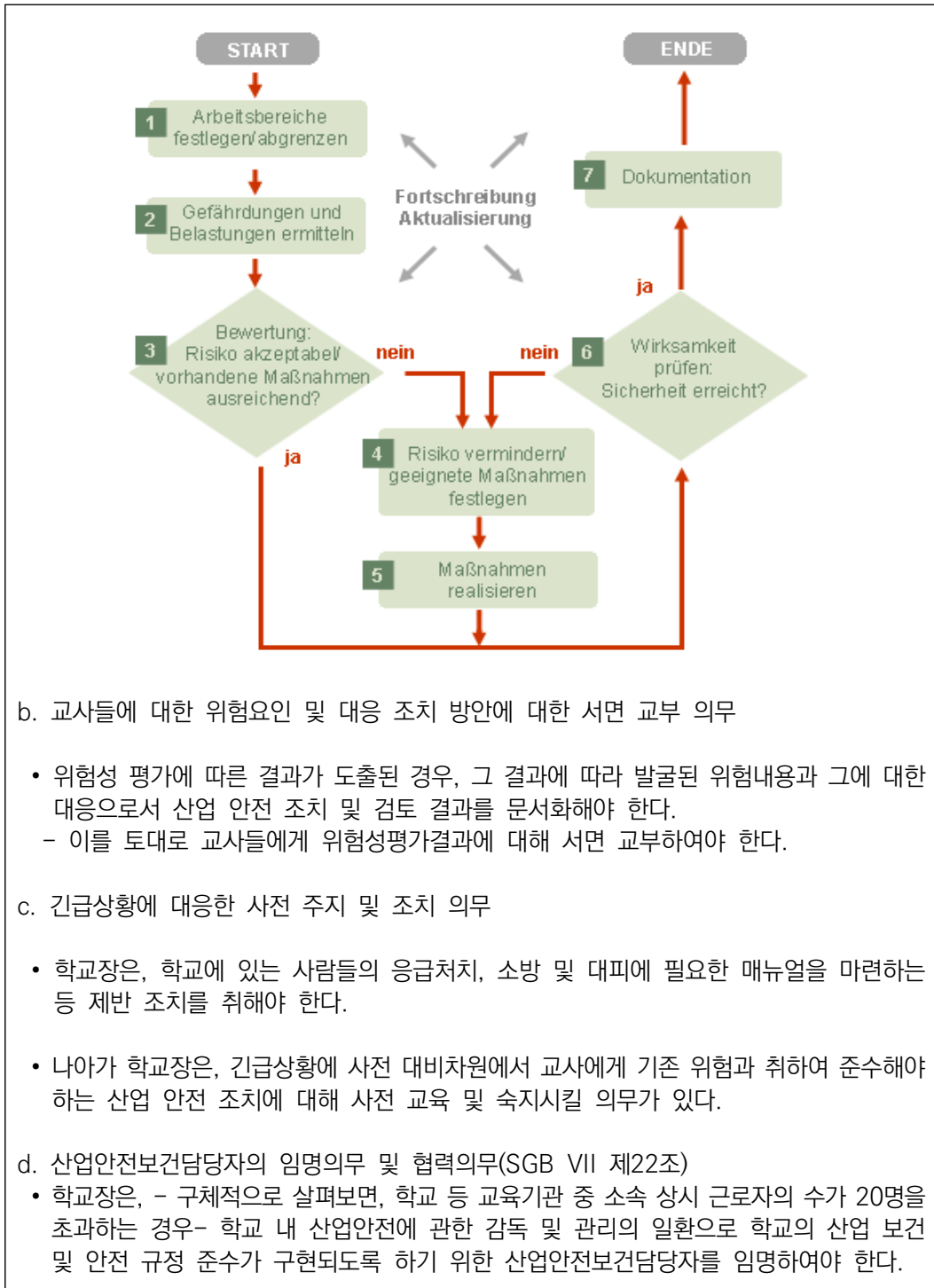
O = 조직적 조치(예: 경보 훈련, 지시, 탈출 및 구조 계획 수립 등)

P = 개인 조치(예: 화재 시 개인 보호 장비 착용 등)

- 학교 시설물 등 제반 사업장 환경에 대한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제반 문서 등의 관리책임은 학교장에게 귀속된다.

〈참고: 위험성 평가 7단계〉

47) DGUV Regel 102-601, Aug. 2019. S.12ff.



- 학교산업안전보건담당자는 학교 내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정보를 학내 다양한 사람들이 투명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특히 교사나 교직원이 산업안전관련 장비의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학생이나 자원봉사자 등이 안전하지 않은 방식으로 일하는 등의 행동을 제어하게 된다.
- 나아가 학교산업안전보건담당자의 제반 업무에 대해 학교장은 충실히 그 업무를 수행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나) 교사

교육 기관 종사 근로자로서 교사는 고용주인 학교장의 지시와 지침에 따라 학교 내에서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한 제반 조치를 성실하게 따를 의무가 있다.

특히 교사는 자신의 행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동료 교사나 학생 기타 학내 다른 구성원들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조치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다) 학교산업안전보건서비스센터

독일은 2004년 4월 1일 주 교육부 산하에 ‘학교산업안전보건서비스센터’를 설립하였다.⁴⁸⁾ 학교산업안전보건서비스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a. 학교에 특화된 산업안전보건체계 계발
 - 본 기관은 학교 교사에 특화된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 개념 및 체계 계발 지원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
- b. 독일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주요 업무의 처리
- c. 교사들에 대한 교육 지원

48) 원래 이 센터는, 슈투트가르트 고등학교에서 개별적으로 마련하여 설치해 두었던 안전통제실 시스템을 주 교육부 산하로 이관하여 정식으로 설립하도록 한 것이다.

- 학교 교사들에 대한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지침 계발 및 교육 제공 업무를 담당한다.
- d.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자문
 - 학교 내 교사 등 구성원들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문제와 그에 대한 의견을 학교장 및 교사 등에게 조언을 하여야 한다.
- e. 산업안전보건전문가에 의한 평가 지원
 - 산업안전보건 전문가를 통한 학교 내 위험관리 등에 대한 정보 공유 기획의 제공

라) 학교산업안전보건담당자

학교장은 학교산업안전보건담당자를 SGB VII 제22조에 따라 학교에서의 예방 작업 및 안전 증진을 위해 임명하여야 하되, 다만 이들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의 책임을 대체하거나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때 학교 내 교직원 대표와 기회평등담당관 및 중증 장애인 지원관이 함께 참여하여야 한다.

학교산업안전보건담당관의 구체적인 업무는 다음과 같다.

- a. 자문 및 조언 의무
 - 학교산업안전보건담당자는 학교장의 산업안전보건에 관련한 제반 업무를 지원하고 조언을 하여야 한다.
 - 또한 산업안전보건담당자는 학교의 교사들에게 업무상 지시를 내릴 권한은 없음. 단지 조언과 교육 등을 할 의무를 부담한다.
- b. 사고 예방 조사 및 사후 조사
 - 학교산업안전보건담당자는 학교 내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 평가조사 및 사고 발생 시 사고조사에 참여해야 한다.
- c. 공지의무
 - 학내 구성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험에 대한 평가조사 및 사고 조사 결과를 학내 구성원들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마) 학교산업안전보건위원회

독일 산업안전법은 산업안전위원회라는 형태로 산업안전담당자, 사업장 내 구성원, 그 외 자문위원들의 협력을 제도화하고 있다. 다만 공공부문에서는 이러한 산업안전위원회의 구성이 법적 의무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내 다수의 주정부 학교당국, 지역협의회, 교육부에 학교산업안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협의회 및 교육부 수준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초등, 중등, 중등, 고등학교, 특수 교육 및 직업학교 등에 따라 별도로 구성된다.

학교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분야별 전문실무그룹을 두어, 교사의 건강 증진을 위한 안전보건시스템을 개발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개발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 등을 얻어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⁴⁹⁾

(4) 학교 내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의 소재

학교 부문에서 산업안전에 관한 제반 책임의 소재는 그 위험요인의 소재가 학교 내에 있는지 또는 학교 내부에 있는 지에 따라 나누어진다.⁵⁰⁾

가) 학교 내부에서의 산업안전보건책임의 부담 주체: 학교장(CEO)

우선 학교시설물 등 내부 영역에서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도록 보장하는 것은, 학교의 운영을 최종적으로 담당하는 학교장의 책임으로 귀속된다.

이때 학교 내부 영역에서의 산업안전에 관한 문제란 다음과 같다.

49) 바덴-뷔르템베르크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해 두었던 공립학교 및 학교 유치원 교사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시스템이 제도화된 것이다.

50) DGUV Regel 102-601, Aug. 2019. S.13f.

- (안전사고) 학교 내에서 <구성원들> 사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교사나 학생이 부상을 입은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고, 그 방지대책을 세우는 등의 조치를 할 의무는 학교장이 부담한다.
- (학교 설비 하자 등) <학교 건물이나 학교 시설> 등에 결함이 있어서 안전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즉시 학교 내 시설관리를 위한 비용 부담을 직접 담당하는 자(=수선, 수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제반 결정 담당자)에게 보고하되, 그 위험의 근본적이고 신속한 제거를 위해 노력할 의무 등 제반 책임은 <학교장>에게 귀속된다.
- (긴급재난발생에 따른 학교안전 등) 긴급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학내 구성원들의 안전 등을 위한 긴급 조치 등은 학교 내부 규정 등을 통해 매뉴얼이 마련되도록 하고, 제반 교육 등을 교직원이나 학생들에게 충분히 제공되도록 해야 하고 이에 대한 책임은 궁극적으로 학교장에게 귀속된다.

나) 학교 외부에서의 산업안전에 관한 책임주체: 비용부담결정자(CEO or CSO)

학교 외부에서의 산업안전에 관한 책임은 소요 예산 등 비용 부담을 결정하는 주체에게 귀속된다. 이때 학교 외부에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란 다음과 같다.

- 예컨대 학교에 일정한 설비를 납품하는 사업장에서 학교 내에서 작업을 하는 도중에 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 그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은, 학교의 재료비 등 제반 비용부담을 결정하는 자에게 귀속된다.
- 한편 학교 내 건물증축 공사 중에 학내 구성원들에게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시설 및 장비의 안전한 설계, 유지 관리 및 서비스를 통해 사고와 위험을 방지해야 할 의무 역시 비용부담자에게 귀속된다.

6) 소결 및 시사점

공공부문에 속한 업무는 그 업무의 공익적 속성 때문에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약화될 우려가 내재되어 있다. 독일은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 두 가지 조치를 강조하고 있다.

첫 번째는 산업안전보건체제에 대한 정비가 명확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점, 두 번째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공공부문의 현업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 고유한 공공부문 안전보건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고 그 책임의 소재와 기능을 명확히 재정립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특히 공공부문의 경우 매우 다양한 작업공간의 고유한 특수성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위험성 평가가 그 특수성과 고유성에 부합하도록 이루어지고, 그 결과를 종사자들 모두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는 별도의 매뉴얼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영국⁵¹⁾

1) 영국에서의 공무원 및 공공행정의 분류 및 정의

(1) 공무원 및 공공행정⁵²⁾

영국에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고용 사이에는 많은 구별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 종사자와 국가 간의 고용관계의 성격은 여전히 모호한 부분은 남아 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도 어떠한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지에 따라 다양하다.

영국에서도 공공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다양하다. 영국의 경우, 왕실, 기타 국가행정기관, 국가의 특정기능수행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등이 있다. 예를 들면, 왕실, 국회의사당, 경찰, 군대, 국가보건서비스, 지방정부 및 교육기관 등을 들 수 있다.

51) 영국 제도의 연구는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박수경 연구교수가 작성하였다.

52) 이하의 내용은 What is a Civil Servant?:

<https://www.civilservant.org.uk/information-definitions.html> 참조.

영국에서 2016년 9월 기준, 공공부문 종사자는 5,442,000명인데, 이 중 중앙정부에서 종사자(공무원)는 2,950명, 지방정부 종사자는 2,180명, 공기업은 312,000명이다.

이 중에서 공무원(civil servant)은 왕실에 고용된 사람들이며, 대부분의 공무원은 정부 부서에서 일하기 때문에 정부 장관에 의해 고용된다. 반면, 영국의회는 왕실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 고용된 사람들은 공무원이 아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NHS, 경찰청, BBC와 같은 공공기관에 고용된 사람들도 공무원이 아니다.

영국에서 공무원은 주로 정부 부서에 근무하며 장관에게 보고를 하는 사람들로 구성된다. 법률상 세 개의 별도 공무원이 있는데, 스코틀랜드 행정부와 웨일스 정부를 지원하는 공무원을 포함하는 ① 내무부 공무원, ② 북아일랜드 공무원, ③ 외교부 공무원이다. 공무원은 개별 정부부서가 아닌 왕실에 고용되므로, 고용권을 잃지 않고 부서 간 이동될 수 있다. 이것은 부서간 공무원의 자유로운 이동을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앙 정부 내에서 조직 개편을 용이하게 한다.

한편,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공행정기관에 고용된 종사자(public servants)들도 존재한다. 예를 들면, 비부처 공공기관(non-departmental public bodies(NDPBs), NHS, 군대, 공공기업, 지방정부, 경찰 등에 고용된 종사자들이다. 비부처 공공기관의 경우, 정부의 한 부처는 아니지만 장관들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비부처 공공기관은 장관에게 조언을 하는 역할을 하거나, 또는 행정부나 규제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이러한 예로는 British Council, Environment Agency, Health and Safety Executive 등이 있다. 그 명단은 내각부 홈페이지에 그 명단이 기재되어 있다.⁵³⁾ 예를 들면, 국민건강서비스(The National Health Service: NHS)는 독립성이 높고, 헌법적으로는 비부처 공공기관과 매우 유사한 정부 조직으로 고유한 범주에 속한다. 군대(The Armed Forces)는 공무원이 아닌 공공행정부문 종사자를 고용하는 주요 정부 조직이다. 공공기업(public

53) List of Accredited Non-Departmental Public Bodies (NDPBs):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

corporations)은 BBC, Channel 4, 영국은행, Ofcom, Civil Aviation Authority, British Nuclear Fuels, British Waterways Board 등을 운영하며, 이러한 공공기업에 종사하는 자는 공무원이 아니다. 지방정부(local government)에 종사하는 자도 공무원은 아니며, 공공행정부문 종사자이다. 경찰서비스(police service)에 종사하는 자도 공무원이 아니며, 공공행정부문 종사자로 분류된다.

따라서 종사 분야에 따라 영국의 「산업안전보건법」(Health and Safety at Work Act 1974)에서의 적용대상으로 간주되어 (일부)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예를 들면, 경찰관, 군대, 소방 및 구조서비스, 지방정부 등).

2) 영국의 「산업안전보건법」의 체계 및 적용관계

(1) 「산업안전보건법」

영국의 산업안전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규율되며, 영국의 산업안전청(Health and Safety Executive: HSE)에 의해 엄격하게 집행된다. 공공부문의 종사자 역시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되어 규율을 받게 되면 안전보건체계의 실시자는 HSE가 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공공서비스 부문에 대한 정책 및 제공책임은 지방정부(스코틀랜드나 웨일스 정부 등)에 위임되어 있지만, 산업안전과 관련해서는 HSE가 규제기관이다(다만, 스코틀랜드정부나 웨일스정부 등 산업안전 관련하여 입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각각의 역할과 임무를 명확히 하는 것은 중요함).

영국의 「산업안전보건법」⁵⁴⁾은 제1조에서 그 목적으로서 ① 근로자(employee) 외에 종속적인 자영업자를 포함한 노동자(worker)의 안전보건 및 복지를 확보하는 것, ② 근로자의 활동에 기인 혹은 관련하여 발생하는 안전보건상의

54) Health and Safety at Work etc. Act 1974: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1974/37/contents>

위험으로부터 동인 이외의 자를 보호하는 것, ③ 폭발성 혹은 착화성, 기타 위험한 물질의 보존이나 사용, 불법적인 취득, 소유, 사용을 관리하는 것, ④ 소정의 시설로부터의 유해 또는 불쾌감을 주는 물질의 대기로의 배출을 관리하는 것 등을 들고 있다.

영국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용자뿐만 아니라, 위험물질관리자, 직장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제조자, 설계자, 설치자, 수입자, 근로자 등 다양한 사람을 의무규정의 주체로 삼고 있는데, 이에 따른 보호의 대상으로서 근로자 이외의 자를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특색이 있다.

영국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중요한 사항은 일반적 의무규정인데, 다음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 제2조: 사용자에 의한 안전보건 기본방침의 책정, 실시를 위한 조직, 방침의 효과적인 실시를 위한 조치 등을 규정
- 제3조: 자영업자 외에, 이웃주민, 공장방문자 등까지 보호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를 규정
- 제4조: 사업장 등의 점유자 및 소유자 책임을 규정
- 제5조: 위험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시설 관리자에 의한 최선의 방법에 의한 환경위험유해물질의 관리의무를 규정
- 제6조: 물건의 설계자, 제조자, 설치자, 수입자, 공급자 등에 대한 의무를 규정
- 제7조: 근로자의 협력의무(근로자 자신 및 자신의 행동 및 부작위로 인해 영향을 받는 타인의 안전보건에 합리적인 주의를 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
- 제8조: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및 복지를 위해 제공된 것의 오용 및 방해의 금지를 규정

이러한 규정은 관습법상의 의무를 성문화하고, 벌칙으로 강제했다는 견해가 있다. 일반적 의무를 벌칙으로 강제하고 있는 점 외에, 제2조 내지 제4조, 제6조에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한 한(so far as is reasonably practicable)”이라는 제한을 둔 점은 영국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2) 이행확보 체계로서의 산업안전청(HSE)

영국 「산업안전보건법」의 감독지도는 주로 산업안전청(HSE)가 소관하고 있다. HSE는 소관 장관의 관할 하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독립성, 전문성, 기동성을 가진 공적기관이다.⁵⁵⁾

HSE는 다음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집행을 위해 감독관을 가지고 있으며, 이 감독관에게는 임검, 검사 및 조사, 시설 내의 물품 및 물질의 제거 및 시험, 검수 및 유지, 적당한 인물에 대한 질문 등의 권한이 인정된다. 또한 기관으로서의 HSE에 수사 및 청문의 권한이 인정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소관 장관에게는 안전보건 관계 규칙의 제정 권한이 위임되어 있다. 동규칙에는 법규 자체의 개폐, 적용범위 및 적용제외, 위반에 따른 처벌의 대상, 제한, 소송상의 항변 특정 등, 법률과 같은 수준의 강력한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 HSE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하여 개정의 제안을 하는 외에, 규칙, 행위준칙, 가이드선의 책정 및 개폐에 대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완수한다.

최고책임자의 임명을 포함하여, 소관 장관은 HSE에 대해서 제도상 거의 절대적 우위의 입장에 있으며, HSE는 그 관할 하에서 강제적인 방안 및 지원방안의 양면에서 산업안전보건 관련법규의 집행을 담당하고 있다. 단, 소관 장관은 개별안전에서 관련법규의 집행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없고, HSE는 소관 장관에 대한 규칙의 제안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가이드선의 대부분은 HSE가 담당하고 있다.

HSE의 주요 직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 소관 장관의 HSE에 대한 권한은 제12조, 소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인적 및 물적자원을 유효하게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13조, 조직 및 구성 등에 대해서는 동 부칙 제2조에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포함하여 관련 법규의 관할 권한의 결정은 소관 장관이

55) HSE: <https://www.hse.gov.uk/index.htm>

소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지방공공단체와의 협동을 예정하고 있는데, 이 지방공공단체는 HSE가 내리는 가이드스에 구속된다.

3) 공공부문 산업안전보건체계의 주요 내용

(1) 경찰

가)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적용 관계⁵⁶⁾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국의 경찰관은 공무원이 아니라 공공행정기관 종사자로 분류된다. 1997년 경찰(안전보건)법(The Police (Health and Safety) Act 1997)은 경찰청장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경찰관의 사용자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경찰관이 근무하는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상 경찰관은 근로자로 간주된다.

2005년 중대조직범죄 및 경찰법(Serious Organised Crime and Police Act 2005) 제158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1A조를 개정하여 법 제1부를 경찰에 적용하는 법률로 개정하였다. 이는 “경찰청장(Chief Constables)”의 지위를 “사용자(employer)”로 변경하고, “해당 담당자(relevant officer)”를 “단독 법인(corporation sole)”로 규정하였다.

이는 본질적으로 경찰청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단 위반이 개별 경찰청장의 다음과 같은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경우는 예외이다(아래의 행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그 책임은 경찰청장이 진다).

- 범죄 실행에 대한 개인적 동의
- 위임에 있어서 개인적인 공모가 있었음

56) HSE, “Application of health and safety law to the Police Service”:
<https://www.hse.gov.uk/services/police/application.htm>

- 개인적 방치

한편, 1998년 산업안전(집행기관)규칙(The Health and Safety (Enforcing Authority) Regulations 1998) 규정에 따라, HSE는 영국 전역의 경찰에 대한 집행기관이다.

또한 모든 경찰관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7조(a) 및 (b)에 따라 의무를 가지며, 민간 경찰직원도 마찬가지이다.

나) 경찰업무와 안전보건업무의 균형

특히 경찰관의 업무는 그 수행과정에서 범죄와 싸우고 대중을 보호하는 광범위한 임무에서 위협의 균형을 맞추고, 동시에 대중과 경찰관에 대한 업무상 안전보건의무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HSE와 경찰청과 연계하여 “Striking the balance between operational and health and safety duties in the Police Service”⁵⁷⁾의 가이드언스를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이 가이드언스에서는 경찰관의 업무(치안유지)가 건강과 안전을 해치지 않고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명확하게 조언하며, 또한 경찰관이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위협에 처하게 했다는 이유로 조사나 기소에 직면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이 가이드언스에서는 비상 상황에서 합리적인 안전보건에 대한 고려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사례 등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7) 이하의 내용은 HSE, “Striking the balance between operational and health and safety duties in the Police Service”:

<https://www.hse.gov.uk/services/assets/docs/police-duties.pdf> 및 HSE, “Striking the balance between operational and health and safety duties in the Police Service: An explanatory note”:

<https://www.hse.gov.uk/services/assets/docs/explanatory-note.pdf> 를 참조하여 정리하였음.

① 안전보건 의무

「산업안전보건법」은 경찰의 모든 활동에 적용된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는데, 1998년부터 경찰청장은 경찰관의 사용자이자 경찰직원의 사용자로 간주된다.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에 따라 경찰관의 사용자는 단독 법인으로서 경찰청장/경찰국장(office of chief constable/police commissioner)이다. 이는 개인인 경찰청장/경찰국장 및 경찰당국의 구성원이 자신의 동의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한 한 직장에서의 건강, 안전 및 복지를 보장한다. 그리고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한 한, 고용되지 않은 사람 중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건강과 안전에 대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근로자는 자신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직장에서의 작위나 부작위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합리적으로 돌보아야 한다. 그리고 안전한 작업시스템의 준수, 개인보호장비 사용 등 사용자가 부과한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협력해야 한다.

② 경찰업무의 특수성과 영웅주의(heroism)

경찰의 업무는 특히 비상대응시 위험할 수 있으며,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한 모든 통제 조치를 취한 경우에도 종종 상당한 위험이 남을 수 있다. 이에 HSE는 경찰이 다음의 사항을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 경찰관 및 기타 직원이 치안 운영 활동에서 직면하게 될 위험 유형을 식별함
- 훈련, 장비 및 개인보호장비를 포함하여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한 모든 조치를 시행함
- 경찰관 및 기타 직원이 이러한 상황에 관한 경찰의 지침 및 정책을 인지하고 따르도록 보장함
- 치안 운영 과정에서 위험-이익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경찰관 및 기타 직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함

또한 경찰의 예측가능한 위험 상황은 다음과 같다.

- 폭력적인 사람을 상대하는 것
- 대규모 군중을 통제하고 공공 혼란을 관리하는 것
- 무장강도나 인질극등과 같은 위험한 상황에서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개입하는 것
- 개방된 구역이나 절벽, 채석장 등의 낙하 등 자연재해와 관련된 사고를 관리하는 것
- 불법마약, 고속 추격, 테러 위협 등 범죄활동으로 인한 위험을 처리하는 것
- 치명적인 교통사고 처리하는 것 등

상기의 상황은 포괄적이지는 않지만, 위험과 기타 일부 위험을 예상하고 대비할 수 있다. HSE는 모든 경찰관이 이 모든 상황에 대해 교육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관들은 자신의 직급, 등급 및 직위에 따라 달라지는 기술을 갖추어 적절한 위험-이익 결정을 내리고 상황을 동적으로 평가하여 다음을 기반으로 하여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한계
- 위협의 즉각성
- 이용가능한 자원과 장비
- 운영지침 및 가이드스
- 훈련

지휘 책임을 맡은 경찰, 경찰관, 감독관은 경찰관 및 기타 직원이 수행해야 할 작전 활동이 무엇인지 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운영의 위험과 이를 수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대중의 이익 사이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때로는 이러한 활동이 위험할 수 있다. 경찰은 활동의 맥락과 작전 환경의 변화하는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한 한 이러한 활동과 관련 위험이 감소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찰 업무는 본질적으로 위험하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했다라도, 그러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심각한 위험이 있을 수 있다.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한 통제 조치는 개발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당시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 이러한 많은 상황에서 모든 위험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경찰관과 기타 직원이 불필요한

위험에 노출되어서는 안된다.

한편, 경찰관과 기타 직원은 자신을 돌보고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아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그러나 HSE는 개별 경찰관 및 기타 직원이 직무수행 중에 영웅적인 행동(heroic act)을 함으로써 스스로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도록 결정할 수 있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있다.

경찰관, 다른 직원 또는 일반 대중에게 심각한 사건 및 사고가 발생한 경우, HSE 감독관은 사건 및 사고의 성격에 대해 초기 조사를 할 수 있다. 또한 HSE 감독관은 경찰의 전반적인 안전보건 관리에 대한 조사를 수행할 수도 있다. 사건 및 사고임이 분명한 경우, 사고가 개별 경찰관이나 직원의 영웅적인 행위와 관련된 경우, HSE는 해당 개인을 조사하거나 그들에 대해 어떠한 집행 조치도 취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안전보건 관리

경찰관과 직원이 직면하는 위험을 통제하고 유지하려면 합리적이고 건전한 안전보건 조치를 경찰 운영에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찰은 달성할 목표와 표준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전반적인 안전보건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법적 요구가 있다. 이는 서비스 운영 절차에 의해 지원되며, 경찰은 다음의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 계획된 모든 운영활동에 대해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하고, 알려진 위험 및 예측가능한 위험을 식별, 평가 및 통제한다.
- 경찰청을 위한 경찰청장협회(Association of Chief Police Officers: ACPO) 의사결정모델에 표시된 바와 같이, 치안 의무사항을 이행하는데 있어 적절한 위험-이익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휘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의 역량을 보장함
- 산업안전보건 및 복지에 관한 유능한 조언 제공을 보장함
- 지휘 체계 내에서 역할과 책임의 명확성을 보장함
- 운영상황에서 위험과 위험을 효율적으로 평가하고 변화하는 상황과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경찰관 및 기타 직원을 계획, 장비 및 교육함(이른바 “동적 위험평가”)

④ HSE의 역할과 업무

HSE는 비부처 공공기관으로서, 영국의 직장 전반에서 업무관련 사망, 심각한 부상, 질병을 줄이기 위하여 공익을 위해 활동한다. HSE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러한 목적을 경찰청에 전달한다.

전담 정책팀은 경찰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다음을 수행한다.

-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위험 관리를 경찰 활동에 확립하고 촉진하며 포함시킴.
- HSE의 목표는 최소한의 자원을 사용하여 건강 및 안전 결과를 크게 개선하는 실질적인 기어링(gearing) 효과를 생성하는 것임.

SE 감독관은 경찰 표본을 대상으로 선택된 업무활동을 조사할 수 있다. 또한 심각한 사건 및 불만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집행결정은 HSE의 집행정책성명(Enforcement Policy Statement)에 명시된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HSE의 집행을 통해 사용자는 심각한 위험에 즉시 대처하고, 법을 준수하며, 책임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책임을 지게 된다. HSE 감독관에게는 다양한 집행 옵션이 있으며, 이를 사용할 수 있다.

- 개선통지: 이는 개선조치를 명시하고, 조치를 완료해야 하는 날짜를 의무자에게 제공함
- 금지통지: 이는 의무자에게 즉시 활동을 중지하도록 지시함
- 기소: 이는 공정하고 정당하며 절차적으로 올바른 의사결정 과정에 따라 의무자에게 이루어지는 징벌적 조치임

경찰과 관련된 HSE의 감독, 조사 및 집행활동의 대부분은 경찰서 구내의 석면노출 통제 및 적절한 보호복 제공과 같은 일반적인 안전보건 문제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경우, HSE는 경찰과 협력하여 문제에 대한 이해를 보장하고 해결책에 동의한다. 경찰 운영 또는 경찰 운영 교육과 관련된 집행조치는 예측가능한 위험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경찰에 대해 조치가 취해진다.

또한 경찰청은 HSE에게 다음의 사항을 기대할 수 있다.

- 경찰의 의무가 있다는 것과 경찰이 대중에게 이익이 되는 운영활동과 관련하여 위험-이익 결정을 내리는 맥락을 이해함.
- 운영 감독관이 운영 치안활동과 관련된 문제를 처리할 때에, HSE의 공공서비스정책팀과 협의하도록 함
- 경찰청장협회(ACPO)와 협의하여 경찰에 대한 사전 조사를 계획함.

(2) 군대(국방부)

가)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적용 관계

영국의 군대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음. 영국의 국방부(Ministry of defence: MOD)는 약 180,000명의 군인과 86,000명의 공무원(civil servant)를 고용하는 대규모 사용자이다. 국방부에는 육군, 해군, 공군, MOD 합동 작전, 국방 인프라 조직, 국방장비 및 지원 등의 7개의 사령부가 있다. 국방부에는 또한 장비유지 관리 및 보관을 취급하는 기관을 포함하여 다양한 기관이 있다.⁵⁸⁾

따라서 국방부는 원자력 안전, 폭발물, 감항성 및 해상안전을 포함한 다양한 고위험 영역을 가지고 있다. 국방부는 또한 군인 훈련과 관련된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 고위험 및 적대환경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장비를 갖추고, 작전 후 영국으로 군대를 재통합하는 것과 관련된 위험 등을 관리해야 한다. 또한 다른 측면에서는 국방부가 직면한 안전보건 과제는 계약자 통제, 석면관리, 미끄러짐 및 넘어짐, 작업장 운송 및 다양한 안전보건 문제를 포함한 다른 대규모 조직과 매우 유사하다.

한편, 영국의 「산업안전보건법」은 국방부, 그 기관 및 영국 내 군대에 적용된다. 국방부 장관은 국가 안보를 위해 군대를 대신하여 일부 요구사항에서 면제를

58) HSE, "MOD's organisation":

<https://www.hse.gov.uk/services/armedforces/organisation.htm>

청구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거의 실행되지 않는다.⁵⁹⁾

국방부는 정부 부처로서 왕실 특권(Crown privilege)를 누리고 있다. 이는 안전보건 관련 법률이 국방부를 적용하는 반면, 법원에서는 형사 집행 조치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형사 집행조치 대신 이를 반영하기 위해 행정적 장치가 존재하며, 궁극적으로 기소 대신 왕실 검열로 이어진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은 국방부의 해외 업무활동 및 운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영국의 군대는 「산안법」의 적용대상으로 간주되어 일부 적용가능하다. 따라서 군대 역시 영국 「산업안전보건법」이 일부 적용되므로 안전관리의 권한은 국방부가 국방부 소속 군인과 공무원의 사용자로 간주된다. 또한 산업안전과 관련하여 안전보건체계의 실시자는 해당 공공기관과 HSE가 주체가 되어 협력하여 운영되고 있다.

나) HSE과 MOD의 상호작용⁶⁰⁾

HSE와 국방부 간의 일반 협정은 규제기관인 HSE가 국방부와 협력하는 방식을 명시하고 있다.

방문군(visitong forces)과 관련해서는 영국 주둔 미군과 병행 협정을 맺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과 영국 근로자 및 대중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명확히 하고 있다.

그리고 HSE 운영 감독관의 권한은 MOD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HSE는 조직 전체에 걸쳐 가장 큰 위험 영역을 포함하여 감독을 목표로 하는 여러 운영 감독관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HSE 운영감독관은 다음의 MOD와 감독을 할 수 있다.

59) HSE, “Application of health and safety legislation to the MOD”:

<https://www.hse.gov.uk/services/armedforces/application.htm>

60) HSE, “How we work”:

<https://www.hse.gov.uk/services/armedforces/interaction.htm>

- 현장 운영국 - 필요에 따라 지역 수준에서 MOD 사이트의 연락 및 감독. 여기에는 선택된 사건에 대한 감독이 포함됨.
- HID(SI) 폭발물 감독국 - HSE 폭발물 감독국은 MOD와 합의되고 현존하는 참여 및 개입 계획을 가지고 있음. 여기에는 MOD 허가 폭발물 사이트에서 일련의 공동 감독을 실시하는 것이 포함됨.
- HID(SI) 가스 및 파이프라인 부서 - 국방 인프라 조직과의 연락
- HID(SI) 생물학적 에이전트 부서 - 특정 DSTL 전문 사이트의 연락 및 감독
- HID(SI) 광산 감독국 - 필요한 경우 국방 인프라 조직과의 연락
- HID OSD 다이빙 감독국 - 필요에 따라 MOD 다이빙 감독관과 연락하고 감독
- 원자력 규제 사무소(ONR) - 국방 원자력 안전 규제 기관과의 연락 및 일반 협정 부록 B에 따른 감독. ONR은 HSE 기관임
- CSAG 방사선 감독관 - 라돈을 포함한 비이온화 방사선과 관련하여 MOD와 지속적인 연락을 취함
- 공공 서비스 부문 - MOD 중앙안전팀 및 MOD 최고 환경 및 안전 책임자(CESO)와 연 2회 공식 회의를 열어 현재 및 새로운 이슈를 논의함

다) 사관생도들에 대한 적용⁶¹⁾

영국의 사관생도들은 12~18세 청소년의 개인적, 사회적 발전을 촉진하는 지역사회 기반의 자발적 조직이다. 훈련된 자원봉사 성인 직원을 사용하여 관련 서비스를 활용하지만, 발달 프로세스가 되도록 수정된 다양한 활동을 제공한다.

사관생도 부대에는 4가지가 있는데, 해군 사관생도 부대, 육군 사관생도 부대, 공군훈련 부대, 그리고 연합 사관생도 부대가 있다. 육군 사관생도 부대와 공군 훈련부대는 국방부 사업의 일부로 간주되므로, 국방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의무를 가지지만, 해군 사관생도 부대와 연합 사관생도 부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방부는 여전히 이러한 조직과 함께 일하는 근로자들에 대해 의무를 가지고 있다.

또한, 국방부는 자신들의 후원하에 훈련활동에 참가하는 모든 사관생도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전반적인 주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

61) HSE, "Application to Cadets":

<https://www.hse.gov.uk/services/armedforces/cadets.htm>

(3) 지방정부

가) 지방정부와 HSE⁶²⁾

지방정부(local government)의 위험은 폐기물 관리, 교육부터 사회복지, 주택 개조, 고속도로 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 개별 협의회가 제공하는 광범위한 활동 및 서비스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서비스 중 일부는 사내에서 제공되거나 협의회는 계약자 또는 자원봉사자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과 협력할 수 있다.

한편, HSE 현장 감독관(HSE Field Inspectors)은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구내에서 발생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일부로 발생하는 안전보건 관련 문제나 사건을 처리한다. 다음의 방법을 통하여 수행한다.

- 현장 감독(예고 및 비예고)
- 사고 및 불만 조사
- 방문 또는 전화 안내로 지원 제공
- 필요한 경우 집행

또한, HSE 부문(HSE Sectors)은 여러 전문 부문을 두고 있으며, 각 부문은 국가 차원에서 다양한 주요 산업을 다루고 있다. 각 부문은 다음을 담당하는 감독관 및 정책 고문으로 구성된다.

- 사용자/무역협회 및 노동조합과의 토론 주도
- 다른 정부 부서 및 규제기관과 연락
- 운영 정책 설정
- 운영 직원에게 감독 우선순위 및 시행 사항에 대한 조언

HSE 공공 서비스 부분(HSE Public Service Sector)의 경우, 모든 중앙정부 부서, 그 기관 및 다른 조직이 대신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국가 정책 책임을 담당하고 있다. 여기에는 NHS 및 보조 의료기관, 독립적인 의료 및 사회복지,

62) HSE, "Local government, How we Work":

<https://www.hse.gov.uk/services/localgovernment/how-we-work.htm>

지방정부, 소방 및 구조서비스, 경찰, 국방 및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의 교육서비스가 포함된다.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에는 여러 HSE 부문에 걸쳐 다양하지만, 공공서비스 부문의 공공행정 및 교육부문이 일반적인 지방정부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부문은 특히 안전보건 리더십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에 초점을 맞추어 공공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지방정부 이해관계자들이 위험 관리에 대하여 비례적이고 상식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하도록 권장한다.

HSE 공공서비스 부분의 국가적인 참여(HSE Public Services Sector - national engagement)와 관련하여, 공공서비스 부문은 지방정부 전체의 안전보건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정부 그룹(LG Group) 및 웨일스 지방정부 협회(WLGA)와 함께 국가 차원에서 일하고 있다. 이 작업의 대부분은 LG 그룹에 의해 운영되고 구성원이 잉글랜드 지역과 웨일즈 전역의 지방자치단체 출신의 안전보건 관리자로 구성된 국가 안전보건 실무자 패널(National Health and Safety Practitioner Panel)을 통해 이루어진다.

- 스코틀랜드의 HSE 공공서비스 부문은 인사 협회 스코틀랜드(SPDS)와 연계를 유지하고 있음.
- 공공서비스 부문은 또한 공공서비스 전반에 걸쳐 안전보건 문제를 다루는 산업안전보건기관 (IOSH)의 공공서비스 그룹과 협력하여 지방정부에 중점을 두고 있음.
- 노동자의 참여는 지방정부에서 위험관리에 대한 합리적이고 비례적이며 효과적인 접근을 보장하는데 있어 중요함. 노조 대표성은 잘 확립되어 있으며, HSE 공공서비스 부문은 3개의 주요 지방정부 노조인 Unison, GMB, Unit와 함께 국가적인 문제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함.

즉, 영국의 지방정부 등의 공공기관 종사자는 「산안법」의 적용대상으로 간주되어 일부 적용 가능하다. 따라서 지방정부 종사자 역시 영국 「산업안전보건법」이 일부 적용되므로 안전관리 및 위험관리의 일차적인 책임은 위험을 생성하는 기업 및 지자체의 안전보건 규제기관에 있다. 또한 산업안전과 관련하여 안전보건체계의 실시자는 해당 공공기관과 HSE가 주체가 되어 협력하여 운영되고 있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안전보건 관련 집행⁶³⁾

영국의 안전보건법제는 HSE 또는 380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중 하나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소매, 도매, 유통 및 창고, 호텔 및 급식시설, 사무실 및 소비자/레저 산업의 주요 집행기관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집행기관과 집행을 위한 적절한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 2013년 5월에 도입된 지방자치단체 집행강령은 지방자치단체가 위험에 기반한 규제에 대해 일관되고 비례적이며 타케팅된 접근 방식을 보장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원칙을 제시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안전보건의 위험관리에 있어 기업을 규제하고 영향을 미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개입 접근법을 이용하고 있다.

- 개별 기업 또는 그룹에 대한 조언 및 지침 제공
- 감독을 포함한 적극적인 개입
- 사고나 불만을 조사하는 등의 반응적인 개입

지방자치단체 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의 위험을 해결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공식적인 집행 통지를 포함한 집행권한을 사용할 수 있다.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지 못한 의무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기소 조치를 할 수 있다.

과거 고용부에 의해 마련된 “Reclaiming health & safety for all: An independent review of health and safety legislation” 보고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안전보건 감독과 활동 시행을 감독하는데 있어 HSE에게 더 강력한 역할을 부여할 것이 권고되었다.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집행강령(National Local Authority Enforcement Code)은 이러한 권고사항에 대한 응답으로서 안전보건에 관해, 지방자치단체의 안전보건 규제 당국이 집행에 대해 보다 일관적이고 균형잡힌 접근 방식을 취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다.⁶⁴⁾ 이 집행법은

63) HSE, “Local authority enforcement”:

<https://www.hse.gov.uk/lau/enforcement.htm>

64) National Local Authority Enforcement Code, Health and Safety at Work:

영국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4)(b)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HSE 지침으로서 법적 효력을 가지며, 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트랜드에 적용된다.

안전보건의 위험관리의 일차적인 책임은 위험을 생성하는 기업에게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안전보건 규제기관은 위험의 효과적이고 균형 잡힌 관리를 보장하고, 비즈니스를 지원하고 지역사회를 보호, 사회발전에 기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① 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집행강령은 “집행을 위한 적절한 조치(adequate arrangements for enforcement)”를 의미하며, 또한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의 기준을 대체하고 다음의 네 가지 목표에 중점을 두고 있다.

- a) 위험 관리에 대해 공유된 이해를 보장하기 위해, 기업, 규제기관 및 전문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함
- b) 지방자치단체가 규제기관의 규정준수강령(Regulator's Compliance Code), HSE 집행 정책 성명(HSE's Enforcement Policy Statement)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위험관리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춘 적절하고 효과적인 개입을 목표로 해야 할 필요성과 관련하여 채택해야 하는 위험 기반 규제 접근법의 개요
- c) 「산업안전보건법」 권한의 승인 및 사용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안전보건 규제기관의 교육 및 역량에 대한 필요성 설정
- d) 이 강령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것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데이터 및 동료 심사의 수집 및 발행을 위한 준비의 설명

② 역할과 책임

기업, 규제기관 및 전문기관은 모두 직장 사망, 부상 및 건강 악화를 방지하고, 직장에서의 건강과 안전을 비례방식으로 적용하는데 도움이 되는 역할과 책임이 있다.

<https://www.hse.gov.uk/lau/assets/docs/national-la-code.pdf>

• 기업

영국의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 작업활동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와 대중에 대한 위험을 관리하는 책임은 애초에 위험을 발생시키는 기업이나 조직에 있다. 이는 조직이 사용자, 자영업자, 서비스제공자, 업무용 물품이나 물질의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의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일차적인 책임은 기업에게 있지만, 근로자는 자신과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돌볼 책임이 있다. 따라서 근로자는 안전보건 문제에 대해 사용자와 협력해야 한다.

• 규제기관

규제기관의 역할은 지원, 격려, 조언을 하는 것이다. 기업에서 발생한 안전보건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규제기관은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균형잡힌 방식으로 안전보건 위험의 효과적인 관리를 개선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는 위험 발생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고 근로자와 대중의 건강과 안전에 더 높은 수준의 위험을 나타내는 기업과 부문에 대한 감독, 조사, 집행 활동을 포함하여 개입을 목표로 삼아 달성된다.

안전보건의 집행은 1998년 집행기관(안전보건) 규정에 따라 HSE와 약 382개의 지방자치단체 간에 분할된다. 이 강령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법적 지침과 현지 접근 방식을 안내하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본 강령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면 지방당국의 집행 접근방식이 일관되게 유지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초점은 특정 안전보건보다 더 광범위할 수 있다.

사용자로서 지방자치단체는 규제 직원이 충분히 유능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관리통제 및 지원을 갖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다.

HSE는 중앙 안전보건 정책 역할을 통해 다음의 사항을 제공한다.

- 기업을 위한 권위 있는 안전보건 조언 및 지침
- 업계 연락 포럼 및 기타 적절한 국가 포럼 참여를 통한 이해관계자 참여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전문적인 안전보건 지원 및 조언
- 지방자치단체 규제 개입을 알리기 위한 관련 국가 계획의 우선순위와 특정 부문 전략
- 지방자치단체의 사전조사 대상이 되는 적절한 고위험 부문/활동 목록
- 1차 기관 및 감독 계획에 대한 지원
- 집행결정, 개입 계획과 전문역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동료 심사
- Local Authority Enforcement data 반환을 통해 벤치마킹 목적의 지방자치단체 개입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게시

• 전문기관

공인환경보건연구원(Chartered Institute of Environmental Health: CIEH)(잉글랜드 및 웨일스 포함) 및 스코틀랜드 왕립환경보건연구원(Royal Environmental Health Institute of Scotland: REHIS)(스코트랜드 포함)은 지방자치단체 안전보건 규제 기관의 주요 전문기관이다. 이 전문기관은 환경보건 책임자에 대한 공인 과정과 자격을 통해 전문적인 실무에 대한 표준을 설정하고 훈련, 교육을 촉진하여 지속적인 전문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기관(Institution of Occupational Safety & Health: IOSH)은 강령에서 명시된 규제에 대한 위험기반 접근 방식의 전달을 지원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③ 규제에 대한 위험기반 접근

기업은 업무활동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 및 대중에게 발생하는 위험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 이는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기업에 적용된다.

지방자치단체 규제기관은 다양한 개입을 사용해야 한다. 기업이 업무를 관리하거나 수행하는 방식의 행동 변화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사용가능한 방법과 기술을 제공한다.

본 강령은 집행이 명백히 표적화되고, 비례적이며, 일관되고, 투명하고, 명확해야

하는 좋은 규제 원칙에 따라 개입 및 집행에 대한 위험기반의 표적화되고 비례적인 접근 방식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조언과 지침을 제공한다.

• 표적화(targeting)

가장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위험이 가장 잘 통제되지 않는 활동에 대한 개입을 목표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당국은 다음을 통해 이를 달성해야 한다.

- 특정 위험을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춘 위험기반 개입 계획을 마련함
- 해결해야 하는 위험을 고려하고 이러한 특정 위험에 초점을 맞춘 모든 범위의 개입을 이용함
- HSE가 발표한 활동 및 부문 또는 정보가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는 경우에만 예고되지 않는 사전 감독 예약
- 국가 및 지역 정보를 활용하여 우선순위를 알림

• 비례(proportionality)

이것은 개입 및 집행이 잠재적 또는 실제 피해를 포함하여 안전보건 위험의 상대적 수준과 관련되거나 법률위반의 심각성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을 같이 전문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훈련되고 유능한 담당자를 보유함으로써 이를 달성할 수 있다.

- 다양한 수준의 위험 또는 피해를 구분함
- 기업이 발생하는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얼마나 부족한지 결정
- 지방자치단체의 집행 정책, HSE의 집행 정책 성명 및 집행관리 모델에 따라 비례적인 의사결정을 적용함

• 일관성(consistency)

이것은 규제기관이 유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유사한 상황에서 유사한

접근법을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의 경우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 규제 기관으로부터 표적화, 집행, 기소결정 및 사건 대응에 대한 일관된 접근 방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다음과 같은 관리 계약을 통해 이를 달성할 수 있다.

- 지역 및 국가의 우선순위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발행된 지침이 적절하게 적용되도록 보장함
- 기본 권한을 충분히 고려함
- 규제기관의 역량에 대한 일관된 접근 방식을 장려함
- 전달에 대한 명확한 기대치를 설정함
- 매년 안전보건 감독 데이터를 게시하여 적절한 비교와 투명성을 허용함

• 투명성(transparency)

이것은 기업이 기대하는 것과 기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규제기관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을 통해 이를 달성할 수 있다.

- 명확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집행정책이 있어야 함
- HSE에서 지정한 특정 활동/위험 또는 정보에 의해 위험이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음을 시사하는 경우에만 국가 지침을 따르고 사전 감독을 제한함
- Health and Safety Made Simple과 같은 HSE 웹사이트에서 전국적으로 이용가능한 자료를 가리키는 것을 포함하여, 사업에 이용가능한 서비스 및 조언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 제공
- 근로자, 대표자, 그리고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는 것
- 안전보건 기록에 대한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게시함

• 책임(accountability)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그들의 행동에 대해 대중과 기업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을 통해 이를 달성할 수 있다.

-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한 위험 기반 서비스 계획과 안전보건 개입, 집행 및 기소 활동에 대한 정보를 보유
- “독립규제도전패널(Independent Regulatory Challenge Panel)”을 명확히 참조할 수 있는 접근성이 용이한 민원절차를 갖추
- HSE에 대한 데이터 반환 및 동료 심사를 통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성과를 벤치마킹함

④ 훈련과 능력

지방자치단체는 “집행을 위한 적절한 준비”를 하고, 임명된 규제 의무 범위를 수행하기 위해 적절한 자격을 갖춘 감독관을 법적으로 임명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제19조, 제20조).

안전보건 위험의 효과적인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위험기반 개입을 이용하려면, 지방자치단체 감독관이 심각한 위험과 사소한 문제를 구별할 수 있는 전문적 능력과 재량권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범위의 규제 개입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개입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따라 유능한 감독관을 법적으로 승인하는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적절하고 지속적인 역량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예: Regulators Development Needs Assessment (RDNA) tool 및 Guidance to Regulator’s Information Point (GRIP) 등을 포함한 규제기관 역량에 대한 공통 접근 방식 사용).

RDNA는 광범위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역량과 행동을 확립한다. 규제활동을 규정하고 안전보건 규제기관의 특정 역량과 행동을 설정한다. 지방자치단체 안전보건 규제 기관은 개발 요구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최소한 매년 역량 평가를 해야 한다. 자체 평가 결과는 직속 관리자와 논의하여 지속적인 개발 요구사항과 해결방법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독립 규제도전 패널은 기업이 불합리하거나 불균형하다고 생각되는 특정

안전보건 규제 조언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이 이 패널에 회부한 사례의 결과를 고려할 때 역량 및 교육 요구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정기적으로 집행 결정(예: 동료 심사 프로세스를 통해)하는 것이 유용한 벤치마크와 재확인을 제공한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⑤ 본 강령의 요구사항 충족에 대한 확신

본 강령의 요구사항이 충족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HSE는 지방자치단체의 성과를 모니터링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데이터수집

지방자치단체는 안전보건 개입, 집행, 기소활동을 모니터링, 파악 및 공유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책임을 장려하기 위해 이 정보를 대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local authority enforcement(LAE1) 신고서를 통해 국가 데이터를 작성할 수 있도록 HSE와 공유해야 하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작업을 벤치마킹하고 동료 심사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투명성과 책임을 장려하기 위해 HSE는 매년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데이터를 발표할 것이다. 정보가 부족하거나 정보가 규제 준수에 대한 질문을 촉발하는 경우 HSE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강행 이행을 지원한다.

HSE에 제공된 정보는 공인재정회계연구원(Chartered Institute of Public Finance and Accountancy: CIPFA)과도 공유된다. CIPFA는 이 정보를 수집하지만, 대신 지방자치단체의 보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 HSE의 안전보건 데이터를 사용하는데 동의하였다.

• 동료 심사

이웃 당국이 수행하는 기관 간 동료 심사는 지방자치단체에 강령의 요구사항이 충족되고 있는지 독립적으로 보장하는 도구를 제공한다. 동료 심사는 공식적인 기관 간 감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강령을 구현 및 준수하고 있다는 확인을 제공하는데 있어 서로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웃 당국 간 동료 심사를 통해 모든 사항을 고려하고 토론할 수 있다. 이상적으로는 6~8명의 동료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숙 연락 그룹 내에서 소규모 그룹에 의해 강령을 준수한다. 동료 심사는 논문이 없는 짧은 비공식 그룹 토론부터 사례에 대한 사전 고려 및 서면 보고서 작성이 포함된 공식 회의까지 다양하다.

지방자치단체는 동료 심사를 수행할 시기, 주제 및 접근 방식을 결정한다. 동료 심사는 지방자치단체 동료 그룹이 수행하는 공통 업무 기능이 있는 강령의 대부분 측면에서 사용될 수 있다.

(4) 학교

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⁶⁵⁾

「산업안전보건법」은 학교 견학과 같은 외부 활동을 포함하여 학교에서 수행하는 업무 활동에 적용된다. 이 법은 해당 업무 활동으로 인해 직원, 학생 및 방문객에게 발생하는 위험에 적용된다. 또한 이 법은 또한 학교의 계약자 업무에도 적용된다.

그리고 학교의 건강 및 안전 위험에는 일반적으로 현장 운송, 높은 곳에서의 낙상, 미끄러짐 및 넘어짐, 스트레스 관리, 업무 관련 폭력, 석면 관리, 레지오넬라균, 건설 및 유지 관리 활동 및 수동 취급이 포함된다.

반면, 학교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많은 다른 아동 보호, 공공

65) HSE, "Is it really health and safety?":

<https://www.hse.gov.uk/education/sensible-leadership/is-it-really.htm>

안전 및 공중 보건 문제를 관리해야 한다. 또한 다른 당국은 다음과 같은 사례를 책임지게 된다.

- 학생의 복지 및 웰빙 증진
- 전염병
- 학생의 행동 및 징계
- 범죄 기록 검사
- 식품 위생
- 학교 미니버스 운전자의 운전/면허
- 버스에서 안전벨트 사용
- 폐기물 및 오염 관리

나) 학교에서의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의 주체

학교에서의 안전보건에 대한 법적 책임과 그에 따른 설명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다. 하지만, 사업주가 누구인지는 학교 유형에 따라 다르다. 또한 지역에 따라, 예를 들면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간에도 차이가 있다.⁶⁶⁾

① 잉글랜드와 웨일즈

학교유형	사업주
지역사회 학교	지방정부
지역사회 특수 학교	
자발적 통제 학교	
재정지원을 받는 보육원	
대안 학교	관리기관
재단 학교	
재단 특수 학교	

66) HSE, "Who is accountable for health and safety within a school?": <https://www.hse.gov.uk/education/faqs-general.htm>

② 잉글랜드

학교유형	사업주
아카데미와 무료학교	아카데미 트러스트(The Academy Trust)

③ 스코틀랜드

학교유형	사업주
스코틀랜드 지방정부를 통해 자금을 지원받는 주립 학교	지방정부
독립 사립학교 또는 유료 학교	소유주, 이사회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관
보조금 지원 학교	관리기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관

한편, 지방정부의 권한으로서, 지방정부(지역사회 학교, 자발적 통제학교, 지역 특수학교 및 재정지원을 받는 보육원 등)가 사업주인 경우, 학교 구내에 있는 사람(학생 포함)의 안전보건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거나, 다른 곳에서 학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이는 2002년 교육법(Education Act 2002) 제29조 제5항에 따라 해당 학교의 관리기관은 지방정부의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⁶⁷⁾

또한, 학교에서의 안전보건을 규율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사업주(지방정부, 관리기관 또는 소유주)는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 업무는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⁶⁸⁾

67) 29 Additional functions of governing body

(5)The governing body and head teacher of—

(a) a community or voluntary controlled school,

(b) a community special school, or

(c) a maintained nursery school,

shall comply with any direction given to them by the local authority concerning the health and safety of persons on the school's premises or taking part in any school activities elsewhere.

68) Department for Education, "Health and safety: Advice on legal duties and powers—for local authorities, school leaders, school staff and governing bodies":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279429/DfE_Health_and_Safety_Advice_06_02_14.pdf

직원은 또한 자신과 다른 사람의 안전보건을 돌보아야 할 의무가 있다. 다만, 학교 직원이 아동과 관련 사고와 관련해 형법에 따라 기소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리고 사업주, 학교 직원 및 기타 직원은 학부모와 동일한 방식으로 학생을 돌보는 관습법에 따른 의무도 있다. 그리고 과실에 대한 대부분의 청구는 개별 직원이 아닌 사업주(공공책임보험에 가입한) 상대로 제기된다.

다) 학교 리더의 역할⁶⁹⁾

학교에서의 안전보건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은 학교 직원의 사업주에게 있다. 그러나 직원과 학생의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을 포함한 학교의 일상 운영은 일반적으로 교장과 학교관리팀에 위임된다. 그들은 현장에서 위험이 효과적으로 관리되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안전보건에 대한 현명하고 효과적인 관리는 모든 관리팀 구성원이 위험이 책임감 있고 비례적으로 관리되도록 하는데 달려 있다. 모든 당사자의 원활한 소통은 이를 올바르게 하는데 중요하다.

직원의 안전보건담당자나 안전위원회가 있는 경우 긍정적인 건강과 안전 문화의 개발에 기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① 사업주

실제 위험에 초점을 맞추고 불필요한 서류 작업을 장려하지 않는 명확한 정책으로 안전보건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 방식을 도입한다.

학교 활동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직원, 학생 및 방문객의 위험을 관리하는 조치를 구현한다.

직원에게 학교의 실제적이고 중요한 위험과 이를 관리하기 위해 취해야 할

69) HSE, "The role of school leaders - who does what":
<https://www.hse.gov.uk/education/sensible-leadership/school-leaders.htm>

예방 조치에 대해 알려준다.

직원이 필요한 경우 유능한 안전보건의 조언을 받는 것을 포함하여 일상적으로 위험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교육을 받도록 한다.

통제 조치가 구현되었고 적절하고 효과적인지 확인한다(지방정부가 통제하는 학교의 경우 자금 조달이 위임된 경우에도 해당).

② 관리기관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학교(지역사회 및 자발적 통제 학교)에서 운영위원회의 역할은 비전, 기풍 및 전략적 방향의 명확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운영위원회는 학교 시간 중 및 학교 시간 외에 건물을 관리할 수 있으며 일부 유지 관리 활동에 대한 위임된 예산을 감독할 수 있다. 그들은 사업주가 아니다.

잉글랜드에서 점점 더 많은 운영위원회가 학교를 운영하는 자선 단체의 수탁자이거나 학교를 책임지는 회사의 이사이기도 하다. 이 경우, 그들의 역할은 사업주에게 명시된 역할과 동일하다.

웨일즈에서 자발적인 지원을 받는 학교와 재단 학교의 운영위원회에는 학교를 운영하는 자선 단체의 이사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스코틀랜드의 국립학교에는 운영위원회가 없다. 지방정부가 사업주의 역할로 거버넌스를 제공한다. 독립 학교와 보조금 지원 학교에서는 운영위원회 또는 이사의 역할이 사업주와 동일하다.

학교가 사업주의 정책과 절차를 따르도록 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예: 거버넌스 회의에서 정기적으로 논의).

직원이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을 받도록 한다.

필요한 경우 유능한 안전보건 조언을 활용하여 건강과 안전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 방식을 촉진한다.

교장 및 고위 경영진과 긴밀히 협력하여 합리적인 안전보건 관리를 지원하고 적절한 경우 이의를 제기한다.

운영위원회는 위험 회피를 다루고, 더 넓은 관점을 제공하도록 돕고 학교가 위험 관리에서 균형을 맞추도록 돕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③ 교장

교장과 학교 경영팀/관리자는 학교의 일상 운영에 상당한 자율권을 가지고 있다. 교장이 사업주의 정책, 절차 및 표준에 따라 이 자율권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가 사업주의 안전보건 정책을 따르고 학교에서 실제 안전보건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사업주, 관리자 및 학교 인력과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고 계약자를 포함한 학생과 방문객에게 현장의 증대한 위험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직원이 책임 분야의 위험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교육과 역량을 갖추고 있도록 한다.

인정받는 TU 안전 담당자/직원 담당자 및 안전위원회와 협의하고 협력한다.

직원이 자신의 책임을 이해하고 위험을 책임감 있게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원과 조언을 받는 방법을 알고 있도록 한다.

④ 기타 학교 리더들

구매 및 계약 절차의 관리 및 모니터링을 통해 위험이 효과적으로 관리되도록 한다. 계약자에게 현장별 위험에 대해 알리고 현장에서의 활동을 감독한다. 직원과 방문객이 현장 절차와 따라야 할 예방 조치를 인지하도록 한다. 사고 및 사건 보고, 교육 절차의 구현, 모니터링 및 검토, 학교 리더십 팀을 위한 보고서 및 신고서 작성 등을 한다.

부서장 및/또는 커리큘럼 리더는 해당 주제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종종 해당 부서의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에 대해 조언하거나 이끌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교과 전문가 또는 기타 지명된 리더를 임명하여 학교의 다양한 활동 전반에 걸쳐 지원을 제공하는 주요 역할을 맡게 할 수 있다.

지명된 건강 및 안전 책임자는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을 맡을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이 있어야 한다. 역할을 수행할 시간, 자원 및 역량이 있어야 한다.

⑤ 직원

모든 학교 직원은 학교에서 합리적인 안전보건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직원 참여는 더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을 만드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며 지나치게 조심스러운 접근 방식이 아닌 합리적인 접근 방식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된다.

노조가 임명한 안전보건 담당자이든 직원 대표인 안전보건 담당자이든 특정 기능이 있으며 직장에서 안전보건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

자신의 안전보건 및 자신이 하는 일 또는 하지 않는 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안전보건을 합리적으로 돌본다. 사업주, 동료 직원, 계약자 및 기타 사람들과 협력하여 직장을 안전하게 만들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 규정에 따라 안전보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다.

라) 안전보건을 관리하기 위한 유능한 사람의 임명⁷⁰⁾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유능한 사람을 임명하도록 요구한다. 유능한 사람은 학교에서 안전보건 위험을 관리하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기술, 지식 및 경험을

70) HSE, "Where can I get competent advice to manage health and safety in our school?": <https://www.hse.gov.uk/education/faqs-general.htm>

갖춘 사람이다.

여기에는 아래 사항 중 하나 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될 수 있다.

- 학교 사업주(예: 지방정부 또는 아카데미 신탁)로부터 직접
- 학교 직원 중 한 명 이상(예: 재무부장, 부서장, 전문 커리큘럼 지식이 있는 직원)
- 학교 외부에서 지원을 마련

그리고 많은 학교에서 대부분의 위험은 직원과 학교 사업주의 도움을 받아 고위 리더십 팀이 관리할 수 있다.

마) 직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⁷¹⁾

사업주는 모든 직원이 근무를 시작할 때 적절한 건강 및 안전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지속적인 교육은 다음과 같은 변화에 대응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 신입생의 요구 사항 충족
- 추가 위험 식별
- 새 장비 또는 개조 장비 사용 및/또는
- 새로운 직무 책임
- 기존 학생의 요구 사항 변경으로 인해 요구 사항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관리하는 방식이 변경됨

모니터링 및 검토 절차는 교육이 필요한 경우와 교육의 관련성(예: 교육이 직무와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을 강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71) HSE, "Health and safety training":

<https://www.hse.gov.uk/education/health-safety-training.htm>

(5) 소결

영국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용자뿐만 아니라, 위험물질관리자, 직장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제조자, 설계자, 설치자, 수입자, 근로자 등 다양한 사람을 의무규정의 주체로 삼고 있다. 이에 따른 보호의 대상으로서 근로자 이외의 자도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영국에서 공공행정기관에 고용된 종사자의 경우, 예를 들면 비부처 공공기관, NHS, 군대, 공공기업, 지방정부, 경찰, 소방 등에 고용된 종사자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경찰관, 소방, 군대, 지방정부, 학교 등은 「산안법」 적용대상으로 간주되어 포괄적으로 적용된다.

여기에서 공공행정의 안전보건체계 구축 주체와 방식과 관련하여 특징적인 것은, 각 공공행정기관은 기본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 규정이 포괄적으로 적용되고 있지만, HSE에서 마련하고 있는 산업별 가이드라인 및 지침 등에 따라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각 업종별로 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준수해야 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구체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의 안전보건활동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사업주(지방정부, 관리기관 또는 소유주)는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 업무는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사업주는 학교 활동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직원, 학생 및 방문객의 위험을 관리하는 조치를 구현해야 하며, 직원에게 학교의 실제적이고 중요한 위험과 이를 관리하기 위해 취해야 할 예방 조치에 대해 알려주어야 한다. 또한 직원이 필요한 경우 유능한 자를 선임하여 안전보건의 조언을 받는 것을 포함하여 일상적으로 위험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교육을 받도록 한다. 그리고 통제 조치가 구현되었고 적절하고 효과적인지 확인해야 한다.

교장과 학교 경영팀/관리자의 경우, 학교의 일상 운영에 상당한 자율권을 가지고 있으며, 교장이 사업주의 정책, 절차 및 표준에 따라 이 자율권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학교가 사업주의 안전보건 정책을 따르고 학교에서 실제

안전보건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영국의 공공행정에 대한 안전보건체계는 공공행정의 업종 및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한 체제와 활동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특징이다. 즉,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규정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 세부적인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안전보건체계의 실현 방식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의무는 포괄적으로 두고, 각 산업별 HSE의 가이드 및 지침, 그리고 지방정부의 법령 등을 통하여 업종 및 산업, 사업장의 특성에 맞게 안전보건인력의 선임, 위원회 운영, 안전보건 관련 정보 주지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4. 시사점

공공부문에 대한 법 적용에 있어서 각 국가들은 다음의 특징을 갖는다.

일본의 경우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안위법의 적용이 있지만, 비현업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후생노동성의 감독 권한이 미치지 않는다. 후생노동성을 대신하여 감독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인사위원회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인사위원회의 위원(인사위원회를 두지 않는 지방공공단체에서는 지방공공단체의 장)이 된다. 학교의 경우, 「노동안전위생법」의 적용 외에도 「학교교육법」에 따라 학교 설치자, 교장, 교육위원회의 학교 관리 의무를 구체화하고 있다. 「학교보건안전법」에서 학교의 학생 및 직원의 건강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학교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지자체의 학교 직원 안전위생관리규정 등을 통해 학교 안전과 건강 확보 및 쾌적한 직장환경 형성 촉진에 관한 책임체제의 명확화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실행을 구체화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공공부문은 공무원으로 대표되는 공법상 공무원관계(법정주의모델, Gesetzmodel)와 노동자 지위를 갖는 사법상의 고용관계(단체교섭모델, Tarifmodel)가 이중적으로 존재하는 이원적 관계를 지닌다. 고용관계의 근로자의

경우 국가는 사업주이자 사용자로서 노동법상 지위를 지닌다.

학교/유치원/소방/묘지/요양원/시립수영장/상수도/병원 등 공공부문의 근로자가 존재한다. 각 주에서는 공공부문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 보호를 개선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ArbSchG)에 따라 세부 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DGUV 규정은 예방원칙, 회사의 의사 및 산업안전전문가, 학교 및 보육시설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산업안전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한다. 가이드에서는 사업주의 책임귀속, 권한의 배분, 산업안전보건체제, 학교내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와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한다.

영국에서는 왕실에 고용된 공무원, 공공행정기관에 고용된 종사자로 구분되며, 경찰, 군대, 소방 및 구조서비스, 지방정부 등의 종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 적용을 받을 수 있다. HSE와 경찰청은 경찰 업무의 특수성과 안전보건업무의 균형을 위해 공동으로 가이드를 마련하는 등 특성을 반영한 안전보건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학교의 경우, 직원, 학생 및 방문객에게 발생하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한다. 또한 지방정부가 사업주인 학교의 경우 지방정부에서 별도의 안전보건에 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지침에서는 직원과 학생의 안전보건에 대한 사업주 책임을 포함하여 교장, 운영위원회, 관리자, 직원 등 학교의 일상 운영에 관한 권한 배분과 인력의 임명, 안전보건교육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일본, 독일, 영국의 공공부문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접근 방식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공공부문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한다. 다만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례, 지침 등을 통해 의무를 구체화하는 국가도 있고, 법을 적용하되 지자체에 대한 감독을 면제하거나 자체적으로 감독하도록 하는 국가도 있었다.

둘째,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한다. 조례, 지침, 가이드를 통하여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권한을 배분하고, 업무 특성을 고려한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셋째,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한다. 감독기관(HSE, DGUV 등)은 공공부문의 업무특수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위험업무 등에 대한 사업주의 면책규정을 통해 예외적인 부분을 고려한다.

넷째, 근로자들이 안전보건 관련 규정과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도록 하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매뉴얼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동시에 근로자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다.

정리하면 각 국가는 공공부문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고 있으나, 다양한 조직과 업무 특수성을 고려하고 있으며, 모든 종사자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안전보건체제나 교육제도를 적용하고 있지 않았다. 국가마다 공공부문에 대한 법 적용 또는 집행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는데, 스스로 감독을 수행하게 하거나, 조례, 지침, 가이드 등을 통해 기관과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권한의 배분, 관리체제 구축, 교육 등의 활동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V. 공공행정 분야 등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방향



V. 공공행정 분야 등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방향

1. 공공행정분야 등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의 문제점

1) 특정 사업에 대한 공공행정업의 포괄 적용

사업장의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단위로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갖추고 구성원의 안전보건활동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산안법」은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장을 본청과 구분하여 「산안법」의 적용단위인 사업장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장의 주된 업무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업종을 적용한다. 따라서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에 소속된 기관이 일반적인 공공행정업무와 구분되는 특정사업을 수행하는 경우¹⁾ 해당 사업장에서 수행하는 주된 업무에 해당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업종과 규모에 따라 「산안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실태조사에 참여한 소속기관 중에는 실제 수행하는 주된 업무가 아닌 공공행정업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래 특정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장은 주된 업무(업종)와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현업과 비현업의 구분 없이 전체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그럼에도 특정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장의 업종을 공공행정업으로 해석하여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별도의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한다거나, 본청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본청에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는 등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었다.²⁾

그 결과 특정 사업을 수행하는 종사자를 공공행정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아

- 1)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본부(맑은물 사업소 등), 공원관리소,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체육 시설 등이 여기 해당한다.
- 2) 공공행정업을 적용하는 이유는 특정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소에서도 민원응대 등 공공행정 에 관한 사무를 주된 업무로 보기 때문이라는 의견과 본청과 소속기관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공공행정업을 적용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산안법」 제2장과 제3장의 적용을 제외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으며, 공공행정업무가 아닌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업무까지 현업업무로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타나고 있다.

「산안법」이 공공행정 등에 대하여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규정한 취지는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와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특정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의 유해·위험을 고려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공공행정업으로 해석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와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산안법」의 입법취지에 반할 수 있다.

또한 현업업무에 대한 고시를 둔 것은 공공행정업의 범주 내에서 발생하는 업무에 대하여 예외적인 규정을 두는 것이므로 다른 업종으로 해석될 수 있는 특정 사업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2) 현업업무에 국한된 안전보건관리의 한계

「산안법」 제2장의 안전보건관리체제의 규정 취지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장의 업종과 규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고(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담당인력의 선임, 산보위 운영 등), 산안법령에서 정하는 안전보건관리 업무(안전보건조치, 안전보건교육 등)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사업장 단위에서 실질적인 안전보건활동이 불가능하거나 지나치게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산안법」의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도록한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설문에 응답한 기관 중에 「산안법」 상 안전보건관리체제와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규정을 현업업무 종사자에 한정하여 적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관이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실태조사 기관 중에는 안전보건관리체제의 구축방식으로 기관에 소속된 전체 사업장의 상시 현업종사자 수를 합산하여 본청에 담당부서와 인력을 배치하는 기관도 있고, 각 소속기관별 상시 현업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도록 하는 곳도 있었다. 전자의 경우 「산안법」 제2장의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만큼의 상시 현업종사자 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본청을 중심으로 안전보건담당부서와 인력이 배치되기 때문에 실제 작업이 이루어지는 소속기관의 안전보건활동을 촉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있다. 후자와 같이 소속기관별로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는 경우 상시 현업종사자수가 적은 기관에서는 사업장 단위의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기관별 안전보건담당자를 대상으로 공공행정 등에서 안전보건관리체제와 안전보건교육의 적용 제외 규정의 필요성 여부를 파악하였다. 전체의 75% 이상이 현재와 같이 위험도가 높은 일부 현업업무에 대해서만 「산안법」을 적용하는 것에 찬성하고 있었으며,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현업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도 「산안법」의 일부 규정을 제외하자는 의견이 18%, 반대로 소방 등의 특수분야를 제외한 종사자 전체에 법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6.7%에 그쳤다. 현업업무에 대한 별도의 안전보건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었으나, 현업업무에 대한 별도의 안전보건관리 필요성이 낮다고 보는 의견도 18%에 달했으며, 소방 등 특수분야를 제외한 전체 공공행정 종사자에게 안전보건관리체제와 안전보건교육 규정을 적용하는 것에는 대다수가 반대하였다. 그 이유는 공공행정업무의 특성상 현업업무와 유해·위험도가 달라 별도의 안전보건관리의 필요성이 낮다고 인식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내근직(공공행정업무)에 대한 「산안법」 전부 적용하는 것에는 반대하지만 현장직에 대해서는 유해·위험도가 높은 업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소속 사업장 단위에서 현장직 전체에 대해서 현업종사자와 동일하게 「산안법」의 전부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현업업무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제는 사업장 단위에서 실질적인 활동으로 전개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만약 장소적으로 분리된 사업장 단위로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게 하는 경우 상시 현업업무 종사자 수가 부족하여 안전 및 보건관리자의 선임이 어렵거나 산보위 등을 운영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개별 사업장 단위에서 현업업무 종사자만으로

체제를 구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직근 상위조직인 본청에서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거나, 유사 사업그룹별로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게 하는 등 해석상 보완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급적 소속사업장 단위의 안전보건활동을 촉진하려는 안전보건관리체제의 규정 취지를 고려하여, 각 소속기관별로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여 특성에 맞는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법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업업무 외에도 기타 유해·위험이 높은 다양한 업무를 포함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시하여 체제구축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3) 사업장 규모의 확대와 본청 중심 안전보건관리의 한계

실태조사 결과 현업종사자가 소속된 사업장 단위로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본청과 소속기관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본청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전체 소속기관의 현업종사자들의 안전보건활동을 지원하는 형태로 관리하는 사업장이 다수 발견되었다.

문제는 개별 소속기관의 상시 현업근로사 수가 적은 경우에도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기 힘들지만, 반대로 독립성이 없는 다수의 사업장을 직근 상위조직과 하나의 사업장으로 해석하는 경우에도 본청에서 관리해야 하는 현업종사자 수와 소속 사업장 수가 지나치게 많아질 수 있다. 예를 들면 광역교육청에 소속된 각급학교의 수가 수백 개소에 달하는 경우³⁾ 본청에서 선임한 안전 및 보건관리자가 전체 학교에 소속된 현업종사자를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교육청과 각급학교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더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속기관과 현업종사자를 관리하는 경우, 안전보건관리를 지원할 인력을 추가로 선임하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 직무별 중간 조직과 담당 인력을 보강하여 소속기관의 안전보건활동을

3) 경기교육청의 경우 소속된 각급학교가 약 2,500여개에 달하나 대부분의 각급학교는 상시 현업종사자의 규모에 따라 관리감독자인 교장 이외에 별도의 안전보건관리인력을 선임하지 않으며 본청의 안전보건담당인력의 관리에 의존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촉진시킬 수 있도록 고민이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공공행정분야 등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산안법」 해석 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2. 공공행정 등 사업장에 대한 「산안법」 적용 기준과 해석 방향

1) 사업의 종류의 해석 방향

「산안법」 제3조는 “이 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사업의 종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⁴⁾

또한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 해설서에 따르면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서비스’는 국가 및 지방 행정기관이 일반 대중에게 제공하는 공공행정, 국방·산업 및 사회보장 행정업무를 의미하며, 일반행정에 관한 규제와 집행 사무를 제외한 운수, 통신, 교육, 보건, 제조, 유통 및 금융 등의 특정 사업을 운영하는 정부기관에 대해서는 그 산업활동에 따라 해당 특정 산업으로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다.⁵⁾

「산안법」이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서비스 산업에 대하여 「산안법」 제2장과 제3장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규정한 이유는 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해당 사업의 종류와 유해·위험의 정도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서비스의 업무는 일반 행정에 관한 규제와 집행 사무와 같은 본연의 업무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공행정 등의 본연의 업무와 구분되는 특정 사업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4) 「산안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5)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제11차), 2024, pp.745

공공행정 등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행정기관 등에서 수행하고 있는 특정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산업에 따라 「산안법」의 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석할 필요가 있다.

2) 안전보건관리체제의 규정 취지를 고려한 사업장 단위의 해석 방향

「산안법」 제2장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갖추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고,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사업장의 업종과 규모에 따라 안전보건인력을 선임·지정하여 산안법령상에서 정하는 안전보건활동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을 동수로 하는 산보위를 구성·운영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해야 한다.

위와 같이 「산안법」의 안전보건관리체제에 관한 규정들은 모두 ‘사업장’ 단위로 이행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산안법」이 사업장 단위로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여 안전보건활동을 추진하도록 규정한 취지를 고려하여, 소속 사업장 단위로 실제 수행하는 주된 업무에 맞게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안전보건조직을 구성하여 안전보건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장 단위와 적용 업종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업종사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보건관리체제에서 벗어나 사업주가 기관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유해·위험을 가진 업무 종사자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여 효과적인 안전보건관리가 가능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⁶⁾

6) 현업업무 종사자 뿐 아니라 전체 현장직에 대해서 사업장 단위의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는 경우가 여기 해당한다.

3) 사업장 유형별 「산안법」의 해석 방향

(1) 장소적으로 분리된 독립적 사업장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는 공공행정에 관한 사무 이외에도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 주민의 건강·복지 증진 등을 위한 다양한 공공서비스 사업을 확대해 왔으며 그 조직과 규모도 커지고 있다. 하나의 법인 내에 수 개의 사업을 운영하며 본청 이외의 다양한 사업소를 두고 있다. 이러한 사업 운영실태를 고려하면 행정기관 전체 또는 지자체 법인에 소속된 모든 기관을 하나의 업종으로 분류하는 것보다, 각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제와 활동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더 효과적이다.

따라서 각 사업장에서 실제 수행 중인 사업의 특성과 규모, 업무의 내용과 위험도를 고려하여 「산안법」 적용을 위한 사업장 단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산안법」의 적용단위인 ‘사업장’의 개념에 대하여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하고 있다.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본다.⁷⁾ 따라서 동일한 장소에 있더라도 근로의 양태가 현저히 다른 경우 등 주된 부문과 분리하여 취급하는 것이 「산안법」이 더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다거나,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하나의 사업장이라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본청과 장소적으로 분리된 사업장은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해당 사업장의 주된 업무에 따라 사업의 종류를 분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기존의 행정해석에서도 중앙정부처의 소속기관이 관계법령과 행정규칙(훈령, 예규 등)에 따라 독립적으로 소관 사무를 부여받은 경우 본청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해석해 왔으며, 지자체에 소속된 기관이라도 본청과 업무와 장소가 구분되는 상수도본부, 보건소, 문화예술회관, 도서관 등의 사업소에 대해서는

7) 산재예방정책과-7065, 2012.7.30.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해당 사업장의 주된 업무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업종을 적용하도록 해석한 바 있다.⁸⁾

그러나 실태조사 결과 본청과 소속기관의 사업과 장소가 구분됨에도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해석하여 모두 공공행정업으로 분류하는 사업장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중앙행정부처와 광역지자체보다 기초지자체에서 더 많이 나타났다.⁹⁾ 이들의 경우 본청과 소속기관을 하나의 공공행정 등 사업장으로 보아 본청을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고 현업종사자에 대해서만 「산안법」의 안전보건관리체제와 안전보건교육 규정을 적용하고 있었다. 그 결과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는 본청의 업무로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일부 현업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활동으로 국한되어 사업장 단위의 안전보건활동이 촉진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방식의 사업장 해석은 지자체의 사업장 규모가 커지고 사업이 다양해질수록 현업 이외의 종사자를 보호하는데 한계를 보이게 된다.

비교하여 법령에 의해 소속기관의 소관 사무와 권한을 구분하는 중앙행정기관이나, 별도의 시군구를 둔 광역지자체에서는 사업과 장소가 구분되는 소속기관을 별도의 사업장으로 해석하여 「산안법」을 적용하는 사례가 많았다.¹⁰⁾ 따라서 소속기관이 본청과 장소적으로 구분되고 사업수행의 독립성이 있다면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 각 기관에서 수행하는 주된 업무의 유해·위험도를 고려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안전보건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사업장 업종의 해석을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농업기술센터, 상수도본부, 보건소, 문화예술회관, 공원관리소 등과 같이 공공행정의 업무와 현저히 다른 특정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실제 수행하는

8)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본 보고서 II장에서 기술하였다.

9) 개별 사업장의 주된 업무에 따라 「산안법」을 적용해야 하나, 실태조사 결과 소속기관을 본청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공공행정업을 적용하거나, 소속기관의 주된 업무를 공공행정으로 오인하여 「산안법」 제2장과 제3장을 적용하지 않는 사례가 발견되었다.

10) 소속기관을 별도의 사업장으로 구분하는 지자체에서도 연구원, 정비창 등을 제외한 소속기관의 대부분에서 민원행정업무를 수행하여 공공행정업으로 분류하고 있었다. 향후 사업장의 행정지도 등을 통해 주된 업무에 맞게 사업의 종류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업무를 기준으로 「산안법」의 업종을 적용해야 한다. 만약 특정 사업을 공공행정업무로 오분류 하는 것을 방지한다면 특정 사업의 위험을 고려하지 않은 채 현업업무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에만 치중하게 되고, 비현업업무에서 재해가 증가하면 해당 업무를 현업업무로 반영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행정은 일반행정에 관한 규제와 집행 사무라는 위험도가 낮은 본연의 업무로 엄격히 해석하고 특정 사업의 업무는 해당 업무의 위험도에 따라 관리되도록 하여 공공행정의 업무로 오인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장소적으로 분리되지 않은 독립적 사업

위와 같이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특정업무에 대해서 해당 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을 적용하고 나면, 공공행정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본청 등과 같이 본연의 공공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과 장소적으로 분리되지 않은 채 현저하게 근로의 양태가 달라 별도의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여 유해·위험을 관리할 필요가 있는 업무가 남게 된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동일한 장소에 있더라도 현저하게 근로의 양태가 다른 부분이 있고 그러한 부분이 주된 부문과 비교하여 노무관리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주된 부문과 분리하여 취급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이 보다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부문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해석할 수 있다.¹¹⁾ 그리고 공공행정 등에서 장소적으로 분리되지 않으나 공공행정과 현저하게 근로양태가 달라 별도로 「산안법」을 전부 적용할 필요성이 높은 업무(청소, 시설관리, 조리업무 등)에 대해서는 이미 「산안법 시행령」 [별표 1]과 고용노동부 현업종사자 고시를 통해서 현업업무로 규정하여 「산안법」을 전부 적용하고 있다.¹²⁾

11) 산재예방정책과-7065, 2012.7.30.

12) 관련 경과는 본 보고서 제2장 제1절 2) 공공행정 등에 대한 「산안법」 적용 확대 과정에서 설명하였다.

그러나 현업으로 지정된 업무 외에도 기관의 특성에 따라 일반적인 공공행정 업무와 현저하게 근로의 양태가 다른 업무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모든 업무를 현업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다수의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수행되고, 유해·위험성이 높으며, 규모가 있어서 별도의 체제를 구축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현업업무로 지정하여 「산안법」을 전부 적용하도록 강제하되, 그 외의 업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해석 기준을 활용하여 사업주가 스스로 공공행정업과 분리하여 「산안법」의 기준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별도의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실제 인터뷰에 참여한 기관 중에는 소속 근로자를 내근직과 현장직(현업종사자 포함)으로 구분하고,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근로자 전체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여 교육 등의 활동을 추진하게 유도하는 기관이 있었다. 기관의 안전보건담당자는 현장직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는 방식이 일부 현업종사자에 한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는 방식보다 조직 내 안전보건활동 및 구성원의 안전문화 조성에 효과적이라고 보았다.¹³⁾

(3) 장소적으로 분리되었으나 독립성이 없는 사업장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출장소, 사업소, 지점 등이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기구)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교육청에 소속된 각급학교와 지자체의 주민센터, 보건소나 농업기술센터의 분소가 여기에 해당한다.

광역교육청에서는 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기초하여 사업수행의 독립성이 없는 각급학교를 본청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광역교육청에 소속된 전체

13) 관련 사례는 본장의 제4절에서 소개하겠다.

현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산안법」을 전부 적용하고 있다. 실태조사 결과 광역교육청에 소속된 각급학교의 경우 본청과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지침 등 본청에서 시달한 사업계획과 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각급학교를 독립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장으로 보긴 어려웠다. 또한 각급학교 소속 근로자의 대다수는 수업 등 교육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사업장의 주된 업무는 교육서비스업으로 분류되며 「산안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제와 안전보건교육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속기관 등이 본청과 분리하여 별도의 사업장으로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안전보건활동을 추진하려면 해당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할 만큼의 규모를 갖춰야 하고, 안전보건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 만약 소속기관 등이 업무수행의 독립성과 권한이 없거나, 법령에서 정한 기준보다 규모가 작아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지 못한다면 해당 사업장의 실질적인 안전보건활동을 담보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조직적 특성을 갖는 경우에는 각급학교의 사례와 같이 직근 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해석하고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된다.

4) 기타 고려사항

「산안법」은 사업의 종류와 유해·위험도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할 의무를 부여한다. 즉, 사업장 단위의 해석에 따라 개별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작은 경우, 「산안법」 제2장의 안전보건관리체제에 관한 대부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공공행정업에서의 현업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제는 일반 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관리체제와 달리 소속 사업장 단위로 추진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사업장의 안전보건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행정 등의 특수성을 고려한 사업장 단위 해석의 보완점을 살펴보겠다.

(1) 독립성이 있으나 사업장 규모가 작아 체제 구축이 어려운 경우

하나의 기관에서 장소적으로 분리된 다수의 사업장을 둔 경우, 개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산안법」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적어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대부분의 특정사업은 공공행정업으로 분류하지 않고 주된 업무에 해당하는 업종을 적용하여 현업업무 종사자가 아닌 소속기관 전체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사업장 단위의 안전보건관리체제의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 작은 규모의 특정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장의 경우 독립적인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인터뷰 대상 기관 중에는 소속기관의 사업장 규모가 작아 별도의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어려운 경우에 기관 내 유사 사업군 또는 본청의 조직과 통합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안전보건활동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소속기관의 특성에 맞게 사업군을 분리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보건활동을 효과성을 높이고 있었다.

이처럼 소속기관의 사업장 규모가 작아 독립적인 안전보건관리체제의 구축이 어려운 경우 사업주가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동종의 사업군 단위로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거나, 본청과 소속기관들을 통합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2) 현업종사자만으로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어려운 경우

공공행정업으로 분류되는 사업장의 경우 상시 현업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현업종사자 수가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는데 충분한 사업장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공공행정업무가 주된 업무인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상시 현업종사자 수가 많지 않을 수 있다. 이같이 특정사업이 아닌 공공행정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업종사자만으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공공행정 등의 사업장에서 현업종사자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할 때에는 전체 근로자가 아닌 현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해야 하는 특성과 주된 업종이 공공행정인 사업장에서 현업종사자 수가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다수의 장소에 소수의 인력으로 분산되어 있는 현업종사자의 안전보건관리체제는 본청을 중심으로 구축되고, 사업장 단위가 아닌 직무 단위로 안전보건활동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따라서 독립적인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기에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청 또는 사업군별로 통합하여 상시 현업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근무장소가 여러 사업장에 분산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군별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거나 산보위의 근로자대표를 선출하게 하는 등의 현업업무의 직종별 특성을 고려한 안전보건활동을 추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5) 소결

사업장의 유형별 「산안법」 적용의 해석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청과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소속기관을 개별 사업장으로 해석하는 경우, 각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주된 업무에 따라 「산안법」을 적용할 수 있다.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과 유해·위험도를

반영한 안전보건관리체제의 구축이 가능하고, 산보위 등을 통해 소속기관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행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보건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따라서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임대수리업무 종사자, 수도관리본부(맑은물사업소 등)의 수도검침원이나 하천단속업무 종사자, 보건소에 소속된 방문간호사나 진료소 근무자, 문화체육시설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도 별도로 현업업무로 지정하지 않더라도 소속 사업장에서 수행하는 주된 업무의 업종 분류에 따라 「산안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둘째, 사업의 종류에 따라 현업과 비현업을 구분하지 않고 사업장에 소속된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의 직원들이 직접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에 주체가 되기 때문에 사업장 자체적인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

셋째, 장소적으로 분리되지 않더라도 근로의 양태가 현저히 다르고 주된 부문과 노무관리 등이 명확히 구분되어 「산안법」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 부문에 대하여 사업주가 별도의 안전보건관리체제를 두어 관리를 강화할 수 있다. 위 해석에 따르면 사업주는 고시에서 정한 현업업무 종사자뿐 아니라 기타 유해·위험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자율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제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넷째, 주민센터, 각급학교(이하 소속기관 등)가 본청과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이라 말할 정도로 사업수행의 독립성이 없어 독자적인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속기관과 본청을 통합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다섯째, 특정사업이 공공행정 등으로 오분류 되는 것을 방지하고, 현업업무가 특정사업까지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현업업무 외에 기관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유해·위험업무에 대해서도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산안법」의 최소 기준을 상회하는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여 실질적인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할 수 있다.

여섯째, 안전보건관리체제가 적용되지 못하는 규모의 특정사업이나 공공행정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본청 또는 유사 사업별로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여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안전보건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

3.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에 관한 고시의 현업업무의 적정성 검토 및 보완

장소적으로 분리되지 않지만 일반적인 공공행정업무와 현저하게 근로의 양태가 달라 별도의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여 유해·위험을 관리할 필요가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현업업무로 지정하거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사업을 분리하여 별도로 안전보건관리체제를 둘 수 있다.

다만 현업업무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확대하는 경우 행정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보건관리체제의 구축이 어려워지는 점, 현업업무에 대해서만 본청 중심의 안전보건활동이 이루어져 소속사업장 단위의 안전보건활동 촉진 및 구성원의 역량 강화가 어려운 점 등은 앞서 문제점으로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현업업무는 행정기관의 특수성을 배제해야 할 정도로 보호필요성이 높고 별도의 체제를 두어 관리해야 하는 업무로 제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 외 별도 관리가 필요한 업무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사업주가 자율적 영역에서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새롭게 현업업무에 반영이 필요한 업무를 살펴보겠다.

1) 사고성 재해 감소를 위한 현업 확대 대상 업무 검토

최근 3년간 산재통계를 분석한 결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고재해율(0.67)이 전체 산업의 사고재해율(0.54) 비해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하였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질병재해율(0.11)은 전체 산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서비스업의 사고사망만인율, 질병사망만인율은 전체 산업보다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비록 산재통계는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를 포함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사고재해율은 전산업보다 높아 사고성 재해의 관리가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산업재해자 현황자료의 분석 결과 대부분의 재해자는 시설관리, 청소, 조리 등 기존의 현업업무로 지정한 업무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현업업무에 대한 유지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검토 대상 업무가 현업업무로 지정할 만큼의 유해·위험성을 지니고 있는지 판단하려면 각 업무별 종사자의 재해율과 사망만인율을 산출하여 유해·위험의 빈도와 강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산재통계 자료는 사업장 단위의 근로자 수만 제공되며 검토 대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모수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각 업종별 근로자의 재해율과 사망만인율을 산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연구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산업의 종류, 종사자의 직종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산업재해자현황을 통해 재해빈도와 재해유형을 분석하고, 유사업종의 재해율과 사망만인율을 통해 위험도를 추정하였다. 그리고 대상 업무 종사자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재해유형과 재해발생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안전보건관리현황,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교육 규정의 적용 필요성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사고성 재해발생의 위험이 높은 업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공공행정업에서 현업업무로 지정이 필요한 업무로는 농작업대행, 농기계 임대 및 수리업, 수도검침업, 하천단속업, 주차단속업, 방문간호사 및 방문상담사, 보건소 근무자, 도서관 사서, 체육시설 강사, 전화상담원이 제시되었다.

검토 대상 업무 중 사고성 재해 유형이 높게 나타난 업무로는 농작업 대행과 농기계 수리 종사자(80% 이상), 수도검침(79%),¹⁴⁾ 의료복지 종사자(54%)¹⁵⁾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도서관 사서와 체육시설 강사, 전화상담원의 경우 사고성재해 빈도가 낮거나 재해사례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보조적으로 유사업종의 재해율과 사망만인율을 파악한 결과 농업서비스업(농작업 대행)의 사고재해율과 사고사망만인율이 전산업 평균보다 높았으며, 자동차 및모터사이클수리업(농기계 수리업)의 사고재해율과 질병재해율이 전산업 평균과 유사하였다. 사업서비스업(수도검침)과 하수도업(하천단속)은 전산업보다 모든 지표가 낮았으며, 택시및경량차량운수업(주차단속)은 사고 및 질병 모두 사망만인율이 높아서 유사성이 있는지 인터뷰시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대상 업종은 유사업종의 재해율과 사망만인율이 모두 낮게 나타났다.

종사자 인터뷰에서 ① 농기계 임대 및 수리업(농작업 대행 포함)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 농업기술센터에 소속되어 약 100여종의 농기계를 임대, 수리하고 있었으며 필요시 기계를 이용하여 대신 받을 갈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들은 작업시 농기계 등 중량물 이동을 위한 호이스트 사용, 부품 교체작업에 의한 근골격계질환, 동력 회전체 끼임, 그라인더와 연삭기, 절단기, 예초기의 날 접촉 등 자동차 수리업에 준하는 사고성 재해의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② 수도검침 및 하천단속의 경우 수도계량기 검침과 하수도 점검 및 단속시 넘어짐, 떨어짐(사다리), 끼임, 밀폐공간 질식 등의 사고성 재해의 위험이 있었으며, 맨홀 등 중량물 취급, 폭염, 한랭 등 계절적 요인, 야생 동·식물로 인한 사고와 질병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자체별로 수도검침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하천단속업무는 본청에서 수행하되 현장의 점검·확인 등 본청 공무원이 아닌 소속기관(수도사업본부, 맑은물사업소 등)의 하수시설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수행하는 사례도 발견되었다.

14) 하천단속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산업 또는 직종 분류 기준이 없다.

15) 주로 이동중 넘어짐 34% 직업성질병 12%, 직업병 9%이며, 작업중 발생하는 사고성재해 유형은 부딪힘 10%, 무리한 동작 10% 정도로 타 업무보다 낮았다.

③ 보건소의 경우 진료팀을 제외한 재활사업, 의료기관 점검 등의 공공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진료팀의 경우 민원응대 업무중 코로나 등 질병에 감염되는 사고가 있었으나, 사고성 재해의 위험은 높지 않은 것으로 답했다.

④ 방문간호와 방문상담의 경우에는 민원인의 돌발행동으로 인한 사고(폭행, 폭언, 성적언행 등), 감정노동, 이동 중 교통사고 등의 위험이 있으나, 사고성 재해의 발생 가능성이 상시적이거나 높은 편은 아니었다.

⑤ 주차단속의 경우 민원응대로 인한 스트레스가 크고, 차량간 접촉사고, 골목 내 주차 단속 중 지나가는 차량 또는 키보드 등에 부딪히는 사고의 발생 위험이 있다. 그러나 사고 또는 사망 재해의 발생 가능성이 상시적이거나 높은 편은 아니었다.

⑥ 도서관 사서의 경우, 반복적 책 정리 작업에 의한 손목 부위의 근골격계질환의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는 떨어지는 책에 맞거나, 서고 모서리 등에 베이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공기질 악화로 인한 호흡기와 안구질환의 위험이 있다. 그러다 사고성 재해의 발생 가능성이 상시적이거나 높은 편은 아니었다.

⑦ 체육시설 강사의 경우 시설 이동 중 미끄러짐, 민원응대시 감정노동 등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고성 재해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편은 아니었다.

⑧ 콜센터의 경우 별도의 독립적 기관(국민권익위원회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서울시 다산콜재단 등)을 통해 운영되며, 일부 행정민원에 대한 전담부서 형태의 조직도 있다. 민원응대시 감정노동 등의 위험이 있고 장시간 고정 자세와 상담에 의한 질병 이환의 위험이 있으나 일반 공공행정업무의 위험도와 유사하며 사고성 재해의 발생 위험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하면, 공공행정업(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서 사고성 재해의 위험이 높은 업무는 농기계 임대 및 수리업, 수도점검 및 하천단속(현장 단속원)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의 업무들은 유해·위험이 높아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웠다. 또한 위 업무들은 본청과 분리된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본부 등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각 사업장의 주된 업무에 따라 「산안법」을 적용하게

되면 현업업무에 해당하는 사례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 교육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에서 현업업무로 지정이 필요한 업무로는 특수교육실무사, 과학실무사, 도서관 사서, 수상 안전요원이 제시되었다. 인터뷰 결과 과학실무사라는 명칭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학교 행정실무사 중 과학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칭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¹⁶⁾

교육서비스업은 사고재해율, 사고사망만인율, 질병재해율, 질병사망만인율 모두 전체 산업보다 현저하게 낮게 나타났다. 최근 3년간의 산업재해를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산업과 종사자 직종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특수교사를 포함한 전체 교사 및 실무사의 재해유형은 넘어짐 29%, 체육행사 19%, 부딪힘 11%, 폭력행위 9% 순으로 전체 재해자의 절반 정도가 사고성 재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실무사와 도서관 사서, 수상 안전요원의 재해는 직종 외에도 키워드로 추가 검색을 했으나 재해 발생 빈도가 낮았다.

종사자 인터뷰에서 ① 학생 보조 등 신체 부담작업과 폭행 등 돌발행동에 의한 부상의 위험이 있었다. 또한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서의 역할갈등 등의 감정노동이 있었다. 유사업무인 통학차량운전원, 통학차량보조원은 이미 현업업무로 분류되어 있으며 더 오랜 시간동안 학생들을 보조하는 특수교육실무사에 대해서도 현업업무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② 행정실무사 중 과학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경우 교과과정에 따라 유해·위험물질을 취급하고 있었으며 시약을 소분하거나 실험 후 시약의 폐기과정에서 물질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 행정실무사(과학담당)는 주로 초등학교에서 과학 수업을 진행하며 중고등학교에 비해 위험도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16) 인터뷰 대상 교육청에 소속된 행정실무사는 교무, 행정, 과학, 전산(정보)업무로 세부 업무가 구분되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2곳에서 과학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조례에 따라 교육감은 과학실의 안전수칙을 정하고 안전사고와 응급상황 대비한 매뉴얼을 구비하고 있다. 또한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를 배치하고 연 1회 이상 안전점검과 안전연수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학실 안전관리담당자 및 과학수업 담당 교직원에 대해 연간 15시간 이상의 과학실 안전관리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교사와 행정실무사 모두 매년 연수를 받고 있었다. 행정실무사(과학담당)와 과학교사에 대해서는 위 조례를 통해 별도의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도서관 사서의 경우 근골격계질환, 호흡기질환의 유해·위험요인이 있었다. 특히 연 1회 3~5일 정도 전체 장서의 보유현황 정리 및 노후 도서 폐기 작업을 수행하는데 이 시기에 신체적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공공행정업의 도서관에서는 국가장학생 등 인력을 활용하는 반면 학교에서는 사서가 직접 서고정리를 하기 때문에 부담을 더 갖는 것으로 파악된다. 연간 20시간의 직무연수에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근골격계질환, 감정노동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사서업무가 현업으로 지정되면 도서관 업무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④ 수상 안전요원은 인터뷰에 응하지 않아 유해·위험도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전체 산업보다 재해율 등이 현저히 낮고, 유사 업종의 재해율도 전체 산업 대비 낮아 특별한 유해·위험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에 검토 대상 업무의 재해빈도와 유형을 분석하고 종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유해·위험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특수교육실무사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교사 등의 직종에 해당하는 산업재해 빈도(842건)가 적지 않고 이중 절반 가까이가 사고성 재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나 유해·위험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인터뷰에서도 학생의 돌발행동 등에 의한 사고 위험이 존재한다고 하여 특수교육실무사가 일반 교사의 업무보다 사고 위험이 높음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통학차량 보조원에 대해서도 현업으로 지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더 많은 시간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특수교육 실무사에 대해서도 현업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높다. 한편 특수교육실무사뿐 아니라 특수교사에 대해서도 유사한 유해·위험 요인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추가적 연구 필요하다.

행정실무사(과학담당)의 경우에는 화학물질 취급 등 유해·위험 요인이 있으나, 이미 대다수 교육청에서 조례를 통해 별도의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갖추고 안전에 관한 연수과정을 운영하고 있어 「산안법」 상의 교육이 더 실효적이라고 보긴 어려웠다. 현업업무 지정을 통한 별도 관리 필요성에 대해서도 종사자의 의견이 나뉘고 있다. 유해·위험물질을 취급하고 있어 정기적인 점검, 안전보건조치 등이 중요하며 안전보건에 관한 소통창구의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서관 사서의 경우 종사자는 일반적인 교육업무와 달리 위험성이 있으므로 현업업무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으나, 일상적인 작업 중 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고 보기 어려우며, 지난 3년간 사서 직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례도 9건에 불과하여 별도로 관리해야 하는 유해·위험 업무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3) 소결

현행 고용노동부 고시상의 현업업무는 재해빈도, 재해유형 등을 고려할 때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 현업업무로 분류해 온 시설관리, 청소, 조리 등의 업무는 공공행정으로 분류되는 사업장에서 수행되고 있으며 유해·위험이 높아 일반적인 공공행정업무와 분리하여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산림보호 등의 업무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 공공행정업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업무이다.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고위험 업무로 볼 수 있고, 산림작업에 특화된 안전보건관리체제와 안전보건교육은 「산안법」의 기준을 상회하는 수준에서 별도의 법령이나 고시 등을 통해 규정할 수 있으므로 현업업무에서 제외할 사유로 보기 어렵다.

한편 공공행정 분야의 사고성 재해율이 전체 산업의 재해율보다 높고,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에서 사고성 재해의 위험이 높은 업무에 대한 현업업무 반영의

필요성이 있었다. 산업재해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사고성 재해의 발생 위험이 높은 농작업 대행 및 농기계 수리 업무와 수도 검침과 하천 단속(현장 단속원)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당 업무들은 본청과 분리된 별도의 사업장(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본부 등)에서 수행되는 업무에 속한다. 따라서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사업장 단위를 분리하여 주된 업무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산안법」을 적용하는 경우 추가적인 현업의 지정은 필요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¹⁷⁾

교육서비스업의 산업재해율은 전 산업의 평균보다 확연히 낮아 유해·위험이 높은 업무를 특정하기 어려웠다. 다만 산업재해의 유형과 종사자 인터뷰를 통해 특수교육실무사의 경우 일반 교사들보다 사고성 재해의 위험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특수교육지도사의 산업재해율이나 사망만인율을 추산할 수 없어 유해·위험도에 대한 추가 연구 필요하며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특수교사의 경우에도 보호필요성이 있는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과학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실무사는 교육청에서 조례를 통해 별도의 안전보건관리체제를 두고 안전에 관한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산안법」의 안전보건관리체제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규정의 적용 필요성이 높지 않았다.

2) 국방 및 사회보장 사업장의 고시 적용 명확화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기관의 안전보건업무 담당자 그룹의 인터뷰에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이 모호하여 군, 경찰, 소방 등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기관에는 고용노동부의 현업종사자 고시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기관에 대해서도 행정해석을 통하여 공공행정의 현업종사자 고시가 적용된다고 해석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시행령을 개정하여 적용 대상 사업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17) 반면 해당 업무가 공공행정업으로 분류되는 사업장에서 수행될 수 있는 경우에는 현업업무로 반영이 필요할 것이다.

〈표 V-6〉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규정(2020.1.16. 시행)

변경 전	변경 후
<p>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p> <p>가. 공공행정(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p> <p>나. 교육서비스업 중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한다),</p>	<p>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p> <p>가.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한다),</p> <p>나. 교육서비스업 중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한다),</p>

4. 기관 특성을 고려한 자율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유도

1) 자율적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및 활동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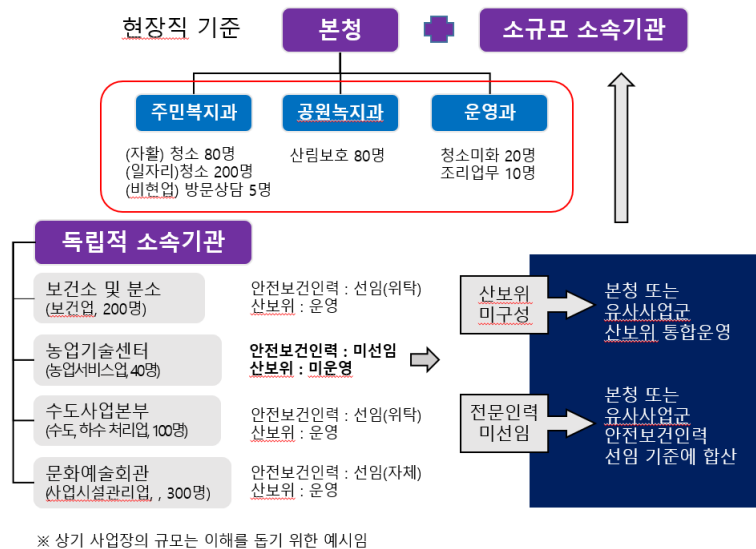
기관별 안전보건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기관들과 달리 사업장 단위로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고 활동을 유도하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광역시청(B)의 경우 광역시청 내 20개의 소속기관이 있다. 이들의 사업목적, 업무 내용, 조직 규모, 장소적 독립성 등을 고려하여 독립적인 안전보건관리체제를 운영할 수 있는 8개 소속기관을 본청과 분리하여 총 9개의 사업장에 대하여 각각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있다.¹⁸⁾ 독립적인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어려운 소속기관은 본청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되, 사업장 단위로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해서 활동할 수 있는 소속기관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주된 업무에 따라 안전보건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분리한 것이다.

18) 본청, 소방본부, 연구원, 문화예술회관, 공원사업소 3개소, 도서관, 박물관으로 구분하며, 지자체와 법인이 분리되어 있는 상수도본부, 경제자유구역청도 별개의 사업장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공공행정업으로 분류되는 본청에 근무하는 근로자 3,800여명 중 내근직을 제외한 현장직(현업업무 포함) 1,000명에 대해서도 「산안법」을 전부 적용하고 있으며, 일선 사업장 8개소에 대해서는 주된 사업의 업종에 따라 전체 근로자에 대하여 「산안법」을 적용하고 있다. 각각의 사업소에는 사업소를 대표하는 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안전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한다. 만약 각 사업장에서 도급계약을 통해 수급인의 인력을 사용하는 경우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안전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장의 규모가 300인 이상인 경우 전담 안전 및 보건관리자를 두고 있으며, 300인 미만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각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산보위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상시근로자수 100인 이상인 사업장 6개소에서 산보위가 운영되고 있다. 규모가 작아서 산보위 설치 의무가 없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본청의 산보위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산보위에는 사업장의 근로자 과반을 대표하는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근로자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주로 산업재해의 위험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서 참여하고 있다.



[그림 V-1] 광역지자체의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사례(예시)

본청은 규모가 작은 소속기관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고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본청 등 12개의 사업소에 대하여 안전과 보건 분야의 대행기관을 선임하고 월 1회 방문하여 안전관리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의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한 법적의무 이행 여부에 대하여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본청의 산업안전팀에는 안전관리자 2명, 보건관리자 1명을 전담인력으로 선임하고 있으며, 전담인력은 본청 단위의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업무와 전체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전체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실시를 지원하고, 사업장에 소속된 실무자의 안전보건관리업무의 간소화를 돕고 있다. 안전보건카드뉴스를 배포하여 주요 시기별로 관리해야 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전파하고 연 1회 안전보건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여 사업장 단위의 안전보건활동을 촉진하고, 소속기관 점검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수준 향상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해당 기관의 안전관리자는 위와 같이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한 이유에 대하여 지자체는 시민의 요청에 따라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업업무 이외에도 유해·위험 업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현업업무 종사자만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제를 운영하는 것은 안전보건활동이 일부 업무 수행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으로 인식될 소지가 있으며 실질적인 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특수업무를 수행하거나 업무의 유해·위험이 낮은 내근직에 대해서는 「산안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사업목적, 조직, 업무내용 등을 고려하여 독립적 사업장 단위로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수행하는 업무에 맞는 안전보건활동(교육 등)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2) 기관 유형별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가이드 제공

공공행정의 영역에서는 기관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사업이 수행되고 있으며, 소방, 경찰 등의 고위험 업무부터 사무직에 준하는 일반 행정업무까지 그

유해·위험의 정도가 다르다. 또한 기관의 사업에 따라 조직 구성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기관 유형별로 사업특성을 반영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가이드에는 다음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1) 적정 사업장 단위의 분리와 적용 업종 판단기준 제공

안전보건관리체제의 구축에 있어서 사업장 단위의 해석은 매우 중요하다. 특정 사업까지 본청과 통합하여 하나의 사업장(공공행정업)으로 해석하는 것은 사업의 종류와 규모, 유해·위험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도록 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킬 수 있다. 반대로 소규모 사업장 단위로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안전보건관리체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산안법」 상의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은 사업장 단위에서 실제 수행하는 업무에 부합하는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여 활동을 촉진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사업장 단위의 분리는 앞서 제시한 사업장 단위의 해석기준을 반영하되, 장소적, 사업별, 업무별로 구분하여 적정 규모의 법 적용 단위를 분리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사업장 단위의 분리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안전보건활동을 추진하기에 적절한 규모일 것,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책임과 권한이 명확할 것, 사업장 단위의 안전보건조직과 담당 인력이 소속 사업장의 안전보건활동을 추진하기에 충분할 것, 사업과 업무적 특성을 반영한 안전보건활동의 추진이 가능할 것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만약 장소적으로 분리된 개별 사업장의 규모가 작아 안전보건관리체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거나 원활한 작동이 어렵다면, 기관 내 유사 사업군, 유사 업무군을 통합하여 사업장 단위로 분리하고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반대로 사업장 단위의 규모가 커서 「산안법」 상의 안전보건조직과 인력으로 적절한 안전보건관리가 어렵다면 지역, 사업, 업무별로 사업장 단위를 분리하거나 조직과 담당인력의 규모를 키워서 현장의 안전보건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 이처럼 다양한 사업장의 조직구성, 업무적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공공행정 등에 영역에서 안전보건조직 구성, 안전보건인력 선임, 안전보건활동을 법으로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보다 각 기관에 적합한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고 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안전보건교육도 실제 사업장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유해·위험에 따라 실시될 수 있을 것이다.

(2) 현업 외 유해·위험 작업자를 포함한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및 활동 촉진

일반 공공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내근직에 대해서는 업무 특성과 유해·위험을 고려해 「산안법」의 일부 규정의 적용 제외를 유지하되, 공공조직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악성 민원 등 직무스트레스 예방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가이드에 담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안은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예방을 위한 활동과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¹⁹⁾

마지막으로 도급계약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에서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공동 안전보건활동 등을 촉진하여 사업장 단위에서 전체 현장직에 대하여 「산안법」 상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3) 본청의 안전보건지원 기능 강화

본청은 전체 사업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기능을 총괄하고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에 따라 대부분의 기관의 본청에는 중대재해예방을 전담하는 부서와 인력이 배치되어 있었다. 이들은 소속기관의 안전보건활동을

19) 올해 인사혁신처에서는 범정부 재해예방 5개년 계획을 통해 공공조직의 특성을 고려한 건강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하였다. 나아가 공공조직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연구원과 공공조직 안전보건수준진단 지표 개발 연구(한경대학교 산학협력단)를 통해 공공조직 특성에 맞는 지표를 개발, 보급하고 중장기적으로 이를 평가하여 활동을 촉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 전체의 안전보건관리 기능을 총괄하고 각 소속 사업장에 기술적 자문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와 안전보건활동을 지원하여 소속 사업장 스스로 안전보건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나아가 독립적인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어려운 소규모 소속기관에 대해서 본청 또는 사업군별로 상시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고, 규모가 작아 산보위를 구성할 수 없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본청의 산보위에 참여하게 하는 등 안전보건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안전보건관리체제의 운영 가이드를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실태조사에서 본청의 안전보건관리 역할을 수행하는데 몇가지 어려움이 발견되었다. 우선 본청의 전담부서에서 소속기관의 안전보건활동을 대신 수행하여 업무가 가중되고 있었다. 업무부담으로 담당인력의 보직 이동이나 이직이 잦았으며 안전보건분야 업무경력 3년 미만의 비전문인력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본청의 총괄적 기능의 약화, 전문성 약화로 이어지므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인터뷰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부서에 안전보건 전문가를 채용하여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 받을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 경력직으로 채용된 공무원은 기간제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기존의 경력이나 전문성에 대한 보상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였다.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본청의 역할이 요구되며 안전보건지원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업무 담당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 그리고 조직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우수한 인력이 확보되어야 제대로 체제를 구축하고 적합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따라서 본청의 안전보건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력의 확보를 촉진하고 다양한 본청의 지원 사례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3) 기관 특성을 고려한 자율적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유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공공영역에서 안전보건관리가 강화되고 있으며

기관의 업무특성을 고려한 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인터뷰 대상 기관 중에는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본청과 분리된 소속기관의 상시 현업종사자 수를 합산하여 본청에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하거나 산보위 구성의무가 없는 소속기관을 포함하여 본청에서 산보위를 개최하도록 한 사례를 발견할 수 있었다.

영국과 독일 등에서는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조직의 구성, 인력의 선임과 권한의 배분은 각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도 공공행정 등의 기관에 대하여 「산안법」 기준을 상회하는 수준에서 훈령, 예규 등으로 각 기관 특성을 고려한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교육 등을 스스로 정하도록 촉구하고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자율적 안전보건관리체제의 구축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공공행정 등은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각 기관별로 수행하는 업무의 유해·위험의 차이가 크다. 그럼에도 인력의 선임과 활동 등을 법령에서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효과성도 낮을 것이다. 따라서 기관의 유형에 따라 현업업무 뿐만 아니라 안전보건관리가 필요한 업무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제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기관의 업무와 조직 및 사업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여 활동을 실시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VI. 결론



VI. 결론

우리 「산안법」은 공공행정 등의 기관에 대하여 「산안법」 제2장의 안전보건관리체제와 제3장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이는 「산안법」 제3조가 규정하는 사업의 종류와 규모, 업무의 유해·위험을 고려하는 동시에 공공행정과 공무원의 특수성, 다양한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조직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모든 공공행정 사업장에 「산안법」으로 일률적인 체제를 강제하기보다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체제를 구축하고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여 효과적인 산재예방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둔 것이다. 다만 공공행정 등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더라도 일반적인 행정업무와 현저하게 다른 청소, 시설관리 등의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현업종사자 고시를 통해 「산안법」을 전부 적용토록 하여 산재예방관리를 강화해 왔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행정 등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실태를 파악하고 어떤 방식으로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여 활동을 촉진하는 것이 종사자의 산재예방에 효과적인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특정사업을 수행하는 독립적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공행정업이 아닌 주된 업무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산안법」을 적용해야 한다. 실태조사 결과 특정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장을 공공행정업으로 잘못 분류하는 사례가 발견되었으며, 이로 인해 특정사업에 속하는 업무까지 현업업무로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산안법」 제3조가 사업의 종류와 규모의 유해·위험의 정도에 따라 공공행정 등에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장소적으로 분리된 특정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장(수도사업본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공원관리소, 문화예술회관 등)에 대해서는 본청과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 해당 사업장에서 수행하는 주된 업무에 따라 「산안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둘째, 공공행정 등 사업장에서 일반적인 행정에 관한 업무와 현저히 구분되며, 유해·위험이 높아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현업업무로 정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때 현업업무로 지정해야 하는 업무란 유해·위험으로 인해 별도의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업무로 수급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제한적, 열거적 방식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이미 공공행정 등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유해·위험한 업무 중 이미 대부분이 현업업무로 지정되어 있고, 장소적으로 분리된 특정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장은 해당 업종에 따라 「산안법」을 적용하여 공공행정 등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산안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산재통계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의 경우 산업재해율이 최근 3년간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산업의 사고 재해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사고성 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업무에 대해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검토 대상 업무별 산업재해 발생 빈도와 사고유형을 분석한 결과 농작업 대행, 농기계 임대 및 수리업, 수도검침, 하천단속(현장직)업무의 경우 사고성 재해의 발생 비율이 높았고, 종사자 인터뷰 결과 사고발생의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전 산업 대비 사고와 질병 모두 재해율과 사망만인율이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다만 종사자 인터뷰 등에서 특수교육 실무사가 업무수행 중 사고성 재해에 노출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만 특수교육실무사의 재해율이나 사망만인율을 직접 산출할 수 없어 업무수행에 따른 유해·위험 발생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교사에 대해서도 보호 필요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관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의 행정해석, 가이드 제공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사업장 담당자의 인터뷰에서 현업업무에 국한된 본청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제의 구축과 운영

방식으로는 소속 사업장 단위의 안전보건활동의 촉진과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각 기관별 사업 특성이나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한 사업장 단위의 분리, 현장직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체제의 구축 등에 관한 다양한 가이드와 활동 사례를 제시하여 개별 사업장 단위의 안전보건활동을 촉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본청은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력을 확보 및 육성하여 소속 사업장의 안전보건활동을 지원하고 총괄적 안전보건관리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는 각 기관이 「산안법」 기준을 상회하는 수준에서 훈령, 예규 등으로 각 기관 특성을 고려한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교육 등을 스스로 정하도록 촉구하여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자율적 안전보건관리체제의 구축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일반 공공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내근직에 대해서는 업무 특성과 유해·위험을 고려해 「산안법」의 일부 규정의 적용 제외를 유지하되, 공공조직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악성 민원 등 직무스트레스 예방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가이드에 담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안은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 등 공무상 재해예방을 위한 활동과 연계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연구의 제한점으로 산업재해 통계는 검토대상 업무별 재해자 수와 종사자 수를 제공하지 않아 업무별 재해율, 사망만인율을 정확하게 산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또한 근로자 외에 공무원 재해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추후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여 업무별 유해·위험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수행되길 바란다.

본 연구는 공공행정 등 사업장의 안전보건실태를 확인하고 각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안전보건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공공행정 등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사업의 목적, 조직 형태, 업무의 내용과 유해·위험이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각 기관의 안전보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획일적인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강제하는 것 보다 각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조직 구성, 인력 선임, 교육 및 활동 등을 촉진하는 형태로 체제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공공행정 등의 사업장 단위의 해석을 명확히 하고,

사업장 특성을 고려한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유해·위험을 고려한 실질적 안전보건활동을 추진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경제기획원, 한국표준산업분류 제4차 개정(경제기획원고시 제5호), 1975.

12. 3. 시행.

고용노동부,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2호), 2020.1.16.

고용노동부. ILO 주요협약. 2010

고용노동부. ILO 주요협약. 2012.

국방부, 국방안전훈령(국방부 훈령 제2507호), 2020.12.30. 시행.

김인아. 공무원의 산업보건 :위험과 실태. 월간산업보건. 2020.

김현정, 홍지혜, 이혁진, 봉성울, 박혜인, 양지윤, 안전한 과학실험실을 위한 화학물질 관리 방안 이슈 페이퍼, 한국과학창의재단, 2023.

김현주, 권오성, 기영선, 신현기, 스즈키 아키라, 윤조덕, 이인석, 최은숙, 공무원 안전보건관리 실태조사 및 재해예방 발전방안, 인사혁신처, 2022.12.

박종식 등. 학교 안전보건체계 운영 현황 및 실태조사, 고용노동부. 2021.

송민경, 배해송, 송애경, 김효정, 박혜원, 고일원, 학교 교육환경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로드맵 마련 연구, 서울시교육청, 2022.

양현모, 「독일정부론」, 대영문화사, 2006, 192면(정원호·채준호, 「해외 공공 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정책 연구」, 고용노동부, 2017,

이승우,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안전 기본권을 침해한 정부 - 공공, 국방·사

- 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 사례를 중심으로, 민주노동연구원, 2023.8.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업안전보건법」 전면적용 및 현업업무 고시 개정 관련 민주노총 요구안, 2023.5.
- 정동관·김철·박우성·이승협, 「공공부문 인력관리체계 및 임금결정에 관한 국제 비교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19,
- 정원호·채준호, 「해외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정책 연구」, 고용노동부, 2017,
- 통계청, 통계청 산업 환경 변화와 개정 수요를 반영한 한국표준산업분류 (KSIC) 제11차 개정 · 고시, 통계청 보도자료, 2023.12.28. 배포.
- 인사혁신처,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부처 브리핑), 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24.8.26.일자 보도자료.

<외국문헌>

- Birk/Konzen/Löwisch/Raiser/Seiter, 집단적 노사분쟁의 규율에 관한 법률(김형배 역), 1990,
- Däubler, AuR 1981.
- Der Spiegel Nr.28 v. 6. 7. 1992.
- DGUV Regel 102-601, Aug. 2019.
- Fenn, Betr 1982.
- Gamillscheg, KollArbR I § 21 II 4b (7) (a).
- Gamillscheg Kollektives Arbeitsrecht I, 1996.
- Gesetz zur Änderung des Luftverkehrsgesetzes v. 23. 7. 1992.
- Hammer AiB 1995.

Hromadka/Maschmann, Arbeitsrecht 2, 3. Aufl., 2004.
 HSE, Health and Safety at Work etc. Act 1974.
 Hygiene (Commerce and Offices) Convention, 1964.
 Jansen, Die betriebliche Mitbestimmung im Arbeitskampf, 1998.
 Löwisch/Mikosch, ZfA 1978.
 Meydam, NZA 1984.
 Poststrukturgesetz v. 8. 6. 1989.
 Wiese, NZA 1981.

〈참고사이트〉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지방공공단체에 관한 소개

https://www.clair.or.kr/down_file/322_01.pdf

令和4年度地方公共団体の勤務条件等に関する調査結果

https://www.soumu.go.jp/menu_news/s-news/01gyosei11_02000219.html

List of Accredited Non-Departmental Public Bodies (NDPBs)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

What is a Civil Servant?

<https://www.civilservant.org.uk/information-definitions.html>

HSE: <https://www.hse.gov.uk/index.htm>

<https://www.civilservant.org.uk/information-definitions.html>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

<https://www.hse.gov.uk/lau/assets/docs/national-la-code.pdf>

<https://www.hse.gov.uk/lau/enforcement.htm>

<https://www.hse.gov.uk/services/armedforces/application.htm>

<https://www.hse.gov.uk/services/armedforces/cadets.htm>

<https://www.hse.gov.uk/services/armedforces/interaction.htm>

<https://www.hse.gov.uk/services/armedforces/organisation.htm>

<https://www.hse.gov.uk/services/assets/docs/explanatory-note.pdf>

<https://www.hse.gov.uk/services/assets/docs/police-duties.pdf>

<https://www.hse.gov.uk/services/localgovernment/how-we-work.htm>

<https://www.hse.gov.uk/services/police/application.htm>



Abstract

Survey and Study on the Safety and Health Status of Public Sector Workplaces

Objectives :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application status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OSH Act) and the current state of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in public sector workplaces. It seeks to propose effective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s that consider the organizational and job-specific characteristics of public administration. Furthermore, it identifies high-risk fieldwork tasks to evaluate the necessity of fully applying the OSH Act.

Method :

The study reviewed previous research on the reasons some provisions of the OSH Act are not applied to public sector workers and the necessity of protection for field workers. It analyzed the industrial accident status of public sector workers and conducted surveys and interviews with workplace safety and health managers and field workers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e of safety and health. Additionally, the study compared domestic systems with public sector worker protection

systems in major developed countries.

Results :

An analysis of industrial accident data from 2021 to 2023 revealed the need to assess the risk levels of tasks such as agricultural work agency services, agricultural machinery rental and repair, water meter reading, river monitoring, and parking monitoring.

The surveys and interviews emphasized the necessity of fully applying the OSH Act to certain tasks in the public sector, considering the nature and risks of fieldwork. However, it was considered unnecessary to expand the scope of the Act to cover all public sector tasks.

Tasks such as agricultural machinery rental and repair, agricultural work agency services, water meter reading, and river monitoring in public administration showed a high need for expanded OSH Act application. In the education services sector, there was recognition of the need for application to special education practitioners and scientific experiment personnel. Approximately half of the school science laboratories handled hazardous chemicals exceeding standard levels, posing risks to personnel. To address these risks, some local education offices have established regulations and provided training for personnel responsible for scientific experiments.

Interviews with safety and health managers and high-risk task workers emphasized the need for systematic management plans for workplace risks and hazards. Many agreed that applying the scope of fieldwork regulations based on task risks would be ideal.

Insights from intern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s in the public sector revealed that while all countries have laws and regulations to protect public sector workers, the organization and implementation of safety and health measures are autonomously managed.

Conclusion :

The study concluded that full application of the OSH Act is necessary only for certain field tasks in the public sector. Interviews with safety and health managers and workers supported the need to exclude certain provisions of the OSH Act for specific tasks based on their characteristics.

In the public sector, tasks with high accident risks include agricultural work agency services, agricultural machinery rental and repair, water meter reading, and river monitoring. In the education sector, special education practitioners were identified as high-risk workers. For these tasks, full application of the OSH Act should be considered. Additionally, it was deemed essential to provide tailored manuals to establish safety and health systems suitable for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each workplace.

Key words : Public Administration, Education Services, Field Workers, Safety and Health, Industrial Accident,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OSH Act)

부 록



부록

1. 설문조사지

공공·교육행정분야 종사자의 안전보건실태조사 설문지

〈작성대상 : 본청 및 소속기관의 안전보건관리 업무 담당자〉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공공·교육행정분야 종사자의 안전보건 실태를 파악하여, 업무 특성이 현저히 구분되거나 유해·위험도가 높은 현업업무를 파악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상 현업종사자의 범위의 적정성을 파악하고자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 주관으로 시행되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도움을 얻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모든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리며,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향후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 정책 수립에 유용하게 사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설문작성 시 유의사항입니다.

1. 본 설문은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안전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담당자가 각각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교육행정분야 교육청(본청) - 각급학교(소속) / 교육청·학교법인·국립대학(본청)-초·중·고·특수·외국
인학교 등(소속) / 산림청(본청) - 국유림관리소(소속) / 시청(본청) - 상하수도본부(소속) / 구청(본청)
- 주민센터(소속) / 군청(본청) - 보건소·농업기술센터·시설관리소(소속) /

2. 본청의 응답자는 전체 기관(본청과 소속기관 포함)을 기준으로 설문을 작성하고, 소속기관의 응답자는 해당 소속기관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설문구성은 응답자 및 기관의 기초사항(A), 본청 또는 소속기관의 안전보건관리현황(B), 본청 또는 소속기관의 현업종사자 안전보건실태(C)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복수 응답이 가능한 문항(유해·위험 직종의 보유현황 등)은 해당 사항을 모두 작성 부탁드립니다.

본 조사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진행되며, 연구참여자의 권리와 보호에 관한 하단의 설명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참여자 설명문 전문보기(링크)

■ 문의처) 한서대학교 안전보건학과 교수 최서연

2024년 05월

위의 설명문을 확인하였음
(연구참여자 확인,)

※ 실시 주체에 대한 답변 기준(1항~9항): 조치에 대한 기획, 예산 편성, 표준안(메뉴얼) 마련 등은 본청, 각 소속기관의 단순 집행의 경우 → “본청”으로 답변각 소속 기관이 자체적·자율적으로 조치하는 경우 → “소속기관별”로 답변

문항	내용
1. 귀 기관의 위험성평가 실시 주체는 누구입니까?	① 본청(교육청·학교법인 포함) ② 소속기관별(각급학교) ③ 미실시
2. 귀 기관의 안전보건조치* 실시 주체는 누구입니까? * 안전설비, 안전난간, 안전덮개, 접지 설치 등	① 본청(교육청·학교법인 포함) ② 소속기관별(각급학교) ③ 미실시
3. 귀 기관의 안전보호구 제공 주체는 누구입니까?	① 본청(교육청·학교법인 포함) ② 소속기관별(각급학교) ③ 미실시
4. 귀 기관의 안전보건에 대한 정보* 제공 주체는 누구입니까? * 밀폐공간 등 위험작업,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① 본청(교육청·학교법인 포함) ② 소속기관별(각급학교) ③ 미실시
5. 귀 기관의 안전보건교육 실시 주체는 누구입니까?	① 본청(교육청·학교법인 포함) ② 소속기관별(각급학교) ③ 미실시
6. 귀 기관의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 의견수렴 주체는 누구입니까?	① 본청(교육청·학교법인 포함) ② 소속기관별(각급학교) ③ 미실시
7. 귀 기관의 중대산업재해, 급박한 위험에 대한 대비 매뉴얼 작성 주체는 누구입니까?	① 본청(교육청·학교법인 포함) ② 소속기관별(각급학교) ③ 미실시
8. (해당 시) 귀 기관의 특수건강검진 실시 주체는 누구입니까?	① 본청(교육청·학교법인 포함) ② 소속기관별(각급학교) ③ 미실시
9. (해당 시) 귀 기관의 작업환경측정 관리 주체는 누구입니까?	① 본청(교육청·학교법인 포함) ② 소속기관별(각급학교) ③ 미실시

C. 현업종사자 안전보건실태

문항	내용																
1. 귀 기관은 현업종사자가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 1번 문항의 '① 있음'에 응답한 경우에만 '1-1'부터 '5-2'까지 문항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없음'에 응답한 경우에는 'D. 현업종사자 제도 인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①의 있음'에 응답한 경우 해당 기관의 현업종사자 수는 어떻게 됩니까?	① 5인 미만 ② 5인 이상 50인 미만 ③ 50인 이상 100인 미만 ④ 100인 이상 300인 미만 ⑤ 300인 이상																
2. 귀 기관은 안전보건관리 규정이 제정되어 있습니까?	① 본청(전체) ② 소속기관별 제정 ③ 현업업무만 제정 ④ 미제정																
3. 귀 기관은 안전보건업무 담당 인력이 선임되어 있습니까 (복수 응답 가능)?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선임(o/x)</th> <th>구분</th> <th>선임(o/x)</th> </tr> </thead> <tbody> <tr> <td>안전관리자</td> <td></td> <td>안전보건관리책임자</td> <td></td> </tr> <tr> <td>보건관리자</td> <td></td> <td>관리감독자</td> <td></td> </tr> <tr> <td>안전보건업무담당자</td> <td></td> <td>기타(겸직)</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선임(o/x)	구분	선임(o/x)	안전관리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업무담당자		기타(겸직)	
구분	선임(o/x)	구분	선임(o/x)														
안전관리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업무담당자		기타(겸직)															
3-1. 안전보건인력 선임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① 산업안전보건법 ② 자체 규정 ③ 모르겠음																
3-2. 안전보건인력 선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① 현업종사자 수 기준 ② 전체 종사자 수 기준 ③ 업무의 유해·위험성 기준 ④ 모르겠음																
4. 귀 기관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① 본청(전체) 구성 ② 소속 기관별 구성 ③ 현업업무만 구성 ④ 미구성																
5. 귀 기관은 현업종사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상 교육을 따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① 현업종사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 ② 현업업무별로 구분하여 실시 ③ 비현업종사자와 함께 실시 ④ 미실시																
5-1. 현업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그 주기 및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복수 응답 가능)?	① 정기교육(□ 매 반기 6시간 이상, □ 매 반기 6시간 미만) ② 채용 시 교육 (시간) ③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시간) ④ 특별교육 (시간)																
5-2. 현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복수 응답 가능)?	<input type="checkbox"/>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input type="checkbox"/>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input type="checkbox"/>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input type="checkbox"/>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input type="checkbox"/>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input type="checkbox"/>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input type="checkbox"/>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input type="checkbox"/>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input type="checkbox"/>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input type="checkbox"/>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input type="checkbox"/>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input type="checkbox"/>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input type="checkbox"/>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input type="checkbox"/>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input type="checkbox"/>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input type="checkbox"/>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D. 현업종사자 제도 인식 조사

<p>1. 귀하는 공공행정·교육서비스 사업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체제와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p>	<p>①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모든 종사자에 적용 제외 필요 ② 업무특성과 위험도를 고려하여 일부 현업업무에만 적용 필요 ③ 소방 등 특수분야를 제외한 적용 확대 필요</p>
<p>1-1. 위와 같이 응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복수 응답 가능)?</p>	<p>① 위험업무에 대한 관리 및 교육 강화 ② 산업재해 감소에 기여 ③ 법령의 중복규제 해소 ④ 조직 특성과 업무에 적합한 안전관리 및 교육제도 운영 ⑤ 종사자의 의견 개진 및 소통 활성화 ⑥ 기타 ()</p>

※ 공공행정 분야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귀 기관에서 업무의 내용이 현저히 다르거나 유해·위험도가 높아, 현업종사자로 정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부 적용할 필요가 있는 업무는 무엇입니까?

☞ 현업업무 종사자(공무원·비공무원 구분 없음)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적용되어, 현업종사자수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제(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등),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교육 규정이 적용됨

업무	필요 여부 (o/x)	필요 이유(유해·위험요인 중심)(복수응답 가능)
수도검침		<input type="checkbox"/> 근골격계질환 <input type="checkbox"/> 떨어짐 <input type="checkbox"/> 넘어짐 <input type="checkbox"/> 끼임 <input type="checkbox"/> 감정노동/폭언 <input type="checkbox"/> 폭행 <input type="checkbox"/> 밀폐공간/가스노출 <input type="checkbox"/> 폭염, 한파, 미세먼지 <input type="checkbox"/> 기타()
방문 간호사		<input type="checkbox"/> 근골격계질환 <input type="checkbox"/> 떨어짐 <input type="checkbox"/> 넘어짐 <input type="checkbox"/> 끼임 <input type="checkbox"/> 감정노동/폭언 <input type="checkbox"/> 폭행 <input type="checkbox"/> 기타()
농작업 대행		<input type="checkbox"/> 근골격계질환 <input type="checkbox"/> 떨어짐 <input type="checkbox"/> 넘어짐 <input type="checkbox"/> 끼임 <input type="checkbox"/> 미끄러짐 <input type="checkbox"/> 화학용제 노출 <input type="checkbox"/> 기타()
농기계 임대 및 수리		<input type="checkbox"/> 근골격계질환 <input type="checkbox"/> 떨어짐 <input type="checkbox"/> 넘어짐 <input type="checkbox"/> 끼임 <input type="checkbox"/> 베임 <input type="checkbox"/> 화학용제 노출 <input type="checkbox"/> 기타()
주차단속		<input type="checkbox"/> 근골격계질환 <input type="checkbox"/> 교통사고 <input type="checkbox"/> 넘어짐 <input type="checkbox"/> 부딪힘 <input type="checkbox"/> 감정노동/폭언 <input type="checkbox"/> 폭행 <input type="checkbox"/> 밀폐공간/가스노출 <input type="checkbox"/> 기타()
하천단속		<input type="checkbox"/> 근골격계질환 <input type="checkbox"/> 떨어짐 <input type="checkbox"/> 넘어짐 <input type="checkbox"/> 끼임 <input type="checkbox"/> 미끄러짐 <input type="checkbox"/> 밀폐공간/가스노출 <input type="checkbox"/> 화재위험 <input type="checkbox"/> 기타()
보건소		<input type="checkbox"/> 근골격계질환 <input type="checkbox"/> 떨어짐 <input type="checkbox"/> 넘어짐 <input type="checkbox"/> 끼임 <input type="checkbox"/> 감정노동/폭언 <input type="checkbox"/> 폭행 <input type="checkbox"/> 감염성 질환 노출 <input type="checkbox"/> 기타()
도서관 사서		<input type="checkbox"/> 근골격계질환 <input type="checkbox"/> 떨어짐 <input type="checkbox"/> 넘어짐 <input type="checkbox"/> 부딪힘 <input type="checkbox"/> 감정노동/폭언 <input type="checkbox"/> 기타()
콜센터 상담사		<input type="checkbox"/> 근골격계질환 <input type="checkbox"/> 감정노동/폭언 <input type="checkbox"/> 감염성 질환 노출 <input type="checkbox"/> 폭행 <input type="checkbox"/> 기타()
체육시설 강사		<input type="checkbox"/> 근골격계질환 <input type="checkbox"/> 떨어짐 <input type="checkbox"/> 넘어짐 <input type="checkbox"/> 끼임 <input type="checkbox"/> 미끄러짐 <input type="checkbox"/> 감염성 질환 노출 <input type="checkbox"/> 감정노동/폭언 <input type="checkbox"/> 폭행 <input type="checkbox"/> 기타()
방문상담		<input type="checkbox"/> 근골격계질환 <input type="checkbox"/> 감정노동 <input type="checkbox"/> 감염성 질환 노출 <input type="checkbox"/> 감정노동/폭언 <input type="checkbox"/> 폭행 <input type="checkbox"/> 기타()
기타 업무 (업무명:)		

3. 귀 기관에서 별도의 안전보건관리(조직구성, 교육실시)에 관한 법 또는 규정을 마련하여 현업업무에서 제외가 필요한 업무는 무엇입니까?

☞ 현업종사자에서 제외되면 각 기관의 관계 법령에 따라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체제와 안전보건교육 등을 실시

업무	필요 여부(o/x)	이유(자유 기술)
시설물의 경비, 유지관리 업무 및 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		
도로·가로 등의 청소, 쓰레기·폐기물의 수거처리 등 환경미화 업무		
도로의 유지·보수 등의 업무		
공원·녹지 등의 유지관리 업무		
산림조사 및 산림보호 업무		
조리 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 조리시설 관련 업무		

※ 교육서비스업 분야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귀 기관에서 업무의 내용이 현저히 다르거나 유해·위험도가 높아, 현업종사자로 정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부 적용할 필요가 있는 업무는 무엇입니까?

☞ 현업업무 종사자(공무원·비공무원 구분 없음)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적용되어, 현업종사자수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제(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등),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교육 규정이 적용됨

업무	포함 필요 여부(o/x)	포함 필요 이유(유해·위험요인 중심)(복수응답 가능)
특수교육실무사		<input type="checkbox"/> 근골격계질환 <input type="checkbox"/> 폭행 <input type="checkbox"/> 넘어짐 <input type="checkbox"/> 끼임 <input type="checkbox"/> 감정노동/폭언 <input type="checkbox"/> 부딪힘 <input type="checkbox"/> 기타()
과학실무사		<input type="checkbox"/> 배임 <input type="checkbox"/> 떨어짐 <input type="checkbox"/> 넘어짐 <input type="checkbox"/> 끼임 <input type="checkbox"/> 미끄러짐 <input type="checkbox"/> 화학물질 노출 <input type="checkbox"/> 기타()
도서관 사서		<input type="checkbox"/> 근골격계질환 <input type="checkbox"/> 떨어짐 <input type="checkbox"/> 넘어짐 <input type="checkbox"/> 감정노동/폭언 <input type="checkbox"/> 부딪힘 <input type="checkbox"/> 기타()
수상안전요원		<input type="checkbox"/> 근골격계질환 <input type="checkbox"/> 떨어짐 <input type="checkbox"/> 넘어짐 <input type="checkbox"/> 끼임 <input type="checkbox"/> 배임 <input type="checkbox"/> 미끄러짐 <input type="checkbox"/> 화학물질 노출 <input type="checkbox"/> 기타()
기타 업무 (업무명:)		

3. 귀 기관에서 별도의 안전보건관리(조직구성, 교육실시)에 관한 법령을 마련하는 등 현업업무에서 제외가 필요한 업무는 무엇입니까?

☞ 현업종사자에서 제외되면 각 기관의 관계 법령에 따라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체제와 안전보건교육 등을 실시

업무	제외 필요 여부(o/x)	제외 필요 이유(자유 기술)
학교 시설물 및 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		
학교 경비 및 학생 통학 보조 업무		
조리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 조리시설 관련 업무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붙임1]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별 사용하는 화학물질 자료(이슈페이퍼, 교육부, 2023.)

표 2 초등학교 과학과 교육과정의 탐구활동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유해화학물질 여부

연번	물질명	CAS 번호	유해화학물질 기준합량		학교에서 쓰이는 시약 예시	
			사고대비물질	유독물질	합량 범위	유해화학물질 여부(O/×)
1	과산화 수소(H_2O_2)	7722-84-1	35.0%	6.0%	34.5%	유독물질(O)
2	녹말($(C_6H_{10}O_5)_n$)	9005-25-8	해당 없음	해당 없음	100.0%	×
3	백반($K_2SO_4 \cdot Al_2(SO_4)_3 \cdot 24H_2O$)	10043-67-1	해당 없음	해당 없음	99.0~100.0%	×
4	붕사($Na_2B_4O_7 \cdot 10H_2O$)	1303-96-4	해당 없음	0.3%	100.0%	유독물질(O)
5	붕산(H_3BO_3)	10043-35-3	해당 없음	0.3%	99.5%	유독물질(O)
6	수산화 나트륨(NaOH)	1310-73-2	해당 없음	5.0%	97.0~98.0%	유독물질(O)
7	수산화 칼슘($Ca(OH)_2$)	1305-62-0	해당 없음	해당 없음	95.0%	×
8	시트르산($C_6H_8O_7$)	77-92-9	해당 없음	해당 없음	99.0%, 99.5%	×
9	아세트산($C_2H_4O_2$)	64-19-7	해당 없음	25.0%	99.5~99.7%	유독물질(O)
10	아이오딘-아이오딘화 칼륨 용액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I_2 1.0%, KI 5.0%	×
11	알긴산($(C_6H_8O_6)_n$)	9005-32-7	해당 없음	해당 없음	99.0~100.0%	×
12	에탄올(C_2H_6O)	64-17-5	해당 없음	해당 없음	95.0%, 99.9%	×
13	염산(HCl)	7647-01-0	10.0%	10.0%	35.0~37.0%	유독물질(O) 사고대비물질(O)
14	염화 나트륨(NaCl)	7647-14-5	해당 없음	해당 없음	99.0% 이상	×
15	이산화 망가니즈(MnO_2)	1313-13-9	해당 없음	해당 없음	70.0%	×
16	젖산 칼슘($C_6H_{10}CaO_6$)	5743-48-6	해당 없음	해당 없음	95.0%, 98.0%	×
17	탄산수소 나트륨($NaHCO_3$)	144-55-8	해당 없음	해당 없음	99.0%	×
18	페놀프탈레인($C_{20}H_{14}O_4$)	77-09-8	해당 없음	해당 없음	0.1%	×
19	폴리비닐 알코올 ($(C_2H_4O)_n$)	9002-89-5	해당 없음	해당 없음	94.0%	×
20	BTB($C_{27}H_{28}Br_2O_5S$)	76-59-5	해당 없음	해당 없음	0.1%	×

표 3 중학교 과학과 교육과정의 탐구활동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유해화학물질 여부

연번	물질명	CAS 번호	유해화학물질 기준함량		학교에서 쓰이는 시약 예시	
			사고대비물질	유독물질	함량 범위	유해화학물질 여부(○/×)
1	과망가니즈산 칼륨(KMnO ₄)	7722-64-7	98.0%	5.0%	99.3%	유독물질(○) 사고대비물질(○)
2	김사역(C ₁₄ H ₁₄ ClN ₂ S)	51811-82-6	해당 없음	해당 없음	1.0%	×
3	녹말((C ₆ H ₁₀ O ₅) _n)	9005-25-8	해당 없음	해당 없음	100.0%	×
4	드라이아이스(CO ₂)	124-38-9	해당 없음	해당 없음	100.0%	×
5	베네딕트 용액	-	해당 없음	CuSO ₄ 1.0%	구연산 17.0-18.0% Na ₂ CO ₃ 9.0% CuSO ₄ 1.0-2.0%	유독물질(○)
6	붕산(H ₃ BO ₃)	10043-35-3	해당 없음	0.3%	99.5%	유독물질(○)
7	뷰렛 용액	-	해당 없음	NaOH 5.0% CuSO ₄ 1.0%	NaOH 5.0% CuSO ₄ 1.0%	유독물질(○)
8	수단 III (C ₂₂ H ₁₉ N ₄ O)	85-86-9	해당 없음	해당 없음	1.0%	×
9	수산화 나트륨(NaOH)	1310-73-2	해당 없음	5.0%	97.0-98.0%	유독물질(○)
10	아세트론(C ₃ H ₆ O)	67-64-1	해당 없음	해당 없음	99.0-99.5%	×
11	아세트산(C ₂ H ₄ O ₂)	64-19-7	해당 없음	25.0%	99.5-99.7%	유독물질(○)
12	아세트산카민 용액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아세트산 45.0% 카민 1.0%	×
13	아세트올세인 용액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오르세인 1.0% 아세트산 44.0-45.0%	×
14	아이오딘-아이오딘화 칼륨 용액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I ₂ 1.0%, KI 5.0%	×
15	알루미늄(Al)	7429-90-5	해당 없음	해당 없음	100.0%	×
16	에탄올(C ₂ H ₆ O)	64-17-5	해당 없음	해당 없음	95.0%, 99.9%	×
17	염산(HCl)	7647-01-0	10.0%	10.0%	35.0-37.0%	유독물질(○) 사고대비물질(○)
18	염화 나트륨(NaCl)	7647-14-5	해당 없음	해당 없음	99.0% 이상	×

연번	물질명	CAS 번호	유해화학물질 기준함량		학교에서 쓰이는 시약 예시	
			사고대비물질	유독물질	함량 범위	유해화학물질 여부(○/×)
19	염화 칼슘(CaCl_2)	10043-52-4	해당 없음	해당 없음	96.0%	×
20	질산 나트륨(NaNO_3)	7631-99-4	98.0%	해당 없음	98.0%	사고대비물질(○)
21	질산 암모늄($\text{N}_2\text{H}_4\text{O}_3$)	6484-52-2	33.0%	해당 없음	99.0~100.0%	사고대비물질(○)
22	질산 은(AgNO_3)	7761-88-8	해당 없음	1.0%	99.8%	유독물질(○)
23	질산 칼륨(KNO_3)	7757-79-1	98.0%	해당 없음	99.0%	사고대비물질(○)
24	철(Fe)	7439-89-6	해당 없음	해당 없음	90.0~100.0%	×
25	탄산 나트륨(Na_2CO_3)	497-19-8	해당 없음	해당 없음	99.0%	×
26	탄산 칼슘(CaCO_3)	471-34-1	해당 없음	해당 없음	98.0%	×
27	탄산수소 나트륨(NaHCO_3)	144-55-8	해당 없음	해당 없음	99.0%	×
28	페놀프탈레인($\text{C}_{20}\text{H}_{14}\text{O}_4$)	77-09-8	해당 없음	해당 없음	0.1%	×
29	황산 구리(II)(CuSO_4)	7758-99-8	해당 없음	1.0%	98.0~99.0%	유독물질(○)
30	BTB($\text{C}_{27}\text{H}_{20}\text{Br}_7\text{O}_5\text{S}$)	76-59-5	해당 없음	해당 없음	0.1%	×

표 4 고등학교 과학과 교육과정의 탐구활동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유해화학물질 여부

연번	물질명	CAS 번호	유해화학물질 기준량		학교에서 쓰이는 시약 예시	
			사고대비물질	유독물질	허용 범위	유해화학물질 여부(○/×)
1	갈릭트스($C_9H_{12}O_2$)	59-23-4	해당 없음	해당 없음	98.0-100.0%	×
2	과산화 수소(H_2O_2)	7722-84-1	35.0%	6.0%	34.5%	유독물질(○)
3	구리(Cu)	7440-50-8	해당 없음	해당 없음	99.5%	×
4	나트륨(Na)	7440-23-5	25.0%	25.0%	99.8%	유독물질(○) 사고대비물질(○)
5	녹말($(C_6H_{10}O_5)_n$)	9005-25-8	해당 없음	해당 없음	100.0%	×
6	다이크로뮴산 칼륨($K_2Cr_2O_7$)	7778-50-9	해당 없음	0.1%	99.5%	유독물질(○)
7	리튬(Li)	7439-93-2	해당 없음	해당 없음	99.0%	×
8	메틸렌 블루($C_{16}H_{18}ClN_3S$)	61-73-4	해당 없음	해당 없음	0.1%	×
9	수산화 나트륨(NaOH)	1310-73-2	해당 없음	5.0%	97.0-98.0%	유독물질(○)
10	수산화 바륨($Ba(OH)_2$)	17194-00-2	해당 없음	해당 없음	97.0%	×
11	수산화 칼륨(KOH)	1310-58-3	해당 없음	5.0%	95.0%	유독물질(○)
12	싸이오황산 나트륨($Na_2S_2O_3$)	7772-98-7	해당 없음	해당 없음	95.0%	×
13	아밀레이스	9000-92-4	해당 없음	해당 없음	1.0%	×
14	아세톤(C_3H_6O)	67-64-1	해당 없음	해당 없음	99.0-99.5%	×
15	아세트산($C_2H_4O_2$)	64-19-7	해당 없음	25.0%	99.5-99.7%	유독물질(○)
16	아세트산카민 용액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아세트산 45.0% 카민 1.0%	×
17	아연(Zn)	7440-66-6	해당 없음	해당 없음	85.0%(가루), 99.9%(리본)	×
18	아이오딘(I_2)	7553-56-2	해당 없음	해당 없음	99.0%	×
19	아이오딘산 칼륨(KIO_3)	7758-05-6	해당 없음	해당 없음	99.0%	×
20	아이오딘화 칼륨(KI)	7681-11-0	해당 없음	해당 없음	99.5%	×
21	아황산수소 나트륨($NaHSO_3$)	7631-90-5	해당 없음	해당 없음	58.5%	×
22	에탄올(C_2H_6O)	64-17-5	해당 없음	해당 없음	95.0%, 99.9%	×
23	염산(HCl)	7647-01-0	10.0%	10.0%	35.0-37.0%	유독물질(○) 사고대비물질(○)

연번	물질명	CAS 번호	유해화학물질 기준함량		학교에서 쓰이는 시약 예시	
			사고대비물질	유독물질	함량 범위	유해화학물질 여부(O/X)
24	염화 구리(II)(CuCl ₂)	7447-39-4	해당 없음	해당 없음	97.0%	×
25	염화 나트륨(NaCl)	7647-14-5	해당 없음	해당 없음	99.0% 이상	×
26	염화 암모늄(NH ₄ Cl)	12125-02-9	해당 없음	해당 없음	98.5%	×
27	염화 칼륨(KCl)	7447-40-7	해당 없음	해당 없음	99.0%	×
28	염화 칼슘(CaCl ₂)	10043-52-4	해당 없음	해당 없음	96.0%	×
29	염화 코발트(II)(CoCl ₂)	7646-79-9	해당 없음	0.1%	97.0%	유독물질(O)
30	요소(CH ₂ N ₂ O)	57-13-6	해당 없음	해당 없음	99.0%	×
31	이산화 질소(NO ₂)	10102-44-0	해당 없음	해당 없음	99.0~100.0%	×
32	진개액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석유에테르 90.0% 아세톤 10.0%	×
33	철(Fe)	7439-89-6	해당 없음	해당 없음	90.0~100.0%	×
34	칼륨(K)	7440-09-7	해당 없음	25.0%	100.0%	유독물질(O)
35	크로뮴산 칼륨(K ₂ CrO ₄)	7789-00-6	해당 없음	0.1%	98.5%	유독물질(O)
36	탄산 칼슘(CaCO ₃)	471-34-1	해당 없음	해당 없음	98.0%	×
37	탄산수소 나트륨(NaHCO ₃)	144-55-8	해당 없음	해당 없음	99.0%	×
38	탄소(활성탄)(C)	7440-44-0	해당 없음	해당 없음	100.0%	×
39	페닐프탈레인(C ₂₀ H ₁₄ O ₄)	77-09-8	해당 없음	해당 없음	0.1%	×
40	포도당(C ₆ H ₁₂ O ₆)	50-99-7	해당 없음	해당 없음	98.0%	×
41	헥세인(C ₆ H ₁₄)	110-54-3	해당 없음	해당 없음	95.0%	×
42	황산 구리(II)(CuSO ₄)	7758-99-8	해당 없음	1.0%	98.0~99.0%	유독물질(O)
43	황산 나트륨(Na ₂ SO ₄)	7757-82-6	해당 없음	해당 없음	98.5%	×
44	황산 아연(ZnSO ₄)	7733-02-0	해당 없음	25.0%	99.0%	유독물질(O)
45	황산(H ₂ SO ₄)	7664-93-9	10.0%	10.0%	95.0%	유독물질(O) 사고대비물질(O)
46	BTB(C ₂₇ H ₂₀ Br ₂ O ₅ S)	76-59-5	해당 없음	해당 없음	0.1%	×

[붙임2] 화학물질의 성상별 보관 기준

▶ 혼재 할수 없는 위험물 분류

	제1류 (산화성 고체)	제2류 (가연성 고체)	제3류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물질)	제4류 (인화성액체)	제5류 (자기반응성물질)	제6류 (산화성액체)
제1류 (산화성 고체)		X	X	X	X	○
제2류 (가연성 고체)	X		X	○	○	○
제3류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물질)	X	X		○	X	X
제4류 (인화성액체)	X	○	○		X	X
제5류 (자기반응성물질)	X	○	X	○		X
제6류 (산화성액체)	○	X	X	X	X	

※ 비고 “○”표시는 혼재할 수 있음을 표시, “X”는 혼재할 수 없음을 표시한다.

3. 인터뷰(기관유형별 안전보건담당자)

- 인터뷰 참여 현황 -

소속	기관명	개소	인원
중앙행정기관	산림청, 소방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육군본부	5	6
광역지자체	도청(A), 광역시청(B)	2	3
기초지자체(시군)	시청(C), 시청(D)	2	6
기초지자체(구)	구청(E), 구청(F)	2	3
광역교육청	광역교육청(G), 광역교육청(H), 광역교육청(I)	3	7
합 계		14	25

기관 유형	산림청	일시	2024.10.02
인터뷰 대상자	산림청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1. 인터뷰 개요

산림청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의 A사무관과 B주무관은 각각 2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A사무관은 안전보건 경력 2년 차, B주무관은 안전보건 경력 6년 차로 활동 중이다. 현재 산림청의 정원은 약 13,000명으로, 그 중 본청에는 394명이, 일선 사업장에는 약 12,600명이 근무하고 있다. 인력 구성은 공무원 12,000명, 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 1,000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본청은 대부분 비현업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업직은 4명에 불과하였다. 소속 기관에서 현업에 종사하는 인력은 약 7,300명, 비현업은 약 4,600명으로 본청에 배치된 인원 중 400명은 현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2.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산림청은 본청과 12개 사업소로 구성되어 있고, 사업소의 목적, 조직, 독립성을 고려해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본청 외에도 5개의 지방청과 27개의 관리소가 있으며, 산림교육원, 산림항공본부, 산림품종관리센터, 산림과학원, 수목원, 자연휴양림관리소의 6개 기관이 포함된다. 각 사업장별로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항공본부, 과학원, 교육원 등은 해당 업종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공공행정 관련 사업소는 공공행정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제를 적용하고 있다.

산림청의 안전보건관리체제 조직은 산림청장이 안전보건경영책임자를 맡으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림청장과 11개 사업소장이 맡는다. 각 사업소는 규모에 따라 안전 및 보건관리자를 자체 선임하거나 대행하며, 현장 부서장은 관리감독자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안전보건인력 선임 기준은 소속 사업장의 내근직을 제외한 현장업무 수행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선임한다. 대부분의 사업장은 기술직 공무원이 현업으로

분류되어 100인 이상에 해당되며, 품종관리센터와 교육원은 100인 이하의 사업장에 해당한다.

3. 주요 사업

본청은 사업계획 등의 총괄 관리를 담당하며, 지방청(관리소)은 국유림 관리 사업을 수행한다. 지방청은 산림보호, 병해충 방제, 범죄 단속, 산사태 대응, 자원 조성, 임업 직불제 등의 업무를 맡고 있으며, 관리소당 영림단(3~10개소)에 산림 조성 및 복원 사업을 도급하여 작업을 진행한다. 또한, 교육원, 과학원, 품종 관리 센터, 수목원, 휴양림 관리소, 항공본부(헬기 운항) 등의 다양한 업무가 있다.

4. 안전보건관리체제 운영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현업종사자 100명 이상 사업장에서 실시되며, 교육원은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운영된다. 위원회는 분기별 1회의 정기회의와 수시로 임시회의를 진행한다. 참여 대상은 소속 사업소의 사용자 및 근로자 위원으로, 근로자 위원은 공무원 노조에서 과반수로 추천된다. 최근 22년 직불제 사업 시행 이후 공무원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기술직 공무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도급사업 등의 안전보건관리체제 운영에서 영림단은 규모가 6~10명 내외로 상대적으로 영세하며, 작업 현장은 통제하기 어려운 야외 및 경사로 등에서 이루어져 이동하며 작업을 수행하는 특성상 관리감독에 어려움이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산림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지원과 매뉴얼 제공 등의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산림종사자안전법 등의 제정을 통해 산림청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체의 안전보건 관리 역량을 높이고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며, 임업작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급사업주 의무를 명확히 하는 등의 요청이 있다.

5. 안전보건활동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단위로 실시되며, 반기마다 1회 점검한다. 또한, 작업환경 측정

및 특수검진은 연구실, 소음작업 등 특정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측정 및 특수검진을 실시한다.

6. 안전보건교육

현업종사자와 재정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에게는 「산안법」에 따른 교육이 실시하지만, 현장직 이외의 순수 내근직 근로자는 해당 교육에서 제외된다.

7. 유해·위험 인식 및 관리 의견

산림청은 현업 공무원이 많고, 현장직과 내근직의 구분이 명확하므로 현장직(공무원, 공무원직 포함) 중심으로 관리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그러나 직접 고용된 근로자들(기술공무원 및 일자리사업 참여 근로자)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특히 산림자원 조성 및 복원을 위한 도급사업에 참여업체(영림단)는 사업 규모가 영세하고 작업자의 연령대가 높아 산재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다. 작업현장의 위험성(경사로 등)을 통제하기 어렵고, 이동하면서 작업을 수행하는 특성상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에 따라 현장 감독자의 관리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산안법」상 도급인의 의무 범위가 광범위하여 관리가 어렵다. 특히 사업소의 담당자들은 영림작업의 전문기술이 부족하고 작업과 현장에 대한 직접적 관리가 어렵다.

기관 유형	군, 경, 소방	일시	2024.10.02
인터뷰 대상자	경찰청, 해양경찰청, 육군본부, 소방행정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FGI)		

1. 소방 행정

소방행정에 종사하는 인력은 약 6.7만명이며 이중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4.8만여명이고 전체 공무원은 파악할 수 없었다. 본청에서 관리하는 기관은 본청, 중앙 119본부, 중앙소방학교, 소방연구원이며 지방청은 지자체에 소속되어 본청의 안전보건 관리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방연구원은 공공행정이 아닌 해당 업종으로 「산안법」을 적용하며 그 외 기관은 공공행정으로 분류하고 소속 공무원은 90여명 수준이다. 외근 소방공무원은 소방복지법의 적용을 받고 행정공무원과 공무원들은 「산안법」의 적용을 받는다. 「산안법」의 안전보건관리체제와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규정은 현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안전보건규정을 대신하여 소방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현업종사자가 있는 부서의 장은 관리감독자로 선임하고 본청의 운영과(중대재해예방팀)에서 안전보건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소방연구원은 해당 업종을 적용하여 안전관리자(위탁)를 선임하고 있다. 현업종사자가 100인 이하로 산보위를 개최하지 않으나 보건안전관리위원회를 반기 1회 개최하여 공무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안전보건교육은 현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본청에서 연 1회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 군 행정

국방에 종사하는 인력은 약 50만명이며 이중 군무원은 5만명, 공무원은 1.3만명 수준이다. 지난 2020년에 제정된 「국방안전훈령」에 따라 군인, 군무원, 공무원, 공무원 근로자(이하 국방인력)에 대한 별도의 안전사고예방 규정을 두고 있다. 「국방안전훈령」은 안전보건인력의 선임(제9조),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준하는 국방안전보건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제10조), 국방안전관리집행계획의 수립(제11조),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제49조), 각급기관의 안전교육(제50조), 산보위의 의견수렴에 준하는 국방인력의 안전신고(제27조)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인터뷰시 군 담당자는 국방안전훈령에 따라 전체 국방인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를

하고 있으며, 「산안법」 상 현업종사자에 대한 별도의 관리를 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3. 경찰 행정

경찰에 종사하는 인력은 약 13만~14만명이며 이중 공무원이 2,700여명 수준이다. 본청과 23개 시도경찰청, 기동단 등을 포함해 약 300여개의 조직이 있다. 책임조직인 경찰병원은 별도의 사업장으로 구분하고 있다. 시도경찰청이 지자체에 소속되어 있으나, 본청의 전담조직에서 시도경찰청의 안전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경찰 등 공무원은 경찰복지법의 적용을 받고, 공무직은 「산안법」의 적용을 받는다. 「산안법」의 안전보건관리체제와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규정은 현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현업종사자가 있는 부서의 장은 관리감독자, 시도경찰청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시도경찰청 단위로 안전보건인력을 선임(위탁)하고 있었다. 안전보건규정을 대신하여 경찰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또한 상시 현업종사자수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산보위를 개최하고 있으며 주로 현업종사자가 참여한다고 답했다. 안전보건교육은 현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온라인과 집체교육을 혼합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해양경찰 행정

해양경찰에 종사하는 인력은 약 700여명으로 공무원 400여명, 공무직 300여명 수준이다. 정비창(제조업)과 교육원은 책임기관으로 별도의 사업장으로 구분하고 있다. 대부분의 공무직은 정비창(250명)과 교육원에 소속되어 있으며 본청의 공무직은 30명 수준이다. 본청의 전담조직과 일선 경찰서의 겸직 안전담당자 1명이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한다. 경찰등 공무원은 경찰복지법의 적용을 받고 공무직은 「산안법」을 적용한다. 「산안법」의 안전보건관리체제와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규정은 현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안전보건규정을 대신하여 경찰복지법에 따라 중장기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고 매년 재해예방매뉴얼을 작성하고 있다. 소속기관은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으로 산보위를 구성하는 곳은 없고 대신 노사간담회나 매뉴얼 작성 등을 통해 종사자의 안전보건 의견을 수렴하고 있었다. 안전보건교육은 현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온라인(외부)과 집체교육을 혼합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유형	도청(A)	일시	2024.09.27
인터뷰 대상자	안전보건 업무담당자		

1. 인터뷰 개요

인터뷰 대상은 일자리기업지원과 내 중대산업재해예방팀(전담조직) 주무관 1명과 「중대재해처벌법」 상 전담자(전담조직: 팀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안법」 담당자 총 4명)이다. 경력은 A 주무관 2년차이며, 안전보건경력은 31년이다. 기관 현황으로는 본청 및 소속기관(14개)이 있으며, 현업종사자 수는 약 800명 미만(본청 약 100명, 사업소 약 700명)이다.

2.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본청과 각 사업소 단위로 안전보건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장소적으로 분리된 각 사업소의 업종(농림업, 과학기술서비스업 등)과 규모에 따라 「산안법」을 적용하며,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인 사업장은 본청, 농업기술원, 산림자원연구소가 해당된다. 안전관리조직은 이원화로 중대산업재해예방팀(전담조직)은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를 이행하고, 기획조정실(인사관리팀)은 현업종사자에 대한 「산안법」 상 의무 이행, 안전관리자는 대행기관에 위탁하고 있다.

3. 주요 사업

주요 사업으로는 위험성평가 실시·지도, 도급사업시 안전보건, 「중대재해처벌법」 상 이행점검, 소속기관 교육지원(도청, 인재교육원)이 있다.

4. 안전보건관리체제 운영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본청, 농업기술원, 산림자원연구소에서 실시한다. 회의는 정기회의(분기별 1회)와 임시회의(수시)로 진행되며, 본청은 현업종사자만 참여하고, 사업소는 전체 근로자가 참여한다. 농업기술원과 산림자원연구소는 공공행정이 아니므로 본청과 다르게 운영되며, 산보위가 없는 사업소는 자체적인 협의체를 운영하여 의견을 수렴한다.

5. 안전보건활동

본청에서는 현업종사자를 대상으로 근로자 정기교육을 실시한다. 각 사업소에서는 「산안법」 기준에 따라 근로자 정기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며, 연간 3시간은 본청에서 지원한다. 관리감독자 교육은 각 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실시 또는 외부 직무교육기관에 위탁한다.

6. 유해·위험 인식 및 관리 의견

사업장 단위로 체제를 구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소속기관이 많고 사업의 종류가 다양하며,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현장의 실질적인 관리가 불가능하다. 공공행정에서는 현업을 분류하여 관리 해야 하는데 내근직의 경우 위험도는 현저히 낮다고 본다.

본청은 고위험 작업이 이뤄지는 부서나 소속기관에 대해 교육 등 안전보건 관리를 지원하고, 안전보건 점검을 통해 미흡한 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도청 소속기관 외에도 도내 시군의 건설공사 참여업체에 대한 발주처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직접 소속기관이 아니더라도 도내 시군의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행정해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기관 유형	광역시청(B)	일시	2024.07.19
인터뷰 대상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1. 인터뷰 개요

광역자치단체는 경제산업본부(노동정책과) 내 산업안전팀(중대재해예방 담당) 주무관 2명이 안전보건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안전관리자 A주무관 3년차(안전보건경력 30년), B주무관 1년차(안전보건경력 1년, 보건관리자)로 파악되었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정원 8,163명 중 본청에 3,804명(46.6%), 일선 사업장 4,359명(53.4%)이 근무하며, 공무원(6,406명), 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 등(1,757명)으로 나누어 지는데 본청 중 내근직 공무원(2,800여명)만 「산안법」을 일부 적용(공공행정)하고 있으며, 본청 중 약 1,000명의 현장직(현업 포함)과 일선사업소는 「산안법」 전부 적용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다.

2.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조직은 사업목적, 조직, 독립성 등을 고려하여 9개 단위로 구분하며,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12개소, 자체 사업소 8개소(소방본부, 보건환경연구원, 문화예술회관, 공원사업소 3개, 도서관, 박물관)가 관리 대상이며, 별도 법인(상수도본부, 경제자유구역청 등) 제외하고 있다.

안전관리 체제의 조직 구성은 다음과 같다.

(안전보건경영책임자) : 시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행정부시장(본청), 8개 사업소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대행자) : 각 분야별 사업소장 등

(안전 및 보건관리자) : 사업소 규모별 자체선임 또는 대행

(관리감독자) : 현장(현업) 부서장

* 도급사업장의 원하청 합산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시 총괄책임자 지정

안전보건인력 선임 기준은 소속 사업장의 내근직을 제외한 현장업무 수행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선임하며, 도급인력 활용시 하청 근로자를 합산하여 선임기준 적용하고 있다. 본청에는 안전관리자 2명, 보건관리자 1명, 문화예술회관 안전관리자 1명이 선임되어 있고, 300인 미만 사업장은 전문기관 위탁 운영하고 있다.

3. 주요 사업

안전보건관리체계 활성화를 위하여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실태 점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평가(과장급 이상, 법적의무 이행),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도급사업 종사자 안전보건확보, ISO 45001 사후심사를 실시하였다. 사고원인통제 활동으로는 위험성평가 실시, 위험작업 대상 허가제,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검진, 안전보건대행용역(본청 소속 사업소 12개소, 2개 분야, 월 1회)을 수행하고,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하여 안전보건법정교육 실시지원, 안전보건관리수준 향상 컨설팅, 산업안전보건카드뉴스 배포, 안전보건우수사례 발표대회, 안전보건관계자 실무 간소화 지원하고 있다.

4. 안전보건관리체제 운영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의 6개 사업장(본청, 문화예술회관, 시립박물관, 공원사업소 2개소)에서 정기회의(분기별 1회), 임시회의(수시)로 운영하며, 소속 사업소 사용자 및 근로자 위원(과반수 조직 공무원 노조 추천) 등이 참여하나 공무원 노조는 참여하지 않는다.

도급사업 등의 안전보건관리체제 운영을 위하여 적정 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적격수급인 선정하는데 30일 이상 작업 또는 연간 60일 이상 초과 작업(시설위탁 등)은 협의체 구성 운영하도록 하고 점검하고 있다. 일주일 이상 30일 미만 작업은 순회점검, 일주일 미만, 간헐적 작업은 안전점검표를 활용한 점검을 실시하며, 비일상적 업무 중 위험작업은 안전작업 허가서를 통해 위험성평가를 수시로 보완하고 있다.

수급인 작업책임자는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점검표로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 작업책임자는 작업시간 및 장소, 조치사항에 대하여 도급부서 담당자의 확인 이 필요하며, 도급부서

관리감독자 허가(승인)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에게 송부 및 기관장에게 보고하는 절차로 운영된다. 위험작업은 화기, 밀폐공간, 중장비, 고소, 정전활선, 기타 위험작업으로 분류하고 책임자 확인 및 서명 후 증빙으로 보관한다.

5. 안전보건활동

안전보건활동 중 위험성평가는 본청 등 9개 사업소에서 매년 4~5월 중에 실시하고 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직무대행)의 총괄, 위험성평가 담당자의 계획수립 및 정보수집, 관리감독자의 위평실시 및 감소대책 실행, 종사자의 의견개선, 지침준수 및 평가 활동 참여 등 각 주체별 역할을 분담하여 진행한다. 비일상 업무(수리, 정비 등) 중 위험작업은 안전작업 허가서를 통해 위험성평가를 대체하고, 보완 또는 수시로 평가하는 작업은 화기, 밀폐공간, 중장비, 고소, 정전활선, 기타 위험작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6.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은 안전보건관계자(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근로자(관리감독자, 근로자)에게 실시하며, 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는 집합과 온라인교육을 수행한다. 근로자는 모두 교육하나 현장직 이외의 순수 내근직은 교육에서 제외하고 있다.

7. 유해·위험 인식 및 관리 의견

유해·위험 업무로는 무대설치, 도로보수, 농기계 수리임대, 수도검침, 도로 및 하천 단속업무 등으로 지자체 역할증가에 따라 다양한 직무의 종사자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고용형태(공무원, 공무원직, 단기제)로 구분하기 보다는 조직의 업무 중심으로 관리 필요하며, 사업소는 사업목적, 조직, 업무내용 등을 고려하여 독립적 단위별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고 맞춤형 활동(교육 등)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기관 유형	시청(C)	일시	2024.10.04
인터뷰 대상자	안전보건 업무담당자		

1. 인터뷰 개요

인터뷰 대상은 안전총괄과 산업안전팀 팀장 1명과 주무관 1명(안전관리자)으로 경력으로는 A팀장이 2024년 7월부터 산업안전팀에 부임했으며, 이전 경력은 없었다. B주무관은 안전관리자로 2년차로 2023년 5월 임기제 공무원으로 입사했으며, 이전에 건설회사에서 안전관리자로 2년, 병원에서 보건관리자로 3년의 경력이 있다. C주무관은 보건관리자로 3년차로 2022년 5월 임기제 공무원으로 입사했으며, 이전에 타 사업장에서 보건관리자로 경력이 있다.

2.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조직단위는 시청 전체 단위로 관리되며,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된다. 인력 선임 기준은 현업 기준으로, 구성원 중 고용노동부 현업종사자 고시 기준에 따라 현업업무 수행자들을 모두 현업종사자로 간주하고 있고, 공무원도 현업종사자에 포함될 수 있으며, 주로 운전직 공무원들을 제시하였다. 산업안전팀에서는 현업종사자 명단을 관리하고 있으나, 기간제 근로자가 많아 수시로 변동이 발생하여 수시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으며, 각 부서에서는 현업종사자를 구분하여 본청으로 명단을 보내고 있으나, 각 부서의 담당자 해석에 따라 현업종사자를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임대사업소의 경우 안전보건 담당 주무관이 자신을 현업종사자에 포함하였으나 행정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상 필요할 경우 수리점검을 직접 하기도 하고 현장관리 업무도 포함하고 있어 현업종사자로 관리하였으나 최근 매뉴얼의 현업종사자 정의에 의해 사무직은 현업종사자 제외의 판단에 의하여 현업종사자 명단에서 제외되었다.

3. 주요 사업

공통으로 산업안전보건위 운영, 안전보건 지도·점검, 산재 발생 작업장 현장점검 및 수시 위험성평가, 현업부서 안전작업 매뉴얼 제·개정, 작업환경측정이 있다.

현업종사자/관리감독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위험성평가 실시,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실시 안내, 산업재해 발생보고 절차 안내하는 사업을 한다. 작업환경측정 실시·관리,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실시·관리,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및 경고표지 관리,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3년마다), 경고표지 책자 등 제작·배포하는 사업을 한다.

4. 안전보건관리체제 운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실시대상은 본청과 사업장을 합하여 1개로 운영된다. 현업대상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실시 시기는 정기회의(분기별 1회)로 정해져 있다. 참여대상은 위원 총 10명으로, 노사 동수로 각 5명씩 구성된다. 참고로, 근로자위원 5명 모두 조합원이며, 비정규직지회와 환경공무직노조에 속한 공무직을 대상으로 한 2개 노조가 포함된다.

도급사업 등의 안전보건관리체제 운영에 대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시장으로 도급업무를 총괄 담당한다. 본청에서 서식 제공을 담당하고, 적격 수급인 확인은 계약부서에서 진행한다. 또한, 도급작업 현장은 계약부서의 각 담당자가 현장 관리와 순회 점검을 실시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 규정은 내부적으로 수립되었으며, 현업부서에서는 안전작업 매뉴얼을 제정하거나 개정한다. 안전보건관리 규정은 행정규칙으로 간주된다. 또한,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조례는 1개가 존재한다. 참고로, 올해 외부 컨설팅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과 관련된 제규정을 내부적으로 수립하였다.

5. 안전보건활동

위험성평가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하며, 수시 평가는 산업재해 발생 부서 등 별도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활동을 한다. 정기적인 평가는 연 1회, 수시 평가는 필요에 따라 진행된다. 주체는 위탁 방식으로 맡기며, 산업안전팀 담당자는 현업 부서의 위험성 평가 시 함께 나가 점검한다. 비현업 부서는 체크리스트로 자체 점검을 하고, 산업안전팀은 이를 취합하여 검토한다. 기타로는 위험성평가 실시 이전 교육 진행(위탁업체), 빈도·강도법 별도 서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공정이 작업환경측정 대상이며, 반기 1회 진행한다.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공정 근무자 등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181종) 노출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야간작업, 자외선, 소음, 유해물질 노출 업무 등)이 대상이 되며, 현재까지 특수건강검진을 진행한 적 없으며 내년에 처음 실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공문으로 공지된 상태이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분석/실험하시는 분들은 자체적으로 특수건강검진을 진행하고 있다.

안전보건 지도점검은 사업부 전체가 대상이며, 보건은 월 1회, 안전은 월 2회 산업안전팀에서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다. 각 사업부는 평균 1년에 1회 정도 실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2025년에는 현업 부서 안전 작업 매뉴얼 또는 가이드라인 제정 계획을 수립해둔 상태이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및 경고 표지 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 기준에 맞춰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을 취급하는 부서를 대상으로 하며, 관리 주체는 해당 부서(관리), 산안팀은 총괄 및 점검을 담당한다. 또한,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대한 유해 요인 조사는 매 3년 주기로 실시한다.

6. 안전보건교육

현업종사자는 반기별로 12시간씩 정기안전교육을 받으며, 이 교육은 외부 교육업체에 위탁하여 진행된다. 교육자료 역시 외부업체에서 배포한다. 또한 매월 1회 본청 주관으로 집합교육이 진행된다. 교육 시간은 매월 3시간씩 총 8개월 동안 집합교육으로 진행되며, 하반기에는 온열질환 예방 교육이 1시간 진행된다.

관리감독자는 연 2회, 1박 2일 일정으로 16시간의 집합교육을 받으며, 이 교육은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직접 진행하고 작업내용이 변경될 경우, 관리감독자는 온라인을 통해 2시간씩 추가 교육을 받는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신규 교육 시 6시간 이상, 보수 교육 시에도 6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이 교육은 외부 위탁을 받아 비대면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역시 신규 교육은 34시간 이상, 보수 교육은 2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이 또한 외부 위탁을 받아 비대면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현업종사자의 경우 입사 시점에 교육을 받으며, 이 교육은 관리감독자가 자체적으로 진행하거나, 온라인으로 교육을 신청하여 외부 업체를 통해 이루어진다. 또한 작업내용이 변경 될 경우 추가 교육이 진행된다.

7. 유해·위험 인식 및 관리 의견

산림공원과 녹지 유지관리 업무로는 예초, 방역, 방제 등 유해인자에 노출될 위험이 있으며, 기계 사용으로 인한 신체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는 농기계 이동과 점검, 수리 등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위험이 따른다. 한편, 단속업무인 주차 단속이나 하천 단속 등은 현장을 돌아다니며 확인하는 정도로, 크게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현장 확인과 과태료 부과 등 실질적인 업무는 공무원이 담당한다.

안전보건체계 구축 및 세부적인 운영 관리에 대해 명확하게 법으로 정해지거나 상위 기관에서 기준을 내려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현재 지자체에서는 상황에 따라 현업종사자를 지정하고 안전보건체계를 갖추어 관리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많은 부분이 애매하게 느껴진다.

또한, 중대재해가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보건체계 관련해서도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다. 일반 회사는 사무직과 비사무직으로 구분되지만, 지자체에서는 비사무직에 해당하면서 현업이 아닌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의사, 간호사, 수의사 등은 현업에 해당하지 않지만, 실제 업무를 보면 현업으로 분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운전직 공무원들은 본인이 공무원인데 왜 현업으로 분류되냐고 묻기도 한다. 현업

분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느껴지며, 자체적인 해석이 어렵다.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관리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 소재가 불명확할 수 있다.

산업안전팀에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는 임기제 공무원(2년)으로 입사하였고, 연장 가능하여 한 사람이 오래 근무할 수 있다. 하지만 팀장님과 행정 담당 주무관님의 자리는 계속해서 변경된다. 행정업무도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근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인사발령은 보통 1년에 1번 정도 있으며, 빠르면 6개월 만에 인사발령이 이루어져 담당자가 변경되기도 한다. 산업안전팀은 법적인 체계를 구축하고 관리해야 하며, 전기, 기계, 소방 등 도급사업 전반에 대해서도 많은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잦은 인사이동으로 담당자가 바뀌면 전문성을 축적하기 어려우므로, 경력자가 총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중앙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매뉴얼을 제공하고, 시기별로 해야 할 일들을 일괄적으로 안내해주면 좋겠다. 또한, 「산안법」 자체가 건설업과 제조업 위주로 만들어진 법이라 공공분야에는 잘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 구체적인 상황이나 내용에 대해 문의할 곳도 마땅히 없고, 중앙에 문의하면 지자체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 관리하라는 답변만 받을 뿐이다. 안전보건 분야는 전문가적 영역이지만, 전문성이 부족한 사람들이 이를 총괄 관리해야 하므로 부담이 크다.

기관 유형	시청(D)	일시	2024.08.14
인터뷰 대상자	안전보건 업무담당자		

1. 인터뷰 개요

A주무관은 2020년 2월에 입사하여 2024년 7월부터 안전관리자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전에는 안전관리 경력이 없다. B주무관은 2020년 10월에 입사하여 2024년 1월부터 보건관리자 업무를 맡고 있으며, 이전에는 보건소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 C주무관은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본청에서 보건관리자로 근무한 후 현재는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다. 중대재해예방팀은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간 예산은 3,900만원(현장 안전보건관리비 제외)이다.

2.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조직은 시청 전체 단위로 관리되며, 여러 사업부가 있지만 모든 조직을 공공행정 하나로 본다. 구성원은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청원경찰로 분류되며, 고용노동부의 현업종사자 고시 기준에 따라 현업업무를 수행하는 자들을 모두 현업종사자로 간주한다. 하천보수 등 시설관리 업무는 현업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포함된다. 각 부서에서는 현업종사자의 명단을 취합하고, 인사부서에서 이를 관리하지만, 부서에서 현업종사자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누락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안전보건관리체제 조직으로, 안전보건경영책임자는 시장이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부시장이다. 안전관리자는 시민안전과의 A주무관(1인), 보건관리자는 시민안전과의 B주무관(1인)이다. 산업보건의는 외부에서 위촉된 1명이 담당하고 있다. 관리감독자는 48개 현업 부서의 팀장(총 61명)으로, 각 부서에서 현업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나 공무원을 현업종사자로 간주하여 해당 부서를 현업 부서로 관리하고, 그 팀의 팀장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안전보건인력 관련 선임은 현업종사자 수 기준이다.

3. 주요 사업

공통적인 부분으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운영되며, 안전보건 지도 및 점검이 이루어진다. 또한, 산재 발생 작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이 실시되고, 수시로 위험성 평가가 진행된다. 현업 부서에서는 안전작업 매뉴얼을 제·개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

안전관리 부분에는 현업종사자와 관리감독자에 대한 정기 안전보건교육이 실시되며, 전직원을 대상으로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안전교육이 진행된다. 또한,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이 이루어지고, 위험성평가가 수행된다. 작업 전에는 안전점검회의(TBM)가 실시되며,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 절차에 대한 안내도 제공된다.

보건관리 부분은 작업환경측정이 실시·관리되며, 유해인자에 노출된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이 실시·관리된다. 또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와 경고표지가 관리되고,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대한 유해요인이 조사되며, 경고표지 책자 등이 제작·배포된다.

4. 안전보건관리체제 운영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시청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현업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전체 조직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다만, 실제 안전이나 회의 내용은 대부분 현업 위주로 맞추어 진행된다. 위원은 총 14명으로, 노사 동수로 각 7명씩 참여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임시회의는 수시로 실시된다. 참고사항으로, 시청 내 노조 현황은 과반노조인 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시흥시 지부가 있으며, 일부 직종에서는 한노총 소속의 근로자도 존재한다. 과반노조 위원장이 고위험 업무(도로보수, 수도사업 등) 및 현업종사자가 많은 부서를 중심으로 근로자위원을 추천하여 구성하며, 현업종사자들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참석하여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도급사업 등의 안전보건관리체제 운영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행정부시장이며, 이는 모든 사업부서에서 도급이 적용될 때 해당된다. 도급업무 총괄 담당은 본청에서 하며, 서식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적격 수급인 확인은 계약부서에서 담당하며, 도급업체가 적합한 자격을 갖추었는지 확인한다. 도급작업 현장관리는 수급인이 현장에서 직접 담당하며, 현장 순회점검을 수행한다. 또한, 순회점검 외에도 추가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이를 위한 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다.

관련 규정의 산업안전보건관리 규정은 내부적으로 수립되어 있으며, 현업부서의 안전작업 매뉴얼은 지속적으로 제정 및 개정된다. 또한, 「산안법」 이외에 종사자의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별도의 법령이나 조례 등은 현재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5. 안전보건활동

위험성평가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수시평가는 산업재해 발생 부서 등 별도의 기준에 따른다. 정기평가는 연 1회, 수시평가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이루어진다. 평가 주체는 각 부서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후, 전담 부서에서 검토하고 보완하여 피드백을 제공한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교육이 진행되고, 외부 교육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진행하며, 빈도·강도법을 사용하여 별도의 서식으로 진행된다.

작업환경측정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공정에서 실시되며, 반기마다 1회 진행된다. 특수건강진단은 야간근무가 있는 부서(CCTV 단속팀 등)와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공정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그리고 181종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중을 진행한다. 2023년에는 야간근무자 49명과 유해인자 노출 근무자 13명을 대상으로 검진이 실시된다. 안전보건 지도점검은 전체 사업부를 대상으로 하며, 반기별로 1회 실시된다. 상반기에는 본청에서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하반기에는 각 부서에서 자체 점검을 수행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한다.

기타 활동으로는 매 분기 산업재해 대응절차 안내가 이루어지며, 현업부서의 안전작업 매뉴얼은 상/하반기 각각 1회씩 제·개정된다. 이 과정은 총 48개 현업부서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또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및 경고표지 관리는 「산안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을 기반으로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을 취급하는 부서를 대상으로 하며, 관리 주체는 해당 부서가 맡고, 시민안전과 중대재해예방팀이 총괄 및 점검을 담당한다. 마지막으로,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는 3년 주기로 진행되며, 1단계 설문과 2단계 현장 조사를 통해 수행된다.

6. 안전보건교육

현업종사자는 반기별 12시간의 정기안전교육을 받으며, 매달 2시간씩 자체교육을 실시한다. 이 교육은 관리감독자가 주도하며, 교육자료는 시민안전과에서 작성하여 배포한다. 또한, 위탁교육도 병행하여 연 1회 집합교육을 실시한다.

관리감독자는 연간 16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으며,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신규 시 6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고, 보수교육 시에도 6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집합교육으로 진행된다.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는 신규 시 34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고, 보수교육 시에는 24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공단 집합교육을 통해 교육이 이루어진다. 현업종사자는 입사 시점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등을 자체교육으로 실시한다.

7. 유해·위험 인식 및 관리 의견

현업종사자들 중 상당수가 고령인 점은 중요한 리스크로, 위험업무가 아니더라도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특히 넘어짐 사고나 개인 질병 발현 등이 문제로 지적된다. 또한, 현업종사자 중 높은 연령대의 기간제 근로자들이 많은데, 이는 일자리 창출 사업이나 공공근로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고용된 근로자들이기 때문이다.

현재 안전·보건관리자는 내부 직원이 담당하고 있지만, 경력 부족과 인사이동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외부 경력자를 선임하는 방안, 예를 들어 계약직 공무원으로 전문 인력을 채용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법에 대한 아무런 설명과 이해가 없이 시행되어 안전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의문이며, 업무에 따라 자율성을 주는데 정부나 공단에서 메뉴얼을 만들어 배포해준다면 시 의회에 예산을 요청 할 근거가 생겨 확실한 안전체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시민 안전과 관련하여 팀을 분리해서 관리하거나, 전문적인 업체에 위탁하는 등 전문적인 니즈가 필요한 실정이다.

기관 유형	구청(E)	일시	2024.10.04
인터뷰 대상자	안전보건 업무담당자		

1. 인터뷰 개요

인터뷰 대상은 본청 중대재해예방실(전담조직)의 안전관리자로 총 경력은 34년이며 임기제 공무원으로 1년차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고 있다. 현원은 총 3,900명으로, 공무원 3,000명과 현업(공무직, 기간제 등) 870명으로 구성된다. 현업 부서로는 본청의 공원녹지과, 치수과, 도로관리과 등이 있으며, 주민센터에는 일자리 사업에 200~300명이, 보건소에는 청사 관리, 방역 소독, 조리 수업 등 현업이 포함된다. 총 65개의 현업업무가 운영되고 있다. 중대재해는 없으며, 2023년에는 15명 정도의 경상해(베임, 넘어짐 등)가 발생했고, 2024년에는 8명 정도가 베임, 넘어짐 등이 발생하였다.

2.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조직 단위는 본청, 주민센터, 보건소를 통합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청에서 일괄 관리한다. 별도 법인으로는 문화재단과 도시관리공단이 있으며, 위탁업체로는 도서관과 체육시설(수영장) 등이 있다. 담당 부서는 본청의 중대산업재해예방실(중대재해예방팀)이다. 구청 중에서 실 단위 전담 조직은 최초로 운영되며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안법」상의 관리를 위해 안전관리자 2명, 보건관리자 1명을 두고 있다.

안전보건조직(체제)은 안전보건경영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도급시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는 구청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대행자는 부구청장이며, 안전 및 보건 관리자는 안전관리자 2명, 보건관리자 1명이 담당하고, 현장(현업) 부서장, 업무별 담당자(7~8급 주무관, 계장급)은 관리감독자로 역할하고 있다. 안전보건인력 선임 기준은 공공 행정업종의 상시 현업종사자 수(870명)를 기준으로 선임된다.

3. 주요 사업

위험성 평가는 각 부서에서 직접 수행하며, 정기평가는 연 1회 진행된다. 현업종사자 소속 현장은 본청 중대재해예방팀에서 상하반기 전수 점검을 실시하며, 수시 평가를 연 2회 진행한다. 또한, 안전보건교육이 지원된다.

4. 안전보건관리체제 운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실시대상은 본청(주민센터, 보건소 포함 하나의 체제로 현업종사자 기준)이며, 주기는 정기 회의는 분기별 1회, 임시 회의는 수시로 실시된다. 회의에 참여하는 대상은 사용자 및 근로자 위원 각 9명이며, 근로자 대표(노조 위원장 현업, 청사관리), 근로자 위원은 현업 위험직무(공원녹지, 취수, 도로 관리, 자원순환과(환경자원센터), 보건소 등) 위주로 참한다.

도급사업 등의 안전보건관리체제 운영은 발주공사를 제외하고, 용역 위탁 시 도급 담당자(중대팀)가 직접 가서 현장을 방문하여 재해관리역량을 평가하고, 서류 항목별 확인 및 수급인의 위험성 평가를 확인한다. 고위험 업무의 경우 본청 안전관리자(도급담당)와 업무 담당 주무관이 직접 위험성 평가를 진행하고, 그 외의 업무는 수급업체의 위험성 평가 여부만 확인한다. 예를 들어, 행사 무대 설치는 모두 외주로 진행되며, 해당 부서와 전담 부서에서 함께 안전 점검을 한다. 또한, 월 1회 안전보건협의체를 운영하고, 담당 부서 과장과 수급업체 관리감독자가 참석하여 분기별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순회 점검은 시행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도급 관리는 본청에서 연 2회 현장 방문 점검 시 도급 작업도 함께 확인하고, 시정 요구한다.

5. 안전보건활동

각 사업소에서는 자체적으로 정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며, 사무행정과 현업을 구분하여 연 1회 진행한다. 본청은 주관하여 현장점검 및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며, 현업업무 전부를 점검하고 연 2회 진행한다. 사고 발생 시에는 수시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며, 예를 들어 공원녹지과에서는 예초기, 전동톱 등을 점검한다. 또한, 매년

상반기에는 위험성평가 실무자 교육을 실시한다.

작업환경측정 대상은 소음, 분진, 휘발유, 페인트, 오일(공원녹지과와 도로관리과) 등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야외작업의 경우 대상 작업은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한다. 야간 근무자가 포함된 부서(주차관리과, 청사관리, 안심귀가, 보건 또는 방역)에서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한다.

6. 안전보건교육

직무교육은 관리책임자 등 법이 정한 대로 외부 위탁을 통해 진행된다. 근로자 정기 교육은 현업만 「산안법」 기준을 적용하며, 매달 관리감독자가 교육자료를 만들어 교육을 실시 후 결과를 본청에 보고한다. 그 외에도 연 1~2회 안전보건공단 등 외부 강사를 초청하여 교육을 진행하며, 이 교육은 구민회관에서 이루어지며 현업 직종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참여한다.

7. 유해·위험 인식 및 관리 의견

위험업무에는 환경자원센터(폐기물 분리 등), 치수과(밀폐공간, 오수관), 시설(사다리), 공원녹지(전동톱, 벌목 등)이 있다. 관리감독자들이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과 역량이 부족한 실정으로 교육 실효성이 떨어지고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있다. 공공행정분야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설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제도와 같이 공공행정 분야에도 도입하여 교육을 이수할 경우, 공공행정분야에서 종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 유형	구청(F)	일시	2024.10.04
인터뷰 대상자	안전보건 업무담당자		

1. 인터뷰 개요

인터뷰 대상은 본청 안전도시과 중대재해팀 팀장과 안전관리자. 안전업무 관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중대재해업무 총괄 및 안전관리 보건관리를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업종사자 관리에 대한 교육 및 안전보건 전반에 걸쳐 협업으로 진행하며, 보건소 등 각 사업소별로 보고 내용을 취합하고 현장 실사 등을 통한 관리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구청 중 유일하게 보건소가 본청 소속이 아닌 독립적인 사업장으로 안전보건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소속기관들은 본청과 협업하여 안전보건활동을 계획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청에서는 현업종사자 뿐만 아니라 유해·위험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부서별 팀장을 관리감독자로 선임하여 관리하고 있다.

00구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의하여 구청장과 행정기관의 장이 안전보건관리체제의 확립에 관여하며, 구청장이 재해예방의 조치의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 관련 조직은 안전보건 총괄 팀장, 중대산업재해 담당,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각각 1명이 지정되어 있고, 지진, 안전취약시설 1명이 지정되어 있으며, 안전보건인력 선임 기준은 공공행정업종의 상시 현업종사자 수(870명)를 기준으로 한다.

본청에서는 현업종사자 뿐만 아니라 유해·위험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부서별로 팀장을 관리감독자로 선임하여 관리하고 있다.

3. 주요 사업

위험성 평가,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검진, 안전보건 교육 등을 실시한다.

안전보건교육은 현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집체교육 또는 집체 및 온라인 혼합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기관별로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안전보건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인력을 배치하고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였다.

4. 유해·위험 인식 및 관리 의견

현업업무 중 유해·위험 노출로 인한 범위의 확대가 필요한 업무는 존재하지만 대부분 사무 관련 업무로 현장 중심의 확대를 요구하였다. 00구의 경우 보건소 등 사업소별 독립적 관리가 수행되고 현업을 비롯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권리와 요구에 부응하여 안전보건활동이 운영되고 있어 다른 기관에서도 사업소, 소속기관별 관리 체계를 적용하는 것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기관 유형	광역시교육청(G)	일시	2024.09.18
인터뷰 대상자	안전관리자		

1. 인터뷰 개요

000 교육청에는 학교안전과 산업안전 담당 주무관 2명으로, A주무관과 B주무관 모두 안전보건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이다.

교육청 전체 공무원은 37,000명이 있으며, 이 중 현업업무 종사자는 약 23,000명이다. 현재 「산안법」은 현업종사자에게만 전면 적용되고 있으나, 현업에 종사하는 교원과 공무원에 대해서도 「산안법」 적용 및 규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2.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은 「산안법」 상 현업종사자 기준에 따라 조직이 이루어지며, 교육청은 이를 각 시도교육청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산안법」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본청, 지원청(25개), 각급 공립학교(2,500개) 등이 모두 포함된다. 체제 구축의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에 따른 현업종사자 고시와 광역교육청 산업안전보건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다.

경영책임자는 교육감, 전담조직으로는 학교안전과에 소속된 중대재해 안전관리자 2명, 보건관리자 1명이 선임되어 있고,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상 전담조직으로 의무 이행 및 위험성 평가를 실시 및 반기별 점검 등의 컨트롤 업무를 수행한다.

「산안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는 제1부교육감(교육부 임명, 행정직 출신), 제2부교육감은 교육감이 지정하는 교사 출신으로 제2부교육감은 관리책임자가 아니다. 관리감독자는 직속기관에서는 기관장이, 각급 학교에서는 교장 또는 원장이며, 안전 및 보건관리자는 본청 학교안전과 산업안전보건팀 소속으로 안전관리자 2명, 보건관리자 2명을 선임한다. 이는 현업종사자 수에 따라 선임되고, 「산업안전보건법」이행을 위한

역할을 한다.

기타사항으로 학교급식보건과에서 급식실의 안전보건관리를 지원하는 보건관리자 1명이 선임되어 있고, 교육지원청에는 각 1명의 안전보건담당자가 배치되어 있다.

3. 주요 사업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안전보건전문인력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안전보건관리규정(매뉴얼) 보급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고원인 통제 활동으로는 위험성 평가 실시 등 안전보건관리 대행 용역이 포함된다. 또한,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현업종사자 및 관리자에게 법정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산업안전보건매뉴얼을 발간하여 보급하고 있다.

4. 안전보건관리체제 운영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교육청 본청 단위에서 1개를 운영하며, 학교 단위의 현업업무 종사자 수가 50명을 넘지 않아 별도로 산보위를 진행하기 어렵다. 본청에서 예산과 인사를 행사하기 때문에 교육지원청과 학교 등을 포함해 하나의 사업장으로 해석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실시 주기는 정기회의(분기별 1회)와 임시회의로 나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참여하는 대상은 현업업무로 분류된 29개 직종의 공무직 직원들이다. 이들 중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등 12개의 대표적인 복수노조로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학비와 공공 부문 노조의 조합원 수가 많아 대표성이 있다.

현업 관리대상 직종으로는 영양교사, 시설관리, 농업, 식품위생, 공업, 조리, 운전, 방송통신, 건축운영, 전기운영, 기계운영, 열관리운영, 화공운영, 농림운영 등 14개 직종이 있으며, 통학차량운전원, 통학차량보조원, 안내원, 방송통신운영직 등은 퇴직 후 신규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아 감소하고 있다. 또한, 현업종사자 중 교육공무직원 직무에는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각급학교 장애인일자리사업(급식보조), 급식배식보조원, 청소원, 구육성회(시설), 시설경비원, 시설당직원, 시설안내원, 안내원, 당직전담원,

통학차량운전원, 통학차량보조원 등이 포함된다.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체제 운영에서는 제1교육감이 전체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책임을 지며, 업무분장상 중대재해팀이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담당한다. 실무적으로는 현장에서 수급인이 도급작업에 대해 지휘·감독한다.

5. 안전보건활동

위험성 평가는 본청에서는 학교안전과가 안전보건관리 전문업체와 위탁계약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각 학교의 종사자에 대해서는 중대재해팀이 예산을 받아 각 지원청에 배정한 후, 일괄 위탁계약하여 관리하고 있다. 학교 단위에서 위험성 평가로 급식실의 경우 각급학교에서 관리감독자의 지휘하에 「산안법」 상 의무 이행이 이루어지지만, 현장에서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평가를 진행한다. 시설, 미화, 당직 직종은 행정실의 주무관이 담당하지만, 이들은 산업안전 담당자가 아닌 지원 역할을 맡고 있고, 행정실에 시설직 주무관이 없을 경우, 행정실장이 위험성 평가를 수행한다.

작업환경 측정과 특수 건강검진을 실시하는데 대상은 경비시설(교대근무), 조리종사자(노출물질)이다.

산업재해 사고조사는 본청의 안전관리자가 현업업무 종사자의 사고조사를 하고 있다. 사고 발생 건수가 가장 많은 직종은 조리실무사이며, 업무 특성상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한다.

6. 안전보건교육

근로자 교육은 현업부서의 관리감독자(주로 공무원)와 현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현업업무 종사자로 지정된 직종 외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교육이 진행되지 않는다. 근로자 교육 과정은 자체 운영과 위탁 방식으로 진행되며, 관리감독자와 신규 채용자 교육은 교육청 학교안전과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한다. 또한, 온라인 교육은 전문 교육기관의 교육 콘텐츠를 활용하지만, 채용 시 교육은 교육청에서 제작한 자체 콘텐츠를 사용한다.

7. 유해·위험 인식 및 관리 의견

급식과 시설 등 현업 분류 업종은 여전히 위험도와 사고 빈도가 높다. 예시된 현업 대상 직종 이외에도 과학실무사와 특수교육지도사 등도 위험도가 있을 수 있으며, 통학차량보조원은 현재 현업 직종으로 포함된다. 과학실무사는 교육부 가이드에 따라 MSDS, 특검, 안전보건교육 등이 별도로 이루어진다. 그 밖에 특성화고(농생고 등)에서 농축산 보조원과 같은 직무도 위험도가 있을 수 있다. 특성화고 근무자의 경우에는 농업, 축산업, 화장품 제조, 헤어디자인, 피부미용 등 다양한 화학물질이나 기계·기구를 다루는 작업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

현업의 업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명확한 해석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 수업과 행정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산업재해의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현업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

시도교육청 내 모든 사업소와 학교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관리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만, 현장(학교) 단위의 안전보건활동 촉진에는 한계가 있다. 학교 단위로 사업장을 해석하면 50인 미만으로 체제 구축이 곤란하다. 본청에서는 소속 사업소, 25개의 지원청 그리고 2,500개의 학교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 기준을 시달하면, 각 학교 단위에서 안전보건 관리를 실시할 수 있는 지원청 단위의 업무 조직이 필요하다. 현재 25개 지원청에는 안전관리담당자(겸직)가 지정되어 있으나,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하여 실질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주로 위탁기관을 통해 학교 단위의 위험성 평가와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직접적인 관리 역량의 강화가 필요하다. 지원청 단위에 안전보건을 전담하는 인력을 배치할 필요성이 있으나, 현재 인력 충원이 어려운 상황으로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향후 현업 범위를 확대하려면 사전에 인력 충원과 같은 준비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현장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준비와 지원이 요구된다.

산재가 자주 발생하는 고위험업종 유형에 대해 가용 예산을 우선 투입하는 것이 산재 발생률을 감소시켜, 총 산재 발생률을 낮추는 데 효과적일 것이다. 본청보다 학교 단위 현장에서 실질적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행정실의 안전보건 업무가 증가하고 있으며, 평가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업무로 선정된 바 있다. 담당자들의 안전보건 전문성이 부족하여 전문가의 도움과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규모로 인해 학교 단위의 안전보건 체제 구축이 어려운 경우, 지원청 단위에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학교 위험성 평가 등을 점검 및 관리하도록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기관 유형	광역시교육청(H)	일시	2024.09.09
인터뷰 대상자	안전복지과 산업안전보건팀		

1. 인터뷰 개요

000교육청에서 대상은 안전복지과 산업안전보건팀의 주무관 3명으로, 각 주무관의 경력은 다음과 같다. A주무관은 지방행정공무원으로 20년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B주무관은 안전관리자로 20년의 경력이 있고, 교육청 안전관리자로 3년차다. C주무관은 보건관리자로 4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교육청 보건관리자로 1년차로 파악되었다. 현재 교육청에는 전체 공무원 약 9,00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현업 직종 관리대상은 약 5,400명이다. 「산안법」은 현업종사자에게만 전부 적용되며, 현업에 종사하는 교원과 공무원 일부에 대해서는 산업보건위원회와 산업안전 교육 등이 실시되고 있다.

2.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은 「산안법」에 따른 현업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며, 교육청은 각 시도교육청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적용한다. 이 체제에는 본청, 17개 지원청, 600개의 각급 공립학교가 포함된다.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의 근거는 「산안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에 따른 현업종사자 고시에 의한 것이다.

안전보건전문인력 선임기준은 다음과 같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경영책임자는 교육감, 전담조직은 안전복지과 산업안전보건팀 내에 안전관리자 2명과 보건관리자 2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 이행, 위험성 평가 실시, 반기별 점검 등 컨트롤 업무를 담당한다.

「산안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는 교육감이며, 올해 6월 이전에는 부교육감이었으나 고용노동부 점검 이후 7월부터 교육감으로 변경되었다. 관리감독자는 직속기관의 경우 기관장, 각급 학교는 교장 또는 원장, 안전 및 보건관리자는 본청 안전복지과 산업안전보건팀에 안전관리자 2명과 보건관리자 2명이 선임되어 있으며, 현업종사자 수에 맞춰 「산안법」을 이행하고 산업안전보건 총괄 부서 역할을 수행한다.

그 외에 다른 과나 지원청에는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가 임용되어 있지 않으며,

안전보건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으나, 타 업무를 겸직하고 있다.

3. 주요 사업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상시 현업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안전보건 인력을 선임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사고원인통제 활동으로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 안전보건 관리 대행 용역, 산업재해 발생 시 사고조사 및 후속 조치를 수행한다. 또한,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해 현업종사자와 관리자를 대상으로 법정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한다.

4. 안전보건관리체제 운영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교육청(본청) 단위에서 1개가 운영되며, 분기별로 1회 정기회의가 개최된다. 이 위원회에는 근로자위원 10명이 참여하며,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교원과 공무원도 참여한다. 공무원 노조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공공운수노동조합에 소속되어 있고, 교원노조는 전교조(영양교사), 공무원노조는 전공노와 한공노(시설관리직, 조리공무원 등)가 참여하고 있다.

현업업무종사자 관리대상 직종에는 학교시설물 및 설비 장비 유지관리업무 등의 유지관리업무는 시설관리, 전기, 농림, 기계운영, 운전원, 청소원이 있고, 학교경비 및 학생 통학 보조업무는 당직전담원, 출입문개폐요원, 통학차량안전도우미, 통학지도원, 학교보안관이 있다. 또한, 조리실무 및 급식실 운영 관련 업무는 영양교사, 영양교사, 조리사, 조리실무사가 포함된다. 시설직(토목/건설)과 공업직(전기/기계)은 현업종사자가 아닌 행정직이고, 영양교사는 교원, 조리사와 운전원은 공무원의 지위에 있지만 현업직종으로 관리된다.

도급사업 등의 안전보건관리체제 운영에서는 도급사업에 대해 교육감이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이며, 중대재해 담당 주무관과 안전관리자의 업무에 해당한다.

5. 안전보건활동

본청은 위험성평가를 1년에 160개소를 정기 점검하고, 총 630개소에 대해서는

2~3년에 한 번씩 점검한다. 학교 및 기관 630개에 대해서는 매년 위험성 평가를 위탁하여 실시한다. 본청 안전 관리자 등이 산재가 발생한 학교에 직접 나가서 시설 및 서류 미비 사항을 확인한다.

학교 단위에서의 위험성 평가는 학교 전반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과학실의 전체 시설과 장비를 점검하며, 화학 약품에 대해서는 MSDS 항목을 확인한 후, 업체에서 화학 약품을 정리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행정실에 시설직 주무관이 없는 경우나 작은 학교의 경우 학교의 행정실장이나 교장에게 위험성 평가 실시 결과를 강평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는 방식이다.

작업환경 측정의 경우 본청에서 대상자를 지정 및 제후 병원에 인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작업환경 측정의 대상자는 주로 급식실에 종사하는 영양교사,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등이다.

현업종사자(청소, 시설 등)의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하는 학교에서는 소음에 대해 특수 건강검진을 진행한다.

본청 안전 관리자는 현업업무 종사자의 사고 결과를 보고받고, 시설 미비점 등을 살펴보면서, 사고의 정황 등을 확인한다. 사고 발생 건수가 가장 많은 직종은 조리원이다. 사서의 경우 산재가 아주 가끔 발생하는데, 이는 1년에 한 번 정도 발생한다. 특수 지도사의 경우도 산재가 아주 가끔 발생한다.

6. 안전보건교육

근로자 교육은 현업 부서의 관리감독자(주로 공무원)와 현업종사자(공무원,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현업업무 외의 직종에 대해서는 「산안법」에 따라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다.

관리감독자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 자체 교육과정(연 4회)과 온라인 교육과정(상시)을 개설하고, 교육대상자가 희망하는 교육에 참여하여 법정 교육시간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근로자 교육과정은 주로 위탁 교육으로 진행되며, 온라인 교육은 전문 교육기관의 콘텐츠를 활용하여 이루어진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관리자는 법정 교육시간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이수하며, 근로자 교육으로 안전보건관리감독자는 연간 16시간의 교육을 자율적으로 집체 교육이나 온라인 교육으로 선택하여 이수한다. 현업종사자 정기 교육은 반기마다 12시간을 실시하며, 집체 교육은 1, 3분기에 50%, 나머지 분기는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한다. 현업종사자 채용 시 교육은 채용 시 8시간을 집체와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하며, 콘텐츠는 자체 개발한다.

방학이 있는 분기에는 집체 교육을 실시하고, 학기 중에는 온라인 교육을 실시한다(산업 안전보건위원회에서 교육 기간에 따른 방식을 정한다).

7. 유해·위험 인식 및 관리 의견

급식조리원과 시설관리 등 현행 법상 현업 업종의 위험도나 사고 빈도가 여전히 높다. 이는 특히 조리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의 수가 과반수를 차지함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추가로 특수교육지도사와 통학차량 보조원의 위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산안 교육은 조리 종사자 위주로 운영되고 일반적인 내용으로 실시되어 특정 직종에 적합한 내용이 교육되지 않기에, 운전직(공무원)은 교육 시간이 너무 많다고 한다. 현업종사자의 직종이 다양함을 인지하고 있으나, 안전보건업무 담당자 수 대비 대상 직종이 다양하여 일괄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밖에 없다. 운전직이 왜 현업업무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으며, 교통공단 등에서 안전운전 관련 교육을 이수할 시 산안 교육을 같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수행 업무를 기준으로 하는 현업업무 종사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업무의 유해·위험도를 살펴본다면 다른 직종도 지속적으로 편입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업무를 구분하지 않고 전면 적용하는 방안이 논란이 없을 것이다.

시도교육청 내의 모든 사업소와 학교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은 통일적인 관리기준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만, 현장(학교) 단위의 안전보건 활동을 촉진하는데 한계가 있다. 단, 학교 단위로 사업장을 해석하면 50인 미만으로 체제 구축이 곤란하다. 25개 지원청에는 안전 관리 담당자(겸직)가 지정되어 있으나, 문서를 수신하여 학교로 시행하는 역할 정도를 수행한다. 직종이 다양하지만 교육청 본청의 관리 인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더라도 그 내용은 공통적인 내용으로 채울 수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의무 교육 시간이 많아진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기관 유형	광역시교육청(I)	일시	2024.09.27
인터뷰 대상자	안전복지과 중대재해관리팀		

1. 인터뷰 개요

000교육청에서 대상은 안전복지과 중대재해관리팀은 팀장과 주무관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대재해관리 업무와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시설·장비 유지관리 업무의 시설관리직, 미화원, 당직전담원, 학생통학보조 업무의 통학차량운전원, 특수통학차량실무사, 통학차량안전, 지도요원, 급식관련 업무의 영양교사,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로 고용노동부고시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에 의하여 관리하고 있다.

2.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교육청의 부교육감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본청과 소속기관,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의 현업업무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을 선임하고 있다. 본청에서는 안전보건관리를 총괄하며,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도서관장, 학교장을 관리감독자로 선임하고 본청의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지도와 조언을 하고 있다.

3. 주요 사업 및 활동

안전보건계획수립,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실시, 관리감독자의 정기안전보건교육실시, 채용시 교육 실시와 사업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점검에 관한 사항,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사고발생 시 교육감은 그 원인을 조사·발굴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추진하며, 관리감독자는 사고 발생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시 협조하도록 고시하고 있으며, 교육감은 매년 전년도에 관할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해 발생원인 등을 총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4. 유해·위험 인식 및 관리 의견

교육청이 소속기관과 학교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의 주체가 되고 있어 실제 각급학교의 안전보건관리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현업업무 종사자에 대한 고시에 근거하여 「산안법」 상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라는 의미로만 해석되고 있어 실제 안전보건 활동과 관련된 책임의 주체가 모호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현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은 현재 부담하는 관리상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으로 판단되며, 현업업무 전반에 대한 면밀한 조사 후 보호 대상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현업종사자의 통계 관리 등 체제 구축 등의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4. 인터뷰(유해·위험 대상 업무 종사자 인터뷰 현황)

- 인터뷰 참여 현황 -

소속	구분	대상	개소	인원
공공행정	1	수도검침	1	2
	2	방문간호사, 방문상담	2	2
	3	보건소	3	5
	4	농작업 대행 및 농기계 대여, 임대 및 수리	3	5
	5	콜센터 상담	1	1
	6	주차, 하천 단속	3	5
	7	도서관 사서	2	2
	8	체육시설 강사*	1	1
	9	산림보호 등 현업**	1	2
학교	10	특수교육 실무사	2	2
	11	과학실무사	2	2
	12	도서관 사서	2	2
	13	수상안전요원	-	-
국방행정	14	시설, 환경미화, 조리 등 현업**	4	4

* 현업에 해당하는 체육강사는 교대근무로 운영팀 관리자 면담으로 대체

** 현업에 해당하는 국방행정과 산림보호는 안전보건담당자 FGI로 운영실태 확인(중복 제외)

기관 유형	(00 광역시청)	일시	2024.09.09
인터뷰 대상자	수도 검침 담당자		

1. 인터뷰 개요

수도사업소 요금팀 소속의 수도 검침 업무 담당자 2명이다. A수도 사업소 공무원 주무관은 5년차, B수도 사업소 공무원 주무관은 13년차로 근무하고 있으며, 수도사업소 내에서 전보가 가능하고 업무는 동일하다. 수도사업소는 상수도 사업본부 산하 4개 부서 중 하나로, 산하 사업소에는 수도시설관리소, 정수사업소(4개), 수도사업소(5개)가 있다. 수도사업소 내에는 관리팀, 요금팀, 급수 1, 2팀, 수질안전팀이 있으며, 요금팀 내 수도검침원은 공무원, 전환 기간제, 단기기간제로 근무하고 있다. 종사자 현황은 수도검침원이 181명으로, 그 중 55세 이상이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은 25%가 근무하고 있다.

2.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현황으로는 본원에 공무원 2명(22년 차, 2년 차)과 기간제 1명, 분원(용유)에 기간제 1명이 배치되어 총 4명이 근무 중이다. 공무원(2명)은 농기계 순회 수리 및 교육, 정비 및 수리비 지원 사업, 행정을 담당하고, 기간제(2명)는 농기계 임대 업무를 맡고 있다. 보유 기계로는 경운기, 예초기 등 54종 100여 대가 있다.

3. 주요 사업

수도검침은 매월 21일부터 익월 4일까지 14일간 진행되며, 검침 과정은 수도 계량기함을 찾아 덮개를 개방한 후, 계량기의 숫자를 확인하고 이를 모바일에 입력하고, 사용량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사용량이 갑자기 증가하거나 감소할 경우 민원 안내를 하는 방식이다. 검침 작업 시 확인 사항으로는 계량기 숫자 확인, 계량기의 작동 상태(회전 여부 등) 확인, 계량기함의 봉인 상태 점검, 계량기 설치 상태(역설치 등) 확인, 기물 번호 확인, 실사용자 정보 확인이 있다. 고지서 송달은 매월 14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며,

이와 함께 고객정보를 현행화한다. 홍보물 송달은 수시로 진행된다. 체납 독려는 상시로 진행된다. 정수/개선 작업은 필요시 수행되며, 이는 체납 독려 후 사후 업무로 수도를 잠그거나 여는 작업을 포함한다.

4. 안전보건관리체제 운영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별 현장 근무자 수에 따라 운영한다. 현장 근무자 수가 100명 이상인 사업장(A사업장)은 자체적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하고, 100명 미만인 사업장(B사업장)은 본청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합 운영한다. 두 사업장 모두 소속 근로자가 참여하며, 근로자위원은 공무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민주노총)에서 지정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피복비와 안전용품 구매, 수도전 설치 위치 조정, 규정 위반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 요청, 원격검침 설치 대상 협의, 폭서기 및 흑한기 건강 보호 방안(식염, 아이스 조끼, 핫팩 지급 등)을 협의한다.

5. 안전보건교육

교육 시간은 본청에서 실시하는 온라인 영상교육 12시간(3시간씩 분기별 1회, 총 4회)과 사업소 차원에서 관리감독자가 주도하는 월 1회 집체교육(1시간), 안전보건담당자가 주도하는 집체교육(연 1회, 이슈가 있을 때)으로 구성된다. 교육 방법은 온라인 교육(연 12시간)과 집체 교육(연 12시간)으로 나뉘며, 교육 내용은 업무 수행 중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와 예방 대책, 민원 사례, 업무 수행 방향 등을 포함한다.

6. 유해·위험 인식 및 관리 의견

소속 지자체에서는 수도검침원을 현업종사자로 관리하고 있으며, 업무 수행 중 산업재해 위험이 높아 「산안법」 상 현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위험 장소에 대한 원격검침을 확대해야 하며, 수도 계량기를 설치할 때부터 안전한 장소에 계량기를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대한 협의는 산보위 등에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옥외 작업 시 계절적인 요인에 의한 위험이 높고, 장시간 도보 이동 등이 필요하므로, 이를 위한 피복비(신발 포함) 및 안전용품 등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기관 유형	(00 구청)	일시	2024.10.04
인터뷰 대상자	방문상담(의료급여관리사) 업무담당자		

1. 인터뷰 개요

인터뷰 대상은 사회보장과 생활보장팀의 주무관으로, 공무원에 속하며 의료급여관리사 및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A주무관은 현재 경력 6년 5개월이며, 해당 업무에서의 총 경력은 9년이다. 이전에는 보건소에서 방문간호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2.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사회보장과는 약 45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의료급여관리사는 4명, 기간제는 3명이 있다.

조사팀은 동에서 신청을 받아 조사 및 조회를 진행하고, 의료급여 수급자를 선정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관리팀은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생활보장팀은 생계보장 지급과 의료급여 지출 등 행정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3. 주요 사업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에게 의료급여 이용 안내와 과다 이용자 상담 업무를 수행한다.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 확인과 제재는 등 업무는 복지부와 서울시의 공동사업으로 구청에 위임된 업무이다. 업무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수급자) 10,000명 중 약 2,500명에 대해 의료급여 제도를 안내한다. 둘째, 과다사용자 지도, 신규질환자 중 방문상담이 필요한 대상자와 과소이용자에 대한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 내용으로는 상해요인 조사(제3자 구상 또는 본인 과실 부담금 확인)와 질환별 상환일수 상담이 포함된다. 이는, 의료급여 일수 연장승인 신청과 특정 병원에서의 선택의료급여 신청과 관련된 상담으로 사용 가능 여부 확인의 문의가 자주 발생한다. 셋째, 병원에서의

중복 청구 여부를 확인한다. 방문 상담은 주로 과다사용자, 신규대상자 중 질환이 여러 가지인 경우, 과소이용자에게 필요하다. 나머지 시간은 주로 행정업무인 민원 확인 전화와 서류 처리에 사용된다.

4. 안전보건관리체제 운영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존재하는 것은 알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이나 공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 다만, 팀 내에서는 상시적으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통에 어려움은 없다.

5.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은 별도로 정해진 프로그램은 없으나, 평소 팀장 등이 회의나 공지 형태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마음건강 프로그램(교육 및 상담 등)에 참여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교육 시 유사 직무별로 정보교류 및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또한, 의료급여관리사 정기 교육(신규, 경력)을 보건복지부 인재개발원(오송)에서 1박 2일 동안 받을 수 있으며, 교육과정에 따라 안전 관련 내용이 일부 포함될 수 있다. 이 교육은 연 1회, 2시간 이내로 진행된다.

6. 유해·위험 인식 및 관리 의견

업무의 특성상 사고 위험은 교육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며, 업무 프로세스와 노하우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별도의 안전보건교육은 불필요하다고 인식되고 있다. 실적 달성을 위해 모든 세대를 2인 1조로 처리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보호구로 마스크 등의 지급이 필요하며, 복지부와 서울시의 공동사업으로 보호구와 사업 프로세스 등에 대한 개선은 정부와 시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기관 유형	(00 시청)	일시	2024.08.14
인터뷰 대상자	보건소 진료(재활실)/방문간호사 업무		

1. 인터뷰 개요

보건정책과 지원보건팀의 A주무관(재활) 1명과 보건정책과 방문 건강 관리과의 B주무관(간호사) 1명입니다. A주무관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8년차이며, 재활 치료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B주무관은 간호사로 7년차이며 취약계층 방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직 현황은 본청 위생과, 시흥시보건소(3개 과), 정왕보건지소,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등 4개 기관에 약 20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방문건강과에는 사회복지사 2명, 행정복지사 2명, 방문 간호사 16명 등 총 20명이 근무하고 있고, 이들 모두 여성입니다.

2. 주요 사업

보건소 진료팀(재활)의 업무로는 재활 업무를 담당하며, 장애인 등 방문 민원인 대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자율 프로그램으로 시흥시 권역별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을 위한 운동, 심리치료, 비대면 수업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과거에는 방문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나 현재는 집체 프로그램만 운영하고 있다. 행정업무로는 프로그램 기획과 세부 예산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방문건강관리센터는 가가호호 자택 방문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해 2~3개월 주기로 자택 건강 서비스(혈압과 당뇨 체크 및 상담)를 제공한다. 또한, 경로당 등 집단관리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해 집단 건강 서비스(혈압과 당뇨 체크 및 상담) 및 교육을 제공한다. 방문 시에는 (밴드, 필라테스 박스, 모래주머니, 혈압과 당뇨 체크 기기, AIOT 스마트폰 디바이스 연동 기기)를 사용하고, 출장 시에는 관용차나 자차를 이용한다. 간호사 1명당 300~400가구를 담당하며, 집단 관리가 제외될 경우 200가구 수준이다. 한 달에 80~100건을 수행하고 하루 평균 5~6건을 처리한다. 그러나 담당 가구 수가 많아 2인 1조 작업은 어려운 상황이다.

3. 안전보건관리체제 운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대해 알고 있으나 참여 대상이 아니며, 보건소 내부 회의에서 의견을 제시한다. 안전보건담당자는 주무팀에서 안전보건 관련 공문을 접수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위험성평가는 본청의 계획에 따라 전 부서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인터뷰 대상자는 자신의 부서에서 위험성평가가 진행되는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주로 보건소 주무과와 현업종사자(시설관리 등)만 참여하는 것으로 보이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안전 보호구(감염 예방 등)가 지급된다. 안전사고(아차사고, 민원 등 포함)나 위험이 발생할 경우, 보건소 내 시설 관리과의 도움을 받아 위험요인을 해결하고, 재해 발생 시에는 개인이나 각 팀 차석이 본청 행정과 담당 주무관에게 공문을 보내어 처리된다.

4. 안전보건교육

보건소 진료팀의 교육으로는 비상대응 훈련은 소방서와 합동으로 진행되며, 그 외에는 별도의 훈련이 없다. 필요시에는 구두로 안전에 관한 교육이나 지시가 이루어진다.

방문건강관리센터의 교육은 비상대응 훈련은 소방서와 합동으로 진행되며, 그 외에는 별도의 훈련이 없다. 통합 건강 증진사업 지침서(건강증진개발원)에서 인력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며, 지침서에 따라 보수교육을 진행한다. 자택 방문 시에는 2인 1조로 작업을 실시한다.

5. 유해·위험 인식 및 관리 의견

보건소 진료팀의 업무는 주로 프로그램 운영 등 행정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일반 병원의 업무와 달리 공공행정의 성격이 강하다. 악성 민원에 대한 대처와 개선을 위한 교육 또는 의견수렴은 필요하나, 규정 등을 통해 강제적으로 이를 실행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방문건강관리센터의 경우 신규 인력에 대한 교육이 필요해 보이며, 교육 내용은 보건 계통 전공자로서 감염에 대한 전문 지식은 갖추고 있지만, 악성 민원 대응이나 직무 스트레스 관리 등의 교육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외근 등 바쁜 업무로 인해 교육 진행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기관 유형	(00 시청)	일시	2024.10.04
인터뷰 대상자	보건소/진료업무, 안전보건 업무		

1. 인터뷰 개요

인터뷰 대상은 A주무관(진료 업무 담당)과 B주무관(안전보건 업무 담당)이다. A주무관은 2024년 9월 25일부터 진료 업무를 담당하며, 보건소 전체 경력은 9년이다. B주무관은 2024년 9월 25일부터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보건소 전체 경력은 5년이며, 간호사로서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

조직 현황은 4개 과(보건행정과, 정신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로 구성되어 있다. 인터뷰 대상자는 보건행정과 소속이며, 보건행정과 내에는 진료팀, 보건행정팀, 의학팀이 포함되어 있다. 기준에 따르면, 보건소 현업종사자는 조리 2명(공무직 1명, 기간제 1명)과 시설 유지관리 2명(공무원 1명, 기간제 1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현재 기준으로는 조리 3명(공무직 1명, 기간제 2명), 시설 유지관리 3명(공무원 3명)으로 확인된다.

2. 주요 사업

(1) 감염병 관리

감염병관리과는 코로나 이후 새로 생긴 부서로, 최근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철에 맞춰 기간제 3명이 신규 채용되었다. 보건소는 총괄적인 역할을 하며, 읍/면/동에 각 담당자가 배치되어 실무를 현장에서 수행하고, 보건소는 이를 총괄 관리한다. 또한, 방역업체와 용역 계약을 맺어 서산시 전체 소독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 의료기관 점검 및 관리

최근 의사 파업으로 인해 의료기관 점검 및 관리 업무가 집중되고 있다. 이 업무에는

약국, 의원, 의료소 등 모든 의료기관이 포함된다. 또한, 재난 훈련, 응급의료소 설치, 재난 발생 대응 시나리오 실시 등의 활동도 진행되고 있다.

(3) 방문건강관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재택방문은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에서 담당하며, 경로당 관리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다.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에는 방문간호사 6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이들은 모두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4) 재활

방문보건팀은 2024년 9월 30일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개소하였으며, 해당 센터에서 재활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이 재활 업무에는 음식, 금연, 절주, 영양, 신체활동 등이 포함된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보건소에서 관리하며, 지소와 비슷한 개념으로 운영된다.

3. 안전보건관리체제 운영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안전보건담당자는 주무관이 맡고 있다. 위험성 평가는 시설직 주사님이 담당하며, 청사 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점검한다. 작업환경 측정은 구내식당의 락스, 페놀 등 유해인자 유출 여부를 점검하며, 하루에 약 6시간 정도 소요된다. 주무관(안전총괄과 보건관리자)은 작업환경 측정 시 현장점검을 함께 진행하며, 점검은 2~3회 정도 이루어진다. 특수건강검진은 실시되지 않았으나,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안전총괄과에서 공지했다. 구내식당에서는 마스크와 복장이 제공되며, 임상병리실에는 방독마스크와 방진마스크가 지급된다. 최근 작업환경 측정 후 방독/방진마스크 개선 요구가 있어 이에 맞춰 추가로 준비되었다. 별도의 규정이나 매뉴얼, 조례/법령은 없으며, 안전사고나 위험 발생 시에는 특별한 의견 수렴 절차는 없지만,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자(이OO 주무관)에게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있다.

4. 안전보건교육

현업종사자는 매월 1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비현업종사자에 대한 별도의 교육은 진행되지 않는다. 팀장님은 관리감독자로서 별도의 교육을 받으며, 외부 집합교육을 통해 연 2회 16시간씩, 1박 2일 과정으로 교육을 받는다.

5. 유해·위험 인식 및 관리 의견

현업과 비현업종사자 구분한 안전보건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현업종사자는 실외나 현장에서 직접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유해환경에 더 자주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공공기관에서 "현업"의 정의에 대해 직관적으로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실내 사무직은 비현업으로, 실외 업무자가 현업으로 구분되는 기준이 모호하다고 느낀다. 또한, '조리시설 및 급식실 운영 등 조리시설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전보건관리 법령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조리실무는 사람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를 구체적으로 다룰 법령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에서는 현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현업종사자 범위 확대의 필요성은 크게 느끼지 않는다.

기관 유형	(00 구청)	일시	2024.10.04
인터뷰 대상자	보건소 담당자		

1. 인터뷰 개요

인터뷰 대상은 A팀장과 안전관리자의 면담으로 이루어졌다. 보건소는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생활보건과, 의약과와 보건지소 4개가 운영 중에 있으며, 현업부서별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 근로자의 채용 등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보건소의 안전관리자를 본청이 아닌 보건소에서 채용하여 안전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2. 주요 사업

보건위생, 건강증진, 생활보건 등으로 부서가 크게 구분된다.

재활 업무는 장애인 등 방문 민원인을 대상으로 하여 장애인 프로그램 수행과 행정 업무가 많으며, 근골격계질환, 감정노동 등에 노출되어 있다.

3. 유해·위험 인식 및 관리 의견

보건소의 업무에 대해 현업과 비현업의 구분은 크지 않다. 「산안법」에 의하여 보호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다른 구에 비하여 독립적으로 안전관리르 근수행하고 있어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에 의하여 보호 대상으로 지정이 된다면 교육 이외는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기관 유형	(00 시청)	일시	2024.10.04
인터뷰 대상자	농업기술센터/농기계임대사업 안전보건 담당자		

1. 인터뷰 개요

인터뷰 대상의 A주무관은 서산시청에서 약 5년 동안 근무했으며, 안전보건 업무는 약 3년 정도 담당한다. 공무원 경력은 약 9년이다. B주무관은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과 임대사업을 담당한다.

2.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농업기술센터는 총 120~130명의 인원이 근무하며, 농업지원과 농업기계팀에는 공무원 11명, 기간제 2명, 공무원 3명이 소속되어 있다. 현업종사자로는 공무원 2명(운전직 1명, 안전보건 담당 1명), 공무원 11명(사무직 2명, 현장수리 9명), 기간제 2명(임대/수리) 등 총 15명이 해당되었으나, 최근 안전보건 담당자인 이O구 주무관이 현업종사자에서 제외되어 현재 현업종사자는 14명이다. 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들은 모두 지게차 차량 자격증과 농기계 수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각 분소의 인원은 총 2명으로, 농기계 입출고 시에는 바쁜 상황에서 2명 모두 해당 업무에 참여하게 되어 다른 업무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

3. 주요 사업

(1) 농기계 순회 수리, 교육

농업기계팀에는 전문경력관 1명, 운전직 1명, 공무원 1명이 소속되어 있다. 이들은 마을마다 돌아다니며 농기계 수리를 진행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주로 소형 농기계 수리를 담당하며, 이장이 동네 방송을 통해 수리가 필요한 농기계를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안내하면, 농기계팀이 현장으로 나가 수리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2) 농기계 임대, 배달

농업기계팀이 보유한 기계는 총 82종 1,090대에 달하며, 이 기계들은 4개의 수리소를 통해 관리되고 있다.

(3)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

마늘, 양파, 인삼, 콩 등 주요 발작물에 대한 기계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4) 농기계 점검/수리

본소 1곳과 분소 3곳에서 임대사업소 내 농기계를 자체적으로 수리하고 있다.

4. 안전보건관리체제 운영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본청에서 실시되며, 임대사업소 소속 근무자 중 참여하는 사람은 없다. 안전보건담당자는 주무관이며, 위험성평가는 정기 및 수시로 실시된다. 특수건강검진은 해당 없으며, 작업환경측정은 실시된다. 안전 보호구로는 안전화, 안전모, 장갑, 토시, 작업복, 고글, 마스크 등이 지급되며, 별도의 규정이나 매뉴얼은 없다. 안전사고(이차사고, 민원 등 포함)나 위험 발생 시에는 담당자에게 이야기하여 내부적으로 처리되며, 큰 사고의 경우 본청에 보고하여 산재 처리 한다. 산재 현황으로는 작년 2건, 올해 1건이 있었다. 작년의 2건은 농기계 부속을 들고 있다가 놓쳐 손가락과 발가락 골절, 쪼그려 앉아서 수리 작업을 하다가 인대 염증이 발생한 사건이었으며, 올해의 1건은 기계 조인트를 잘못 빼서 무게를 견디지 못해 손톱이 빠진 사고였다. 올해의 사고는 산재처리는 하지 않았으나 본청과 노동부에는 보고되었다.

5. 안전보건교육

온라인 교육은 반기마다 12시간씩 실시되며, 교육기관은 00협회에서 제공한다. 현업종사자들은 현장을 떠날 수 없기 때문에 본청에서 매월 실시하는 집체교육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대신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한다. 또한, 팀장님은 관리감독자로서 주기적으로 현업종사자들에게 안전관리 지도를 실시한다.

6. 유해·위험 인식 및 관리 의견

현업/비현업종사자 구분한 안전보건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임대사업소 특성상 비현업종사자라도 현장 업무에 투입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현업종사자를 지정하여도, 임대사업소 시설은 오래되어 법과 규정에 따라 맞추어 업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현업종사자 구분도 중요하지만, 그에 맞는 시설을 먼저 갖추고 안전관리를 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임대사업소의 새로운 모델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며, 전국적으로 임대사업소가 매우 많은데 모든 곳이 노후화되어 있다.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소가 자동화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어야 한다. 현 시설은 창고 내에서 농기계수리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협소한 공간과 제한된 자원으로 인해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별도의 안전보건 관리 법령 마련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 공공기관 종사자 「산안법」적용 범위 기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별도의 안전보건관리(조직구성, 교육실시)에 관한 법령 마련이 필요한 업무는 현실적으로 별도로 안전보건관리를 시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종사자 「산안법」적용 범위 기준은 잘 모르겠다. 별도의 안전보건관리(조직구성, 교육실시)에 관한 법령 마련이 필요한 업무는 별도로 안전보건관리를 시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업종사자 전체 인원수 등을 고려할 때, 별도의 관리 없이 현재처럼 한 번에 관리해도 무방할 것이다. 현업종사자 범위 확대의 필요성 및 효과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비현업으로 분류되어 있어도 현장에 투입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다. 기타 의견으로는 인력이 부족한 상태이다. 농림부 지침에 따르면 농기계 1,090대 이상일 경우 현장 관리에 적정 인력이 약 20명이 필요하지만, 현재 임대소는 12~13명으로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인력 충원 요청을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 수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기관 유형	(00 군청)	일시	2024.09.27
인터뷰 대상자	농업기술센터 안전보건 업무담당자		

1. 인터뷰 개요

예산군청 산하 사업소인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농기계팀에 속한 공무원 1명이다. A 주무관은 5년 차로, 지게차와 굴삭기 면허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관련 기계 정비 자격증도 갖추고 있다.

2.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농기계팀은 본소에 공무원 3명, 공무원 3명, 기간제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소도 운영되고 있다. 프로그램(출고 등)과 임대사업 결제는 공무원 1명이 담당하고 있으며, 임대사업 운영과 고령자 농작업 대행은 공무원 1명과 기간제 4명이 담당한다. 또한, 임대 운영과 순회 수리 및 교육 업무는 공무원 1명과 기간제 1명이 수행한다. 순회 수리는 2인 1조로 진행된다. 보유 기계로는 굴삭기와 제초기가 다른 기계에 비해 위험성이 더 높다. 그 외에도 관리기, 수확기, 탈곡기 등 다양한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논두렁조성기가 가장 많이 보유된 기계로 14대가 있다. 총 보유 농기계는 본소 400여대를 포함해 분소까지 합하면 약 7~800대 정도이다.

3. 주요 사업

농기계 대여와 농기계 순회 수리 및 교육이 있다. 이는 방문하여 농기계를 수리하고 점검하며, 농기계 사용법 및 수리 교육도 제공한다. 또한, 농기계 점검 및 수리는 민원인 기계와 임대 기계에 대해 점검하고 수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농작업 서비스는 실제 고령자 등이 대상으로 밭을 갈아드리는 등의 작업을 포함한다.

4. 안전보건관리체제 운영

농업기술센터는 3개 부서(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6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 센터는 본청의 안전보건관리체제에 통합되어 구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산군수는 안전보건경영책임자이며, 예산군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본청의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선임 현황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기술센터의 센터장과 각 팀의 현업업무자 중에는 관리감독자 1명이 지정되어 있다.

5. 안전보건교육

분기별 1회 정도 현장 안전점검이 실시된 것으로 기억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보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며, 별도의 고지도 받지 못했다. 군청 안전관리과에서 관련 업무를 모두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매월 1회 사무실에서 1시간 동안 정기 교육을 받으며, 교육 강사는 자체적으로 진행하거나 외부에서 초빙한다. 관리감독자 교육은 군청에 가서 받으며, 본인도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4시간씩 교육을 받았다. 또한, 인터넷 교육도 수강하고 있다.

6. 유해·위험 인식 및 관리 의견

보호구 및 안전용품 등의 구매는 팀장에게 보고하여 적절하게 구비하는 편이며, 작업환경과 시설은 양호한 상태이다. 군청 안전관리과에서도 필요한 물품을 요청하면 구매하여 제공한다. 안전보건 교육은 위험 사례를 알려주어 매우 도움이 되며, 자체 기관과 본청 안전팀에서 지원한다. 교육 내용으로는 고소작업, 사다리 사용, 화학물질 관련 교육과 정보 제공이 포함된다. 근무 시간은 8시부터 18시까지이며, 일일 9시간 근무 후 1시간 초과근무가 발생한다. 또한, 농번기와 농한기의 업무량 차이가 큰 특성이 있다.

기관 유형	(00 광역시청)	일시	2024.07.19
인터뷰 대상자	농기계 임대·수리 담당자		

1. 인터뷰 개요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내 공무원 1명과 기간제 1명이다. 이들의 경력은 A 주무관이 2년 차로 농기계 및 안전보건 관련 자격증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B 근로자는 8개월 차로 농기계 임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현황으로는 본원에 공무원 2명(22년 차, 2년 차)과 기간제 1명, 분원(용유)에 기간제 1명이 배치되어 총 4명이 근무 중이다. 공무원(2명)은 농기계 순회 수리 및 교육, 정비 및 수리비 지원사업, 행정을 담당하고, 기간제(2명)는 농기계 임대 업무를 맡고 있다. 보유 기계로는 경운기, 예초기 등 54종 100여 대가 있다.

3. 주요 사업

농기계 임대는 54종 100여 대의 농기계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농기계 순회 수리 및 교육은 방문을 통해 농기계를 수리하고 점검하며, 농기계 사용 및 수리 교육도 제공된다. 농기계 점검 및 수리는 민원인 기계와 임대 기계에 대해 점검과 수리를 진행한다. 수리비 지원 사업 등 행정 업무는 관내 9개 수리소를 통해 농민들에게 농기계 수리비 보조사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4. 안전보건관리체제 운영

농업기술센터는 4개 부서에 약 4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사업의 목적과 조직, 장소가

독립되어 있지만, 인력 규모가 작아 본청의 현장 근로자와 합산하여 본청의 안전보건관리체제에 통합되어 구성된다. 안전보건 경영책임자는 시장이 맡고,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는 행정부시장이 담당한다. 농업기술센터장은 안전보건 관리책임을 대행하며, 센터 기술보급과장은 관리감독자 역할을 수행한다. 본청에서는 안전관리자 2명과 보건관리자 1명이 활동하고 있다. 안전관리 및 보건 관리는 대행기관을 통해 매월 지도점검과 교육 지원을 받는다. 또한, 농업기술센터는 본청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보위)에 참여하며, 공무원 노조에서 추천한 근로자 위원으로도 참여하고 있다.

5. 안전보건활동

위험성평가 대상은 본청을 포함한 9개 사업소이며, 해당 활동은 매년 4~5월 중에 실시된다. 주체는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직무대행)가 총괄하며, 위험성 평가 담당자는 계획 수립과 정보 수집을 담당한다. 관리감독자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감소 대책을 실행하며, 종사자는 의견을 개진하고, 지침 준수 및 평가 활동에 참여하는 등 각 주체별로 역할을 분담하며, 비일상적인 업무(수리, 정비 등) 중 위험 작업은 안전작업 허가서를 통해 위험성 평가를 보완한다. 위험 작업에는 화기, 밀폐공간, 증장비, 고소 작업, 정전 활선 작업 등이 포함된다.

작업환경측정 대상(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에 노출이 있는 사업장은 본청을 포함한 여러 사업소에서 점검을 실시하며, 본청의 경우 시민봉사와 발간실에서는 소음과 분진, 해양환경정화선과 수산과 어업지도선에서는 소음, 토목시험실에서는 화학물질, 소음, 분진에 대한 측정이 이루어진다. 또한, 8개 사업장은 각자 측정을 실시하며, 예를 들어 연구원 등 실험실,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시립박물관 보존처리실 등에서 관련 측정이 진행된다.

조리, 경비 등 유해 인자(화학물질 및 야간작업) 등에 노출되는 근로자는 약 300여 명이다. 사업소에서 명단을 제출하고, 특수검진기관에 의뢰하여 검진을 실시한다. 이후 검진 결과가 통보되며, 유소견자가 발생할 경우 사후 관리가 이루어진다.

6. 안전보건교육

교육 대상은 센터장(관리책임자), 과장(관리감독자), 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로 구분된다. 센터장과 과장은 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교육을 받고 있으며, 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다. 근로자 교육은 온라인 교육 과정으로, 반기 12시간, 연간 24시간을 이수하고 있다. 교육 내용은 공단 또는 민간 교육기관에서 제작한 동영상 자료를 통해 제공되며, 「산안법」 상의 교육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농기계 작업이나 수리에 관한 내용은 교육에 반영되지 않는다.

7. 유해·위험 인식 및 관리 의견

보호구와 안전용품 등의 구매는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작업환경과 시설도 양호한 상태이다. 그러나 작업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1인 중량물 인양 등의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으며, 임대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도 수리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를 겪고 있다. 정기 안전보건교육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농기계 수리 정비에 관한 교육 기회가 부족한 상황이다. 농기계 수리 정비의 특수성으로 외부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전문 과정도 부족하여, 내부에서 담당자가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강사 육성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강사료 등의 인센티브 지원이 필요하며, 내부와 외부 안전교육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청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보위)에는 공무원 노조의 추천을 받은 근로자위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센터 내부에서도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인력 충원에는 조직 내 한계가 존재한다.

기관 유형	00행정부	일시	2024.10.10
인터뷰 대상자	민원 대응 업무 담당자		

1. 인터뷰 개요

000부에서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를 통해서 민원응대를 하고 있어 별도의 콜센터 운영을 하지 않고 있지만, 안전개선과에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주요 업무로는 안전신문고 민원상담과 대응, 안전신고 분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무 수행자 전원 공무원으로 전화상담과 이에 대한 응대 업무가 많아 일부 직원의 경우 헤드셋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유해·위험 인식 및 관리 의견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선임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민원응대 업무와 관련된 활동은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 및 보건관리자 등은 공무원(환경, 미화 등), 시설 업무자 등이 주요 관리 대상으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마음건강프로그램의 운영을 인식하고 있으며, 갑질 등의 피해가 있는 경우 휴게 등의 직장내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공무원 대상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확대 적용의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상담,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관한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현재의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업무 범위를 확장하여 민원대응 등의 특수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관리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기관 유형	(00 구청)	일시	2024.10.04
인터뷰 대상자	주차단속 업무담당자		

1. 인터뷰 개요

인터뷰 대상은 주차관리과 주무관(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다. 경력은 A주무관이 12년 차(현재 소속 7년), B주무관이 4년 차이다.

2.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현황은 내근직 10명, 현장직 63명으로, 현장직은 주간 50명(오전, 오후), 야간 13명으로 나뉜다. 이들 모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3. 주요 사업

외근직은 주차단속 업무 및 순찰, 어린이보호구역 등 상시순회(2인 1조), 내근직은 민원 응대 등의 업무를 처리하며, 일반 민원 처리반은 신고접수(전화 또는 앱) - 정부 주차단속 앱 *(서울시 운영) 공지 - 담당자 출동 - 계도 또는 과태료 부과(일지작성 및 전송) - 민원실 확인 - 신고자에게 통보하는 업무를 한다. 또한, 일반 단속반은 앱으로 보고, 전담팀은 소속 팀장에게 보고한다. 서울시 교통과에서 앱을 제공(경찰, 소방 정보 공유)한다. 반복적인 민원 전담반(고질적 민원)에 대해서는 인터뷰 대상으로 경력이 있는 2인이 같이 고질 민원 출동 담당을 맡는다. 현장조치 시에 서손일 경우는 취소 및 계도, 미서손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4. 안전보건관리체제 운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여대상이 아니나, 바디캠, 2인 1조 반영 등을 통해 사업소

내 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

5. 안전보건교육

본청 주차관리과에서 채용된 주무관은 본청 소속으로 교육을 받으며, 평시에는 강남구청 도시관리공단 내 사무실로 출퇴근하여 근무한다. 공단에서 주무관의 일상적인 근태를 관리하고, 과태료 용지 등 비품을 제공한다.

주차관리과에서는 현업업무는 아니지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주차관리과 직장 교육은 매월 정기적으로 진행되며, 1년에 1~2회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이 실시된다. 관리감독자 지정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6. 유해·위험 인식 및 관리 의견

구청은 주차관리과 직원들에게 탈의실과 1인 1개 락커를 제공하는 등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신경을 쓰고 있다. 또한, 야간 근무자의 경우 특수 건강검진도 시행된다. 좁은 골목을 이동하며 단속을 진행해야 하므로, 키보드나 차량 등에 치일 위험이 있고, 주차 문제로 인해 적절히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단속 업무로 인한 민원에 상시 노출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급여와 복지 등에서 업무의 난이도와 위험도가 적절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

기관 유형	(00 시청)	일시	2024.10.04
인터뷰 대상자	건설교통국 교통과/주차단속 현장지원 관리		

1. 인터뷰 개요

인터뷰 대상은 주무관으로 현업종사자 현장 지원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사실상 관련 경력은 없다. 2024년 7월 1일자로 입사한 후, 2024년 9월 25일부터 교통과에서 현업종사자 담당 업무를 약 1주일간 수행했다. 그 이전에는 다른 사업장에서 포함하여 총 약 5년간의 경력이 있다.

2.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조직현황은 교통과의 조직 현황은 총 46명으로, 공무원 28명, 공무원 3명, 현업종사 공무원 10명, 환경미화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주요 사업

주요 사업으로는 교통시설물 설치·보수, 주차단속, 교통행정, 교통지도 관련 업무 등이 있다.

4. 안전보건관리체제 운영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본청에서 실시하며, 안전보건담당자는 주무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특수 건강검진은 해당 없음. 안전 보호구는 지급되지 않으며, 필요로 하지 않는다. 안전사고나 야차사고, 민원 등 위험이 발생할 경우, 담당자에게 알리고 가능한 팀 내에서 처리한다.

5. 안전보건교육

교육 대상자들은 월 1회 집체교육을 진행하며, 이 교육은 본청에서 총괄하여 진행된다.

6. 유해·위험 인식 및 관리 의견

현업과 비현업종사자를 구분한 안전보건 관리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안전교육 시 업무별로 세분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업과 비현업을 구분하는 것에 더 나아가, 현업 내에서도 종사하는 업무에 따라 분류하고, 각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에 맞춘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해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적용되는 「산안법」의 적용 범위와 기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또한, 도로 유지보수 등의 업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전보건 관리(조직구성, 교육실시)에 관한 법령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업종사자 범위 확대에 대한 필요성과 효과는 없다고 생각한다.

기관 유형	(00시청)	일시	2024.08.16
인터뷰 대상자	하수/하천 관리 담당자		

1. 인터뷰 개요

00시청에는 맑은물사업소의 하수관리과 소속 공무원 근로자 1명이 하수/하천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시청 입사 후 동일 직무로 4년째 근무중이며, 현장직은 전보가 없어 이동 없이 계속 현 부서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2.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00시청은 맑은물사업소의 하수관리과에 소속되어 있으며, 하수행정팀, 하수관리팀, 하수시설팀, 하수운영팀 등 총 4개의 팀으로 조직되어 있다. 한편, 맑은물사업소 내의 다른 부서(상수도과, 생태하천과)에는 현업종사자가 배치되어 있지 않다.

3. 주요 사업

업무는 주로 관내 하수 패트롤과 민원 발생 시 현장에 출동하여 문제를 처리하는 것으로, 민원 처리가 많은 시간을 차지하며, 장마철에는 망가진 관로 수리와 양수기 작업 시 대기가 필요하고, 상수, 하수, 하천 구분 없이 현장에 출동해 민원에 대응·처리한다. 주요 업무로는 하천 오수 누출 및 역류 처리, 빗물받이 청소, 나무뿌리 등에 막힌 부분 제거가 있으며, 우수관에 오수를 버리는 문제를 현장에 가서 파악하는 역할을 한다. 도로보수는 건설행정 담당하며, 공사는 용역 준설 담당이 있다. 현장직은 3인 1조로 구성된 3개 팀으로 운영되며, 업무량은 계절에 따라 달라지지만 장마철과 겨울철에 특히 많아진다.

4. 안전보건관리체제 운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는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근로자위원의 선임은 노동조합(민주노총)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이루어진다. 노동조합의 구성은 대다수가 민주노총 소속이지만,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도 일부 있다. 시설 담당 공무원 1명이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안전 보호구 지급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장비(안전화, 안전모, 조끼, 우비, 후레시 등)가 잘 지원되고 있으며, 본청에서는 폭염 시 작업 자제 및 허가받은 장비 사용에 대한 안내와 설명을 잘 제공하고 있다.

5. 안전보건교육

교육은 2주에 1회, 1시간 정도의 시간 동안 맑은물사업소에서 시행되며, 팀장이 관리감독자로 역할을 맡고 있다. 교육은 외부 위탁교육으로 진행되며,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안전화의 중요성과 성희롱 및 성추행 관련 강의가 포함된다.

6. 유해·위험 인식 및 관리 의견

현행 시청의 조치는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현장 민원 출동 시 2인 1조 출동을 철저히 지키고 있고, 장비 및 필요한 물품 제공도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 시청은 수용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으며, 산보위 등 소통 창구에서 의견을 전달하면 잘 반영된다. 교육 관련해서는 교육 내용을 다양화하고, 연령과 성향에 맞춘 공감 가능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기관 유형	(00 시청)	일시	2024.10.04
인터뷰 대상자	기후환경대기과 환경지도팀/하천단속업무 현장지원·관리		

1. 인터뷰 개요

인터뷰 대상은 주무관으로, 산단 전체 관리 및 대기, 폐수, 하천 순찰 등 현업종사자 현장 지원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경력은 약 4~5년이며, 시청 내 전체 경력은 약 8년이다.

2.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조직 현황은 기후환경대기과 환경지도팀에 기간제 6명과 공무원 7명이 소속되어 있다. 기후환경대기과의 현업종사자 분류는 시설 유지관리 업무(기간제 2명, 수질관리팀) 하천 순찰 및 단속 업무(기간제 6명, 환경지도팀)로 나누어진다. 하천 순찰 및 단속 업무는 현업업무 분류에 따로 없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에 확인 후 '환경미화 업무'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환경지도팀의 현업종사자 중 실제로 환경미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없다.

3. 주요 사업

주요 사업으로는 대기, 배수, 소음, 먼지, 수질, 폐수 관련 배출시설에 대한 환경 지도 및 점검과 안전관리 계획이 포함된다.

4. 안전보건관리체제 운영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본청에서 실시하며, 안전보건담당자는 주무관(1인)으로 지정되어 있다. 위험성 평가는 정기적으로 실시되며, 특수 건강검진은 해당되지 않는다. 일반 건강검진을 받고 있으며, 특수 건강검진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기간제 근로자들은 사업장에 들어가지 않고 하천 순찰 업무만 수행한다. 안전 보호구는 안전모,

안전화, 조끼, 팔토시, 모자, 장갑 등이 지급된다. 매뉴얼은 안전총괄과에서 만든 매뉴얼을 활용하고 있으며, 사업부에 맞는 맞춤형 매뉴얼은 없다. 안전보건과 관련한 고충이나 의견이 있는 경우 담당 주무관을 통해 소통하며, 해당 내용을 안전총괄과에 제출한다.

5. 안전보건교육

교육 대상자들은 매월 1회, 2시간씩 집체교육을 진행하며, 이 교육은 본청 안전총괄과에서 총괄하여 실시된다. 팀 내 공무원들도 현업종사자로 분류되어 있지만, 별도의 교육은 진행되지 않으며, 안전총괄과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교육을 듣기도 하지만 기간제 근로자들처럼 체계적인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공무원들은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 교육을 받는다. 팀장님은 관리감독자로서 별도의 교육을 진행한다.

6. 유해·위험 인식 및 관리 의견

현업과 비현업종사자를 구분한 안전보건 관리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공무원들의 업무가 다양하기에 이를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현업과 비현업을 나누는 기준이 정확히 알지 못한다. 만약 '현업'이 실제로 근무하는 자를 의미한다면, 기간제뿐만 아니라 팀 내 공무원들도 현장 점검 등 현업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공무원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시청에서 관리하는 현업과 비현업종사자 현황에 따르면, 기후환경대기과의 공무원들은 모두 비현업으로 분류되어 있다.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적용되는 「산안법」의 적용 범위 기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별도의 안전보건 관리(조직구성, 교육실시)에 관한 법령 마련이 필요한 업무로는 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점검이 있으며, 이는 공공행정 업무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현업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현업종사자 범위 확대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선, 유해물질이 나올 수 있는 배출시설 관리 점검, 비산/소음 발생 사업장 점검, 하천 오염 관리 등 관련 업무들이 확대되어 체계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 기간제 근로자는 공무원이 관리하고 있지만, 공무원을 케어해주는 담당자는 없다. 대기, 배수, 소음, 폐수, 수질 등의 현장 민원 발생이나 관리 점검 시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점검하고 있어, 오히려 기간제 근로자보다 공무원이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기관 유형	(00 시청)	일시	2024.10.04
인터뷰 대상자	시립도서관/안전보건 담당자		

1. 인터뷰 개요

인터뷰 대상은 주무관으로, 사서직이자 안전보건관리 업무담당자이며 관리팀 소속이다. 안전보건관리 업무는 24년 7월부터 시작했으며, 시립도서관 전체 경력은 만 4년(2020년 10월부터 현재까지)이다.

2.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조직 현황은 총 3개 팀(관리팀, 운영팀, 대산도서관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31명, 현원은 28명이다. 현원은 공무원 15명과 공무원직 1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주요 사업

주요 사업으로는 이동도서관, 도서 대출/반납, 독서문화 프로그램, 인문학 강연, 독서 행사 및 독서동아리 지원 업무가 포함된다. 이동 버스 운전직은 현업종사자에 해당한다.

4. 안전보건관리체제 운영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도서관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고 직접 관련이 없다. 안전보건 담당자는 주무관이다. 위험성 평가는 이동 버스를 대상으로 매월 진행되고 있으며, 특수 건강검진은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안전 보호구는 지급되지 않는다. 매뉴얼은 도서관별로 별도의 규정은 없으며, 본청에서 총괄적으로 배부한 매뉴얼만 도서관 내에 게시되고 있다. 안전사고(이차사고, 민원 등 포함) 또는

위험이 발생할 경우, 담당자로서 아직 경험은 없지만, 사고 발생 시 보고 후 병가처리, 병원 이송, 경과를 지켜보며 상태에 따라 추가 병가를 부여하거나 복귀하는 프로세스로 진행될 것이다. 큰 사고일 경우 안전총괄과에 보고하여 산재 처리를 진행하겠지만, 경미한 사고는 과장님 선에서 해결할 예정이다. 사고 외에도 안전보건 관련 의견이나 고충이 있을 경우, 현업종사자들이 담당자에게 수시로 이야기하며, 대체로 내부에서 해결된다. 작업환경 측정 대상은 아니며, 위험물을 다루지 않고 시설 관리는 대부분 위탁(용역)이다.

5. 안전보건교육

현업종사자 대상 안전 교육은 매월 진행되며, 비현업 및 공무원 대상으로는 안전 관련 별도의 교육은 진행되지 않는다.

6. 유해·위험 인식 및 관리 의견

현업과 비현업종사자를 구분한 안전보건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선, 현업과 비현업의 차이를 잘 모르겠다고 생각한다. 도서관 자체는 위험한 곳이 아니며, 민원과 같은 심리적인 부담 외에는 물리적 위험이 크게 없다고 생각한다.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산안법」 적용 범위 기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별도의 안전보건 관리(조직 구성, 교육 실시)에 관한 법령 마련이 필요한 업무는 없다고 생각하며, 본청에서 균일하게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현업종사자 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현재 기준으로 시설 관련 업무가 대부분이라 한정적인 것 같아, 세부적인 기준을 통해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민원 관련 업무나 감정 노동 관련 업무가 추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기관 유형	(00 광역시청)	일시	2024.09.09
인터뷰 대상자	도서관 사서		

1. 인터뷰 개요

도서관 사서 1명이며, 공무원 6년차로 문헌정보부 소속에서 자료실 업무를 수행한다. 미추홀도서관은 3개 부서와 4개의 분관 도서관을 운영하며, 상호 인사 이동이 가능하다. 인력현황은 총 114명으로, 공무원 35명과 기간제 28명이 포함된다. 현업 여부에 관계없이 현장직에 대해서는 「산안법」이 전부 적용된다.

2. 주요 사업

도서관의 데스크 방문 민원 처리 업무는 회원증 발급, 도서관 이용 안내, 대출 및 반납이 포함된다. 하루 평균 이용자는 2,042명이며, 대출권수는 1,451권에 달한다(출처: 도서관 이용현황 및 자료현황). 또한, 자료실 서가 정리 업무는 당일 방문객이 열람하거나 반납한 도서와 전일 반납 도서를 수거하여 정리하는 작업이 포함된다.

연체도서 관리에는 일정 기간 이상 연체한 이용자에게 독촉 전화나 우편을 발송하거나 방문을 통해 도서를 수거하는 업무가 있으며, 이는 '인천광역시 미추홀도서관 자료실 이용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상호대차 서비스는, 이용자가 필요한 도서가 다른 도서관에 있을 경우, 해당 도서를 신청하여 대출하는 서비스로, 반납된 도서는 다시 정리하여 분관으로 보내는 절차가 포함된다. 이 서비스는 휴관일을 제외하고 항상 제공되며, 대출 및 반납 업무에 포함된다.

책마중 서비스는 주로 월요일과 목요일에 수행되며, 신청된 도서를 각 자료실에서 찾아 지정된 수령처에 제공하는 업무이다. 도서 배송 작업은 보통 1시간 내외로 소요되며, 스마트도서관과 연계된 야간 도서 대출 및 예약 신청 도서 대출 서비스도 포함된다.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이용자가 예약한 책은 지정된 수령처에서 대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간행물 관리는 신문을 매일 신간으로 교체하며, 잡지는 월 1회 신간으로 교체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문헌정보부 사무실에서는 자료 구입과 자료관리시스템에 도서를 등록하는 업무가 이루어지고, 매월 1,500권 이상의 도서가 반복적으로 처리되며, 이는 하루 종일 모니터 작업과 도서 이동을 동반하기 때문에 신체적인 노동을 요구하는 작업이다.

3. 안전보건관리체제 운영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시와 별도로 도서관 내에서 별도로 구성되어 분기별로 운영된다. 각 분기마다 안전을 상정하여 시설 점검, 근로 환경, 근로자 건강 등 다양한 사항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하절기 대비 안전보건관리와 온열질환 예방 및 우기 대비 계획이 다뤄지며, 소방 분야의 시설물 안전 점검도 포함된다.

2분기에는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대한 유해요인 조사를 진행된다. 업무 수행에 필요한 보호구로는 장갑, 사다리, 북트럭, 마스크, 손목 보호대 등이 지되지만, 작업환경 측정이나 특수 건강 진단은 해당 사항이 없다.

4. 안전보건교육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분기별로 집체 교육으로 실시되며, 현장직은 분기마다 6시간씩 연간 24시간, 사무직은 분기마다 3시간씩 연간 12시간의 교육을 받는다. 2024년 기준으로, 전년도에 무재해로 기준 교육 시간의 절반인 12시간(현장직 기준), 6시간(사무직 기준)을 이수하면 된다. 또한, 필요에 따라 구두로 안전에 관한 교육이나 지시가 이루어진다.

5. 유해·위험 인식 및 관리 의견

특별히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작업은 없지만, 도서 정리 업무는 국가 근로장학생들이 주기적으로 도와주고 있어 서가 정리 업무량이 과하지 않다. 그러나 학생들의 도움이 없는 경우 업무 강도가 상승하며, 특히 학기 중에는 학생들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근골격계 질환은 대다수의 종사자에게 나타나는 문제로, 연차가 쌓이면서 누적된 피로로 인해 발현되는 질환으로 생각한다. 또한, 안전보건교육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의 제도를 통해 안전보건의 중요성을 상기하고 논의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기관 유형	(00 시청)	일시	2024.10.04
인터뷰 대상자	복지문화부 체육진흥과/운영팀 담당자		

1. 인터뷰 개요

인터뷰 대상의 주무관은 수영장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수영강사와 대표직원 관리도 맡고 있다. 2001년에 입사하여 운영팀에서 약 13년간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2.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조직 현황은 체육진흥과는 운영팀, 체육시설팀, 관리팀, 체육지원팀, 스포츠마케팅팀, 체전준비TF팀 등으로 구성된다.

3. 주요 사업

체육지원, 체육시설 운영관리, 체육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 각종 체육회 운영지원, 그리고 2024년 충청남도체육대회와 2025년 장애인체육대회 준비를 담당한다.

4. 안전보건관리체제 운영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별도로 운영되지 않으며, 안전보건 담당자가 지정되었는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 인터뷰 대상자는 체육강사들을 관리하고, 조경이나 미화 종사자들은 관리팀에서 담당하는 등 팀별로 구분하여 안전보건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위험성평가, 특수건강검진, 작업환경측정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안전 보호구도 지급되지 않는다. 별도의 안전보건 매뉴얼은 없지만, 안전총괄과에서 공문을 통해 내려오는 내용을 확인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 관련 업무 요청이 오면 팀별로 담당 부분을 작성하여

취합한 뒤 본청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안전사고(이차사고, 민원 등 포함)나 위험 발생은 체육강사들에 의한 사고는 없으며, 오히려 체육강사들이 민원인(회원)을 대상으로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 2022년에는 수중 청소기 사용 후 물 위로 끌어 올리던 중 청소기가 무거워서 허리를 삐끗한 사고가 있었고, 해당 직원은 원래 허리가 약했던 분이였지만 이 사고는 산재 처리되었으며, 그 외 별도의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5. 안전보건교육

체육강사 대상은 분기별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한다.

6. 유해·위험 인식 및 관리 의견

현업/비현업종사자 구분한 안전보건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현업종사자들은 언제든지 유해·위험 요인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비현업종사자들은 극단적인 민원인의 위협 외에는 유해·위험 요인이 적다고 판단된다.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산안법」적용 범위 기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별도의 안전보건관리 법령 마련에 대해서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현업종사자 범위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장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에 대해 세부적인 관리가 필요하므로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다.

기관 유형	(000 교육청)	일시	2024.09.09
인터뷰 대상자	특수교육 실무사		

1. 인터뷰 개요

000교육청의 특수교육실무사(공무직)는 특수교육지도사 경력이 16년으로 대부분 신규 채용자를 제외하면 10년 이상의 근속년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조직 현황으로는 도교육청 소속 특수교육지도사 321명이 근무하고 있다.

노무관리 및 근무 형태로 근무처는 특수학교,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일반학급 그리고 유치원에서 이루어진다. 배치 기준은 특수교육법에 따라 유치원에서 4명,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6명, 고등학교에서 7명이 배치된다. 강원도의 경우, 특수교육법상의 기준보다 더 많은 인력을 배치하고 있다. 유치원은 학생들에게 손이 많이가는 반면, 상대적으로 낮은 연봉(초중고보다 근무일수가 적음)으로 인해 기피 근무처로 꼽히고 있다.

3. 주요 사업

주요 업무로는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활동을 지도하며, 등하교 지원, 수업 지원, 급식지도, 기타 신변처리 지원 등을 담당한다. 특수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경우 활동보조 인력이 별도로 배치되어 수업 지원에는 참여하지 않으며, 학생들의 등하교만 지원하고 외부 수업(치료실이나 복지관 수업)에 동행한다. 또한, 특수학교에서는 1명, 일반학교에서는 2명 정도의 학생을 담당한다. 업무 수행 인력은 특수교사, 특수교육지도사, 사회복지무원이 함께 수행한다.

4. 안전보건관리체제 운영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본청에서 운영하며, 현업직종을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이 참여한다.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 측이 현업종사자의 수 비율로 근로자위원을 추천하고 도교육청은 이를 인정하여 선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과반수 노조는 존재하지 않는다. 참여 대상 현업직종으로는 교원(영양교사), 공무원(운전원), 공무원(통학지도원, 영양사, 조리원, 학교 보안관 등)이 포함된다.

특수교육지도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지 않으며, 교육청 본청의 안전관리부서는 현행 현업업무 종사자만을 관리하고 있다. 특수교육 담당 부서나 안전관리 담당 부서에 문제 발생 시 면담을 통해 의견을 전달하고 있으나, 그 의견은 청취에 그치고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안전담당 부서에 특수교육지도사의 업무상 부상 중 4일 미만의 산재 처리가 불가능한 사고나 안경 등 물적 피해에 대해 안전공제회를 통한 보상을 요구했으나, 배상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공식적으로 지급하는 보호장구가 없으며, 슬라이딩 패드를 사용하는 학교를 본 적이 없다. 손목 보호대나 꼬집힘 예방을 위한 팔토시, 장갑 등의 도구는 개인이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다.

5. 안전보건교육

현재 현업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보건교육은 실시되지 않고 있다. 특수교육지도사 대상 직무 연수는 방학 때마다 각 4시간씩 실시되고 있으며, 강원도 교육청은 국립특수교육원의 원격연수를 권장하고 있다. 직무연수의 내용에는 특수교육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장애 유형별 직무관련 내용(주로 발달장애)이 포함되어 있으나, 성교육이나 힐링 연수 등 직무와 무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국립특수교육원의 원격연수는 수년째 리뉴얼 되지 않고 있어 현재 시점에서는 유용성이 떨어진다. 또한, 직무연수에 안전보건이나 사고 예방 관련 내용(안전사고 사례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6. 유해·위험 인식 및 관리 의견

유사 직종인 통학지도원은 현업종사자에 포함되고 있으므로, 특수교육지도사도 현업종사자 직종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이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여 등을 통하여 특수교육지도사의 산재 예방에 대한 의사전달 창구 마련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교육 관련해서는 직종에 맞게 내용을 구성하여 교육을 실시했으면 좋겠고, 교육 시간에 대해 연간 8시간은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특수교육지도사의 대부분은 특수교육을 전공하지 않아 직무와 관련된 체계적인 연수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타 시도와 같이 워크숍이나 1일 이상의 연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기관 유형	(000 교육청)	일시	2024.09.11
인터뷰 대상자	특수교육 실무사		

1. 인터뷰 개요

000교육청에서 대상은 특수교육지도사 공무원 근로자로 특수교육지도사 경력 19년차이다.

2.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조직 현황으로는 경기도교육청 소속 특수교육지도사가 1,344명 근무하고 있다.

노무관리 및 근무현황으로 다수의 특수교육지도사가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배치되어 있으며,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되어 특수교육지도사를 대체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최근 특수교육지도사가 충원되고 있다. 경기교육청은 2023년 10월 17일에 발표한 경기특수교육활성화 3개년 계획을 통해 특수교육 현장인력(특수교사, 특수교육지도사, 돌봄담당교사 등) 1,030명 증원 계획을 수립했다. 특수학교 1교실 2교사제를 실현하기 위한 기간제 특수교사 230명 증원, 특수교육지도사의 정원 200명 확대로 통합교육을 지원하며, 또한 시간제 근무 기간제 교사 100명을 증원하여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현재 학교는 "복합특수학급"으로 학급당 학생 정원은 4명이다. 복합특수학급은 경기도 내 25개 교육지원청 중 10개의 교육지원청에서 운영되고 있다. 복합특수학급은 학급당 교사 2명과 지도사 1명이 배치되며, 시간제 학급은 학급당 교사 1명이 배치된다. 근무지별로 차이가 있으며, 초등학생은 학교 체류 시간이 비교적 짧아 15:00~16:00 사이에 귀가하고, 중학생은 15:30~16:30에 귀가한다.

3. 주요 사업

업무 분장상 업무로는 과학실섬실 및 과학실험기자재 관리, 과학교구 확충 과학교육 활동, 과학행사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SW관리(실물화상기, 노트북이나 탭 관리), 정보기자재 및 유지보수업체 관리도 담당한다. 학교 홈페이지, 학내망, 시청각실, 컴퓨터실 관리, 학교 방송 등의 관리도 포함된다. 참고로 전임 학교에서는 교과서 관리 및 배부, 학급 환경 물품 구입 기안, 청소용품 구입, 학습 준비물 계획 수립 및 운영 업무도 병행한다.

업무분장상 주요 업무는 교실 환경 정리(청소, 소독 등)와 학습교재교구 제작,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수업 지원(통합학급 및 특수학급), 현장학습 및 교외활동 지원, 개인 욕구에 따른 보조기구 착용 지원이다. 또한,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 동안에는 학생 이동(이동수업), 식사 및 신변처리 지원을 담당한다. 언어적 소통이 어려운 학생은 특수학교에 배치되며, 아이들 간에도 깨물고 다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재작년에는 학생이 심하게 맞아 3개월 동안 뇌진탕과 회전근개파열로 산재 처리가 이루어진 사례도 있다.

4. 안전보건관리체제 운영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현업대상 직종에 대해서만 소통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의견은 주로 교육청이나 노동조합 연수 시에 전달된다. 안전 보호구 지급과 관련하여, 안전 예방을 위한 용도의 물품은 지급되지 않는다. 휠체어에서 좌석 이동 시 보조도구(슬라이딩 패드 등)는 직전 근무 학교에서 사용해본 적 있으나, 현재 근무학교에서는 학생이 전동휠체어를 사용하고 있고, 학생의 장애 특성상 슬라이딩 패드 사용이 학생에게 위협할 수 있어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산재 발생 보고서 작성 등 산재 처리 과정에서 학생은 가해자로, 근로자는 피해자로 칭해져 신고하게 되므로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불편함이 있어 산재 신청을 꺼리고 유급병가를 사용하게 된다.

5. 안전보건교육

교육 대상은 현업업무 종사자 범위에 속하지 않아 안전보건 교육을 받지 않는다. 특수교육 업무와 관련된 교육청 교육(방학 동안 1년에 2번 정도)을 수강하고 있으나, 이 교육에는 재해 예방 등과 같은 안전보건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직무연수의 주요 내용은 장애학생 인권 보호, 성폭력 예방 교육, 장애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지원인력의 역할,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위한 이해와 지원 방법, 보조공학기기의 이해 및 관리 방법, 복무규정 등이다. 다만, 연수 중에 사례가 나오면 현장 근무자들이 애로사항을 토로하지만, 그때마다 실질적인 대안이 제시되지 않아 안타까운 상황으로 마무리되는 실정이다.

6. 유해·위험 인식 및 관리 의견

① 학생의 돌발행동 관련

이전에 행동 중재 전문가를 파견하여 학생과 대화를 하고 상황을 조처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학생의 돌발행동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학생이나 지도사가 다칠 경우, 지도사의 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 장치가 마련되면 좋겠다.

② 현업종사자 확대 관련

제도적으로 위원회나 교육 같은 것이 전무 하기 때문에 안전보건 교육을 통해 이러한 제도가 생기면 모든 교육 현장에서 홍보가 이루어져 종사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당당히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용자는 종사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는 훌륭한 계기가 될 것이다. 더불어, 관리자들에게도 특수교육지도사에게 「산안법」이 적용 대상임을 교육하거나 홍보할 필요가 있다.

③ 교육 내용 관련

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교육하면 재해 예방에 효과적일 것이다. 예를 들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지도하는 데에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나 신체적으로 무리가 덜 가는 방법 등을 교육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기관 유형	(000 교육청)	일시	2024.09.12
인터뷰 대상자	과학실무사		

1. 인터뷰 개요

000교육청에서 대상은 교육행정직 공무원 근로자(과학실 경력 18년차)와 도교육청 교육행정직 담당 근로자이다.

2.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조직 현황으로는 도교육청 내 행정실무사 7,100명 중 약 800명이 과학 담당자로 근무하고 있다.

노무관리 및 근무 형태로 정식 직종명은 ‘행정실무사’로, 업무분장에 따라 과학 업무가 배정된다. 과학실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행정실무사는 대부분 초등학교에 배치되어 근무한다. 중고등학교에는 대부분 과학 교사가 배치되며, 전공 교사가 담당하면 수업과 실험을 준비할 시간이 확보된다. 또한, 행정실무사는 교무, 행정, 과학, 정보 업무가 통합된 직무를 수행하며, 2012년에 직종이 통합되었다. 학교 규모에 따라 학급수가 많은 곳에는 4명이 배치되고, 학급 수가 적은 곳에는 2~3명이 배치된다. 그러나 학급 수가 감소함에 따라 과학업무를 하는 행정실무사의 미배치 학교가 증가하고 있다. 행정실무사는 행정직과 근무 형태가 동일하며, 방학 없이 상시 근무한다. 방학 중에는 실험실 정리 정돈, 다음 학기 수업 준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평소에는 과학 준비실에서 근무하지만, 학교 내에서는 행정실이나 교무실에서 일하기를 바란다.

3. 주요 사업

업무 분장상 업무로는 과학실실험 및 과학실험기자재 관리, 과학교구 확충 과학교육 활동, 과학행사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SW관리(실물화상기, 노트북이나 탭 관리), 정보기자재

및 유지보수업체 관리도 담당한다. 학교 홈페이지, 학내망, 시청각실, 컴퓨터실 관리, 학교 방송 등의 관리도 포함된다. 참고로 전임 학교에서는 교과서 관리 및 배부, 학급 환경 물품 구입 기안, 청소용품 구입, 학습 준비물 계획 수립 및 운영 업무도 병행한다.

4. 안전보건관리체제 운영

행정실무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위원 선임방법 및 노동조합별 구성, 현업종사 공무원 참가여부 등에 대하여 알지 못 한다. 안전 보호구는 학생을 위해 보안경, 방화장갑, 방수포 등 안전용품을 구매하여 구비한다. 또한, 과학실 안전관리는 반기 1회 안전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다.

5. 안전보건교육

교육은 연간 15시간 이상 진행되며, 안전 연수 및 실험 연수는 방학 기간 중에 수강한다. 교육은 각 지원청에서 주관하여 원격, 집합 등의 방법으로 실시되며, 지원청별로 교육대상은 달리 설정된다(교사, 실무사, 둘 다 포함 등). 도교육청 교육연수원은 원격과정으로 <각급학교 과학실험 안전교육 원격직무연수>를 제공한다. 모든 교육 대상자는 필수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 내용은 실험약품의 위험성 및 취급 시 주의사항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다.

6. 유해·위험 인식 및 관리 의견

현행 교육청은 안전보건 관련하여 상하반기에 점검을 실시하고 MSDS를 비치한다. 중학교는 초등학교보다 시설이 잘 갖춰져 있지 않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고등학교는 실험이 활성화되어 있으나 과학실무사가 없어 교사의 위험 노출이 많다. 기 배포된 과학실험 안전 매뉴얼과 경기도교육청 교육연수원의 과학실험 안전교육은 적합하고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된다. 초등학교에서 다루는 화학물질의 농도는 물어 초등학생이 실험할 수 있을 수준이며,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경미한 수준으로 금방 세척 할 수 있다. 또한, 화재 발생 시 방수포와 소화기 등이 구비 되어 있어 조기 진압이 가능하다.

기관 유형	(000 교육청)	일시	2024.09.12
인터뷰 대상자	과학실무사		

1. 인터뷰 개요

000교육청에서 대상은 대상은 교무행정사 공무원 근로자 1명으로, 교무행정사로서 과학 경력이 13년으로 파악됐다.

2.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조직 현황은 강원교육청 소속 교무행정사가 약 1,200명 정도 있으며, 이들은 강원도 교육청 내 800여 개 학교에 배치된다. 또한, 강원도 관내 발명학교와 과학 중점학교에는 과학 업무만 수행하는 교무행정사가 추가로 배치된다.

3. 주요 사업

업무분장상 업무로는 교무행정사가 과학과 정보 업무를 맡고 있으며, 교무 업무 중 일부도 수행한다. 과학 업무는 학교마다 다르지만, 3~6학년 5~7학년 수준으로, 현재 21학급의 과학 수업을 지원한다. 과학 업무는 다른 업무에 비해 비교적 많다. 교무행정사는 과학 수업에 직접 참여하지 않으며,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기 전과 후에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

업무분장 중 과학 업무에는 과학 수업에 필요한 준비물을 확인한 후 주문하고, 수량을 파악하여 실험 재료와 준비물을 과학실에 배치하는 것이 있다. 현재 근무하는 학교에서는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하므로, 학년 연구실에 재료를 갖다 놓고 사용한다. 만약 과학실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학년 간 시간을 조율하여 사용하며, 이 경우 과학실에 준비물을 미리 준비해 둔다.

노무 관리 및 근무 형태는 과학 업무는 교무행정사 중에서 업무 분장에 과학을 배정함으로써 수행된다. 교무행정사는 과학, 정보, 교무 업무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1학교에 여러 명의 교무행정사가 배치된 경우 교무행정사끼리 의논하여 각 업무를 나누어 업무 분장을 한다. 배치 기준은 학교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3학급에는 교무행정사 1명이 배치되고, 7학급에서 31학급까지는 2명, 32학급 이상은 3명이 배치된다. 현재 근무하는 학교에는 교무행정사가 3명이 배치되어 있다.

4. 안전보건관리체제 운영

산안전보건위원회에는 참여하지 않아서 교무행정사 중 과학업무 종사자들의 재해 예방이나 안전보건 관련 요구 사항을 전달할 수 있는 루트가 한정된 것 같다. 안전보호구 지급은 약품시약장 후함, 장갑, 마스크, 방독면(과학실 배치 안전기준에 따른 기구), 발열장갑 등을 학생용으로 제작된 제품이 따로 없어서 공용으로 구매 후 사용한다. 담당 교사와 의논하여 학생용을 구매하면서 교직원에 대해서도 일부 사이즈별로 1개씩 구매하여 비치하나, 1인 1개 지급이 되지는 않는다.

5.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은 연간 15시간 교육이 이루어진다. 교육방법은 지역청 별로 과학실험 안전 관련 대면 또는 원격 연수로 실시된다. 교육 내용으로는 과학실 안전규칙, MSDS 등이 포함된다. 법정 의무교육 직무연수로 학교에서 근무할 경우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하는 연수에 포함된다. 이 중 MSDS는 1시간으로 배정되어 있으며, 이는 필수 교육이다. 또한, 한국과학창의재단 연수는 실무사 연수를 별도로 설계하고 있다.

6. 유해·위험 인식 및 관리 의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적용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동 시 직종별로 특수한 위험성에 대해 직접 상세히 어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청이나 학교에서도 현업종사자 직종 위주로 안전보건 행정을 진행하고 있어, 적용 직종에 비해

안전한 직업생활을 위한 요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적용되는 직종의 처우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다 보니, 그로 인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산업안전교육 관련하여, 일하는 중간에 틈틈이 듣는 것보다는 정례적인 연수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기타 의견으로, 중등학교에서는 과학교사만 과학수업을 진행하지만, 초등학교의 경우 모든 교사가 과학실에 들어가서 과학 실험을 하므로, 교사를 포함하여 학교 구성원에게는 「산안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관 유형	(000 교육청)	일시	2024.09.12
인터뷰 대상자	도서관 사서		

1. 인터뷰 개요

000교육청에서 대상은 사서 공무원 근로자 1명이다. 경력은 교육청 입직 후 13~14년 경력으로, 초등학교에서 5년, 현재 중등학교에서 근무 중으로 파악됐다.

2.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조직 현황으로는 강원도 교육청 내에 사서와 도서실무사가 약 18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사노무관리 및 근무 형태는 도교육청 내에서는 학교 간 인사이동이 가능하지만, 사서 직종은 신규 채용이 거의 없어서 인력이 감소하는 중이다. 방학 기간에는 비근무 상태이며, 방학 동안에는 장서 재배치 및 신청자(학생)에 한해 도서관을 개방한다. 도교육청에 여름 방학과 겨울 방학을 합쳐 20일 근무하도록 예산이 배정되어 있어서 근무한다.

3. 주요 사업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은 도서관 연간 운영 계획에 따른 활동으로 독서수업, 도서관 주간 행사, 전시회 및 프로그램 등 자료 제작이 진행된다. 장서 관리는 수서(신규 도서 선정 및 수령, 검수 및 정리), 신간 도서 및 폐간 도서 정리를 말한다. 초등학교에서는 하루에 약 200권 정도의 책을 꺼내서 빌려주고, 그 후에는 책을 제자리에 꽂는 작업을 한다. 연 1회, 전체 10,000여 권의 장서에 대해 일련번호를 스캔하고 실제 비치 여부를 대조하는 작업을 한다. 그 외 사업으로는 미배치 지원 사업(신청자에 한함)을 한다. 방학 중에는 사서나 도서 실무사가 배치되지 않은 산간벽지 학교로 가서 장서 정리 등 도서관 사업을 일부 수행한다.

4. 안전보건관리체제 운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은 참여 대상이 아니다. 학교 또는 교육청, 교육지원청 단위에서는 사서에 대해 특별한 의견 수렴을 하지 않는다. 재해 예방이나 안전보건 관련 개선이 필요할 경우, 도교육청 노사협력과나 지역청 교육 공무원 담당자에게 질의하거나 노동조합에 이야기한다. 안전 보호구는 손목 아대, 마스크 등의 물품을 개인이 구매하여 사용한다. 도서관 시설 내에는 소독기와 공기청정기 등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책 먼지 제거 장비가 존재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비용이 커서 도입을 제안하기 어렵다. 예시로 포스비브테크 서가용 진공청소기 또는 서가 청소 겸용 무선 청소기가 있다.

5. 안전보건교육

사서는 안전보건교육 대상자가 아니며, 사서 업무 관련 연수는 있으나 안전보건에 관한 내용이 없다.

6. 유해·위험 인식 및 관리 의견

현업종사자는 범위에 포함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도서관 업무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개선을 기대한다. 연간 1회 진행되는 전체 장서 정리는 무겁고 반복적인 작업이자 단순 작업이므로 위탁하고, 사서는 일상적인 장서 관리와 도서관 활동, 교육프로그램 구상, 수서 등 독서 관련 전문직으로서의 역량 발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하다. 초등 서가를 리모델링 할 경우, 너무 낮지 않게 하고 가장 밑단은 문이 달린 수납공간으로 만들며, 그 윗단부터 책꽂이로 활용하는 등 관절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배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정보와 도서관 활동의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직종 적합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으면 한다. 사업부서에서도 사업 운영 계획에 안전보건에 관한 항목을 포함시켜 안전한 작업을 위한 요령(낮은 책꽂이 폐기 서적 비치 등), 안전 용구 지원(마스크 제공 등), 마스크 착용 권고 등을 명시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기관 유형	(000 교육청)	일시	2024.09.19
인터뷰 대상자	도서관 사서		

1. 인터뷰 개요

000교육청에서 대상은 사서 공무원 근로자 1명으로, 00초등학교 사서로서 19년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00초등학교에서만 근무한 것으로 파악했다. 현재 000교육청 내에는 약 1,200명의 사서가 근무하고 있다.

2. 주요 사업

업무 분장상의 업무로는 도서관 전반 운영과 연간 도서관 운영 계획 수립 및 실행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4월 책의 날과 9월 독서의 달 등의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하여 독서 참여를 유도하며, 행사 구상과 기획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장서 점검과 파본, 노후본 등의 도서 폐기도 업무에 포함되며, 현재 학교 도서관에는 약 20,000권의 책이 보유되어 있다. 장서 규모는 도서실 크기, 도서 구입비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장서 폐기는 도서관 법규에 따라 연 1회 실시되며, 폐기할 수 있는 책은 7% 미만으로 제한된다. 매년 여름 방학에는 파본 도서를 폐기하고, 겨울방학에는 장서 점검을 하고 있다.

노무관리 및 근무형태는 도서관 면적은 교실 2~3칸 정도의 규모다. 현재 근무 중인 학교는 3층에 도서관이 위치하고 있지만, 최근 신설되거나 리모델링된 학교는 장서 무게 문제로 도서관을 1층에 배치하는 경우가 많다. 경기도의 사서는 상시 근무직으로 방학 기간에도 출근하며, 정기 전보는 5년마다 실시되지만, 지원청 단위별로 한 학교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3. 안전보건관리체제 운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며, 안전보건 관련 고충상담기구로는 현재 교장 선생님에게 직접 이야기하거나, 교육청에서 "학교도서관 컨설팅"을 통해 사서가 학교에 방문하여 정기 점검을 할 때 고충을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학교 도서관 컨설팅은 세팅 및 운영 노하우 전달, 학교 근무자의 고충을 전달하는 목적으로 운영된다. 또한, 안전 보호구 지급과 관련하여,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지급되는 물품은 없으며, 손목 아대, 마스크 등의 물품은 자체 구매하고 있는 상황이다.

4. 안전보건교육

교육은 사서 직무연수를 연 20시간 이상 필수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 방법은 지원청에서 외부 강사를 섭외하거나 원격(Zoom) 연수를 통해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주로 장서 점검을 강조하지만, 장서 점검의 노하우 공유나 근골격계 질환 예방 등 산업안전과 관련된 내용은 주안점을 두지 않고 있다. 다만, 일반 건강이나 힐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스트레칭 강의를 들은 경험은 있다.

5. 유해·위험 인식 및 관리 의견

안전보건교육 관련 의견으로는, 만약 안전보건교육 대상이 된다면 감정노동 관리, 관리자 및 동료 교사와의 갈등 해소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육이 유익할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배정에 대해선, 장서 점검 시 업체 위탁을 통해 수행할 수 있도록 도서관 예산에 장서 점검 비용(업체 위탁 비용 상당) 항목을 별도로 생성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통해 관리자들이 위탁업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인식이 바뀌게 되어 효율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관리자들은 도서관을 닫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개관하기를 원하며, 이를 위해서는 짧은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장서 점검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혼자서 장서 점검을 진행할 경우 5일이 소요되지만, 두 명 이상이 함께하면 2~3일이면 끝낼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연구진

연구기관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연구책임자 : 나민오(연구위원, 안전보건정책연구실)

연구원 : 송안미(연구위원, 안전보건정책연구실)

부분위탁

연구책임자 : 최서연(교수, 한서대학교 보건안전공학과)

연구원 : 권혁(교수,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원 : 박수경(연구교수, 강원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 : 서진두(박사, 흥익노무법인)

연구원 : 정정임(겸임교수, 충북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연구기간

2024. 02. 26. ~ 2024. 11. 30.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우리 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공공행정 분야 등 사업장의 안전보건실태
(2024-산업안전보건연구원-620)

발행일 : 2024년 11월 30일

발행인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원장 박승현

연구책임자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연구위원 나민오

발행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주소 : (44429)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0

전화 : 052-703-0822

팩스 : 052-703-0332

Homepage : <http://oshri.kosha.or.kr>

I S B N : 979-11-93642-95-5

공공안심글꼴 : 무료글꼴, 한국출판인회의, Kopub바탕체/돋움체